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520호
2019. 5. 16.(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1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712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8
제712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71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3
제71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7129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 16
제7130호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20
제71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제71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제713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71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제7135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제713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제713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제7138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제7139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제714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제7141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제714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제714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제7144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제714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제7146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제7147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제7148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제7149호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56
제715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8
제7151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60
제715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제7153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8
제715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 99
제7155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5
제7156호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 107
제7157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3
제7158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4
제7159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5
제7160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6
제71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8
제716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9
제7163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9
제716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1
제7165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122
제7166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4
제7167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5
제716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 127
제7169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0
제7170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1
제7171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2
제7172호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133
제7173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5
제7174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6
제7175호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7
제7176호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 138
제7177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0
제7178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1
제717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2
제7180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3
제7181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44

제718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6
제7183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148
제7184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2
제718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3
제7186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4
제718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6
제7188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7
제7189호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9
제719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0
제7191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2
제7192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3
제719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163
제719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7
제719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9
제7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0
제71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 171
제71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4
제7199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5
제720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5
제7201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0
제720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0
제720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1
제7204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2
제720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4
제7206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5
제7207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85

[입법예고]

제2019-13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8
제2019-139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9
제2019-140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89

◈ 고 시

제2019-145호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91
제2019-147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 211
제2019-148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도림동 250-20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11
제2019-149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20
제2019-150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32
제2019-151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7
제2019-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247

◈ 공 고

제2019-1308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 251
제2019-130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254
제2019-1310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 278
제2019-132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 311
제2019-1327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 312
제2019-134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312
제2019-135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315
제2019-1360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9 상반기 희망지사업 최종선정 결과공고 ····· 319
제2019-1362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전략환경 ····· 320
제2019-136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22
제2019-1365호 설계·감리업 등록 공고 ····· 324
제2019-1368호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9 주민공모사업』 선정 결과 ····· 324
제2019-1369호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공시송달 공고 ····· 325
제2019-1370호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 공시송달 공고 ····· 326
제2019-137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27
제2019-137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331
제2019-1381호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334
제2019-138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343
제2019-1393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 343
제2019-13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349

제2019-1397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 363
제2019-1400호 마포구 동교동 167-13외 26필지 복합시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당선작 공고 ····· 365

◈ 구 고 시

제2019-66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 366
제2019-67호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 368
제2019-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용산구) ····· 370
제2019-58호 도시계획시설(꿩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강서구) ····· 372
제2019-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개웅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구로구) ····· 376
제2019-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구로구) ····· 378
제2019-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구로구) ····· 386
제2019-39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 394
제2019-86호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서초구) ····· 401
제2019-87호 도시계획시설(방배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서초구) ····· 404
제2019-88호 도시계획시설(능안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서초구) ····· 407
제2019-89호 도시계획시설(원지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서초구) ····· 410
제2019-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 413
제2019-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 417
제2019-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우면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초구) ····· 420
제2019-76호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 424

◈ 구 공 고

제2019-4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광진구) ····· 433
제2019-4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동네뒷산공원화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 437
제2019-4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 439
제2019-7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변경(해제) 결정(안) 열람공고 (강서구) ····· 441

제2019-760호 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강서구) ····· 441
제2019-5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 448
제2019-6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 487
제2019-7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서초구) ····· 492
제2019-7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리풀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서초구) ····· 503

◈ 사업소고시

제2019-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0
제2019-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0
제2019-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1
제2019-1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1
제2019-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2
제2019-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2
제2019-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3
제2019-1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513

◈ 사업소공고

제2019-10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3개월) 통지 공고(동대문소방서) ·· 514

◈ 기 타

제2019-12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515

◈ 정 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66호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정정 ····· 516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1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해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학부모에 대한”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유형,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감은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나. 최근 학교에서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괴롭힘으로 피해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음.

다. 이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제4조)

나. 피해신고 의무 및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등(제8조의2)

다.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및 교육감의 교육연수 책무 등(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2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평화·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간 평화번영과 화해 진정에 부합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일교육 기반을 공고히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화·통일교육의 기본이념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제2~3조).

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5조).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7~12조).

마. 평화·통일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험학습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14조).

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관련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적 평화·통일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제15~16조).

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큰 공무원이나 학생, 학교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2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체육지도자들의 폭행 및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학생선수 시절부터 폭행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나.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체육계 성희롱 및 성폭력 합의서는 이러한 성희롱과 성폭력을 지도자와 선수 간에 존재하는 권력차이, 권력관계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체육계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은 체육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모든 스포츠 조직과 기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다. 또한 2018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체육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및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권고하기도 하였음.

라. 이에 교육감으로 하여금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계획수립과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제4조제5호 신설).

나.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7조의3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교사·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
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
6. 학생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7.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
8.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9.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WHO가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한 이래로 비만은 세계 각국의 주요 공중보건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 저하 및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보건문제임

나.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시행중에 있지만 유관부서가 많아 주무부처가 불분명하며, 2017년 고등학교 3학년의 비만율은 23.9%에 이르는 등 비만율의 지속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다.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비만 정책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비만 예방 교육의 주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비만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및 청소년 비만대책에 실효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비만관리종합대책의 수립 등(제5조)

나. 프로그램 개발(제8조)

다. 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2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신설·이설"을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함.

나. 이때, 기부채납의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축하여 공공건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관리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해 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포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라. 따라서 교육청 및 교육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사용·관리하는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적용 범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3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29호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하고 정책추진에서 민관 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2. “시민민주주의”란 시민이 서울특별시 정책과 관련된 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말한다.

3. “민관 협치”란 시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숙의예산”이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시민이 서울특별시의 예산 편성의 과정에 참여하는 예산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민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현하여야 한다.
1.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정책참여의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시민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서울특별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3. 시민민주주의 실현은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시의 정책 제안·심의·결정·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제7조(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민민주주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민참여·숙의 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요구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9. 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8조(사무기구 및 소속 직원) ①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두며, 그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② 사무기구에서는 위원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고, 위원은 비상임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예산, 협치, 혁신 등 소관 실·본부·국장 또는 기획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률·회계 등 전문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의회 및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며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조정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운영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기구 중 회의에 상정된 의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회의결과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민민주주의 확산등

제18조(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민주주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밖에 시민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9조 (제도 진단 및 개선) 시장은 민관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시민 민주주의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민주주의 기본 원칙(안 제3조)

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설치(안 제7조)

다.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0호**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기능)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
   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각자 부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실무위원(이하 “당연직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실무위원(이하 “위촉직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의 감사부서장
2. 시 교육청의 감사부서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감사부서장
4.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실무위원(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촉된 실무위원을 말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제9조(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의하는 민관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조)
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부터 제7조)
다.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
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9조부터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859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6월 30일” 및 “2019년 8월 18일”을 각각 “2020년 6월 30일” 및 “2020년 8월 18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정비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
- 지역발전본부(～’20.6.30.) : 4대 권역별 균형발전 총괄
- 문화시설추진단(～’20.8.18.) : 박물관 등 문화시설 건립 전담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422명”을 “18,4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05명”을 “10,43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05명”을 “5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157명”을 “160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18,422”를 “18,472”으로 하고,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10,451”을 “10,475”로 한다.

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10,049”를 “10,066”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소계의 계란 중 “97”을 “104”로 한다.

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376”을 “387”로 하고, 연구사의 계란 중 “314”를 “325”로 한다.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505”를 “520”로 한다.
같은 표 교수 등의 계란 중 “435”를 “45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대공원 5급이하 7명 감축과 전문경력관 7명 증원 조정사항은 해당직위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 중점 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422명에서 18,472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50명)

(1) 박물관 건립·운영, ’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재난상황관리 감찰기능 강화, 공무직·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35명)

(2) 시립대학교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인력 확충(+15명)

나.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 증원, 일반직 5급 이하 7명 감축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사이의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임차인들”을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를 “보증금액 및 차임액과 무관하게”로 하고, “전단”을 “본문”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상담”을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당 상가임대차 영업” 및 “상가임차인”을 각각 “해당 영업” 및 “상가건물 임차인 및 전차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가임대차”를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상가건물임대차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상가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상가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상가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상가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조정위원회위원장이 조정부의 장을 지명한다.

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상가임대차 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송달 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유선·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제17조(조정신청의 각하)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상가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제19조를 각각 제26조, 제27조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피신청인·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조사된 자료를 조정자료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및 거래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조정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 제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79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8년 10월 16일을 말한다)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 계약갱신요구 기간 연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제10조)

나. 조정위원회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1)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제10조~제25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제25조)

다. 조정위원회에 관한 기존 규정 삭제(현행 제11~17조)

라. 산하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정비(제7조)

(1)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제7조제1항)

(2) 법에 따라 보장된 전차인(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계약에 한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례에 명시(제7조제2항)

(3) 계약갱신요구 기간의 개정사항은 법의 시행일(2018. 10. 16)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마.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대상에 전차인 명시(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복무선서)"를 "(복무 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무선서"를 "복무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서"를 "복무 선서"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 중 "공휴일"을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9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고 “1년에 한함”을 “1년으로 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 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1조제1항 중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를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휴직 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6호 중 “때”를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6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4조제13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연가일수 공제사유 명시, 연가사용 촉진제 및 권장 연가 일수 제도 실시,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확대 등 서울시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함(제18조)

나. 연가일수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방법 및 연가일수 공제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제19조 및 제21조)

(1) 재직기간의 계산단위를 '연월일수(年月日數)'로 명확하게 규정

(2) 휴직 이외에 연가일수가 공제되는 사유를 명시함

다.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1)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고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재직기간별로 세분화(제20조제5항)

(2) 권장연가일수 및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제20조의3)

라. 특별휴가 확대 및 명칭 변경 등(제24조 및 별표 3)

(1)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확대

(2) 불임치료휴가를 난임치료휴가로 명칭 변경

(3) 자녀돌봄휴가 사용의 사유에 자녀의 병원 진료 추가

(4)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연장
(5) 별도의 항으로 규정했던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출산시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별표 3의 경조사휴가로 규정함
마. 유연근무 실시 근거 및 대체휴무의 사용시기 제한 등 명시(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
바. 근거법령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함(제1조 및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5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 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게시된 정보가 항상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을 “효율적인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5조제9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정 참여유도”를 “시정 참여유도”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그밖에” 및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온라인 여론조사	설문 문항수 6~10문항 참여	300점	건당 1인 1회
	설문 문항수 11~20문항 참여	400점	
	설문 문항수 21문항 이상 참여	500점	

주 :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기반의 시정 참여가 축소되는 현실에 맞추어 회원 마일리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홈페이지의 마일리지의 사용용도 정비(제8조제1항)

나.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한 조례의 별표를 수정

다. 띄어쓰기 오류 및 비문 표현 등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으로 하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2019년 6월 5일)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18. 12. 4.)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제6조)

나.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제3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7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장애인복지법」 개정('19. 7. 1. 시행)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19. 7. 1.) 이후에도 종전 시각장애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제도 유지를 위하여「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8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 서울공공주택은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 또는 기부채납받아 공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복주택”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건축사업에 따른 소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인수하는 임대주택

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5.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

제8조제4항 중 “장기전세주택 각 호”를 “서울공공주택”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공임대주택 등 공급에 대한 보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편의시설(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용, 복지, 보육, 문화, 체육, 가족지원 및 창업지원 등 공공서비스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 및 심의하도록”을 “검토, 심의 및 자문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등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을 명확히 하고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공공주택을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주체 및 유형을 명확하게 개정 (제8조제1항)

나. 서울공공주택의 공급유형에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고,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추가하는 규정 신설 (제8조제2항)

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시비 지원근거 조항 신설 (제8조의2)

라.「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별표4에따라 행복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적용은 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완화범위를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제14조제3항)

마. 상시 운영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39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남대문로 5가”를 “남대문로5가”로, “만리동 1가”를 “만리동1가”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을 “관하여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로,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정지”를 “이용정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제4호”를 “시장은 제1항제4호”로, “취소, 변경 또는”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로를 이용할 경우”를 “시장은 이용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점용할 경우”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하기”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에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제18조제2항제2호)

나.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문구를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0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와 제23조를 각각 제23조와 제24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감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확정시기를 상위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제22조제1항).
나. 감사결과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22조제2항,제3항)

◈ 서울특별시 조례 제7141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청년들의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 이자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함(제3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청년의 건강증진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추가함.(제6조제2항제2호자목 신설)

나.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8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3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를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를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1인가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1인 가구별 특성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 제3항,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

나. 조례 제9조제2항 신설, 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을 포함 실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4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제3조 관련)

명 칭	기 능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자 복지증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당 사용료(원)	사용기간	비 고
노동허브	5,000	1개월	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노동자복지시설 중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단체의 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바 목적에 맞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 한계가 있어,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부과·징수 근거 및 사용료 기준 추가(제8조 및 별표2)

나.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명칭 및 기능 추가(제3조 별표1 : 서울특별시노동자 복지시설 명칭·위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5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시장에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별지 1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장명 (업 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 등	주 소 ( ) 업 종 ( ) 전화번호 (☎ – –)		

기준보수 등급	( ) 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년 월 일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신청인)	계좌번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번호 :

민원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신 후 동의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 · 이용 목적) 신청자의 지원 적합여부 결정 및 지원금액 확인

○ (보유 · 이용 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수집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수집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수 집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기준보수등급,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주소, 이메일, 가입일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2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신청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및 신청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제공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 ·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 공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보수 등급, 지원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울특별시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를 감축시켜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 서식을 규정함(제10조3제2항, 별표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6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안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는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4. 법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결함 물품등에 대한 권고사실의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5.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에 제1항제3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위원회 기능의 일부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안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한다)
2.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3.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및 상근인력 5명 이상
5. 지부 현황(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회원명부
7.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업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와 개선 권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교육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가함(제4조)

나.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7조, 제8조)

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평가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도록 함(제14조)

라.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조례에 반영함(제2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7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실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추진사업 중 제4호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제6조제4호).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8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밖에”를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용가능”을 “사용 가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제4항에”를 “제11조제4항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잘못 인용된 문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을 개정함(제1조, 제2조)

나.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제12조제1호)

다. 잘못된 인용규정을 개정함(제12조제3호, 제22조제1항)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제2조제5호,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49호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제2조 및 제3조)

나.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무의 경우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협약 체결(제4조)

다. 의안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고, 의안 제출 시 자료 제출 사항 규정(제5조 및 제6조)

라. 협약 이행 등에 관한 사후관리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52조 에”를 “제52조에”로 하고, “행하는”을 “실시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감사와 조사의 활동”을 “감사·조사활동”으로 한다.

제5조 중 “행하는 의원”을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얻어 사무처장”을 “받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요구한”을 “요구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일괄 수합하여”를 “수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알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 중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을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자료를”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을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으로, “제출할 것을”을 “제출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38조에”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를”로, “거부시”를 “거부 시”로,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발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를 “않는 경우의 법령상”으로, “기재한다”를 “쓴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의장에게 통지하여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증언을 한 자를”을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로 한다.

제11조 중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시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인이 미출석 시 부과하는 과태료 처리 결과 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시장 또는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함 (제9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1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등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
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서울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규정(제2조)
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 규정(제3조)
다.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 해제 규정(제4조 및 제5조)
라. 홍보대사 예우 규정(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2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

[별표] <개정 2019. . .>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족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아동복지법」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아동복지법」제56조	구청장

□ 노동민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 제6항	
	나. 정기 검사증인 표시	○「계량에 관한 법률」제34조	
	다. 부정계량기의 처리	○「계량에 관한 법률」제52조	
	라. 과징금	○「계량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제4항	
	마. 지위승계	○「계량에 관한 법률」제63조제2항	
	바. 청 문	○「계량에 관한 법률」제6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	
	2.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생활용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생활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	
	다. 검사 등	○ 대부업법 제12조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대부업법 제13조	
	마. 실태조사 등	○ 대부업법 제16조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 대부업법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대부업법 제21조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사회적경제담당관	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설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나. 정관변경 신고	○「협동조합 기본법」제16조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협동조합 기본법」제56조	
	라. 해산신고	○「협동조합 기본법」제5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 기본법」제119조	
	바. 신고확인증 발급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교육공무원법」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거점성장추진단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구청장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 산업집적법 제33조	
	다.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업무 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법 제36조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경제정책과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0조, 제21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사목까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0조, 제11조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 음악산업법 제24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 음악산업법 제27조,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라.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법 제29조	
	마. 청 문	○ 음악산업법 제30조	
	바. 수수료	○ 음악산업법 제31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음악산업법 제36조, 음악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도시농업과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식물방역법 시행령」제4조	구청장

▢ 복지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 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6항	
	마. 감사의 추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7항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관세법」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제40조 제3항	구청장

▢ 도시교통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과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도시철도법」제9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제10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4.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9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연장·변경에 관한 사무는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구청장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구청장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16조	구청장
	1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o「여객자동차법」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청장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나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나목, 제24호라목마목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구청장
	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제94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9조	구청장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2.「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7조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8조제2항,「자동차 등록규칙」제4조제2항	
	다. 등록의 거부	○「자동차관리법」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자동차관리법」제10조	
	마. 변경등록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바. 이전등록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12조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자동차관리법」제13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항제7호,「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6항	
	자.「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 수리 처리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8항	
	차. 압류등록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14조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자동차관리법」제16조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자동차관리법」제27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항·제4항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자동차관리법」제28조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5.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제72조	구청장
	6.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제73조	구청장
	7.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76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3호	구청장
	8. 청문(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자동차관리법」제75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3항제34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9.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제84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10.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구청장
	11.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	구청장
	12.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5조	
	나. 임대허가	○ 화물자동차법 제56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16호까지'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화물자동차법 제56조,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2	
	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1조	구청장
	14.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7조	구청장
	15.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6.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35조	
	자. 상속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35조	
	차. 청문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파. 휴업·폐업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16조제2항, 제35조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사목까지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8조제1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항 및 제3항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 여객자동차법 제38조제4항	구청장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 여객자동차법 제39조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2조제3항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 여객자동차법 제43조제1항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제9호	
보행정책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구청장
	가. 도로의 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제117조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법」제55조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도로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1조	구청장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도로교통법」제35조제1항	직속기관의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제2호,「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사업소장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구청장
	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구청장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마. 영업의 승계신고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아. 직권취소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차. 청문의 실시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7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6조,「하수도법」제67조 및「하수도법 시행령」제38조, 제39조,「폐기물관리법」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5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7조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가스사업법」제54조	
	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10조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 석유사업법 제11조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 석유사업법 제12조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마. 과징금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 제3호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 석유사업법 제30조	
	사. 보고 및 검사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아. 청 문	○ 석유사업법 제40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 및 변경등록	○ 석유사업법 제33조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 석유사업법 제34조	
	다. 과징금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	
	라. 보고 및 검사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마. 청 문	○ 석유사업법 제40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사업법 제49조	
	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 제38조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 제4항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6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제1항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12호, 제5항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5조	
	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1항제3호, 제2항	
	나. 신고필증 발급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3항	
	다. 취소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사업법」 제108조	
	8.「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시정명령 등	○「전기공사업법」 제27조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전기공사업법」 제28조,「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전기공사업법」 제29조,「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및 제9항,「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구청장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대기정책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구청장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2.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	○「대기환경보전법」제42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	
	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제4항	
	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	
	사. 청 문	○「대기환경보전법」제85조	
	3.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다. 등록취소시 청문	○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	
	라. 과태료 부과	○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4.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5호까지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15조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	
	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환경기술산업법 제28조	
	라. 등록취소시 청문	○ 환경기술산업법 제30조	
	마. 과태료 부과	○ 환경기술산업법 제37조	
차량공해저감과	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제61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대기환경보전법」제70조, 제70조의2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2.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소음·진동관리법」제38조	
자원순환과	1. 폐기물처리 신고와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기물처리 신고 및 변경시고 수리, 시설폐쇄 또는 폐기물 처리 금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 건설폐기물법 제23조	
	다. 과징금의 처분 등	○ 건설폐기물법 제26조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건설폐기물법 제31조	
	아. 청문의 실시	○ 건설폐기물법 제57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폐기물법 제66조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구청장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구청장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생활환경과	1.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	구청장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구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본부장,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

□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지방공무원법」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제26조·제27조의2,「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6조	시의회 사무처장
	가. 의회내 전보		
	나. 휴직에따른 복직		
	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		
	라. 호봉승급		
	2. 시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의2,「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시의회 사무처장
	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당해 보조기관의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제27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수리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 체육시설법 제14조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 체육시설법 제17조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 체육시설법 제1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체육시설법 제27조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 체육시설법 제28조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체육시설법 제36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법 제40조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의료법」 제33조제4항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의료법」 제33조제5항	
	다.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청장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조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 마약류관리법 제7조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8조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 마약류관리법 제10조 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마약류관리법 제12조 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하목까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 마약류관리법 제13조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 마약류관리법 제27조, 제29조	
	아. 출입·검사와 수거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 마약류관리법 제44조	
	카. 청문의 실시	○ 마약류관리법 제45조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법 제46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약사법」 제41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나. 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1조	
	라. 검사명령	○「약사법」 제73조	
	마. 개수명령	○「약사법」 제74조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약사법」 제76조의2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81조	
	아. 과태료의 부과 ·징수	○「약사법」 제98조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1항,「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3항,「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식품안전과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라. 허가의 취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9조	
	마. 과징금 처분	○「축산물위생관리법」제28조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제34조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	
	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구청장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구청장
	4.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등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 록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시설변경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다. 등록증 재발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사료관리법」 제2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바. 업무감독	○「사료관리법」 제27조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아. 승계신고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자. 폐기 등의 조치	○「사료관리법」 제24조	
	차. 청문	○「사료관리법」 제30조	

▢ 안전총괄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갱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라. 등록의 말소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 등록 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제1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사. 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라. 기간연장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도로법」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도로법」제31조	구청장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도로법」제81조	구청장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계획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 주택건축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이하 다목까지 '승강기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나. 검 사	○ 승강기법 제21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 승강기법 제28조	
공공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택지개발촉진법」제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주택법」제15조, 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주택법」제43조, 제4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3조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동주택관리법」69조1항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구청장

▢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도로법」제31조	구청장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도로법」제31조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도로법」제31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 공원녹지법 제38조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2조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장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원녹지법 제13조	구청장
	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		
자연생태과	1. 방제명령 등	○「산림보호법」제24조제2항, 제3항	구청장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	구청장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	
	나. 지정서 교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지정 취소	44조의2제3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30조	물재생센터 소 장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69조	물재생센터 소 장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4조,「하수도법 시행령」제19조	물재생센터 소 장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7조,「하수도법 시행령」제22조	물재생센터 소 장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23조,「하수도법 시행령」제18조	물재생센터 소 장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31조	물재생센터 소 장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하수도법」제7조,「하수도법 시행규칙」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하천법」제5조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하천법」제15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하천법」제14조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52조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30조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하천법」제30조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하천법」제33조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하천법」제36조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38조	
	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68조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69조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70조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천법」제72조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하천법」제90조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하천법」제47조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하천법」제48조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하천법」제76조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하천법」제77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치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하천법」제78조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하천법」제84조, 제85조, 제86조	
	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하천법」제91조	
	어.「하천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하천법」제98조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제27조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하천법」제37조	
	다. 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제37조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하천법」제67조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하천법」제46조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기)	○ 같은법 제10조제6항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32조	
	나.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제10조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법 제31조	
	다. 지위승계 신고	○ 소방시설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소방시설법 제34조, 제44조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법 제35조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위험물안전관리법」제16조	소방서장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과 사무위임에 대한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시행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행정기구 설치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함.
- 경제정책실 민생경제과의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사무(도시농업과로 변경)를 제외한 위임사무를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변경함.
- 안전총괄실 보도환경개선과의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로의 점용관련)”를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로 변경함.

나. 사무위임의 근거법령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3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연구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서울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자치구의 행정과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여, 각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구정연구단」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함(제2조제4항 신설).

나. 서울연구원의 사업에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제3조 제6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영기획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의 도시농업·농정 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진흥본부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일자리기획관
2. 노동민생정책관

제9조(「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기획관”을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경제과장”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호”를 “호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제기획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하고,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3조의2제1항 중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각각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담당사무관”을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안전총괄본부를”을 “안전총괄실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택건축국을”을 “주택건축본부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를 각각 “안전총괄실”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별표 1] 관리자란 및 비고란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각각 “안전총괄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안전총괄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5조 및 제 1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안전총괄관”을 “보행친화기획관”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건축국장, 복지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본부장”을 “주택건축본부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재생본부”를 “도시재생실”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각각 “도시재생실장”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재생실장

5. 주택건축본부장

제30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도시교통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을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건축국장”을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제3호 중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을 “실장, 본부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제32조 삭제

제33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본부장, 경제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및 제8조제3항 중 “복지본부장”을 각각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청소년담당관”을 “청소년정책과장”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하고, 제9조제6항 중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본부장”을 “실장”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각각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기구 및 과·담당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등 43개 조례를 일괄개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5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상생교류 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상생협력 분야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지역 간 상생협력 관련 연구·조사 및 정보의 집적·제공
3.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기반 조성
4. 농수산물 유통, 귀농귀촌 등 지역 간 상생협력 지원
5. 지역 간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6. 지역의 관광, 특산물, 문화 등 종합적 정보제공 및 전시·홍보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7. 기타 지역 간 상생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6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상생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따르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서울시의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방식을 추가로 규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6조).
나.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을 위탁할 수 있음(제7조).
다. 시장은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6호**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청사”를 “청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지방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자치구”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를 “서울특별시의”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사·공단”을 “투자기관”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직영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을 “감정노동”으로,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란”을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감정노동 사용자”란”으로,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를 “서울시의 사무위탁기관, 서울시”로 한다.

제4조 중 “시에 소재하는”을 “서울시에 소재하는”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란 시가”를 “이란”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공사·공단”을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 공사 및 공단(이하 “시 산하 공기업”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를 각각 “산하 공기업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공기업”을 “산하 공기업”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및”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을 “출연기관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특별회계”란”을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로, “의한 지방직영기업”을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3조 중 “지방 직영기업”을 “시 직영기업”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 또는”을 “공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공사 및 공단”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출자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또는”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으로,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을 “따라 설립한”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제27조(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공기업”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 사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의

사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공기업”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사”를 “공사”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 사업”을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의 사업”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한다.

제36조 삭제

제37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문화원의 육성”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지원)”을 “(문화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지방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을 “(문화원의 기능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문화원”을 “문화원”으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문화원”을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방문화원”을 각각 “문화원”으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서울기록원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이하 “서울기록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지방공립대학”을 “서울시립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내포하는 “지방” 용어를 정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중앙부처와의 수평정·협력적 관계에서 자치주권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3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7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하며, 같은 조제3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하는 한편,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춰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제6조제1호)

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로 개정(제6조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8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과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 제5항 제1호 적용 및 서울시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 또는 최소한의 임대료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이 창업을 위해 서울시 재산을 이용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함(제13조제3항 신설)

나.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의 장은 미취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최소한의 임대료 규정 신설(제13조제4항 신설)

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일 및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은 시행일 이후 체결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경우부터 적용에 대한 부칙 신설(부칙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59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규정을 신설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반려식물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8호 신설).

나. 반려식물의 보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이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20조제1항제8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0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을 "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국민기초생활"로 한다.

별표 화장시설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란 다음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무료	무료

별표 봉안당의 사용료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란 다음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00,000 50,000	 240,000 120,000

별표 봉안당의 관리비 (매5년마다)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란 다음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1위당) - 신규사용(최초 15년 사용)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1위당)	25,000	45,000

별표 자연장지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1위당)란 다음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1위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1위당)	250,000	75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사자에 대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내용을 신설함 (안 제7조제2항 및 관련 별표).로 규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의견 반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복지정책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제4조의3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2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본문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조례 내에 있는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 방지(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3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함.

제2조제4호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장애인 등급이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9.)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서울시 조례 반영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

나.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조).

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함.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4호).

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제3조).

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함(제3장).

사.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함(제6조제1항).

아.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제10조, 제13조).

자.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제17조제5항, 제6항).

차.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등의 관람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로, 공연장 등에서 이들을 위한 좌석 모두를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이용에 안전과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등 관람석 전부를 최적관람석으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임(제4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5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빵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제1조~제2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시장의 책무(제3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제4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제5조)
마.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실시 및 가이드라인 마련(제6조~제7조)
바.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제8조~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6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를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및”을 “김포공항의”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시설 사용료
2.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3.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항공노선 신규 개설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중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를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로 함(제1조)

나. “공항활성화사업” 정의 중 “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및” 을 “김포공항의”로 함(제2조)

다. 지원범위에서 제1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호부터 제4호를 제1호부터 제3호로 변경함(제4조)

라. 지원범위에서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7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소와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

다. 서울시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행간 일어나는 차내 안전사고 및 차 내·외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정책에 반영하여 사고예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보고하도록 함(제4조)

나. 시장의 책무에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문화(제9조제6항)

다.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것을 추가(제1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8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시내버스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3. “노선”이란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나. 도로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시내버스정류소 및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류소 등을 설치 및 유지관리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업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3. 정류소 등의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4.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5.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내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이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이 접근하는 시내버스를 확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한전박스
5. 가로변 상점
6.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정차범위 및 그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류소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등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사. 그 밖에 시내버스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류소 등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제9조(개선사업 등) 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차범위 내에 설치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신규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이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3년 동안 설치 제한 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와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내버스정류소”, “시내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정차범위” 등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시내버스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4조).

다. 시민들의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을 정함(제6조).

라.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69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중 상당부분이 자동차임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대상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가·강조하여 재정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로 여객자동차를 개선하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3조제2항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0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변경 (제10조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1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수종사자의 교육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조례 제6045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649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취객의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 등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 이용 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함. 아울러 서울시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과 경과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재정지원이 되지 않는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문 정리를 위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내부에 설치하는 보호격벽 등 장치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제10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2호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공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차공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구는 주차공유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공개한 주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차공유 및 주차공유 플랫폼 등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나. 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다.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라.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3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제9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4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환경 설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제1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5호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제22조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6호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지원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 에너지 절약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사업장”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장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소상공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 컨설팅 및 지원을 통해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컨설팅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 정보수집을 통해 에너지 낭비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에너지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자율실천 유도를 위한 에너지절약 제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에너지컨설팅을 받은 중소사업장의 전기사용량을 수집하여 일정비율 이상 감축한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증 명칭은 달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절약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지침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 ① 시장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컨설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에너지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에너지점검반에 대하여 에너지컨설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의 체결) 시장은 중소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사업장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에너지절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중소사업장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하고, 중소점포 및 사업장 내에서의 서울시 에너지정책 홍보를 통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기여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에너지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에너지절약모범중소사업장 인증이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시민에너지점검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7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조 제목 중 “해체·제거 및 처리”를 “해체·제거·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을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제거로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시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8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1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기정책과”를 “차량공해저감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수렴 결과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변경(’18.4.4)하도록 함에 따라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1회/1일에서 1회/1개월로 함(제5조제3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제5조제4항 신설)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함(별지 제1호서식)

◈ 서울특별시조례 제7179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의3(의회동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미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공탁하게 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제25조의3제1항)

나. 영구시설물 축조시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도록 함 (제25조의3제2항)

다. 경과조치에 기축조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0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자원의 절약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다회용품(1회용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촉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에 따라 시, 자치구 공공청사 및 산하기관의 회의실 및 실내행사에서 1회용 컵 및 접시 사용을 지양하고 있으며, 올해는 민간위탁기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이에 따라 공무원 및 서울시민이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다회용 용기의 관리 부주의로 위생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회용품 사용 촉진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의4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1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 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4. “마을 공동체”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찾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찾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
2. 찾동은 인권에 기반 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3. 찾동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무성을 최우선으로 전제하며 그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투입 등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찾동에서 주민은 지역의 공공의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 단위 협치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시·구·동간 또는 민·관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외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찾동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찾동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행정, 주민자치, 여성, 복지, 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구청장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찾동 정책의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나, 품위손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찾동 사업은 지역의 사회보장증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복지·건강·여성·마을·자치·행정 등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부서 간에 협력한다.

②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빈곤·소외·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편적 복지·돌봄·건강 정책의 추진과 복지 안전망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한다.

③ 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 골목단위의 주민 공론장 조성,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6조)
다. 사업의 범위,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2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제60조제2항 의 규정”을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 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7조 의 규정”을 “제107조”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3항”으로,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구성·운영에 관하여”를 “구성·운영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자' 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함(제3조제2항제4호).

나.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제11조제1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함(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 11조, 제12조의2, 제14조,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3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3. "재료원가"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순공사원가"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6급 공무원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
1. 특정기술 필요여부
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선정심사 의뢰)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규칙이 아닌 별도의 조례로 설치하면서, 현행 규칙의 미비사항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정기술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 관련 용어 개념 정의 (제1조~제2조)
나. 심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제3조)
다. 시장으로 하여금 발주부서가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할 책무 부과(제4조)
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규정 및 기능 규정(제5조~제6조)
마.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 마련 규정 (제7조)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제9조)
사.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 규정(제10조)
아.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제11조)
자. 참석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4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생"을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로 하며 그 외의 부분을 1호로 하고, 같은 조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학생”을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존 장학지원이 정규학교 재학의 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학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마련 등을 위해 서울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규정 목적의 서울장학재단 지원가능 대상에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제1조)

나.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 조항을 신설함(제2조제2호)

다. 장학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제6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5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을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 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노력하여야 하며”를 “연구 및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문적인 기능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함(제3조제1항)

나.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제3조제2항)

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확대 강화하여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수립토록 함(제4조제2항제8호)

라.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6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제8조제2항 중 “해태하거나”를 “게을리 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① 시장은”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12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규정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확하게 함(제3조제2항).

나. 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개정함(제12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7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단 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함 (제6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8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모든 시민을”을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접흡연”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흡연행위가”를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연에 관한”을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 “(금연환경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으로, “설치·운영하거나”를 “설치·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본문 중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 별도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의욕 고취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이유로 제명을「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

나.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변경(제1조)

다.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제2조제3호)

라.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 변경(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마.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바. 금연지도원의 야간, 새벽,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제9조의2제6항, 제9조의2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89호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을 “위촉 해제 할”로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조제1항 중 “시설·장비”를 “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알기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용어(해촉 할→위촉 해제할)로 순화.(제9조제6항)
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신설.(11조제5항 신설)
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2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0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4. 법 제41조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치료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치료
3.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① 시장은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유기동물의 입양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1년분에 해당하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

② 이외에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한 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현행「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은 보호 이후 안락사 등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게 되었음. 따라서 유기동물의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이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동물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피학대동물을 보호할 시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치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다. 이를 통해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시하고자 함(제5조제2항 각 호)

나.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4조)

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및 동물등록비용, 동물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2조제2항)

라. 피학대동물의 치료비 등 실제 소요 비용을 피학대동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1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1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 제2항 중 “위회”를 “의뢰”로 한다.

제22조의2 제2항 제4호 중 “심의 에”를 “심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거 장애인의 적극적인 공적생활 참여 환경조성을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애” 표현을 수정하며 오탈자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제18조의2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2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의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연합회의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원 해임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제9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3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재난(미세먼지를 포함한다)”을 “자연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안전총괄본부”를 “안전총괄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 사망·실종, [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피해물량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 부 [ ]	내용: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또는 동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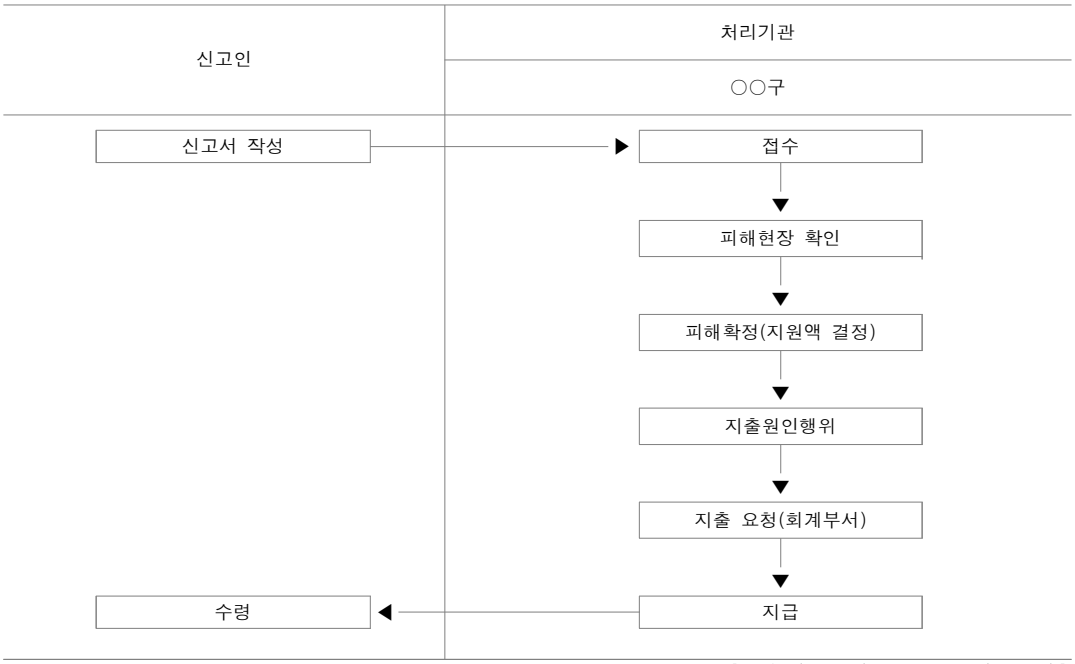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이 사회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내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절기 운영기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신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19년 1월 1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안전총괄본부→안전총괄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난 정의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함(제2조제1호)

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을 상위 법령에 따라 변경함. (제2조제4호나목 및 제25조제1항)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 "12월1일부터" → "11월15일부터"

○ 사회재난 피해 신고 기한 : "15일"→ "10일"

다.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정비함.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31조제1항)

○ "안전총괄본부장" → "안전총괄실장"

○ "안전총괄본부" → "안전총괄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1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화강석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1.2m×1.2m	1.2m×1.2m	1.2m×1.2m
최소굴착폭		1.2m	1.2m	1.2m
간접손궤영향구간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구비용	직접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직접손궤부분 복구비
	간접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감 독 업무비	도로복구금액(직접복구 + 간접복구금액) × ※요율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건설기술용역대가)의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른 요율 범위 내에서 정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원칙과 징수단가를 개정하여 원인자부담금 체납을 줄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 확대(제3조제4항)

나.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 개정(별표1)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5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 도시재생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전단계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단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민참여에 기반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주민공감대 형성,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전에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으로서 희망지사업, 거버넌스구축사업(후보지사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음. 다만, 희망지와 후보지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재생 사전단계 사업의 정의 및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사전단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제24조제1항 및 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6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제3호에서”를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률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률을 80퍼센트로 적용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7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층주거지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여건에 최적화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
2.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
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지역별 종합적·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기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
6.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기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시장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민선 7기 핵심과제로서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시설을 10분도보권 내에 설치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를 향상시키는 '10분 동네'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행·재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층주거지 및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등을 정의함(제2조)
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제4조)
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지역을 명시함(제6조)
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의 시행자를 명시함(제7조)
마.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방안을 명시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2]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호다목에 따른 산업시설 중 「의료법」 제3조의3의 종합병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고,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위임한 지구단위계획의 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규정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제19조제2항)

나.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전)부지 공동주택 허용기준 중 종합병원 또는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 확보비율을 1단계(10%)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2제2호라목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199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상업활동"을 "상업활동 및 공업활동"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시장은 조명계획 수립시 사용자의 안전, 야간 환경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보안성"을 "보안성,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제3호"를 "제1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청사의 점·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토록 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목적을 정비하여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조례에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청사의 점등·소등시간 고려사항에 주거지 사이의 거리, 지역특성을 추가함(제24조제2항)

나. 조명계획 수립시 조명의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을 적용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다. 상업·공업지역에 지정되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에 공업활동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4호)

라.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제2조제2호,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0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시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3층”을 “5층”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간판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개폐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이하로”를 “ 이내로”로 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시 심의위원회”로 한다.

재1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벽면에는”을 “벽면에”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모바일로”를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전자적방식 등”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26조제2항 관련)



〔예시〕

비고 (예시)	1. 표시규격 : 가로 5㎝ × 세로 5㎝ 2. 표시내용 : ‘2019’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제26조제3항 중 “아래부분으로부터 160센티미터 높이의 오른쪽으로 한다”를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허가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법령 및 조례상 정하지 않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개별 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을 정하고, 건물벽면을 이용한 간판설치 허용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등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과 광고물 실명제 표시대상 및 방법에 자사광고와 전자적방식 등을 추가하는 등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나.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함(제4조제1항제1호)

다. 벽면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함(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

라. 광고물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추가함(제26조제1항)

마.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및 인식방법을 개선·보완함(제26조제2항 및 제3항)

바. 광고물 실명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신설)

사. 광고물 실명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2호 서식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1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 제척·회피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제14조제3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장 제목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제2항제1호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 제16호, 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7호 중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물관리일원화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변화된 물환경 관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에서 지하수, 물재이용 등을 포함한 물순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현행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상사업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변경함(제2장, 제5조)

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중 불필요한 사업 삭제(제11조제1항제6호, 제11조제1항제16호, 제11조제1항제23호)

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정비(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제1항제2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3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현행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에서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으로 확대함(제34조제1항제9호).

나. 확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함(부칙)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4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특정관리대상시설) 제2항에 따른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지역)제2항에 따른 지역”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라목 중 “긴급안전조치”를 “안전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본법 제3조제1호다목”을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물순환안전국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천관리과의”를 “안전총괄과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중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를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준용)”을 “(기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풍수해, 감염병, 미세먼지, 지진 등 다양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운용 부서를 재난관리 총괄부서로 변경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정비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계정의 기금운용관을 물순환안전국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제6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물순환안전국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제8조)

다.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제8조)

라. 위원회의 재난계정 부문 간사 및 서기를 각각 안전총괄과장 및 안전총괄과 기금담당사무관으로 변경(제10조)

마.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을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제8조)

바. 그 밖에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행에 맞게 수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5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하며, 그 기능은 일반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해 시민의 재난 및 위기 대처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을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6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할 필요 있음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7207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수도시설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제4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보호통 대금과 설치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정수지나 배수지 등의 수도시설 외부로부터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품질 및 구조물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방수·방식 공사시 감리제도, 즉 건설사업관리와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수도계량기 보온재 설치 등 지속적인 동파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되거나 분실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 동파가 최소화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정수지·배수지 등 수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수돗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정수지 및 배수지 방수·방식공사시 감리제도, 즉 건설사업관리와 이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나. 수도계량기 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시가 수도계량기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등을 수리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제42조)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4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용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지구, 방재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안 제8조, 제40조, 제50조, 제51조)

나.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조정함

1)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축사·가축 시설·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6층 이하로 함 (안 제43조제1항)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4층으로 하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할 수 있음 (안 제44조)

3)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되, 건축물의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함(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TEL. 02-2133 -8324, FAX.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 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98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서식을 삭제하여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 별표에 규정된 표창 디자인 및 공적조서 서식을 삭제하고, 서식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임 (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31, FAX : 2133-0773, E-mail : feel6115@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03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에서 남북협력 관련 분야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강시민위원회 내 하나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던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 분과위원회를 남북협력 분과위원회와 역사문화 분과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4개 분과 중 “남북협력 및 역사문화 분과위원회”를 “남북협력 분과위원회”, “역사문화 분과위원회”로 분리 운영 (안 제15조제2항)

나.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실장”으로 변경 (안 제1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전화: 02)3780-0753, FAX: 02)3780-0740, E-mail:britze@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5호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호(1967.12.1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 서울시특별시 고시 제2018-24호(2018.1.2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성북동 산25-1번지 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내 민간추진자에 의한 공원으로 미조성 사유 숲을 활용한 문화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5-1번지 일대

3. 면 적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101,059㎡ 중 10,685㎡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1), 성북구 공원녹지과(☏ 02-2241-3663)에 각각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성북구 성북동 산25-1일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928,680	22,229	3	1,056	2,740	107	1,928,680	21,709.27	4	1,143.02	2,827.02	83	
공원시설구역	소 계	208,649	22,229				107	208,649	21,709.27				83	
	성 북 지 구	101,059	16,316	2	310	310	94	101,059	15,796.27	3	397.02	397.02	70	
	정 법 사 지 구	107,590	5,913	1	746	2,430	13	107,590	5,913	1	746	2,430	13	
시 설 지 구 외		1,720,031						1,720,031						
공원시설지구율 (법정 20% 이하)		(208,649㎡ / 1,928,680㎡) × 100% = 10.82%						(208,649㎡ / 1,928,680㎡) × 100% = 10.82%						
공 원 시 설 률 (법정 20% 이하)		(22,229㎡ / 1,928,680㎡) × 100% = 1.15%						(21,709.27㎡ / 1,928,680㎡) × 100% = 1.13%						
공 원 건 폐 율 (법정 4% 이내)		(1,056㎡ / 1,928,680㎡) × 100% = 0.05%						(1,143.02㎡ / 1,928,680㎡) × 100% = 0.06%						

나. 시설구역총괄표(성북지구)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26-259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1,059	16,316	2	310	310	94	101,059	15,796.27	3	397.02	397.02	70	(감519.73)
기반시설	소 계	11,488	11,488					10,866.77	10,866.77					(감621.23)
	도 로	9,269	9,269					9,401.10	9,401.10					(증132.10)
	광 장	2,219	2,219					1,465.67	1,465.67					(감753.33)
조경시설		(302)	(302)				10	1,050.56	1,050.56				4	(증1,050.56)
휴양시설		475	475				48	670.30	670.30	1	87.02	87.02	48	(증195.30)
운동시설		2,791	2,791				29	2,075	2,075				9	(감716)
교양시설		869	869					440.64	440.64					(감428.36)
편익시설		105	105					105.00	105.00					-
관리시설		588	588	2	310	310	7	588	588	2	310	310	9	-
녹지 및 기타		84,743						85,262.73						(증519.73)
공원시설률 (법정 40%)		(16,316㎡ / 101,059㎡) × 100% = 16.15%						(15,796.27㎡ / 101,059㎡) × 100% = 15.63%						법정 40%이하
공원건폐율 (법정 10%)		(310㎡ / 101,059㎡) × 100% = 0.31%						(397.02㎡ / 101,059㎡) × 100% = 0.39%						법정 10%이내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 2019. 5. 16.(목)

다. 시설조서(성북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01,059	16,316	-	2	310	310	94			101,059	15,796.27		3	397.02	397.02	70	
기반시설	소 계			11,488	11,488								10,866.77	10,866.77						
	도 로		전지역	9,269	9,269							전지역	9,401.10	9,401.10						
	광 장	가-1	성북동 226-32	249	249						가-1	성북동 226-32	26.85	26.85						
		가-2	성북동 226-32	473	473						가-2	성북동 226-32	43.07	43.07						
		가-3	성북동 226-106외	92	92						가-3	성북동 226-106외	92	92						
		가-4	성북동 226-109	84	84						가-4	성북동 226-109	84	84						
		가-5	성북동 226-32외	72	72						가-5	성북동 226-32	23.36	23.36						
		가-6	성북동 226-1외	84	84															
		가-7	성북동 285 외	92	92						가-7	성북동 285 외	92	92						
		가-8	성북동 226-93	23	23						가-8	성북동 226-93	23	23						
		가-9	성북동 226-99	27	27						가-9	성북동 226-99	27	27						
		가-10	성북동59 외	360	360						가-10	성북동 59 외	360	360						
		가-11	성북동 산25-52	49	49						가-11	성북동 산25-52	49	49						
		가-12	성북동 산25-1	131	131						가-12	성북동 산25-1	131	131						
		가-13	성북동 산25-1	105	105						가-13	성북동 산25-1	105	105						
		가-14	성복동 산25-1	378	378						가-14	성북동 산25-1	378	378						
											가-15	성북동 산25-14	11.44	11.44						
											가-16	성북동 산226-320	15.56	15.56						
											가-17	성북동 산226-320	4.39	4.39						
조경시설	소 계			(302)	(302)					10			1,050.56	1,050.56					4	
	파고라	①	전지역	(231)	(231)					10	①	전지역	(92.6)	(92.6)					4	23.15㎡ (1기)
	화계	②	성북동 226-32외	(71)	(71)															
	스탠드										라-1	성북동 226-32	40.94	40.94						
	장식벽										라-2	성북동 226-32	35.95	35.95						
	소폭포										라-3	성북동 산25-14	30.22	30.2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연못										라-4	성북동 226-1 외	195.06	195.06						
	잔디광장										라-5	성북동 226-32	748.39	748.39						
휴양시설	소계			475	475								670.30	670.30						
	야유회장	나-1	성북동 266-101외	25	25						나-1	성북동 266-101외	25	25						
		나-2	성북동 226-32	57	57															
		나-3	성북동 226-32	59	59															
		나-4	성북동 226-32	43	43															
		나-5	성북동 산25-52	36	36						나-5	성북동 산25-52	36	36						
		나-6	성북동 41	45	45						나-6	성북동 41	45	45						
		나-7	성북동 51	36	36						나-7	성북동 51	36	36						
		나-8	성북동 산25-52	6	6						나-8	성북동 산25-52	6	6						
		나-9	성북동 산25-1외	80	80						나-9	성북동 산25-1외	80	80						
		나-10	성복동 57 외	88	88						나-10	성복동 57 외	88	88						
	의자	③	전지역	-	-					48	③	전지역	-	-					48	
	데크쉼터-1										나-11	성북동 226-32	58.49	58.49						
	데크쉼터-2										나-12	성북동 226-32	145.72	145.72						
	전망정자										⑥	성북동 226-32	63.07	63.07						
	휴게소										⑦	성북동 226-32	87.02	87.02		1	87.02	87.02		
운동시설	소계			2,791	2,791					29			2,075	2,075					9	
	배드민턴장	다-1	성북동 226-57외	420	420					(2면)	다-1	성북동 226-57외	420	420						2면
		다-2	성복동 산25-52외	425	425					(2면)	다-2	성복동 산25-52외	425	425						2면
	다목적 운동장	라	성북동 226-32	716	716					20										
	체력단련장	마-3	성북동 25-52	105	105						마-3	성북동 25-52	105	105						
		마-4	성북동 25-1	270	270						마-4	성북동 25-1	270	270						
		마-5	성북동 25-1	95	95						마-5	성북동 25-1	95	95						
	자연체험장	자-1	성복동 41 외	40	40						자-1	성복동 41 외	40	40						
		자-2	성복동 51 외	122	122						자-2	성복동 51 외	122	12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자-3	성복동 53 외	324	324						자-3	성복동 53 외	324	324						
		자-4	성북동 산25-52	23	23						자-4	성북동 산25-52	23	23						
		자-5	성복동 259	148	148						자-5	성복동 259	148	148						
		자-6	성복동 52 외	103	103						자-6	성복동 52 외	103	103						
	그물오르기	⑤-1	성복동 259	-	-					1	⑤-1	성복동 259	-	-					1	
	경사오르기	⑤-2	성복동 259	-	-					1	⑤-2	성복동 259	-	-					1	
	타잔그네	⑤-3	성복동 259	-	-					1	⑤-3	성복동 259	-	-					1	
	밧줄타기	⑤-4	성복동 41 외	-	-					1	⑤-4	성복동 41 외	-	-					1	
	마법의 다리	⑤-5	성복동 51 외	-	-					1	⑤-5	성복동 51 외	-	-					1	
	짚라이딩	⑤-6	성복동 51 외	-	-					1	⑤-6	성복동 51 외	-	-					1	
	버마브릿지	⑤-7	성복동 52 외	-	-					1	⑤-7	성복동 52 외	-	-					1	
	숲속공방	⑤-8	성복동 52 외	-	-					1	⑤-8	성복동 52 외	-	-					1	
	벽타기	⑤-9	성북동 산25-52	-	-					1	⑤-9	성북동 산25-52	-	-					1	
교양시설	소 계			869	869								440.64	440.64						
	야생초화원	바-1	성북동 226-32	772	772						바-1	성북동 226-32	288.93	288.93						
		바-2	성북동 226-22	97	97						바-2	성북동 226-22	97.00	97.00						
	야외무대										바-3	성북동 226-32	54.71	54.71						
편익시설	소 계			105	105								105.00	105.00						
	약수터	사	성북동 산25-1	105	105						사	성북동 산25-1	105	105						
관리시설	소 계			588	588					7			588	588		2	310	310	9	
	안내판	④	전지역							7	④	전지역							8	
	주차장	아	성북동 67 외	197	197						아	성북동 67 외	197	197						
	관리사무소	차-1	성북동 75 외	288	288		1	172	172		차-1	성북동 75 외	288	288		1	172	172		
		차-2	성북동 61	103	103		1	138	138		차-2	성북동 61	103	103		1	138	138		
	안전휀스										⑧	성북동 226-32	-	-					1	
녹 지 및 기 타				84,743									85,262.73							

서울시보 제3520호 | 서울특별시 | 2019. 5. 16.(목)

라. 도로조서(성북지구)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3,120.0	9,269.00				
변경					3,505.9	9,401.10				
당초	중로	소계			310.0	3,720.00				
당초	중로	3	1	12.0	310.0	3,720.00	주간입로	지구계	지구계	도시계획 도로
당초	산책로	소계			2,810.0	5,549.00				
변경					3,195.9	5,681.10				
당초	산책로		1	2.0	78.0	156.00	진입로	지구계	광장8	
			2	2.0	63.0	126.00	연결로	산책로1	광장3	
			3	2.0	33.0	66.00	연결로	광장3	산책로5	
변경				2.0	9.1	18.62	연결로	광장3	산책로4	
당초			4	2.0	13	26	연결로	산책로5	광장2	
변경				1.5	56.3	84.48	연결로	광장3	광장2	
당초			5	3.0	116	348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12	
변경				2.0	33.2	85.74	산책로	산책로6	지구계	
당초			6	4.0	33	132	연결로	광장6	광장5	
변경				1.5	8.7	13.07	산책로	지구계	산책로5	
당초			7	5.0	28	140	연결로	광장5	다목적운동장	
변경				2.0	2.4	4.78	산책로	산책로5	가-1	
당초			8	3.0	4	12	연결로	다목적운동장	광장1	
변경				1.5	13.6	25.00	산책로	산책로9	나-12	
당초			9	3.0	3	9	연결로	다목적운동장	광장2	
변경				2.4	115.9	282.83	산책로	지구계	광장5	
당초			10	4.0	4	16	연결로	광장2	광장1	
변경				1.5	177.3	275.08	산책로	산책로9	광장5	
당초			11	3.0	27	81	연결로	휴게소2	광장1	
변경				1.5	59.5	90.38	산책로	광장16	지구계	
당초			12	3.0	49	147	연결로	광장1	광장4	
변경				1.5	32.7	48.88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0	
당초			13	5.0	30	150	연결로	광장1	중로 3-1	
변경				1.5	68.7	102.50	연결로	산책로11	지구계	
당초			14	1.5	40	60	연결로	광장6	다목적운동장	
변경				1.5	14.2	21.36	산책로	광장2	산책로15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산책로		15	1.5	40	60	연결로	산책로11	산책로13	
변경				1.5	27.2	45.64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6	
당초			16	1.5	34	51	연결로	산책로12	산책로13	
변경				1.5	196.5	294.82	산책로	산책로10	광장2	
당초			17	1.5	34	51	연결로	지구계	산책로39	
			18	1.5	32	48	연결로	산책로39	산책로38	
			19	2.0	29	58	연결로	산책로25	배드민턴장2	
			20	1.5	56	84	진입로	중로 3-1	산책로37	
			21	5.0	80	400	연결로	지구계	중로 3-1	
			22	2.0	19	38	진입로	중로 3-1	산책로24	
			23	3.0	178	534	연결로	산책로20	배드민턴장2	
			24	1.5	542	813	산책로	광장11	산책로27	
			25	1.5	374	561	산책로	산책로39	광장12	
			26	1.5	20	30.00	연결로	산책로25	산책로24	
			27	1.5	296	444.00	산책로	산책로24	약수터2	
			28	1.5	72	108.00	산책로	광장13	지구계	
			29	1.5	26	39.00	연결로	산책로25	배드민턴장2	
			30	2.0	45	90.00	연결로	산책로24	배드민턴장2	
			31	3.0	24	72.00	연결로	산책로24	산책로23	
			32	3.0	10	30.00	연결로	산책로24	산책로31	
			33	1.5	18	27.00	연결로	광장10	광장14	
			34	1.5	6	9.00	연결로	주차장	산책로33	
			35	1.5	4	6.00	연결로	주차장	광장10	
			36	1.5	6	9.00	연결로	배드민턴장1	산책로23	
			37	1.5	40	61.00	연결로	광장14	산책로20	
			38	1.5	54	81.00	연결로	광장7	산책로18	
			39	1.5	250.0	376.00	연결로	산책로18	자연체험장3	
신설			40	1.5	24.6	36.9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0	

마. 시설구역총괄표(사업대상지)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226-32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0,685.00	3,804.38	-			16	10,685.00	3,284.65	1	87.02	87.02	12	(감519.73)
기반시설	소 계	2,157.38	2,157.38					1,536.15	1,536.15					(감621.23)
	도 로(산책로)	1,279.38	1,279.38					1,411.48	1,411.48					(증132.10)
	광 장	878.00	878.00					124.67	124.67					(감753.33)
조경시설		(210)	(210)				6	1,050.56	1,050.56					(증1,050.56)
휴양시설		159	159				10	354.30	354.30	1	87.02	87.02	10	(증195.30)
운동시설		716	716					-	-					(감716)
교양시설		772	772					343.64	343.64					(감428.36)
편익시설		-	-					-	-					
관리시설		-	-					-	-				2	-
녹지 및 기타		6,880.62						7400.351						(증519.73)
공원시설률 (법정 40% 이하)		(3,804.38㎡ / 10,685.00㎡) × 100% = 35.60%						(3,284.62㎡ / 10,685.00㎡) × 100% = 30.74%						
공원건폐율 (법정 10% 이내)		-						(87.02㎡ / 10,685.00㎡) × 100% =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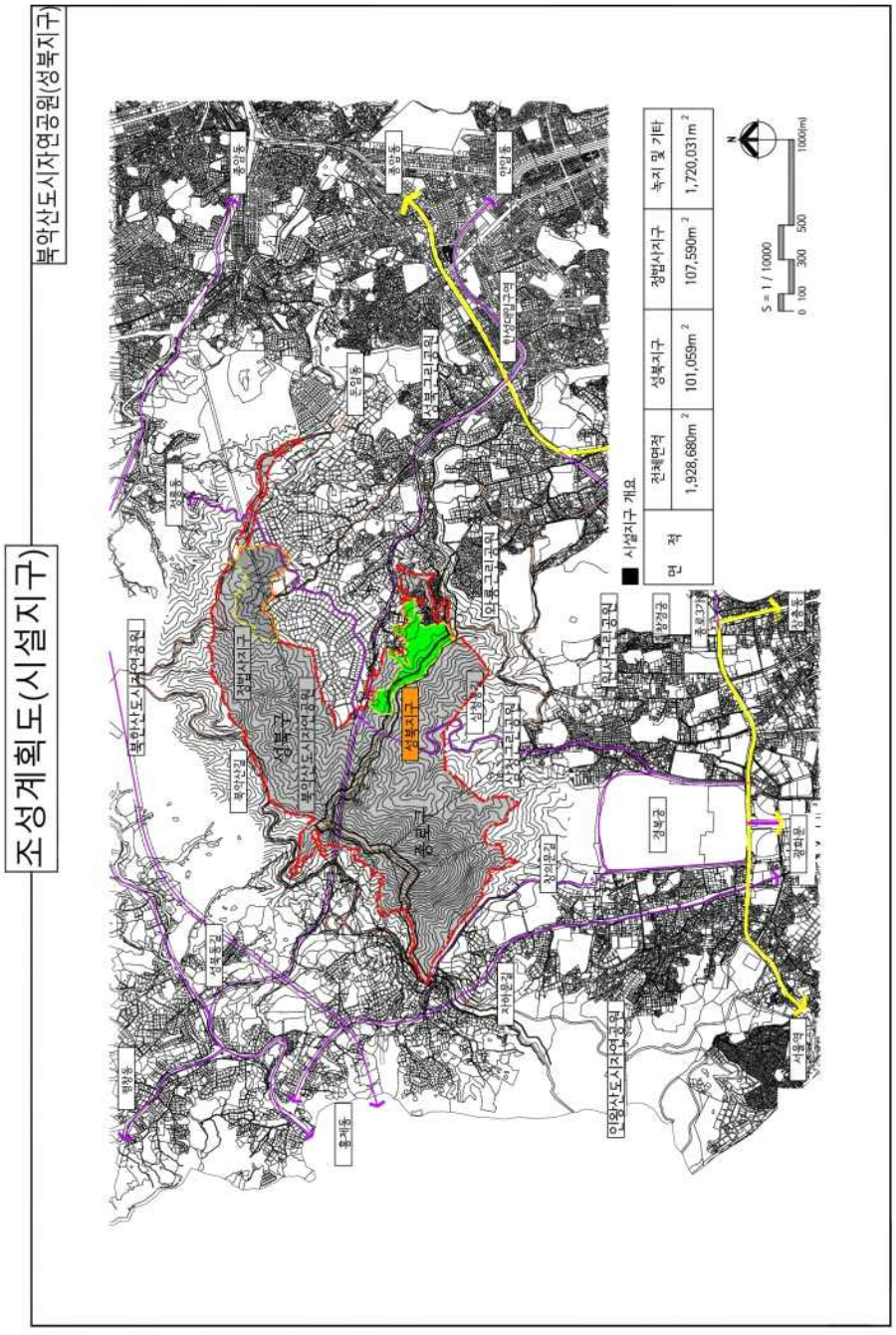
바. 시설조서(민간공원 사업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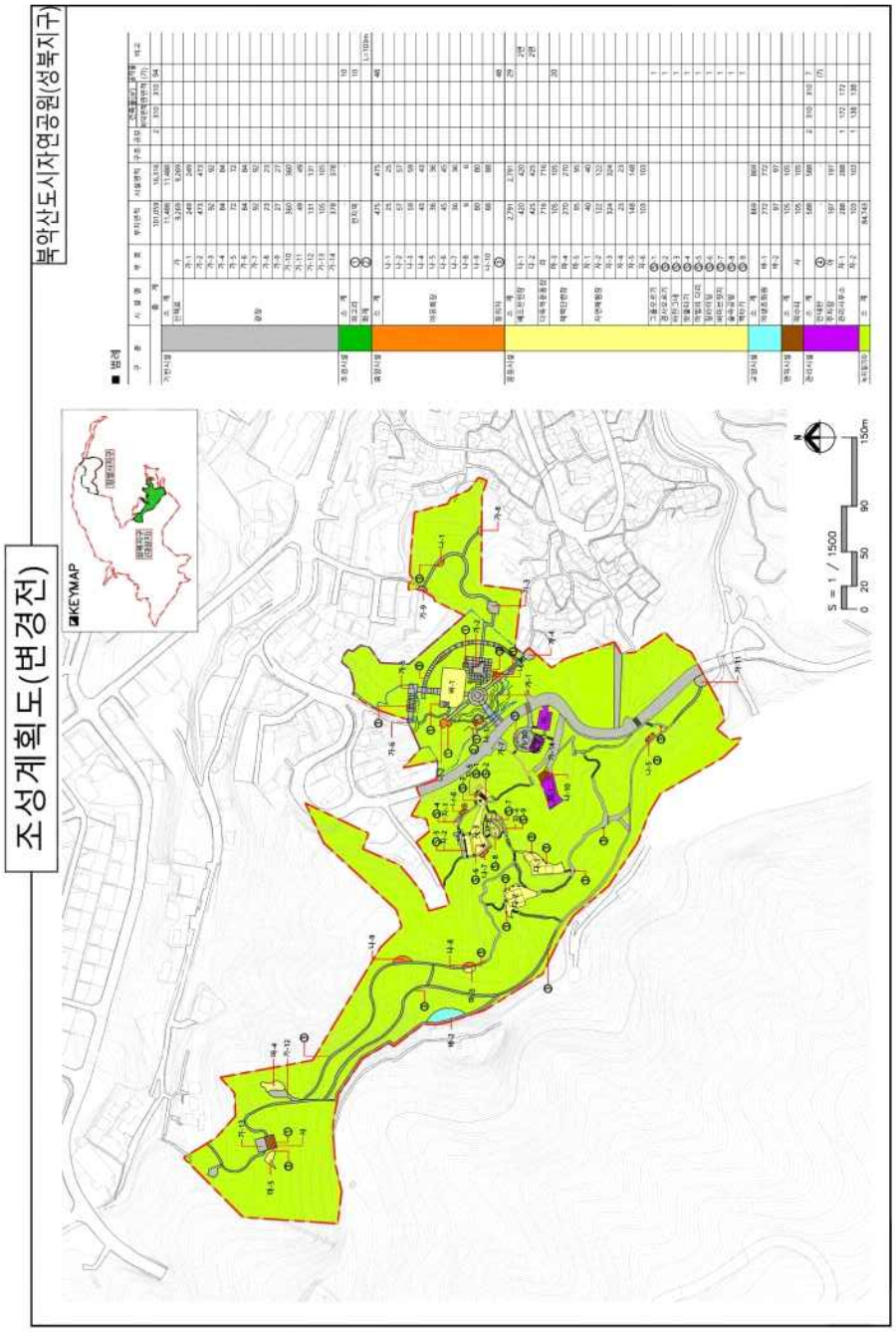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동)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합 계				10,685.00	3,804.38	-				16			10,685.00	3,284.65		1	87.02	87.02	12	
기반시설	소 계			2,157.38	2,157.38								1,536.15	1,536.15						
	도 로		전지역	1,279.38	1,279.38							전지역	1,411.48	1,411.48						
	광 장	가-1	성북동 226-32	249	249						가-1	성북동 226-32	26.85	26.85						
		가-2	성북동 226-32	473	473						가-2	성북동 226-32	43.07	43.07						
		가-5	성북동 226-32외	72	72						가-5	성북동 226-32	23.36	23.36						
		가-6	성북동 226-1외	84	84						가-15	성북동 산25-14	11.44	11.44						
											가-16	성북동 산226-320	15.56	15.56						
											가-17	성북동 산226-320	4.39	4.39						
조경시설	소 계			(210)	(210)					6			1,050.56	1,050.56						
	파고라	①	전지역	(139)	(139)					6										23.15㎡ (1기)
	화계	②	성북동 226-32외	(71)	(71)															L=103m
	스탠드										라-1	성북동 226-32	40.94	40.94						
	장식벽										라-2	성북동 226-32	35.95	35.95						
	소폭포										라-3	성북동 산25-14	30.22	30.22						
	연못										라-4	성북동 226-1 외	195.06	195.06						
	잔디광장										라-5	성북동 226-32	748.39	748.39						
휴양시설	소계			159	159					10			354.30	354.30		1	87.02	87.02	10	
	야유회장	나-2	성북동 226-32	57	57															
		나-3	성북동 226-32	59	59															
		나-4	성북동 226-32	43	43															
	등의자	③	전지역	-	-					10	③	전지역	-	-					10	
	데크쉼터-1										다-11	성북동 226-32	58.49	58.49						
	데크쉼터-2										다-12	성북동 226-32	145.72	145.72						
	전망정자										⑥	성북동 226-32	63.07	63.07						
	휴게소										⑦	성북동 226-32	87.02	87.02		1	87.02	87.02		
운동시설	소계			716	716								-	-						
	다목적 운동장	라	성북동 226-32	716	716								-	-						
교양시설	소 계			772	772								343.64	343.64						
	야생초화원	바-1	성북동 226-32	772	772						바-1	성북동 226-32	288.93	288.93						
	야외무대										바-3	성북동 226-32	54.71	54.71						
관리시설	소계												-	-					2	
	안내판										④	성북동 226-32	-	-					1	
	안전휀스										⑧	성북동 226-32	-	-					1	
녹지 및 기타				6,880.62									7,4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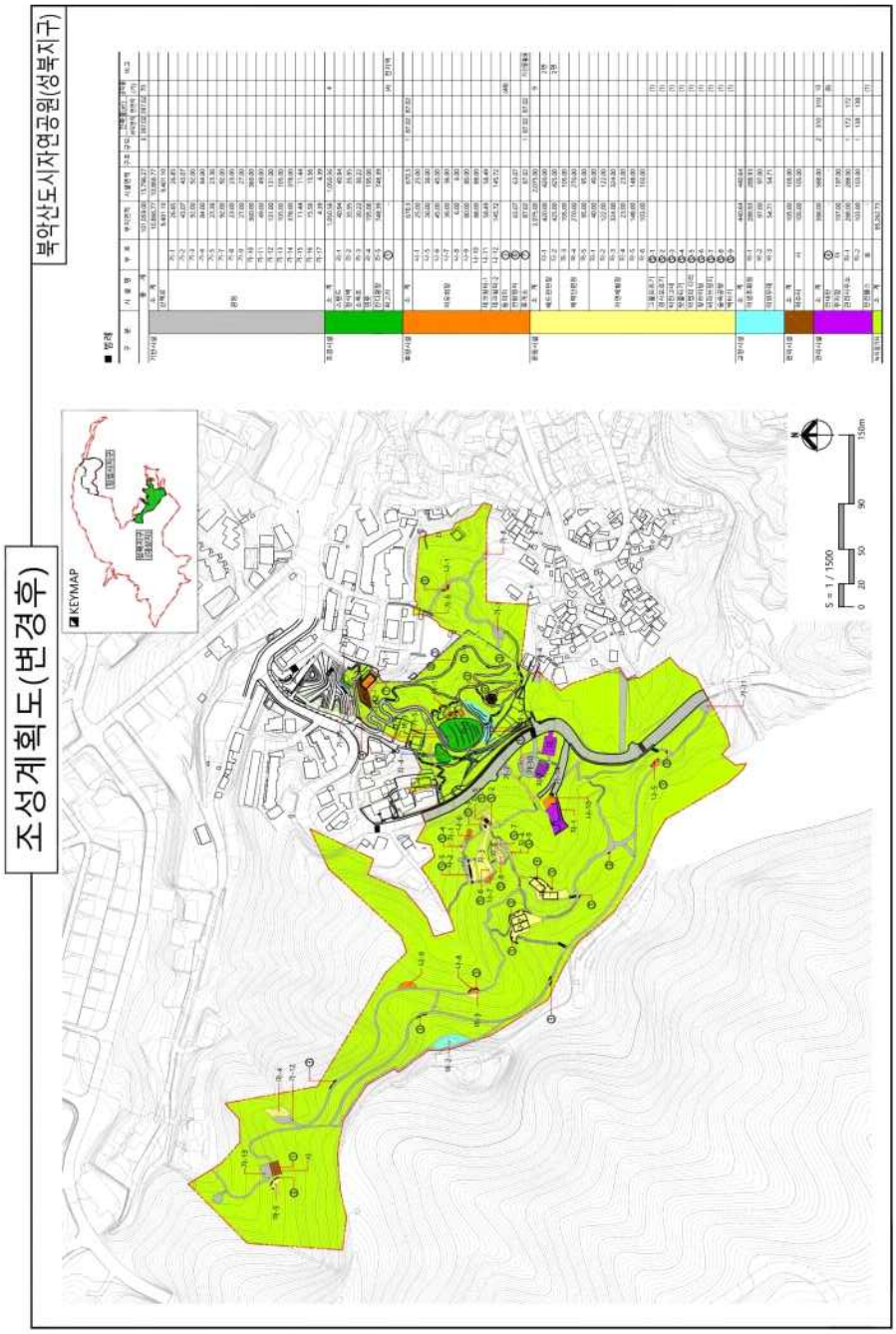
서울시 제2020호 | 서울특별시 | 2019. 5. 16.(목)

다. 도로조서(사업대상지)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계				444.9	1,279.38				
변경					830.8	1,411.48				
당초	산책로		3	2.0	23.9	47.38	연결로	광장3	산책로5	
변경				2.0	0	0	연결로	광장3	산책로4	
당초			4	2.0	13	26	연결로	산책로5	광장2	
변경				1.5	56.3	84.48	연결로	광장3	광장2	
당초			5	3.0	116	348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12	
변경				2.0	33.2	85.74	산책로	산책로6	지구계	
당초			6	4.0	33	132	연결로	광장6	광장5	
변경				1.5	8.7	13.07	산책로	지구계	산책로5	
당초			7	5.0	28	140	연결로	광장5	다목적운동장	
변경				2.0	2.4	4.78	산책로	산책로5	가-1	
당초			8	3.0	4	12	연결로	다목적운동장	광장1	
변경				1.5	13.6	25.00	산책로	산책로9	나-12	
당초			9	3.0	3	9	연결로	다목적운동장	광장2	
변경				2.4	115.9	282.83	산책로	지구계	광장5	
당초			10	4.0	4	16	연결로	광장2	광장1	
변경				1.5	177.3	275.08	산책로	산책로9	광장5	
당초			11	3.0	27	81	연결로	휴게소2	광장1	
변경				1.5	59.5	90.38	산책로	광장16	지구계	
당초			12	3.0	49	147	연결로	광장1	광장4	
변경				1.5	32.7	48.88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0	
당초			13	5.0	30.0	150.00	연결로	광장1	중로3-1	
변경				1.5	68.7	102.50	연결로	산책로11	지구계	
당초			14	1.5	40	60	연결로	광장6	다목적운동장	
변경				1.5	14.2	21.36	산책로	광장2	신책로15	
당초			15	1.5	40	60	연결로	산책로11	산책로13	
변경				1.5	27.2	45.64	산책로	산책로10	산책로16	
당초			16	1.5	34	51	연결로	산책로12	산책로13	
변경				1.5	196.5	294.82	산책로	산책로10	광장2	
신설			40	1.5	24.6	36.9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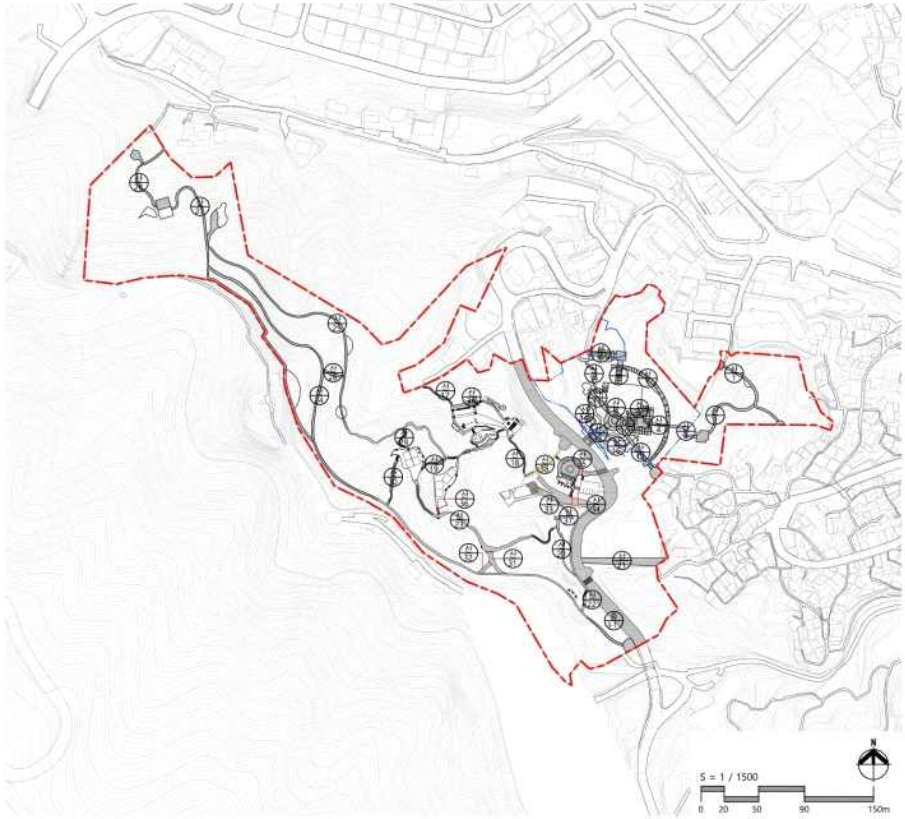

조성계획도(시설지구)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시설지구 개요
면 적
전체면적
성북지구
정법사지구
녹지 및 기타
1,928,680m²
101,059m²
107,590m²
1,720,031m²
S = 1 / 10000
0 100 300 500 1000(m)
N
성북지구
정법사지구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성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종로구
종로3가
경복궁
청와대
창경궁
혜화동
숭인동
안암동
돈암동
정릉동
길음동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
장안동
청량리동


조성계획도(변경전)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KEYMAP
S = 1 / 1500
0 20 50 90 150m


조성계획도(변경후)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KEYMAP
S = 1 / 1500
0 20 50 90 150m

도로계획도(변경전)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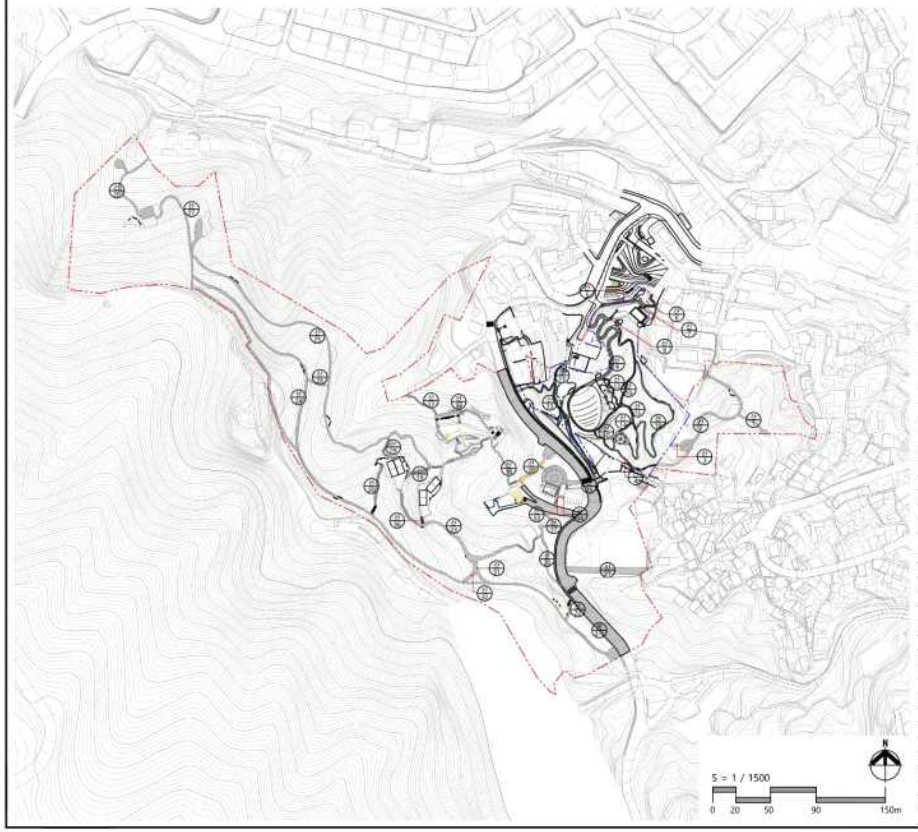


■ 동선 계획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시점	종점	비 고
합 계					3,120	9,260			
소 계					310	3,720			
당초	광로	3	1	12	310	3,720	지구계	지구계	도시계획도로
소 계					2,810	5,548			
당초	산책로	3	1	2	78	156	지구계	광장8	
당초	산책로	3	2	2	63	126	산책로1	광장3	
당초	산책로	3	3	2	33	66	광장3	산책로5	
당초	산책로	3	4	2	13	26	산책로5	광장2	
당초	산책로	3	5	3	116	348	산책로8	산책로12	
당초	산책로	3	6	4	33	132	광장6	광장5	
당초	산책로	3	7	5	28	140	광장5	다목적운동장	
당초	산책로	3	8	3	4	12	다목적운동장	광장2	
당초	산책로	3	9	3	3	9	다목적운동장	광장2	
당초	산책로	3	10	4	4	16	광장2	광장1	
당초	산책로	3	11	3	27	81	화계수2	광장1	
당초	산책로	3	12	3	49	147	광장1	광장4	
당초	산책로	3	13	5	30	150	광장1	종로 3-1	
당초	산책로	3	14	1.5	40	60	광장6	다목적운동장	
당초	산책로	3	15	1.5	40	60	산책로11	산책로13	
당초	산책로	3	16	1.5	34	51	산책로12	산책로13	
변경	산책로	3	17	1.5	34	51	지구계	산책로39	(경16)
변경	산책로	3	18	1.5	32	48	산책로39	산책로38	(경15)
변경	산책로	3	19	2	29	58	산책로25	헤드인한정소	(경15)
변경	산책로	3	20	1.5	56	84	종로 3-1	산책로37	(경16)
당초	산책로	3	21	5	80	400	지구계	종로 3-1	
변경	산책로	3	22	2	19	38	종로 3-1	산책로24	(경17)
변경	산책로	3	23	3	178	534	산책로20	헤드인한정소	(경18)
변경	산책로	3	24	1.5	542	813	광장11	산책로27	(경19)
변경	산책로	3	25	1.5	374	561	산책로39	경장12	(경17)
당초	산책로	3	26	1.5	20	30	산책로25	산책로24	
당초	산책로	3	27	1.5	296	444	산책로24	약수터2	
당초	산책로	3	28	1.5	72	108	광장13	지구계	
신설	산책로	3	29	1.5	26	39	산책로25	헤드인한정소	
신설	산책로	3	30	2	45	90	산책로24	헤드인한정소	
신설	산책로	3	31	3	24	72	산책로24	산책로23	
신설	산책로	3	32	3	10	30	산책로24	산책로31	
신설	산책로	3	33	1.5	18	27	광장10	광장14	
신설	산책로	3	34	1.5	6	9	주차장	산책로33	
신설	산책로	3	35	1.5	4	6	주차장	광장10	
신설	산책로	3	36	1.5	6	9	헤드인한정소	산책로23	
신설	산책로	3	37	1.5	40	61	광장14	산책로20	
신설	산책로	3	38	1.5	54	81	광장7	산책로18	
신설	산책로	3	39	1.5	250	376	산책로18	파련체험장소	

도로계획도(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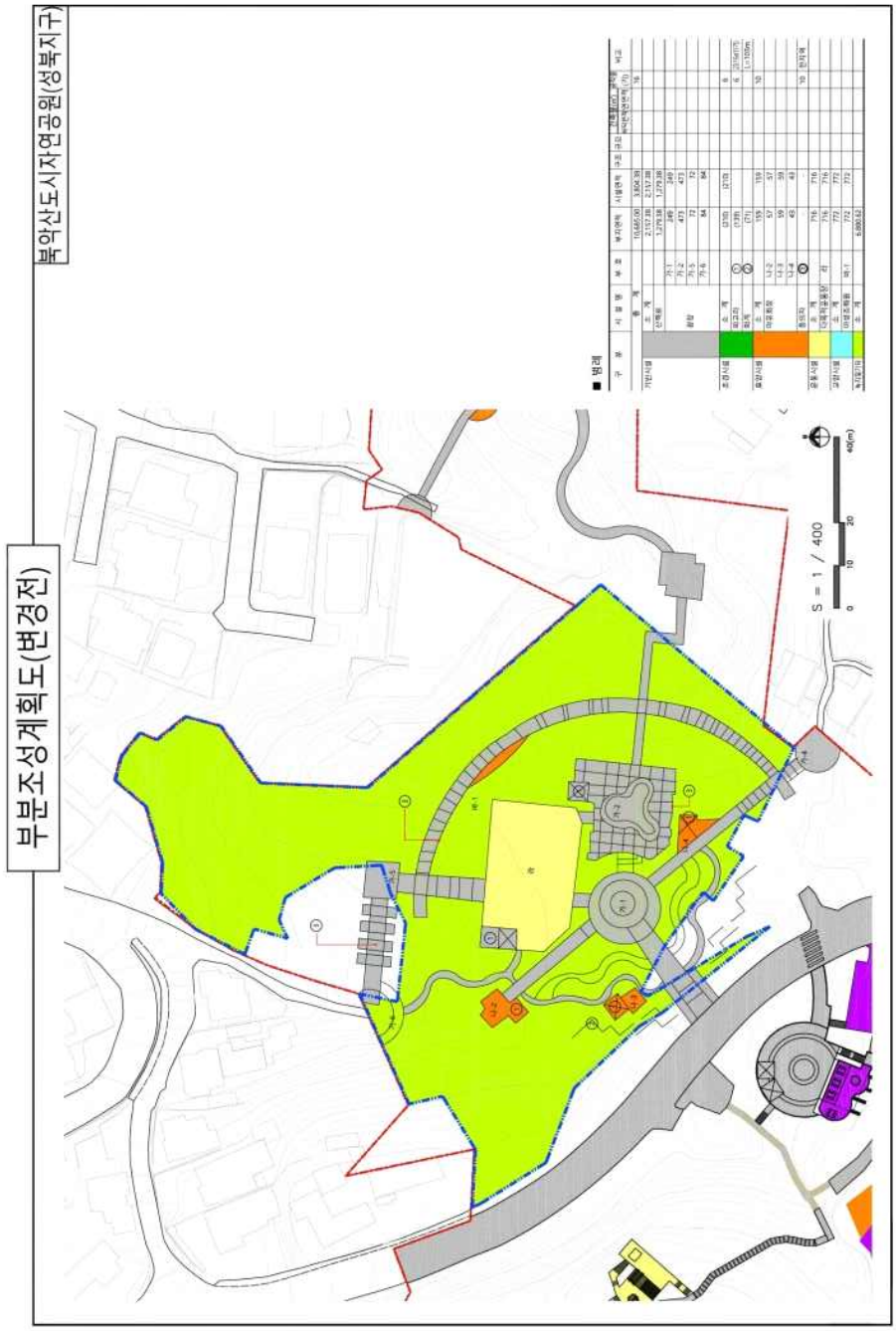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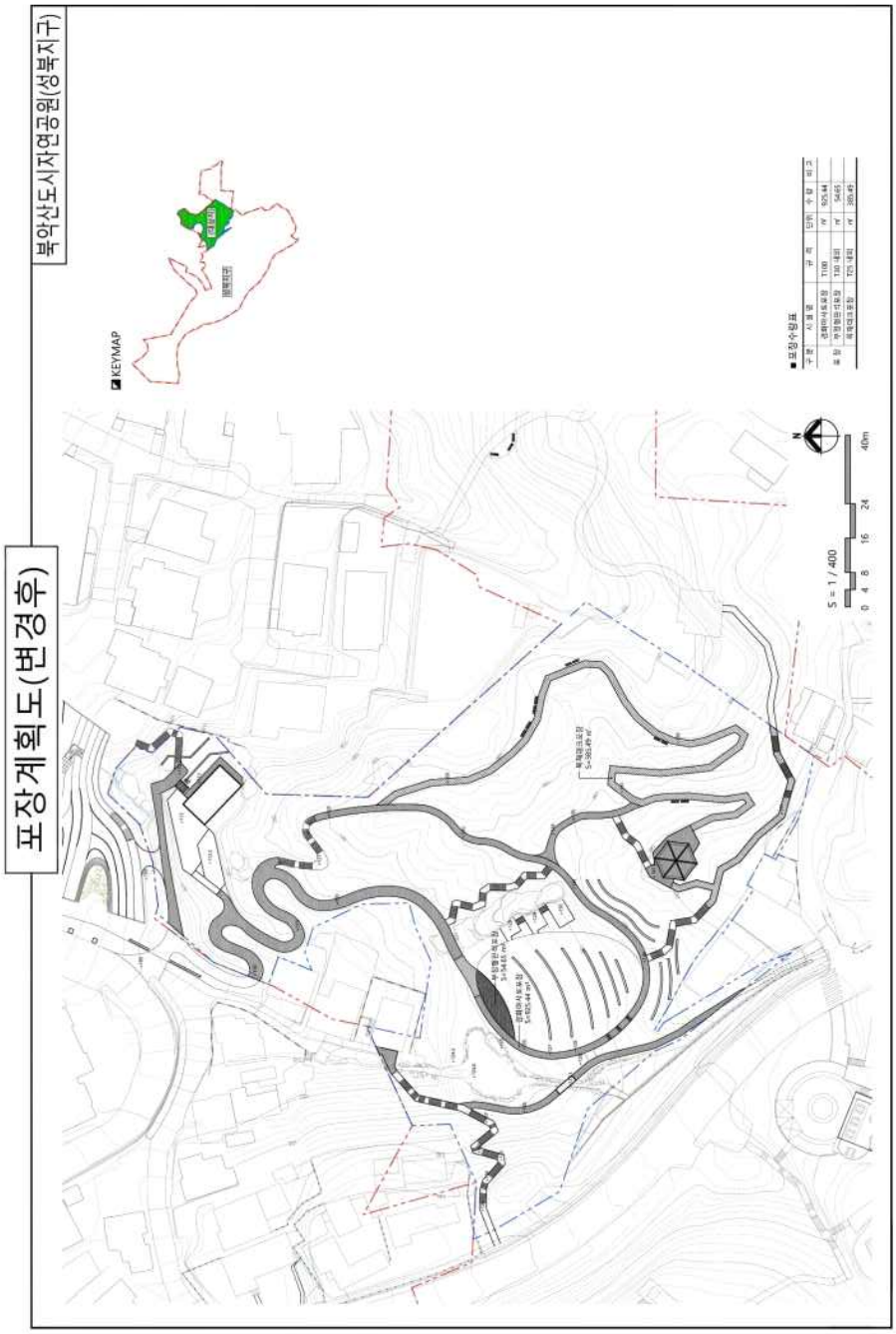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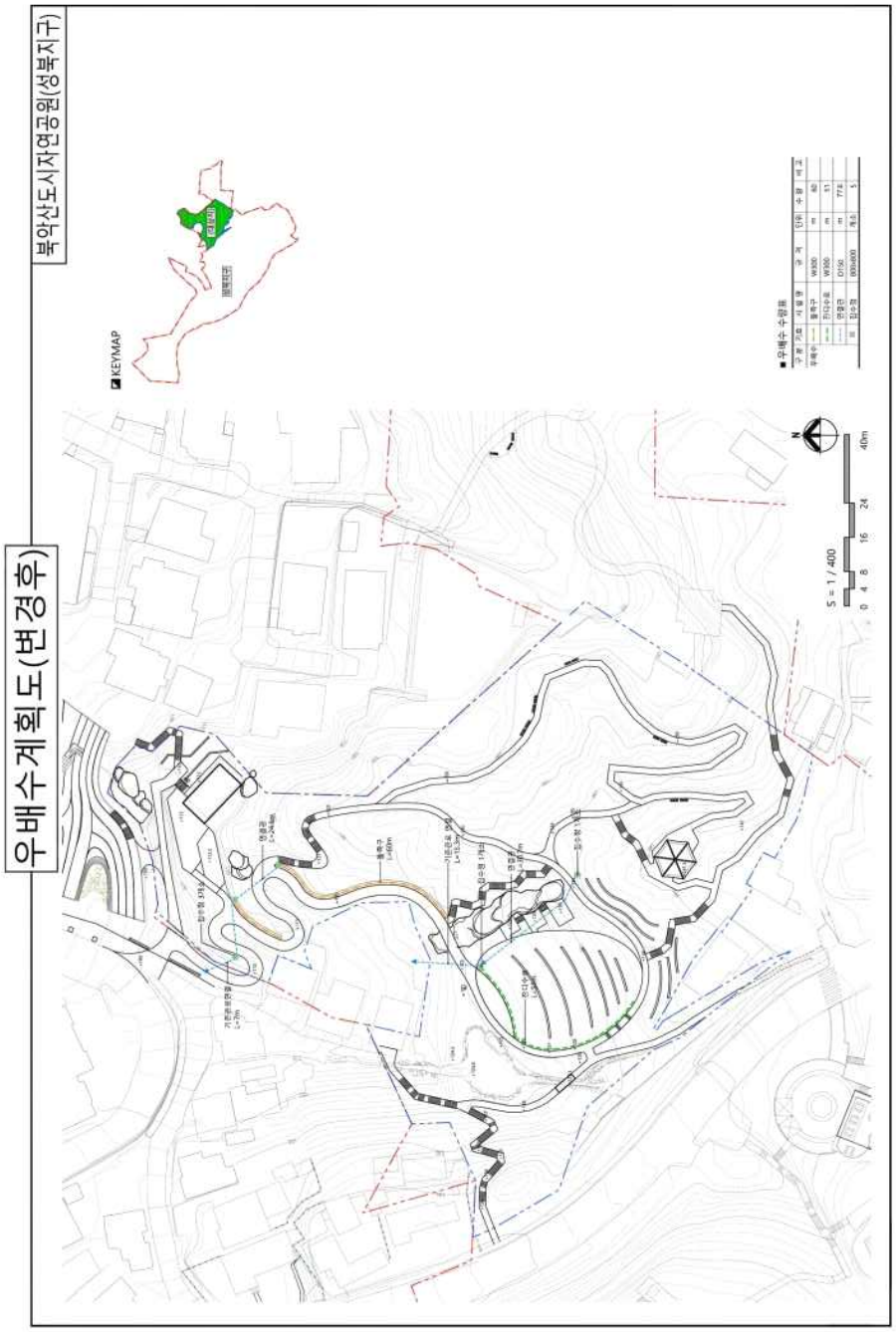
■ 동선 계획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시점	종점	비 고
합 계					3,505.9	9,401.10			
소 계					310.0	3,720.00			
당초	중로	3	1	12.0	310.0	3,720.00	자구계	지구계	도시계획도로
소 계					3,195.9	5,750.25			
당초	산책로		1	2.0	78.0	156.00	자구계	광장8	
당초			2	2.0	63.0	126.00	산책로1	광장3	
변경			3	2.0	9.1	18.62	광장3	산책로4	(감 47.38)
변경			4	1.5	56.3	84.48	광장3	광장2	(증 58.48)
변경			5	2.0	33.2	85.74	산책로6	지구계	(감 262.26)
변경			6	1.5	8.7	13.07	지구계	산책로5	(감 118.93)
변경			7	2.0	2.4	4.78	산책로5	광장1	(감 135.22)
변경			8	1.5	13.6	25.0	산책로9	L1-12	(증 13.00)
변경			9	2.4	115.9	282.83	자구계	광장5	(증 273.83)
변경			10	1.5	177.3	275.08	산책로9	광장5	(증 259.08)
변경			11	1.5	59.5	90.38	광장16	자구계	(증 9.38)
변경			12	1.5	32.7	48.86	산책로9	산책로10	(감 98.12)
변경			13	1.5	68.7	102.50	산책로11	지구계	(감 47.5)
변경			14	1.5	14.2	21.36	광장2	산책로15	(감 38.64)
변경			15	1.5	27.2	45.64	산책로10	산책로16	(감 14.36)
변경			16	1.5	196.5	294.82	산책로10	광장2	(증 243.82)
당초			17	1.5	34.0	51.00	지구계	산책로39	
당초			18	1.5	32.0	48.00	산책로39	산책로38	
당초			19	2.0	29.0	58.00	산책로25	배드민턴장2	
당초			20	1.5	56.0	84.00	중로 3-1	산책로37	
당초			21	5.0	80.0	400.00	지구계	중로 3-1	
당초			22	2.0	19.0	38.00	중로 3-1	산책로24	
당초			23	3.0	178.0	534.00	산책로20	배드민턴장2	
당초			24	1.5	542.0	813.00	광장11	산책로27	
당초			25	1.5	374.0	561.00	산책로39	광장12	
당초			26	1.5	20.0	30.00	산책로25	산책로24	
당초			27	1.5	296.0	444.00	산책로24	약수터2	
당초			28	1.5	72.0	108.00	광장13	지구계	
당초			29	1.5	26.0	39.00	산책로25	배드민턴장2	
당초			30	2.0	45.0	90.00	산책로24	배드민턴장2	
당초			31	3.0	24.0	72.00	산책로24	산책로23	
당초			32	3.0	10.0	30.00	산책로24	산책로31	
당초			33	1.5	18.0	27.00	광장10	광장14	
당초			34	1.5	6.0	9.00	주차장	산책로33	
당초			35	1.5	4.0	6.00	주차장	광장10	
당초			36	1.5	6.0	9.00	배드민턴장1	산책로23	
당초			37	1.5	40.0	61.00	광장14	산책로20	
당초			38	1.5	54.0	81.00	광장7	산책로18	
당초			39	1.5	250.0	376.00	산책로18	자연체험장3	
변경			40	1.5	24.6	36.92	산책로4	산책로10	(증 36.92)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범례
S = 1 / 400
0
10
20
40(m)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S = 1 / 400


포장계획도(변경후)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KEYMAP
S = 1 / 400
0 4 8 16 24 40m
N


우배수계획도(변경후)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KEYMAP
S = 1 / 400
0 4 8 16 24 40m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7호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 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호 칠장	신중현	남	34. 7. 15	생옻칠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이하 생략)

2. 해제일 : 2019. 4. 23.
3. 해제사유 : 보유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해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8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도림동 250-20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50-20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도림동 250-20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 4. 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 위 치 : 영등포구 도림동 250-20
- ○ 면 적 : 680.8㎡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신안산선 역세권 예정지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영등포구 도림동 250-20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	증) 680.8	680.8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비 고
신 설	영등포구 도림동250-20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680.8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680.8	-	680.8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680.8	감) 680.8	-	-	
	준주거지역	-	증) 680.8	680.8	100.0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680.8	250	400	• 용도지역 상향가능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	-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680.8	단독개발 지정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	• 단독개발 지정 -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가)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테넷게임시설제공업소, 이와 비슷한 게임관련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500%) 이하	
최고높이	• 57m 이하	

주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함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500%)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 57m 이하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코자 함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10%이상 • 추가기여율: 완화용적률에서 기본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공급 부지면적(상한용적률 적용)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68.08㎡(10.00%)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면적: 68.16㎡(10.01%) •계: 68.08㎡ + 68.16㎡ = 136.24㎡(20.01%)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영등포구 도림동 250-2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15%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 10.61%(366.80㎡)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 : 비주거 = 3,091.80㎡(89.39%) : 366.80㎡(10.61%) - 비주거비율 15% 미만(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8.18% : 81.82% (18세대) (81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6.12㎡, 32.24㎡, 35.60㎡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6.12㎡, 32.24㎡, 35.6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2층에 135.71㎡ 계획(북카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0% 이상 - 68.08㎡(10.00%) •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세대의 대지지분 - 68.01㎡(9.98%) • 68.08㎡ + 68.01㎡ = 136.09㎡(19.98%)	• 136.24㎡ (20.01%)	•영등포구 도림동 250-2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3m) : 보도부속형 • 이면도로변(3m) : 보도부속형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타	•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인접대지경계선 및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 높이제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Ⅲ.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고

Ⅴ.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6)와 영등포구청 본관 5층 도시계획과(☎02-2670-35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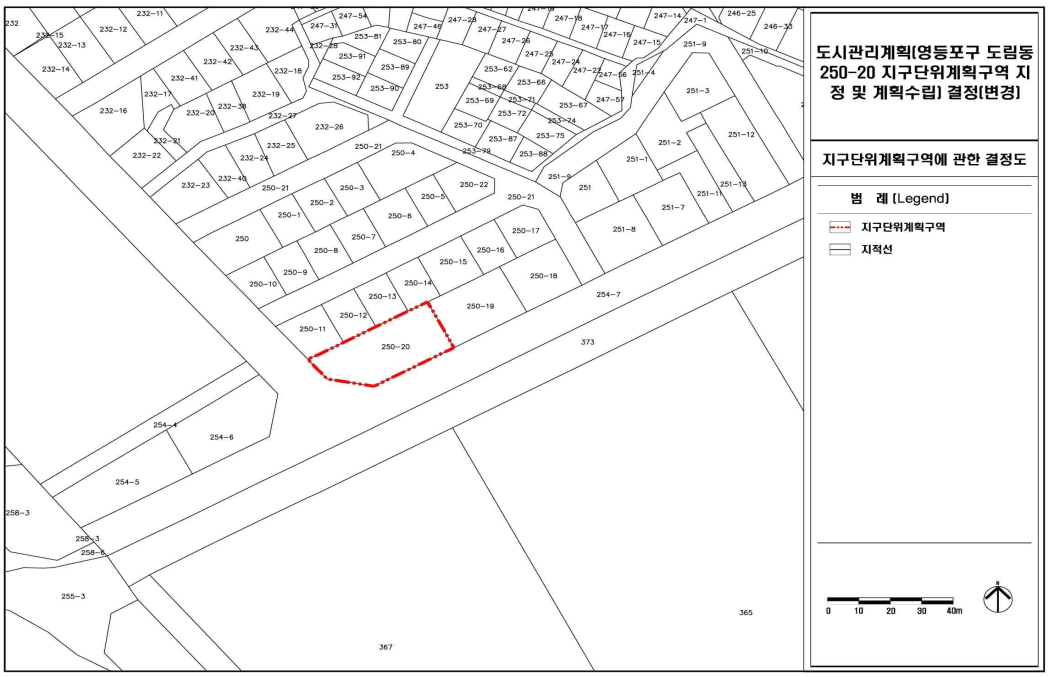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Ⅵ.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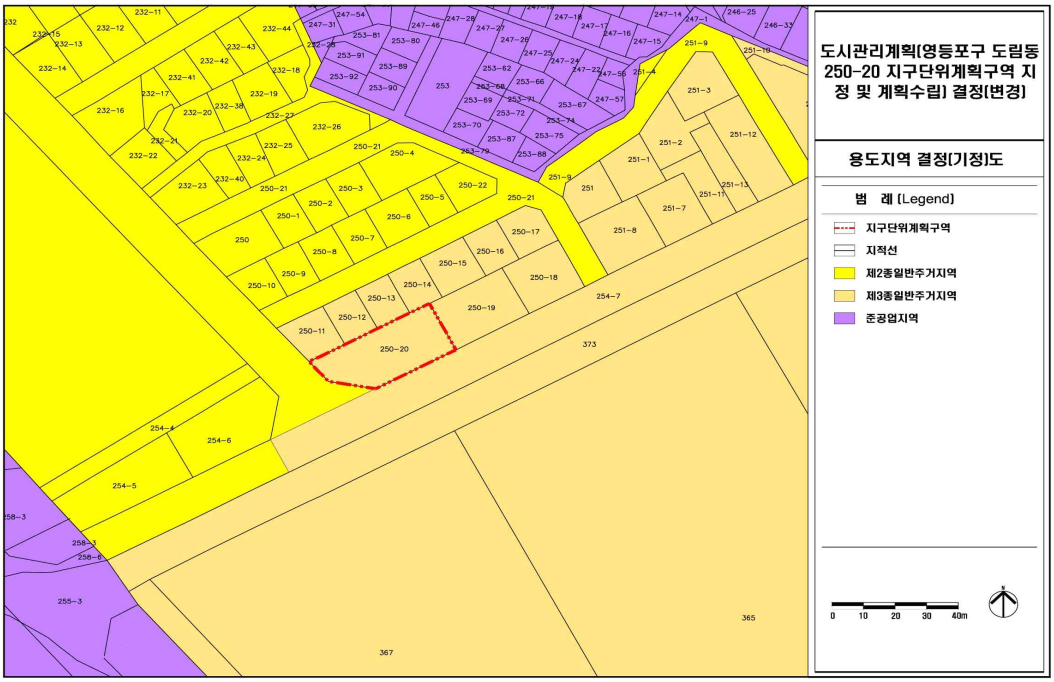
■ 첨부 : 결정도면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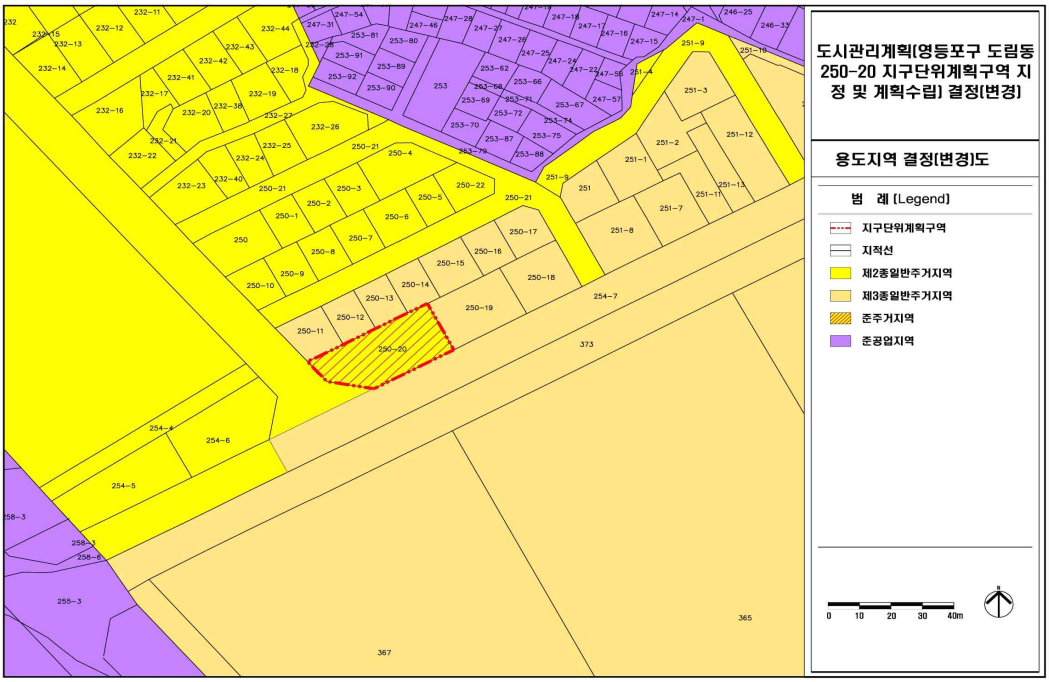


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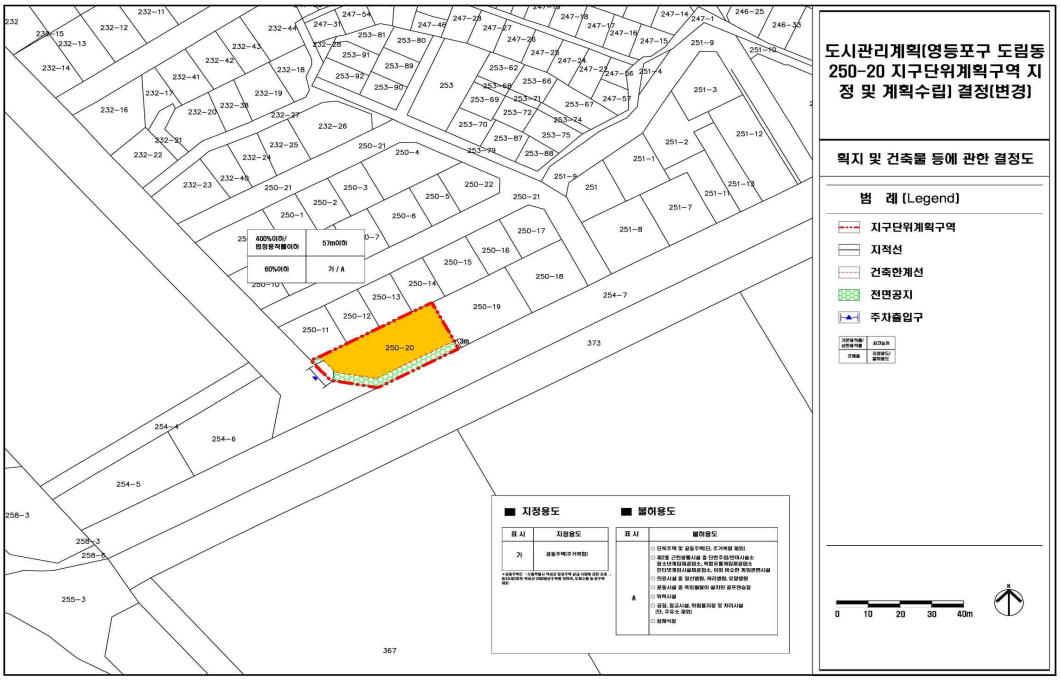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9호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2011.10.27)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2012.10.11.), 제2013-292호(2013.09.05.), 제2015-181호(2015.6.25.), 제2017-26호(2017.1.26.), 제2018-29호(2018.2.8.), 제2018-224호(2018.7.19.), 제2019-104호(2019.3.21.)로 변경된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단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다. 구역면적 : 1,123,784㎡

라. 조성목적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마. 추진경위

- 2007.12.28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
- 2008.12.30 실시계획 인가고시/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
- 2010.02.11 구역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호)
- 2010.09.30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9호)
- 2011.09.22 개발계획 변경수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4호)
- 2011.10.27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3호)
- 2011.12.29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8호)
- 2011.12.29 개발구역 변경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19호)
- 2012.10.11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0호)

- 2012.10.1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2호)
- 2013.07.25 개발계획변경수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8호)
- 2013.09.0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2호)
- 2013.11.14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9호)
- 2014.05.08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183호)
- 2014.07.03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 계획 변경인가 정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14-247호)
- 2014.12.26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4-453호)
- 2015.05.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5-150호)
- 2015. 6. 25.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81호)
- 2016.7.28.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225호)
- 2016.12.29. 개발계획 변경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제2016-424호)
- 2017. 1. 26.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7-26호)
- 2017. 5. 4.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161호)
- 2017. 7. 27.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273호)
- 2017. 12. 14.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7-455호)
- 2018. 2. 8.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9호)
- 2018. 7. 19.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8-224호)
- 2018. 12. 27.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서울특별시 제2018-417호)
- 2019. 3. 21.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제2019-104호)

바. 입지여건

1) 교통여건

-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2㎞),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직결
- 대상지 내부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철도 관통

2) 기반시설 공급계획

시설명	확충계획	
	규 모	시행기관
용 수	생활용수 : 9,363톤/일 공업용수 : 2,949톤/일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전 력	1,276,196 MWh/년	한국전력
통 신	미 정	개별 통신서비스 기관
환 경	오수발생량 : 10,899톤/일 폐수발생량 : 2,323톤/일	서울특별시

※ 2012. 10. 11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기준임.

2. 관리기본방향

가. 관리목표

- 서울의 경쟁력 회복과 세계도시로 도약을 위하여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에 목적이 있음
-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 산업단지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개발 유도
- 지식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융합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나. 관리방향

- 동북아 관문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 거점이자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차세대 융합산업의 전초지이자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생태계로서 생산에서 소비, 기술개발에서 상품화의 전과정이 이루어지는 창조거점으로 육성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구현되는 녹색도시의 모델로 기술과 감성, 생산과 생활, 그리고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미래녹색 도시 조성
- 연구기능, 교육 및 훈련기능, 지원서비스 및 시범적인 생산기능, 주거 및 생활공간 기능이 연계된 자족적 공동체 조성

다.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관리기관 및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 도로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 용수 :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 하수 및 폐수처리,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 오수펌프장 : 서울특별시

- 배수펌프장 : 강서구
- 공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공공·복지시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2)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기반시설은 마곡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함

3. 관리기본계획

가.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1)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

구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관리제외면적
	1,123,784	729,785	81,326	224,438	76,469	11,766

※ 관리제외면적 : 주차장(4개소), 가스충전소(2개소), 보육시설(3개소)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용지 지정용도)

1.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대학부설 연구소

   ※ 연구시설용도(시험연구시설 포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연면적의 50%(「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단, 시험연구시설은 제외)

   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사업화)의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시설을 건축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이때, 건축연면적에는 주차장 및 기계실 면적은 제외하며, 용도별 시설면적은 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함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집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건립시, 설립자는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 운영하여야 한다. (임대비율은 공고문에 따로 정함)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라) 녹지구역
-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나.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1) 입주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입주업종 >

구분	업종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업종별
공통	연구개발업	M	*70	연구개발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IT	컴퓨터, 정보통신, 반도체, 정보처리	C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정보통신, 정보처리	J	582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12	전기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BT	유전공학,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장기	A	011	작물재배업
		C	10800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71	의료용기기제조업
		M	731	수의업
NT	나노소자	C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GT	그린생산	C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 등)
	에너지	D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자원순환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 70(연구개발업)의 경우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말함

※ 대학(원) 및 대학(원) 부설연구소 입주신청 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 가능

- 상기 입주업종 외에도 산업의 융·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함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업종

2) 업종별 배분 비율

- 산업여건 및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업종배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산업시설구역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자
- 산집법 제28조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업종 외 아래의 업종도 가능

・ 부동산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지원시설구역

-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사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가) 업종별 배치는 융복합 트랜드와 산업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및 기업 입지수요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별 배치

나) 클러스터는 지하철역, 도보생활권 등을 고려해 배치하고 클러스터별 특화산업의 분산배치를 통해 입주 업종별 거점화와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코어 클러스터는 마곡지구의 가장 중심지인 공항철도 및 9호선 환승 역세권 지역에 배치
- InT클러스터는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IT기술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코어클러스터 인근 배치

- BiT 클러스터는 생명공학 연구와 IT기술 연계가 가능한 중앙공원과 환승역세권 지역에 배치
- GeT클러스터는 주변 자연환경(저류지, 물재생센터, 공원 등)의 활용이 용이한 양천향교역 지역에 배치
- BmT클러스터는 의료·제약 산업 집적이 용이하도록 종합병원과 의과대학이 입주하는 지역 주변에 배치

다) 각 클러스터는 코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배치

라) 주변시설(업무시설, 의료시설, 자원회수시설, 주거시설 등)과 유치업종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

다. 입주절차

1) 산업시설구역 입주절차

가) 입주계약 신청

- 당해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된 입주대상산업·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집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함

나) 심사

- 심사절차

① 일반분양 및 처분신청용지

정책심의위원회 (서울시)		관 리 기 관		사 업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협의 보완	⇒	입주계약자와 분양계약 내용 협의
토지공급협의대상자 선정		입주계약체결		분양계약체결

② 지식산업센터

· 토지분양

사 업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심의위원회 (서울시)		사 업 시 행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계획 평가 및 심사, 선정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 설정	⇒	협의대상자 확인	⇒	협의대상자와 협의·보완
		정책심의위원회 추인		토지분양 (입주)계약 체결

※ 토지를 분양 받은 사업자가 건립 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임대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분양·임대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

- 위원회 평가 및 심사방법
  ·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결과 작성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전검토 및 의견 첨부 가능
  · 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공급협의대상자를 선정

다) 계약체결
- 위원회에서 선정한 토지공급협의대상자와 용지공급조건(사업내용, 시기 등) 등에 대한 협의·보완을 거쳐 입주자 선정
- 선정된 입주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공실활용 입주절차
- 연구시설 공실활용 제공자는 관리기관에 공실활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변경계약(또는 특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절차는 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선정된 공실활용 입주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공실활용 제공자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지원시설구역 입주절차
- 당해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 및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와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3)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가)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개시 신고 및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함

나) 심사기준
- 사업개시

(1) 연구시설 면적 비율 : 입주기업체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구 분	연구시설(A)	부대시설(B)	제조시설/ 사업화시설(C)	기타시설 (주차장, 기계실)
면 적(㎡)				
비 율(%)	A/(A+B+C)		C/(A+B+C)	

※ 연구시설 :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공간

(2) 연구개발 인력 수 :「마곡일반산업단지 일반분양 분양(입주)공고문」에 따라 협의·보완을 거친 사업계획서 상 연구인력 확대계획의 첫해연도 연구개발 인력 수

구 분	Y	Y+1	Y+2	Y+3	Y+4	Y+5
연구개발 인력 수(명)						

※ 연구개발 인력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연구개발 인력
· KOITA 미등록 연구개발 인력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연구개발 실적자료,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관리기관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판단될 경우 인정

(3) 부대시설 인정 범위 : 3.가.2).가).1.에 따름
(4) 기타 시설물(장비 등) 설치 사항 : 입주기업체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공장설립등의 완료
(1) 사업개시 기준 및 공장신설승인 조건 모두 충족
(가) 사업개시 기준 : 상동
(나) 공장신설 승인 조건 : 제조시설비율 20% 이하(단, 기업별 연구시설면적 비율 유지)이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생산간 연계성 확보

라. 사후관리계획

1)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산집법 제39조)

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혹은 공유지분)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SH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입주대상업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관리기관이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마)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

바)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사)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받거나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산업용지의 분할제한 (산집법 제39조의2)

가)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1,650㎡(시행령 제39조의3제1항)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다만 최초분양시 산업용지가 공유지분 형태(컨소시엄)의 분할인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150㎡ 이상이 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

다)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용수·상하수도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관련 법률로 정하는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5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를 처분하려는 경우 및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3) 산업용지의 환수 (산집법 제41조)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적정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음

- 단,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

나)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

- 단,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음

4) 입주계약의 해지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을 두고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 착수는 착공신고 시점을, 준공은 사용승인 받은 시점을 말함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등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장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분할 기준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관리기관은 공실활용 입주자가 6개월 안에 사업계획서 미이행시 공실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5) 입주계약의 해지 후의 재산처분 (산집법 제43조)

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나)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가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1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은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음

6) 이행강제금 (산집법 제43조의3)

가)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며, 이의 문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다)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7) 연구개발환경의 보전

가) 환경관리

-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강서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나)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재해복구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기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 기반시설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8) 건축물 관리계획

가) 건축물 관리목적

- 건축물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개발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건축물의 관리는 산업단지 내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당초 사업계획서와 계약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를 첨단R&D센터로 조성하는 한편,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건축물 조성을 유도함
- 기타사항은 마곡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나) 건축물 관리원칙

- 산업단지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가 첨단기술R&D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에서 이의 상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단계 및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관리를 수행함
-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대상자가 토지공급을 위해 공급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중 개발계획의 내용에 준해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심의과정과 인허가단계, 준공단계에서 사업계획에 준한 건축물 건축 여부를 점검함. 다만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건축의 조정 및 변경이 가능함
- 건축물의 첨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함. 산업단지의 위상에 걸맞도록 건축물의 외관적 디자인이나 에너지, 환경 등 친환경성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유비쿼터스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환경은 물론 산업단지의 전체적인 첨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0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 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9호(2018.12.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 서북권역의 관문도시로서 새로운 지구중심 창출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의 제시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전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유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
- 면 적 : 3,492,650.9㎡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 1지구 : 2004.02.25 ~ 2017.12.31
- 2지구 : 2005.12.30 ~ 2020.12.31
- 3지구 : 2006.12.28 ~ 2020.12.31.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없음)

- 실시계획인가도서의 내용과 같음 : 별첨 1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전화:02-2133-7217),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전화:02-351-741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02-3410-7578)
-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도면과 같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해당 없음

10.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도서 : 별첨 1

11.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

- 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사항 이행할 것.
- 금회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련 관계기관 등의 협의내용은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할 것.

< 별첨 1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2. 주택공급계획(변경 없음)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4.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내용 및 조서(변경) : 별첨 2

5.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 별첨 2 >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수도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유치원용지(변경 없음)
- 학교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시설용지(변경 없음)
- 박물관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편익**	**⑪**	**-**	**진관동 162-13 일원**	**3,154.6**	**-**	**3,154.6**	
변경	**편익**	**⑪**	**소계**	**진관동 162-13 일원**	**3,154.6**	**-**	**3,154.6**	
			-1	진관동 162-13 일원	1,160.0	-	1,160.0	
			-2	진관동 162-13 일원	1,994.6	-	1,994.6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편익 ⑪	·미매각용지인 편익⑪ 용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간 협약 및 부지매입(안) 제출(2018.12.23)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획지 분할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유수지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시설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없음)
- 업무시설용지(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한옥지정구역)(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상업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정류장용지(변경 없음)
- 자원회수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동구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학교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서관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변경 없음)
- 종교용지(변경 없음)
- 주유소용지(변경 없음)
- 공익시설용지(변경 없음)
- 편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 면 번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편익	편익 2, 5, 7, 8, 11, 12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3m	
변경	편익	편익 11-1	용도	•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변경	편익	편익 2, 5, 7, 8, 11-2, 12	용도	•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방송통신시설 ※ 시설별 제한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동일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없이 재료와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니도록 계획	
			색채	• 원색의 사용을 금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3m	

■ 변경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편익 ⑪	·미매각용지인 편익⑪ 용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간 협약 및 부지매입(안) 제출(2018.12.23)에 따라 획지를 분할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획지 분할

- 종합의료시설용지(변경 없음)
- 군사시설용지(변경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용지(변경 없음)
- 주차장용지(부설주차장)(변경 없음)
- 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 없음)
- 업무시설용지(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5)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1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78호('08.5.29.)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08-80호('08.11.6.)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16호('08.11.20.), 같은 고시 제2011-129호('11.5.19.), 같은 고시 제2012-249호('12.9.13.), 같은 고시 제2016-203호('16.7.14.), 같은 고시 제2017-190호('17.6.1.), 같은 고시 제2018-280호('18.9.6.) 및 같은 고시 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전농·답십리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1,3,5동 일대	813,150.5	감) 283.3	812,867.2	

※ 변경사유 : 대지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지구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 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813,150.5	감) 283.3	812,867.2	100.0	
주택 용지	소 계	479,491.6	감) 218.2	479,273.4	59.0	
	단독/다가구/다세대	100,298.0	-	100,298.0	12.3	
	공동주택	313,972.9	감) 205.1	313,767.8	38.6	
	근린생활	23,199.7	감) 13.1	23,186.6	2.9	
	복합용도	42,021.0	-	42,021.0	5.2	
상업 업무	소 계	30,923.0	-	30,923.0	3.8	
	상업/업무/복합	30,923.0	-	30,923.0	3.8	
공공시설	소 계	292,820.9	감) 65.1	292,755.8	36.0	
	도 로	165,000.8	감) 74.5	164,926.3	20.3	
	광 장	4,367.0	-	4,367.0	0.5	
	공원/녹지/공공공지	46,702.9	증) 34.2	46,737.1	5.7	
	순환보행로	7,817.0	-	7,817.0	1.0	
	학 교	60,108.4	감) 25.5	60,082.9	7.4	
	공공청사	3,209.1	-	3,209.1	0.4	
	문화복지	5,335.6	증) 0.7	5,336.3	0.6	
	기 타	280.1	-	280.1	0.1	
종교시설		9,915.0	-	9,915.0	1.2	

※ 변경사유 : 대지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지구·구역 및 토지이용계획 상의 면적 변경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교통계획(변경없음)
6) 경관계획(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4동, 답십리 1,3,5동	813,150.5	감) 283.3	812,867.2	-	
촉진구역		453,683.2	감) 283.3	453,399.9	-	
존치정비구역		21,665.0	-	21,665.0	-	
존치관리구역		337,802.3	-	337,802.3	-	

※ 변경사유 : 대지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지구·구역 면적 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계획(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11)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없음)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기타 계획(에너지순환, 방재, 정보화,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14)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답십리제18구역 변경)

가. 답십리 제18재정비촉진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답십리 제18재정비 촉진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55,386.0	감) 283.3	55,102.7	

※ 변경사유 : 대지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55,386.0	감) 283.3	55,102.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13,423.0	감) 65.1	13,357.9	24.2	
	도 로	7,433.0	감) 74.5	7,358.5	13.3	
	녹 지	3,027.0	증) 34.2	3,061.2	5.6	연결녹지,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	387.0	증) 0.7	387.7	0.7	
	학 교	2,576.0	감) 25.5	2,550.5	4.6	
택 지 (획지)	소계	41,963.0	감) 218.2	41,744.8	75.8	
	택지 1 (1-1, 1-2)	38,974.0	감) 205.1	38,768.9	70.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	2,989.0	감) 13.1	2,975.9	5.4	

※ 변경사유 : 대지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개별 획지 및 기반시설 등의 면적 변경

나)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3)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55,386.0	감) 283.3	55,102.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576.0	증) 12.8	2,588.8	4.7	
제2종일반주거지역	52,810.0	감) 296.1	52,513.9	95.3	

※ 변경사유 : 대지확정측량 성과에 따른 개별 획지 및 기반시설 등의 면적 변경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변경)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시점	종점			
기정	중로	2	443	16	집산	300	전농동 295-215	답십리동 238-3	답십리동 103-5	'08.5.29. (서고시 178호)	
변경							답십리동 1007-30				
기정	소로	3	1	6	국지	330	답십리동 439-56	답십리동 242-41	답십리동 99-15	'08.5.29. (서고시 178호)	
기정	대로	3	10	25 (25→28)	보조 간선	1,100 (40)	마장동	전농동 광 장	전농 로타리	'36.12.26. (총고시 722호)	(구역내 3m 확폭)
기정	대로	3	130	25 (25→28)	보조 간선	2,100 (72)	오스카극장 동측	전농동 광 장	동대문 중학교	'78.5.1. (서고시 187호)	(구역내 3m 확폭)

※ 1. 행정구역(법정동) 변경에 따른 동명 및 지번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1176호(2017.12.21.)

2. "( )"안은 답십리제18구역 내 폭원과 연장임.

나) 공원·녹지(변경)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녹지(1)	연결녹지	답십리동 104-2번지 일대	453.0	감) 10.0	443.0	'08.5.29. (서고시 178호)	
변경	녹지(2)	연결녹지	답십리동 236-29번지 일대	1,239.0	증) 32.8	1,271.8	〃	
기정	녹지(3)	완충녹지	전농동 295-486번지 일대	1,335.0	증) 11.4	1,346.4	'18.09.06. (서고시 280호)	
변경			답십리동 1007-104번지 일대					

※ 행정구역(법정동) 변경에 따른 동명 및 지번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1176호(2017.12.21.)

다) 학교·사회복지시설(변경)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사회복지시설	-	전농동 295-260번지 일대	387.0	증) 0.7	387.7	'18.09.06. (서고시 280호)	
변경			답십리동 1007-67번지 일대					
기정	학 교	초등학교	전농동 306번지 일대	19,147.0 (2,576.0)	감) 25.5	19,121.5 (2,550.5)	'92.07.24. (서고시 252호)	
변경			답십리동 1007-191번지 일대					

※ 1. 행정구역(법정동) 변경에 따른 동명 및 지번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7-1176호(2017.12.21.)
2. "( )"안의 면적은 답십리제18구역 내 학교시설 결정 면적임.

(5) 건축물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답십리 제18 재정비 촉진구역	55,386.0	택지1 (1-1,1-2)	38,974.0	답십리동 101-1번지 일대	160,0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1.55%이하 (기준 210%)	평균 18층 이하
			택지2	2,989.0	답십리동 1007-166번지 일대	-	별도 지정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름		별도 지정
변경	"	55,102.7	택지1 (1-1,1-2)	38,768.9	답십리동 101-1번지 일대	160,0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1.54%이하 (기준 210%)	평균 18층 이하
			택지2	2,975.9	답십리동 1007-166번지 일대	-	별도 지정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름		별도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1,009세대(임대 172세대) - 주택건설 60㎡이하 : 421세대(41.72%) 60~85㎡이하 : 548세대(54.32%) 85㎡초과 : 40세대(3.96%) - 임대주택 : 172세대(전체 세대수의 17.05%) 40㎡ 이하 : 71세대(임대주택의 41.28%) 40~50㎡이하 : 73세대(임대주택의 42.44%) 50~60㎡이하 : 28세대(임대주택의 16.28%)									
택지2 용도계획	○ 불허용도 : 공동주택(단, 임대주택을 주거복합형으로 계획시 제외), 장의사, 창고시설, 국방 · 군사시설									
건축물 높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70m이하 ○ 택지2 : 4층이하(단, 연면적의 50%이상 임대주택 계획시 10층이하까지 완화)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남측 대지경계선(답십리로)으로부터 건축한계선 18m 지정 ○ 전농초등학교 남측 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 지정 ○ 폭 16m 중앙 신설 도로변은 8m 지정(단, 택지1은 제외) ○ 기타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지정									

※ 1. 동 지구 내 Blue-Walk가 연계·조성될 수 있도록 택지2와 사회복지시설 부지는 폭 16m 중앙 신설 도로변을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 "연결녹지 설치기준"에 준하는 대지내 조성(폭 8m)을 설치하여야 함(단, 진·출입로는 제외)

2. 사회복지시설과 택지2는 보행동선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진·출입구를 공동주차출입구로 지정 및 고원식으로 조성하되, 보행동선은 분리할 것

다)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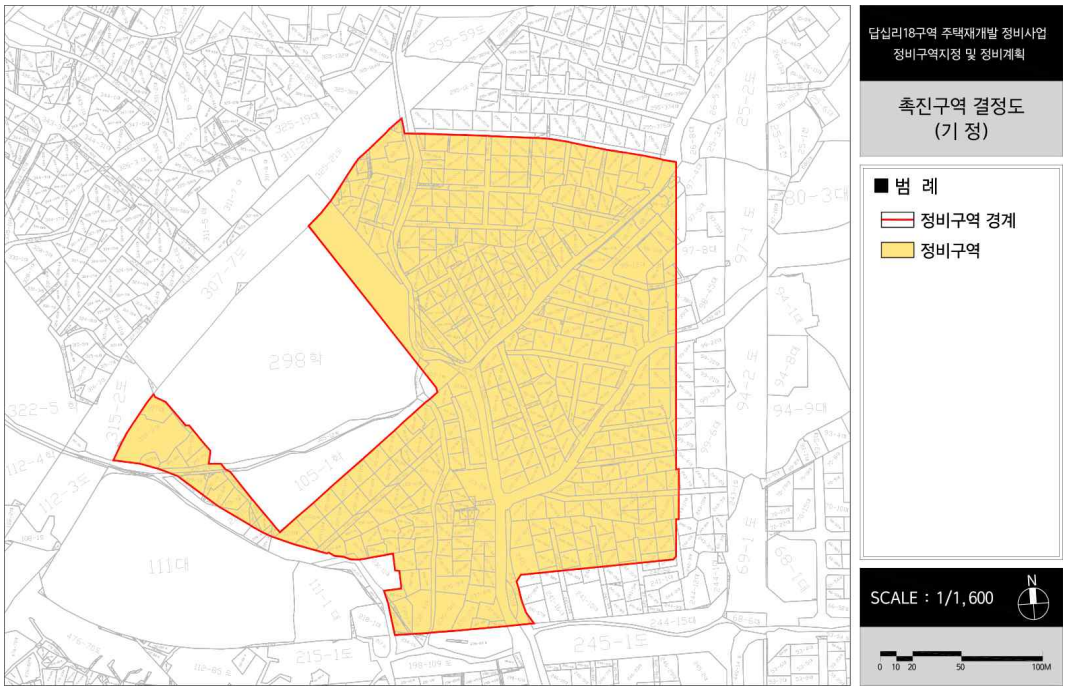
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답십리제18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은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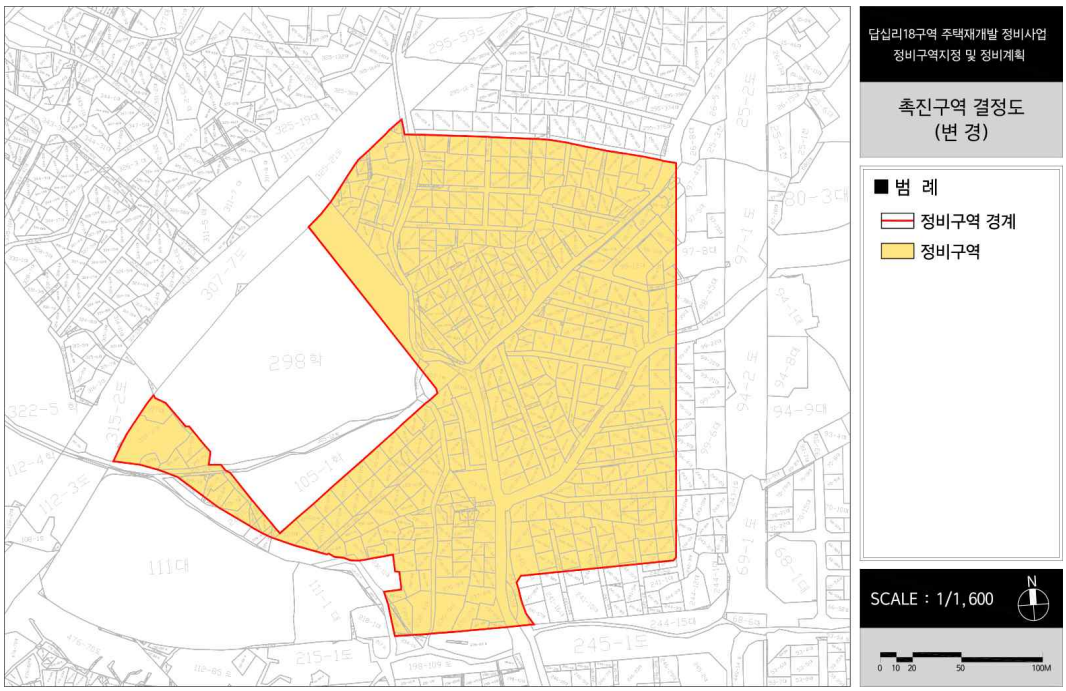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2)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02-2127-4579)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첨부 :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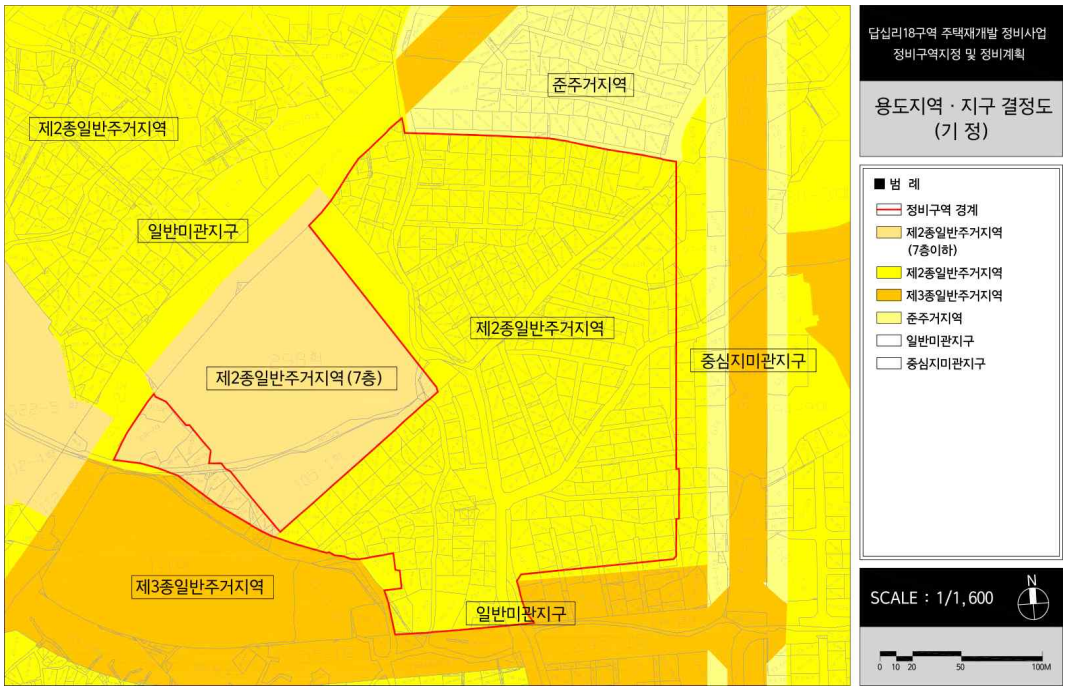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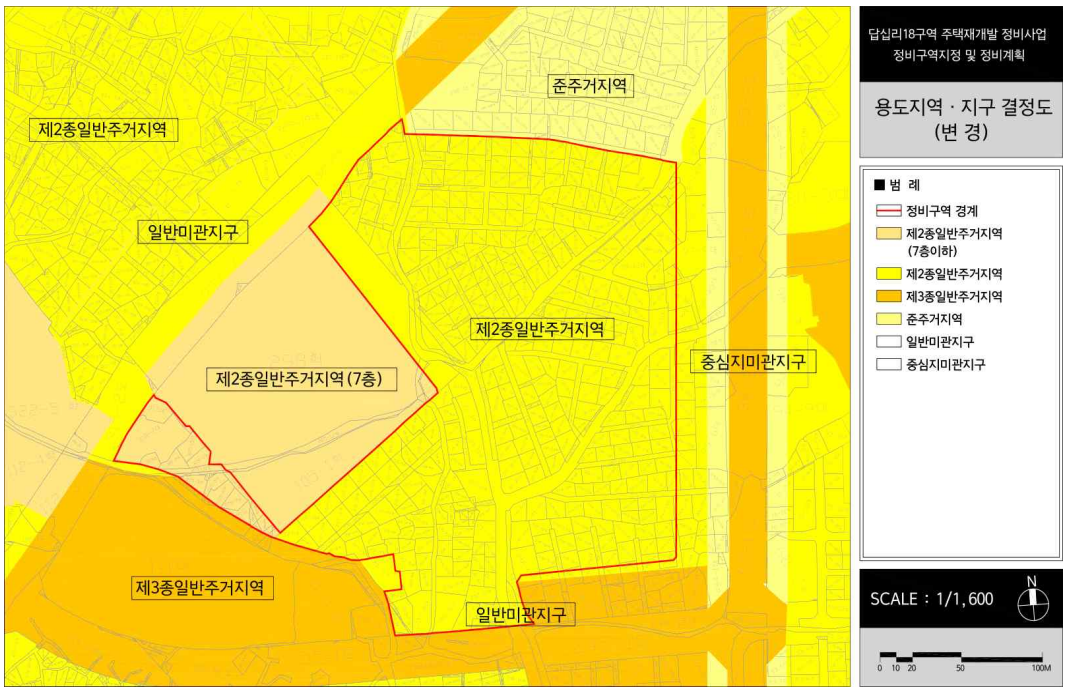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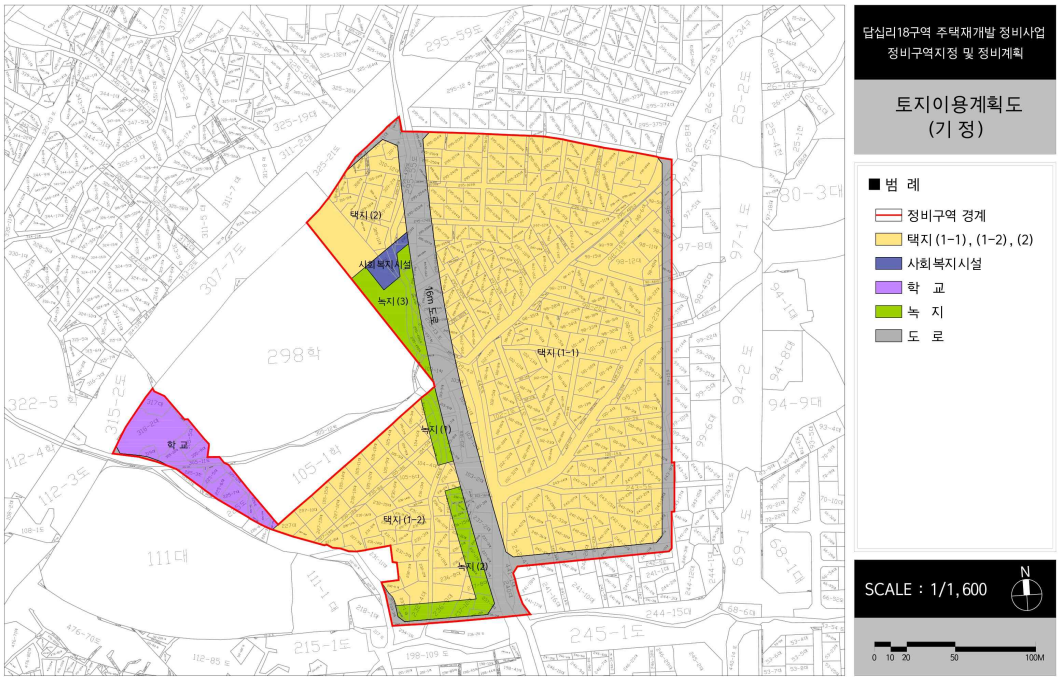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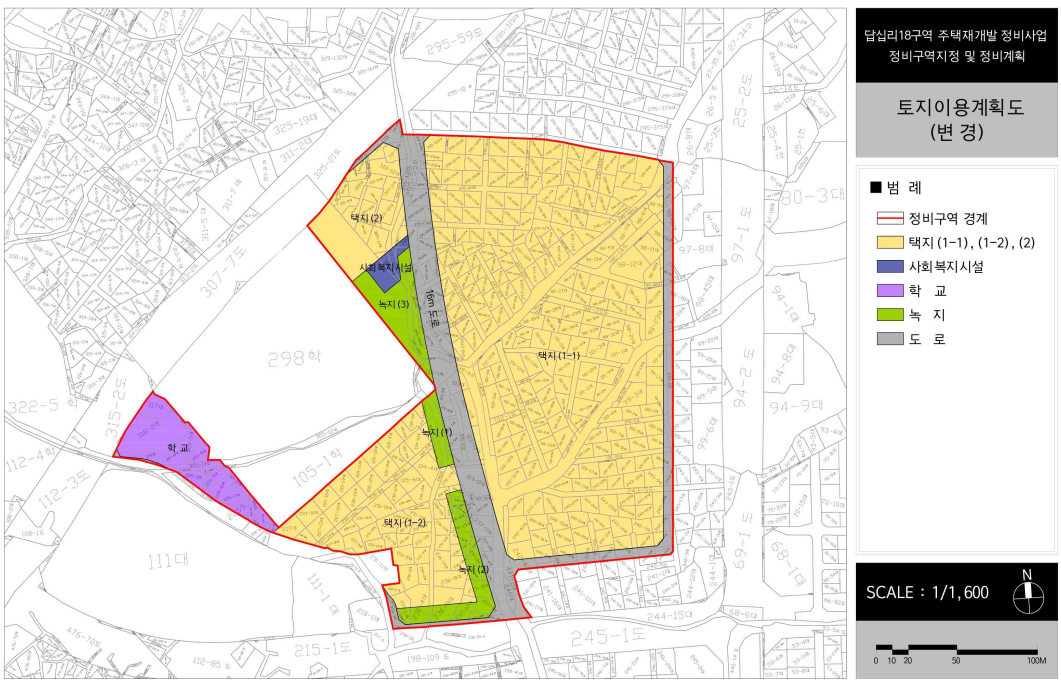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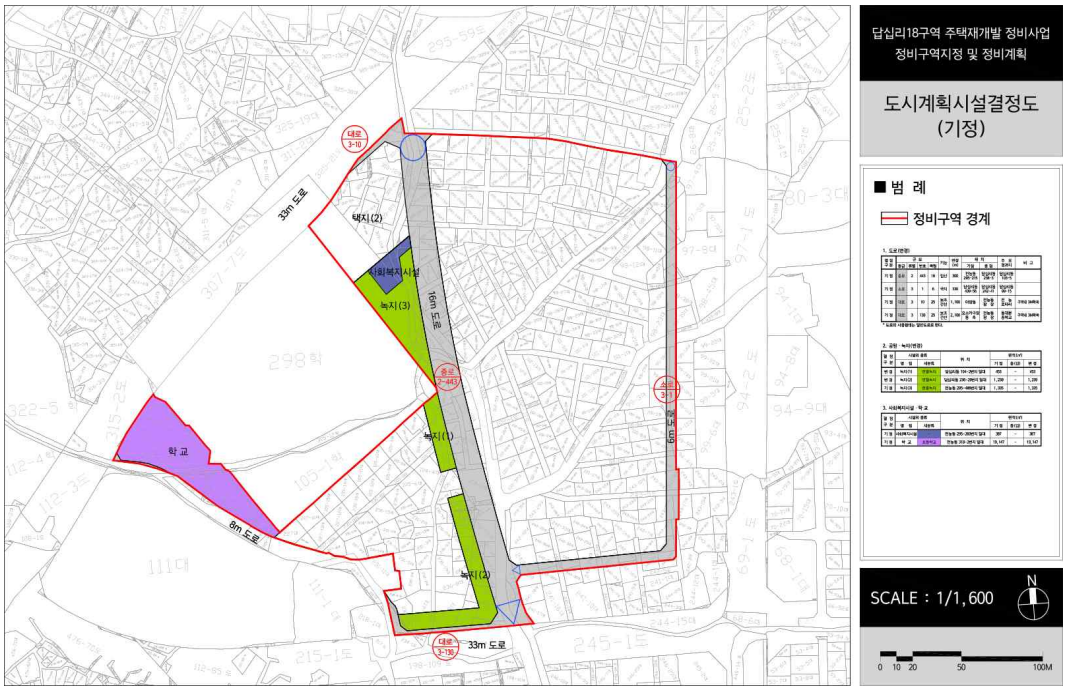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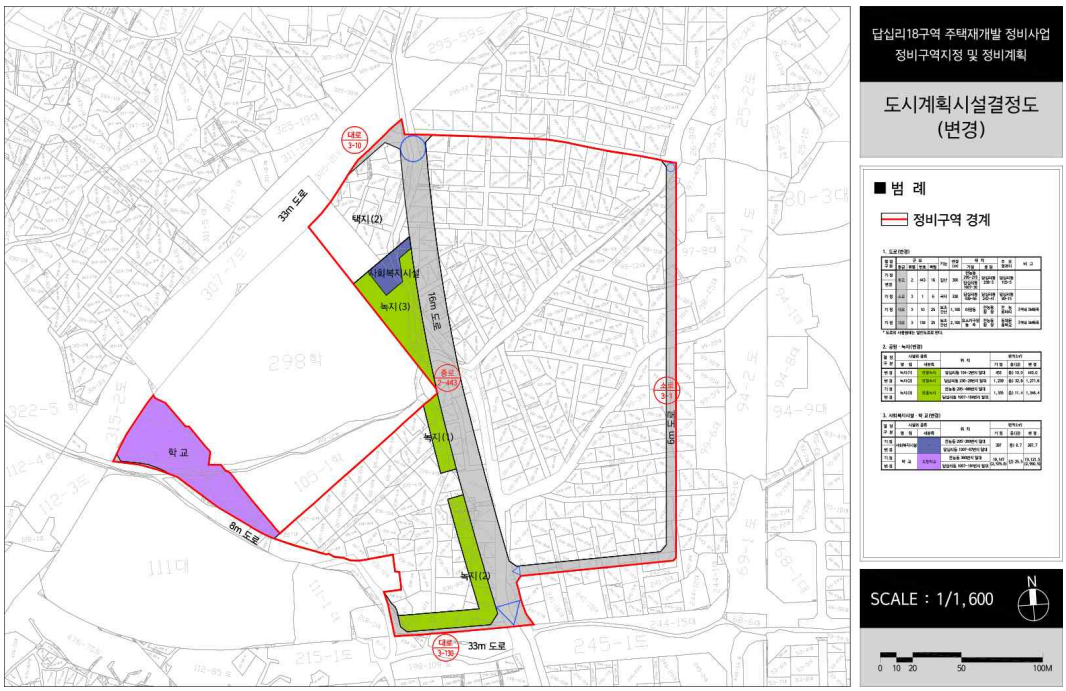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01호(1987.07.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8-100호(2018.11.08.)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4호(2019.4.1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397-1~76-91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없음>

다. 사 업 명 : 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31m→33m, 연장 60m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2년 <변경없음>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아. 변경사유 : 물건조서 기재사항 오기 정정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로계획과(☎2133-8083) 동대문구청 도로과(☎2127-4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1	신설동	397-1	도	26.4	26.4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변경 없음
2	신설동	53-4	대	70	70	학교법인 대광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53-3	-			
3	신설동	60-4	대	10	10	김덕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72	-			
4	신설동	169-9	대	7	7	국(기획재정부)		-			
5	신설동	169-11	대	30	30	김유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9 동문아파트 비-303	-			
6	신설동	60-5	대	73	73	국(기획재정부)		-			
7	신설동	76-91	도	60	60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물건의 종류	규격 및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1	신설동	169-11	건물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55.7	김유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9 동문아파트 비-303	-			변경 없음
2	신설동	168-1 외 3필지	가건물	판넬/ 샷시	10	김유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9 동문아파트 비-303	-			기정
	신설동	169-11	가건물	판넬/ 샷시	10	김유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9 동문아파트 비-303	-			변경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대광초교 삼거리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상호명	업종	소 유 자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1	신설동	169-11	털보건설중기	건설기계대여	김동훈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46-37	변경없음
2	신설동	169-11	털보건설중기	건설기계대여	임정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137 208동102호	
3	신설동	169-11	대동장의사	장의사	박종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58-69	
4	신설동	169-11	동양종합수리	가구, 커텐, 열쇠수리	김유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29 동문아파트 B-303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08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대상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3호터널	2018-10-04	7:48:06	02거2172	김동철	10,300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12번길
2	남산1호터널	2018-10-08	10:31:54	02주0850	이성환	10,3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	남산1호터널	2018-10-11	12:55:03	05우2456	공준호	10,3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4	남산3호터널	2018-10-15	14:12:12	11모6436	JIN YINXIU	10,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5	남산3호터널	2018-10-05	19:58:10	12더5565	김성수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6	남산1호터널	2018-10-01	10:58:56	14가8765	임태현	10,300	경기도 파주시 가재울로71번길
7	남산1호터널	2018-10-12	12:16:39	15노5143	유희순	10,3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8	남산1호터널	2018-10-04	12:22:32	16거7729	(주) 선진	10,3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9	남산1호터널	2018-10-12	9:29:07	16너4429	박현우	10,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0	남산1호터널	2018-10-02	14:02:05	16수3330	클래식라인(주)	10,3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53길
11	남산1호터널	2018-10-08	17:49:29	25주6190	JARGAL TURMUNKH	10,3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84가길
12	남산1호터널	2018-10-08	16:00:46	27버3725	(주)컴백스	10,3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나길
13	남산3호터널	2018-10-01	14:05:06	30오8258	김봉철	10,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8가길
14	남산3호터널	2018-10-05	15:25:59	33루6918	하빌우딘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6길
15	남산3호터널	2018-10-05	14:37:28	34모9314	정재응	5,15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1길
16	남산1호터널	2018-10-10	20:11:50	36누5396	나태준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7	남산1호터널	2018-10-10	15:25:40	37루0140	김학두	10,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나길
18	남산1호터널	2018-10-04	15:19:29	40루9015	권옥석	10,30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	남산3호터널	2018-10-08	17:58:00	42고2569	(주)프라임정보기술	10,3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20	남산3호터널	2018-10-02	11:00:44	53다6112	하유리	10,3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21	남산1호터널	2018-10-10	10:10:12	55오9712	허산	10,300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2	남산3호터널	2018-10-02	20:35:44	56어8264	차옥정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3	남산1호터널	2018-10-12	19:32:43	57러9657	백승옥외1(이상례)	10,3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4	남산1호터널	2018-10-05	15:54:11	57수6105	손정아	5,15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관음당길
25	남산3호터널	2018-10-02	12:57:04	58더7293	박세희	5,15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26	남산1호터널	2018-10-15	16:31:24	61두0474	소은옥	10,3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9길
27	남산1호터널	2018-10-15	11:45:03	66러0362	이정동	5,15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72번길
28	남산1호터널	2018-10-02	20:43:46	69다2624	한성영농조합법인	10,300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해삼로
29	남산3호터널	2018-10-11	18:08:00	69호7313	(주)쏘카	10,3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30	남산1호터널	2018-10-04	8:02:53	01무1738	손기원	5,1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43길
31	남산1호터널	2018-10-05	17:14:54	02조3328	변기호	10,300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8번길
32	남산1호터널	2018-10-08	19:07:11	09저9695	김영준	10,3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33	남산3호터널	2018-10-02	17:29:02	10로8962	김만기	10,300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윤촌2길
34	남산3호터널	2018-10-01	16:50:18	11저9843	주식회사 구월송글로벌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	남산3호터널	2018-10-15	14:40:56	12더2228	김준오	10,3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6	남산1호터널	2018-10-02	20:31:49	16부7200	여서연	10,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4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7	남산1호터널	2018-10-05	16:35:13	19저4017	이상일	10,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라길
38	남산1호터널	2018-10-12	19:01:41	20라6582	(주)로멤스테크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9	남산1호터널	2018-10-10	17:27:23	20모3356	주식회사 맵씨	10,3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40	남산1호터널	2018-10-04	12:42:08	20저9952	권 기준	10,300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41	남산1호터널	2018-10-02	17:30:33	20하8163	주식회사 뉴장원렌트카	10,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42	남산1호터널	2018-10-10	14:09:29	23모8840	FANG XIONGBIAO	10,3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6길
43	남산3호터널	2018-10-02	19:21:09	24수9574	PAK VITALY	10,3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3길
44	남산3호터널	2018-10-15	14:32:51	26버9331	권도형	10,3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45	남산1호터널	2018-10-05	12:50:15	33너0612	전윤배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46	남산1호터널	2018-10-11	9:24:16	37머4170	이승원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47	남산1호터널	2018-10-02	17:00:05	42소8978	CHEN LIQIANG	10,3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673번길
48	남산1호터널	2018-10-11	16:14:34	46구7004	안기광	10,3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49	남산1호터널	2018-10-11	20:31:24	47가1190	CHE XIANHUA	10,300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50	남산1호터널	2018-10-11	14:43:28	48모0710	최경희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51	남산1호터널	2018-10-01	17:13:25	49부0996	주식회사 삼라만땅	10,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8길
52	남산1호터널	2018-10-05	20:33:39	63루0104	황옥란	10,3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12번길
53	남산1호터널	2018-10-08	20:30:37	67누6189	임태욱	10,300	경기도 평택시 비전3로
54	남산1호터널	2018-10-11	15:22:19	67소0387	김민영	10,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55	남산3호터널	2018-10-01	15:29:29	68루0698	이영목	10,3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56	남산1호터널	2018-10-15	16:05:56	68보4931	김태균	10,3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57	남산1호터널	2018-10-01	20:07:51	45너8594	김태환	5,150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268번길
58	남산3호터널	2018-10-08	20:43:52	36소5148	양만택	10,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9길
59	남산1호터널	2018-10-15	20:55:24	39소6257	장새롬	10,3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섬밭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0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납부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이의제기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이의 제기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이의제기 클릭·작성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혼잡통행료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3호터널	2018-11-16	15:46:15	01가2018	박명선	10,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샘골길
2	남산1호터널	2018-11-21	13:15:17	04머0753	정한석	1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3	남산3호터널	2018-11-16	20:40:04	05노5459	(주)원방쥬얼리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6나길
4	남산3호터널	2018-11-19	10:54:43	05버9002	최병서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5	남산3호터널	2018-11-21	13:36:47	09조9243	박택수	1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루지길
6	남산1호터널	2018-11-21	20:49:00	10소8692	삼성전자(주)	1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7	남산3호터널	2018-11-20	15:03:31	11거0774	김강군	10,000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8	남산1호터널	2018-11-21	14:35:11	11부3608	곽재형	1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9	남산3호터널	2018-11-22	16:02:22	11오7643	(주)삼정잉크	10,000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93번길
10	남산3호터널	2018-11-22	20:24:06	12수0529	홍지우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1233번길
11	남산1호터널	2018-11-22	9:27:21	12조4719	이준성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1길
12	남산3호터널	2018-11-19	20:41:21	13주1749	이승민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23번길
13	남산3호터널	2018-11-22	10:56:55	14더6003	STALLINGS DAVID O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14	남산1호터널	2018-11-16	19:10:26	16주1272	이안숙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6길
15	남산3호터널	2018-11-21	7:55:38	20하8463	(주)케이제이렌트카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
16	남산3호터널	2018-11-19	20:07:48	21라1952	이효석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5가길
17	남산3호터널	2018-11-21	16:34:03	23머0368	김종식	1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50번길
18	남산3호터널	2018-11-16	15:14:11	26우1910	윤영신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4길
19	남산3호터널	2018-11-16	11:14:19	27저5854	DELION LUDOVIC JEAN LOUIS JEAN RENE JE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20	남산3호터널	2018-11-16	15:26:22	28누7950	김현곤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8길
21	남산3호터널	2018-11-20	18:18:21	28수7155	김소연	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2	남산1호터널	2018-11-23	9:43:14	29버6217	서한산업(주)	10,00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인석로
23	남산3호터널	2018-11-22	11:06:52	30루7873	이상석	1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24	남산3호터널	2018-11-23	20:31:10	30오2640	조재진	1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270번길
25	남산1호터널	2018-11-23	20:04:00	31도0223	김지은	1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6	남산1호터널	2018-11-22	16:57:14	31도0223	김지은	1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7	남산1호터널	2018-11-22	20:47:36	31어7610	김경하	10,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북로
28	남산1호터널	2018-11-16	12:51:48	32머3249	조석곤	10,000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2길
29	남산3호터널	2018-11-23	7:06:40	33더9634	장준석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5길
30	남산1호터널	2018-11-22	19:40:01	34노6803	장영학	10,00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방축2길
31	남산1호터널	2018-11-22	16:05:54	35너0372	김희정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28길
32	남산1호터널	2018-11-19	15:17:42	36루5963	박화순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33	남산1호터널	2018-11-20	7:41:40	36소5888	설응환	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4	남산3호터널	2018-11-22	12:51:18	39머4991	김민권	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5	남산1호터널	2018-11-22	14:20:41	40머1386	(주)수플레이스	5,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36	남산3호터널	2018-11-19	11:29:31	45거3232	김은숙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12길
37	남산3호터널	2018-11-16	14:40:24	45누1040	이승원	1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8	남산3호터널	2018-11-16	16:44:22	45어6028	길건이	5,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39	남산1호터널	2018-11-22	19:09:52	46도5373	승은비	1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0	남산1호터널	2018-11-16	17:03:44	47주0213	진학규	10,000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26번길
41	남산3호터널	2018-11-20	17:43:32	48부9392	김진현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0길
42	남산3호터널	2018-11-20	18:47:06	49도0488	리즈디자인 주식회사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43	남산3호터널	2018-11-23	17:02:37	49주7029	KIM LIUDMILA	10,000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44	남산3호터널	2018-11-19	10:37:48	50고1135	김순정	10,000	대구광역시 서구 큰장로15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5	남산3호터널	2018-11-19	7:21:26	51누3420	동삼수산영어조합법인	10,00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46	남산1호터널	2018-11-21	17:03:02	51누8127	전혜민	10,000	경기도 과천시 궁말로
47	남산1호터널	2018-11-22	11:38:12	52누9714	백용현	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4길
48	남산1호터널	2018-11-22	18:53:19	52조7734	장금상선(주)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49	남산3호터널	2018-11-21	9:21:29	55라9700	김현민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50	남산1호터널	2018-11-16	15:51:51	56노7974	구본원	10,0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마진배1길
51	남산3호터널	2018-11-22	12:00:50	59머6623	이정화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52	남산3호터널	2018-11-23	19:52:07	59어0586	정용석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5길
53	남산3호터널	2018-11-23	17:13:35	62주0333	유시승	1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54	남산1호터널	2018-11-21	7:30:30	65저4603	정영희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20길
55	남산3호터널	2018-11-19	20:25:49	68다7488	이춘자	1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9길
56	남산3호터널	2018-11-16	18:13:12	서울55러4959	강은석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57	남산1호터널	2018-11-27	7:40:11	02거2172	김동철	10,000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12번길
58	남산1호터널	2018-11-27	19:41:33	02조2690	강석훈	1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59	남산1호터널	2018-11-26	13:35:28	02조3328	변기호	10,000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8번길
60	남산1호터널	2018-11-26	14:46:14	02조3328	변기호	10,000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8번길
61	남산3호터널	2018-11-30	16:50:18	04고1297	황덕현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62	남산1호터널	2018-11-27	20:06:24	04우8489	김순희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4길
63	남산3호터널	2018-11-27	9:20:29	05너5308	박대영	5,0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낙촌길
64	남산3호터널	2018-11-29	20:54:29	05서7601	최영득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65	남산1호터널	2018-11-28	12:27:28	05우2456	공준호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66	남산3호터널	2018-11-29	10:26:50	07머1592	김옥영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길
67	남산3호터널	2018-11-29	16:05:06	08두0728	한송희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8길
68	남산3호터널	2018-11-26	17:36:34	08부1200	설화종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69	남산3호터널	2018-11-27	20:58:11	09로9286	윤영일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70	남산1호터널	2018-11-27	9:00:15	12거1606	차은협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1길
71	남산1호터널	2018-11-30	13:26:37	12노6847	엄현숙	1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62번길
72	남산3호터널	2018-11-28	11:37:17	12누6789	(주)유니크미디어	1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73	남산3호터널	2018-11-28	9:57:38	12보7440	주식회사 와이컴앤골프	1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74	남산3호터널	2018-11-28	8:14:13	12오6072	서진주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
75	남산3호터널	2018-11-26	12:18:56	15구1092	임아롱	5,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76	남산1호터널	2018-11-29	15:32:07	15두4639	(주)에스비지디앤아이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77	남산1호터널	2018-11-29	20:57:09	15버6652	이승길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78	남산1호터널	2018-11-29	15:16:03	15소2392	(주)킹카스포츠	1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79	남산1호터널	2018-11-28	12:55:33	16너7944	장정수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58번길
80	남산3호터널	2018-11-27	18:34:43	16도4105	RODRIGUEZ ERIN E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81	남산1호터널	2018-11-27	9:11:29	16주6017	박형옥	1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82	남산3호터널	2018-11-27	18:36:45	19누8591	김선영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83	남산1호터널	2018-11-30	13:51:37	20가6440	설효진	1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84	남산1호터널	2018-11-26	17:39:00	21수0938	서정원	10,000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85	남산1호터널	2018-11-27	20:47:43	22도5573	이동현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86	남산3호터널	2018-11-30	19:48:20	23누2232	박현종	10,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87	남산3호터널	2018-11-28	20:57:25	23두3290	김기준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1길
88	남산1호터널	2018-11-28	20:19:53	24가1722	강종희	5,000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1050번길
89	남산1호터널	2018-11-26	17:54:13	24너9788	이승환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91번길
90	남산1호터널	2018-11-26	15:21:49	27가7099	성상모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다길
91	남산1호터널	2018-11-29	20:32:57	28저7110	(주)헬레나플라워	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92	남산1호터널	2018-11-26	16:20:49	29부4727	홍기호	1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2길
93	남산3호터널	2018-11-29	11:30:24	31조2048	장성문	5,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서8길
94	남산1호터널	2018-11-29	14:51:53	34두0382	김화식	1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98번길
95	남산3호터널	2018-11-26	19:53:14	35도9809	이정환	10,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96	남산3호터널	2018-11-27	19:02:50	35도9809	이정환	10,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97	남산3호터널	2018-11-26	12:16:23	35도9809	이정환	10,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98	남산3호터널	2018-11-29	10:44:50	35수2053	조대형	10,000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낫질로
99	남산3호터널	2018-11-29	10:52:18	37러4076	배애경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길
100	남산1호터널	2018-11-27	13:14:13	38보7931	이규성	5,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101	남산1호터널	2018-11-30	13:01:45	39구7862	조성채	10,00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문화1길
102	남산1호터널	2018-11-28	17:27:35	42로9945	조상익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1길
103	남산3호터널	2018-11-29	19:03:45	42수2076	조숙희	1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198번길
104	남산1호터널	2018-11-29	20:21:48	43버3750	(주)엘리카	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105	남산1호터널	2018-11-28	16:12:28	45로3183	김진홍	10,000	경기도 하남시 위례광장로
106	남산3호터널	2018-11-28	19:48:32	45저5372	김우종	10,000	경기도 광명시 서원로
107	남산1호터널	2018-11-30	18:16:05	47러2170	주춘산	1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108	남산1호터널	2018-11-30	13:03:48	47오9655	김점옥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다길
109	남산3호터널	2018-11-29	20:28:29	49무2404	이미남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10	남산3호터널	2018-11-27	12:44:06	49버2617	전지원	10,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1길
111	남산1호터널	2018-11-30	20:54:37	50다3421	박종춘	5,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12	남산1호터널	2018-11-26	15:25:18	50오4605	황세준	5,000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13	남산3호터널	2018-11-28	9:59:28	54러3102	이난희	10,000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금당로
114	남산1호터널	2018-11-26	14:43:15	55다6152	김기생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15	남산1호터널	2018-11-27	15:04:16	59마4578	이성민	5,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16	남산3호터널	2018-11-29	18:33:48	59수2776	백기우	10,000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117	남산3호터널	2018-11-28	13:01:35	61거4446	박상민	1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118	남산1호터널	2018-11-30	13:43:02	62무9007	장영기	10,000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5길
119	남산1호터널	2018-11-27	7:19:50	64구4045	강혜진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120	남산1호터널	2018-11-30	9:13:27	66모8494	이강우	1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5번길
121	남산1호터널	2018-11-27	12:25:05	68로5052	김시복	1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0길
122	남산1호터널	2018-11-29	14:41:46	69서2907	홍가윤	1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23	남산1호터널	2018-11-23	14:20:55	02조3328	변기호	10,000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8번길
124	남산1호터널	2018-11-23	18:55:29	03저7343	박원순	1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198번길
125	남산1호터널	2018-11-16	14:13:41	05누0591	홍문기	1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26	남산3호터널	2018-11-16	13:01:40	05우2456	공준호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11번길
127	남산1호터널	2018-11-16	18:17:09	09누4527	하대식	1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1길
128	남산1호터널	2018-11-16	12:03:25	09루4701	양승국	1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92번길
129	남산1호터널	2018-11-23	10:21:39	11소6067	문봉찬	10,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
130	남산1호터널	2018-11-19	17:40:18	12부6542	정선교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131	남산1호터널	2018-11-16	17:37:44	13가2188	변지혜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2길
132	남산3호터널	2018-11-19	20:58:21	13루1779	곽남영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00길
133	남산1호터널	2018-11-20	14:20:34	14라7879	김형식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134	남산1호터널	2018-11-21	15:30:06	16러3145	김영민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135	남산3호터널	2018-11-23	15:27:32	18어6311	주식회사 제이알트레이드	1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36	남산3호터널	2018-11-22	18:37:27	20수5394	허나래	5,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길
137	남산3호터널	2018-11-21	10:34:40	20조9782	주)아인	5,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38	남산1호터널	2018-11-21	19:48:24	22무4255	조중배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39	남산1호터널	2018-11-21	20:12:18	25모3156	허지우	1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84번길
140	남산3호터널	2018-11-19	18:49:03	25서0913	신은지	1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41	남산1호터널	2018-11-22	17:01:50	26마4329	고주영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2	남산3호터널	2018-11-19	14:32:33	27가7099	성상모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다길
143	남산3호터널	2018-11-21	9:22:59	27두0379	차용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44	남산3호터널	2018-11-16	13:38:51	27저5854	DELION LUDOVIC JEAN LOUIS JEAN RENE JE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145	남산3호터널	2018-11-21	20:56:08	28다0464	이정열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46	남산3호터널	2018-11-23	18:32:34	28무6562	최성필	10,000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149번길
147	남산3호터널	2018-11-19	20:59:14	31어3119	최윤석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8길
148	남산3호터널	2018-11-20	19:50:14	32버1027	이시은	1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9	남산3호터널	2018-11-23	15:49:56	35다8984	안병길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5길
150	남산1호터널	2018-11-22	13:58:36	35러6458	김민권	10,000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방도길66번길
151	남산3호터널	2018-11-22	9:09:20	35어7643	박노일	1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152	남산1호터널	2018-11-19	12:24:25	36루5963	박화순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3	남산1호터널	2018-11-21	10:08:50	37고3332	정명란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154	남산3호터널	2018-11-22	20:13:09	41루8744	(주)아이렉스	1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89번길
155	남산1호터널	2018-11-19	20:19:02	42조8465	이정연	5,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남산1호터널	2018-11-22	19:27:50	43누9907	김태원	1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157	남산1호터널	2018-11-22	20:08:03	46도5373	승은비	1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158	남산1호터널	2018-11-16	16:01:06	46오9276	조민지	10,000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5길
159	남산1호터널	2018-11-19	9:31:15	48우2425	김동현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7길
160	남산1호터널	2018-11-23	12:01:05	49나0380	장병희	1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61	남산1호터널	2018-11-20	13:37:46	49부3434	윤주리	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62	남산1호터널	2018-11-19	15:09:48	50가0558	윤혜경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329번길
163	남산3호터널	2018-11-20	20:51:15	50조0584	윤대훈	10,0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49번길
164	남산1호터널	2018-11-22	18:30:45	53마1243	전찬웅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남산1호터널	2018-11-20	16:12:32	54수7108	이찬호	10,000	경기도 화성시 만년로915번길
166	남산3호터널	2018-11-19	12:04:26	55라5237	윤은구	10,000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167	남산3호터널	2018-11-21	17:02:50	55마9852	(주)에이엠에스	10,000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68	남산1호터널	2018-11-23	20:49:56	56로1751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주)	1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69	남산1호터널	2018-11-16	17:00:14	59오1880	곽청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70	남산1호터널	2018-11-19	17:15:38	60고9081	김혜린	10,000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2길
171	남산3호터널	2018-11-23	17:10:55	63로7967	이동룡	1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172	남산3호터널	2018-11-21	11:14:02	68노1754	안성준	10,0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111번길
173	남산3호터널	2018-11-16	16:24:56	68주6371	김경희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74	남산1호터널	2018-11-21	12:13:22	69누2617	정효영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30번길
175	남산1호터널	2018-11-16	9:48:52	경기49로9726	조미연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512번길
176	남산1호터널	2018-11-28	9:59:53	03누6778	윤형식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77	남산1호터널	2018-11-27	17:30:48	03소4212	임영호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78	남산1호터널	2018-11-27	18:11:38	07가7302	장래자	10,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79	남산3호터널	2018-11-28	14:30:09	07무0779	강현아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1번길
180	남산3호터널	2018-11-28	8:13:02	10호7971	(주)티앤비렌터카	1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81	남산3호터널	2018-11-27	13:37:02	12구3991	나원일	10,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82	남산1호터널	2018-11-27	13:31:12	12노6847	엄현숙	10,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62번길
183	남산3호터널	2018-11-27	16:56:17	16도4105	RODRIGUEZ ERIN E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84	남산3호터널	2018-11-28	9:59:50	16주3838	김난강	10,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85	남산3호터널	2018-11-26	10:39:19	17무1342	JI MINGFU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6길
186	남산3호터널	2018-11-30	13:38:03	19누7601	김승자	5,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87	남산1호터널	2018-11-28	14:40:55	20거4049	이담이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88	남산1호터널	2018-11-26	15:36:39	21루8824	윤홍필	1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0길
189	남산3호터널	2018-11-29	19:37:26	21머4388	한상희	5,0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190	남산1호터널	2018-11-27	8:11:30	22구4443	김준범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1길
191	남산1호터널	2018-11-30	18:39:33	23버2223	이한영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192	남산1호터널	2018-11-27	8:17:00	24너9788	이승환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91번길
193	남산1호터널	2018-11-26	20:00:39	28머1756	길정혁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3로64번길
194	남산1호터널	2018-11-29	16:05:35	28우9887	남해은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95	남산1호터널	2018-11-29	20:29:17	32루9256	송광호	5,000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84번길
196	남산3호터널	2018-11-28	20:45:42	33도3471	박금이	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6길
197	남산3호터널	2018-11-29	10:38:55	34마6937	삼풍이앤아이 (주)	1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194번길
198	남산1호터널	2018-11-26	16:16:23	38너1477	USUKHJARGAL BATCHUDUR	1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71길
199	남산1호터널	2018-11-29	17:15:07	45거7856	정옥희	1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150번길
200	남산1호터널	2018-11-26	9:39:00	45도9109	김정오	10,0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201	남산1호터널	2018-11-30	9:51:48	46호2108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02	남산3호터널	2018-11-29	15:30:16	49머9625	황문섭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03	남산1호터널	2018-11-29	15:38:21	50서9700	신경욱	10,00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3159번길
204	남산3호터널	2018-11-26	12:32:36	51저1861	황세연	5,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176번가길
205	남산1호터널	2018-11-30	15:04:48	53조2080	안강태	1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298번길
206	남산3호터널	2018-11-30	13:29:24	55가3621	정용현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1가길
207	남산3호터널	2018-11-29	10:24:55	56가5021	지유은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1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08	남산1호터널	2018-11-26	17:55:10	58누8436	김정옥	10,000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209	남산1호터널	2018-11-26	18:32:01	59서5750	손승미	1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107번길
210	남산3호터널	2018-11-30	14:34:27	61두6684	김남수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211	남산3호터널	2018-11-29	15:20:08	62가0655	장경열	10,000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212	남산1호터널	2018-11-30	11:57:52	62무9007	장영기	10,000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양5길
213	남산1호터널	2018-11-26	20:26:48	64구4045	강혜진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214	남산3호터널	2018-11-26	13:58:32	64호6262	씨앤에이치 프리미어렌탈(주)	1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15	남산1호터널	2018-11-28	15:27:52	65노2935	신영준	1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로 57번길
216	남산1호터널	2018-11-30	18:32:28	66무8820	김민기	10,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217	남산3호터널	2018-11-30	18:05:56	66수6808	유애신	10,00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218	남산1호터널	2018-11-19	18:26:51	13더3250	김소현	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219	남산1호터널	2018-11-19	18:39:34	62노7138	정혜진	1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220	남산3호터널	2018-11-21	20:13:19	01조6733	김신헌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6길
221	남산1호터널	2018-11-22	19:16:11	62루5052	성경숙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22	남산3호터널	2018-11-28	17:15:11	01가2018	박명선	10,0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샘골길
223	남산1호터널	2018-11-26	14:38:00	39무8475	주식회사 비전홀딩스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224	남산1호터널	2018-11-23	18:16:57	29호8262	비엠더블유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25	남산3호터널	2018-12-03	7:03:54	12오6072	서진주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가길
226	남산3호터널	2018-12-03	7:06:41	45서6568	정 미	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13다길
227	남산3호터널	2018-12-03	7:39:50	07모4196	신정현	1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228	남산1호터널	2018-12-03	12:00:04	전남33다9406	김정엽	1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상금길
229	남산1호터널	2018-12-03	12:17:28	35도9809	이정환	10,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30	남산1호터널	2018-12-03	15:06:12	59두3497	이남기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31	남산1호터널	2018-12-03	16:17:15	23도8000	정희자	10,000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동로35번길
232	남산1호터널	2018-12-03	16:18:00	36보3423	이혁진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3길
233	남산3호터널	2018-12-03	16:31:01	08로1999	배승민	1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36길
234	남산1호터널	2018-12-03	16:56:16	02조3328	변기호	10,000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8번길
235	남산3호터널	2018-12-03	17:28:42	49머9625	황문섭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36	남산1호터널	2018-12-03	20:01:49	65버1913	김희겸	10,0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45번길
237	남산3호터널	2018-12-03	20:07:17	18보8870	유병혁	1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2길
238	남산1호터널	2018-12-03	20:26:39	67너8436	(주)시즌투아이앤씨	5,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4길
239	남산1호터널	2018-12-03	20:31:37	35도9809	이정환	10,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240	남산1호터널	2018-12-03	20:47:38	35어8200	홍지현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1	남산3호터널	2018-12-04	8:31:14	30두6900	김인교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2	남산3호터널	2018-12-04	9:08:54	63가1760	허준성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56길
243	남산1호터널	2018-12-04	9:31:27	65모4214	배은일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44	남산3호터널	2018-12-04	9:44:17	69두2528	왕태현	1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45	남산1호터널	2018-12-04	10:01:17	01두3686	박경숙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46	남산1호터널	2018-12-04	10:29:55	53보0164	김미경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247	남산3호터널	2018-12-04	10:54:02	20다4834	(주)에이스조경	1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3길
248	남산1호터널	2018-12-04	11:54:26	17수4592	황효진	1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상태길
249	남산1호터널	2018-12-04	12:02:42	41수8393	정경오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50	남산1호터널	2018-12-04	12:03:04	66도5777	김민경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51	남산3호터널	2018-12-04	12:06:15	01하6910	(주) 금미렌트카	1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
252	남산1호터널	2018-12-04	12:15:41	30어1579	조성민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3길
253	남산1호터널	2018-12-04	13:06:26	64무3952	한신효	1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54	남산3호터널	2018-12-04	13:07:46	58마6084	주식회사 다빈치	10,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255	남산1호터널	2018-12-04	16:15:36	19누0549	장영칠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6길
256	남산3호터널	2018-12-04	17:44:44	19조8275	박선영	1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89번길
257	남산3호터널	2018-12-04	18:11:13	05고5027	최익진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7길
258	남산1호터널	2018-12-04	18:11:53	58모0140	신승열	10,000	경기도 부천시 하우로
259	남산1호터널	2018-12-04	18:43:38	69모1113	주식회사 제이엠캐피탈	10,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260	남산1호터널	2018-12-04	19:12:26	58무9578	이영복	1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10번길
261	남산3호터널	2018-12-04	19:20:48	46하8160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262	남산3호터널	2018-12-04	20:18:16	11로2336	주식회사 일이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63	남산1호터널	2018-12-04	20:41:37	15모9973	김귀현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4길
264	남산1호터널	2018-12-05	8:39:06	25우5064	문화연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65	남산3호터널	2018-12-05	11:45:24	04서6906	김영진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0길
266	남산1호터널	2018-12-05	11:48:29	56구0637	김한라	1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36번길
267	남산3호터널	2018-12-05	11:54:57	28어8447	정영민	10,000	경기도 부천시 심곡로10번길
268	남산3호터널	2018-12-05	12:11:46	57저5452	김아름	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269	남산3호터널	2018-12-05	12:12:19	51보4065	BATAA LKHAGVASUREN	10,00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618번길
270	남산1호터널	2018-12-05	12:57:20	30누1173	양효진	10,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271	남산1호터널	2018-12-05	13:01:40	37보3058	장보한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272	남산1호터널	2018-12-05	13:28:24	13머9176	강자영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273	남산3호터널	2018-12-05	17:29:26	39머2545	이진철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274	남산3호터널	2018-12-05	19:27:44	09모0158	공새롬	1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275	남산3호터널	2018-12-05	19:51:00	15모9973	김귀현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4길
276	남산1호터널	2018-12-05	19:58:47	08보1596	성춘화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77	남산1호터널	2018-12-05	20:51:45	36라4555	JIN RUZHONG	1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4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78	남산3호터널	2018-12-06	7:03:02	66모8479	오하영	1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4길
279	남산3호터널	2018-12-06	7:20:39	01서9386	권인정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280	남산1호터널	2018-12-06	8:15:21	04어9538	이재원	10,000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81	남산1호터널	2018-12-06	8:38:51	55나6480	최재원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19길
282	남산1호터널	2018-12-06	9:40:31	08저2933	김형수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길
283	남산3호터널	2018-12-06	10:05:13	20우9480	김지은	5,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76번길
284	남산3호터널	2018-12-06	10:43:04	37너4943	박수정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길
285	남산1호터널	2018-12-06	11:51:50	01노0612	이현우	5,000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219번길
286	남산3호터널	2018-12-06	12:15:12	16버4503	변민규	1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6길
287	남산3호터널	2018-12-06	13:12:16	46저0739	임욱근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88	남산1호터널	2018-12-06	13:57:56	62로4890	박현환	10,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로10번길
289	남산1호터널	2018-12-06	16:26:32	64구6928	손보중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290	남산3호터널	2018-12-06	17:26:58	04가6640	송기현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291	남산1호터널	2018-12-06	19:52:18	58가6021	이일준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7길
292	남산1호터널	2018-12-06	20:14:43	43오5302	김성은	1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293	남산1호터널	2018-12-06	20:18:09	17누8735	박영민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9길
294	남산3호터널	2018-12-06	20:44:45	50머4268	박근석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295	남산1호터널	2018-12-07	8:07:20	35나5462	김태우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296	남산1호터널	2018-12-07	8:24:41	49나1832	이철주	10,000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297	남산1호터널	2018-12-07	11:03:45	07러5369	PIAO LIANHUA	1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298	남산1호터널	2018-12-07	11:44:38	54마3004	윤영석	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99	남산3호터널	2018-12-07	12:16:01	45조6396	김희중	5,000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8번길
300	남산3호터널	2018-12-07	12:26:12	31누7362	주식회사 크레디아인터내셔널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25길
301	남산3호터널	2018-12-07	14:27:24	63어0857	김혜경	10,00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02	남산1호터널	2018-12-07	16:08:04	49소1584	조지운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03	남산1호터널	2018-12-07	16:18:01	01서8863	강완순	10,000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38번길
304	남산3호터널	2018-12-07	16:54:35	30도4487	남희우	10,00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305	남산1호터널	2018-12-07	17:17:36	서울41다7301	김학태	10,000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306	남산3호터널	2018-12-07	17:29:03	50로4753	이종탁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6나길
307	남산3호터널	2018-12-07	17:45:15	17수6320	임지용	1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길
308	남산1호터널	2018-12-07	17:47:19	08주7671	김영진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309	남산1호터널	2018-12-07	18:13:58	04버5132	BROWN, PARRIS BAILEY	10,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10	남산1호터널	2018-12-07	18:16:24	51보4065	BATAA LKHAGVASUREN	10,00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618번길
311	남산1호터널	2018-12-07	18:44:01	13로4233	장혜선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312	남산3호터널	2018-12-07	19:47:01	서울1드8711	최정희	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길
313	남산1호터널	2018-12-07	20:00:45	34마4663	김경일	5,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처인성로185번길
314	남산3호터널	2018-12-07	20:29:54	11보2396	김태희	1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69길
315	남산1호터널	2018-12-07	20:51:22	03노5078	조흥규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6	남산1호터널	2018-12-10	8:28:07	32루2535	박상진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317	남산1호터널	2018-12-10	8:37:40	48모0710	최경희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318	남산3호터널	2018-12-10	8:44:17	57어2266	송지헌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12길
319	남산3호터널	2018-12-10	8:48:15	50거7025	유병무	10,000	경기도 의정부시 중금로
320	남산1호터널	2018-12-10	9:03:45	04부0560	이재영	1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321	남산1호터널	2018-12-10	11:33:33	30라2340	TANG XINYU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가길
322	남산1호터널	2018-12-10	11:51:35	64모7572	신우철	1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323	남산1호터널	2018-12-10	13:44:59	42러5221	김용민	1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324	남산3호터널	2018-12-10	13:56:06	28루5005	전정순	1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25	남산1호터널	2018-12-10	14:08:30	42조5804	한인숙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326	남산3호터널	2018-12-10	15:06:32	19저5274	구본진	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327	남산1호터널	2018-12-10	15:31:16	48라8589	국제회개운동본부 (조항웅)	10,000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328	남산1호터널	2018-12-10	19:36:48	24버7812	장봉준	10,000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329	남산1호터널	2018-12-10	20:09:54	08조2518	배경덕	1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0길
330	남산1호터널	2018-12-10	20:27:47	65로4878	김선희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331	남산1호터널	2018-12-11	7:03:31	46머6310	김영일	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14길
332	남산1호터널	2018-12-11	7:28:07	56가0952	이형민	10,000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63번길
333	남산1호터널	2018-12-11	7:43:40	12조0171	이성철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334	남산3호터널	2018-12-11	9:53:21	63가7804	이정일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32번길
335	남산3호터널	2018-12-11	10:44:01	04누1705	양호영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36	남산1호터널	2018-12-11	10:47:12	04부0560	이재영	10,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337	남산1호터널	2018-12-11	11:04:00	29구3545	TAI XUANGUO	1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803번길
338	남산1호터널	2018-12-11	11:36:59	06마8373	이구노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6길
339	남산3호터널	2018-12-11	12:05:20	11오1527	(주)비우이엔씨	5,000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40	남산3호터널	2018-12-11	13:27:27	14저3430	LI IURII	10,00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341	남산3호터널	2018-12-11	14:52:04	55부1062	(주)성우상사	1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342	남산3호터널	2018-12-11	15:34:14	66구8353	한승훈	1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원로
343	남산1호터널	2018-12-11	15:36:51	29호1308	(주)플러스렌터카	1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44	남산1호터널	2018-12-11	16:38:27	34어3818	백기준	1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2길
345	남산3호터널	2018-12-11	18:02:32	47무7009	김영준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346	남산1호터널	2018-12-11	20:00:14	67노4735	임희수	10,000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
347	남산1호터널	2018-12-11	20:04:09	29구0369	윤현태	10,000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345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48	남산1호터널	2018-12-11	20:35:17	32머9721	감정한	1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6길
349	남산1호터널	2018-12-11	20:39:21	01수0249	최정민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40길
350	남산1호터널	2018-12-11	20:51:21	16소9930	조석휘	10,0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351	남산3호터널	2018-12-11	20:54:09	01모8600	지투건설(주)	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52	남산1호터널	2018-12-12	7:15:16	31나8916	이병표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8가길
353	남산1호터널	2018-12-12	7:44:50	42마1194	최승희	5,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19번길
354	남산1호터널	2018-12-12	10:10:05	61버2064	김병춘	10,000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중판3길
355	남산1호터널	2018-12-12	11:10:44	62거8449	이재은	1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1길
356	남산1호터널	2018-12-12	11:47:32	05러3999	FARAHAT HANI IBRAHIM ABDELMOTTALEB	10,000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길
357	남산1호터널	2018-12-12	14:02:02	42마1194	최승희	5,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19번길
358	남산1호터널	2018-12-12	16:12:52	27모7308	길은신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1길
359	남산3호터널	2018-12-12	16:38:37	67나1987	박진택	1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2771번길
360	남산3호터널	2018-12-12	16:48:10	54거0708	WYATT LEONARD E	10,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61	남산3호터널	2018-12-12	17:13:03	57버9478	이숙빈	10,00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함영골길
362	남산3호터널	2018-12-12	17:14:22	43노3335	이정평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길
363	남산1호터널	2018-12-12	17:58:00	26주3660	이순이	1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8길
364	남산3호터널	2018-12-12	18:08:17	69호6390	(주)한진	1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
365	남산1호터널	2018-12-12	18:31:06	47누2418	박상봉	5,000	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366	남산3호터널	2018-12-12	19:07:08	13부1672	임찬호	1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3안길
367	남산3호터널	2018-12-12	19:51:55	37저8855	코리아타임즈투데이 주식회사	10,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상태길68번길
368	남산1호터널	2018-12-12	20:17:37	45로6657	김성열	10,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369	남산3호터널	2018-12-12	20:44:14	38러8546	고진순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8가길
370	남산1호터널	2018-12-12	20:46:23	12누8378	서선미	5,000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나루터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71	남산1호터널	2018-12-13	7:11:23	13부5703	강환조	5,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372	남산1호터널	2018-12-13	7:23:44	36저4748	박천성	1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0길
373	남산1호터널	2018-12-13	10:40:00	25가2214	케이티노동조합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74	남산1호터널	2018-12-13	11:50:55	40어2085	임재균	10,000	전라북도 군산시 양안로
375	남산1호터널	2018-12-13	14:09:47	27조3155	지진섭	1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76	남산3호터널	2018-12-13	15:41:06	45머4635	이순용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377	남산3호터널	2018-12-13	15:49:31	27조3155	지진섭	1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73번길
378	남산1호터널	2018-12-13	15:55:55	64수1504	최경숙	10,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3로
379	남산3호터널	2018-12-13	16:13:23	20호7223	(주)포시즌렌트카	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380	남산3호터널	2018-12-13	16:53:11	01가6469	이영미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1길
381	남산1호터널	2018-12-13	17:36:41	05나0292	이후창	10,000	경기도 과천시 부림로
382	남산3호터널	2018-12-13	17:46:06	28모0532	박래옥	1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394번길
383	남산1호터널	2018-12-13	18:01:53	47모2927	비엠씨방송문화콘텐츠협동조합	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384	남산1호터널	2018-12-13	18:06:27	14모6361	권구덕	10,00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85	남산1호터널	2018-12-13	20:03:34	15너0648	박영보	5,00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386	남산1호터널	2018-12-14	10:32:09	59구2080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1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87	남산3호터널	2018-12-14	12:12:00	10누6793	네트웍명진(주)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388	남산3호터널	2018-12-14	16:35:48	25오5475	(주)동양골프	5,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89	남산3호터널	2018-12-14	18:10:53	66호8097	푸른솔관광 주식회사	1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390	남산3호터널	2018-12-14	7:09:34	51무3068	김순덕	10,000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59번길
391	남산1호터널	2018-12-14	9:03:24	22두8650	황윤옥	1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6길
392	남산3호터널	2018-12-14	10:54:45	34거8399	사단법인 창랑 장택상선생 기념사업회	5,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6길
393	남산1호터널	2018-12-14	10:57:52	61거0122	방춘자	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다길
394	남산3호터널	2018-12-14	11:05:43	68주6197	이정숙	1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95	남산3호터널	2018-12-14	12:39:51	65너8431	조영훈	1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5길
396	남산3호터널	2018-12-14	14:46:00	36저3721	민재용	1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
397	남산3호터널	2018-12-14	14:56:00	55서1373	송진호	10,000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1길
398	남산1호터널	2018-12-14	16:19:14	55부0135	윤정호	1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7길
399	남산1호터널	2018-12-14	16:29:57	49다4652	임진혁	10,000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400	남산1호터널	2018-12-14	16:41:58	09보2825	이해순	10,000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401	남산3호터널	2018-12-14	17:07:42	15보0380	강성근	1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402	남산1호터널	2018-12-14	17:07:43	14수8873	김준형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1길
403	남산1호터널	2018-12-14	18:26:38	46소1369	장지용	1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404	남산3호터널	2018-12-14	19:01:43	55라6377	박노일	10,000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405	남산3호터널	2018-12-14	19:16:52	51라9633	이지웅	10,000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821번길
406	남산1호터널	2018-12-14	19:32:49	14다2158	권현정	1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2길
407	남산1호터널	2018-12-14	20:11:17	62수0750	이재용	10,000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408	남산3호터널	2018-12-14	20:27:34	36나1104	이청우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09	남산1호터널	2018-12-14	20:48:10	16조7562	황영순	1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410	남산1호터널	2018-07-10	18:28:35	46하3958	JIN JHE	10,000	경기 시흥시 정왕동
411	남산1호터널	2018-11-20	19:31:26	21호5295	시월애(김호실)	10,0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길
412	남산1호터널	2018-11-22	18:01:54	69하9208	김신희	5,000	전남 광양시 중동
413	남산3호터널	2018-11-28	13:47:41	21하7975	(주)토니모리	10,000	서울서초구 남부순환로
414	남산1호터널	2018-11-30	19:23:38	27라2201	권혁구	10,000	충북 제천시 장락로
415	남산1호터널	2018-11-16	11:33:51	21호1648	주식회사 올쏘웨이	10,0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길
416	남산1호터널	2018-11-23	8:36:02	21호6485	이형재	10,000	경기도 파주시 직지길
417	남산3호터널	2018-12-04	14:32:37	28루5113	김병주	1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8	남산1호터널	2018-12-05	9:33:16	61호3661	씨티그룹글로벌 마켓증권	10,000	서울 중구 청계천로
419	남산1호터널	2018-12-13	11:38:00	48호5004	이영옥	10,000	경기 광주시 목동길46번길
420	남산3호터널	2018-12-07	18:11:14	01하1994	조현	10,0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21	남산1호터널	2018-11-19	19:55:15	57호6346	송경원	10,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422	남산3호터널	2018-11-20	18:20:59	57호6346	송경원	10,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23	남산1호터널	2018-12-07	20:47:19	59호9976	성정선	10,000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424	남산1호터널	2018-12-04	20:26:08	34호9378	김주안	10,00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9길
425	남산1호터널	2018-12-05	12:22:40	59호6729	박현정	10,000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426	남산3호터널	2018-12-13	20:14:11	34호9423	김혁	10,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27	남산1호터널	2018-12-04	16:23:06	34호9378	김주안	10,00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9길
428	남산3호터널	2018-12-19	7:02:28	09마2616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429	남산1호터널	2018-12-18	19:00:35	13호2169	㈜ 마라톤엔터테인먼트	10,000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8길
430	남산1호터널	2018-12-19	12:48:45	20호9084	(주)대유산업	1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31	남산1호터널	2018-12-19	16:46:23	40하1668	박형준	10,000	서울 관악구 국회단지8길
432	남산1호터널	2018-12-19	13:15:27	46호1701	이상국	10,000	경기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433	남산1호터널	2018-12-21	12:36:52	54가4625	(주)지와이커머스	10,000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434	남산3호터널	2018-12-19	9:49:20	57호9402	롯데칠성음료(주)	10,00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	남산1호터널	2018-12-20	20:31:50	62하8334	(주)호반호텔앤리조트	10,000	서울 강남구 논현로
436	남산1호터널	2018-12-18	15:13:06	64호3204	포워드메티칼(윤상준)	10,000	서울 관악구 봉천로23다길
437	남산3호터널	2018-12-21	20:53:59	65호8377	버슘머트리얼즈코리아	10,000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438	남산3호터널	2018-12-17	15:30:37	66하8537	김재근	10,00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39	남산1호터널	2018-12-28	16:18:26	30호5021	오경하	10,0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440	남산3호터널	2018-12-28	11:31:19	53하6861	김병국	10,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41	남산1호터널	2018-12-31	16:48:44	54하8904	제이엘약품(김선이)	10,000	서울 성북구 돈암동
442	남산3호터널	2018-12-26	15:59:09	61하9108	최호진	10,000	서울 송파구 원례광장로
443	남산3호터널	2018-12-24	16:10:09	65하3728	(주)미추홀마을	10,000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로
444	남산1호터널	2018-12-28	20:45:54	69하8888	(주)한성	1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445	남산3호터널	2018-12-20	20:13:58	01하1256	김희남	10,000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윤보선로285번길
446	남산1호터널	2018-12-20	14:10:46	20호1936	진장원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447	남산1호터널	2018-12-17	12:15:00	46호3349	주식회사 제이제이마스터	10,000	대전 서구 도안북로
448	남산1호터널	2018-12-21	15:25:04	63호2779	(주)뉴메가코퍼레이션	10,000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
449	남산3호터널	2018-12-17	19:03:09	65호3427	엄철민	10,000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62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50	남산3호터널	2018-12-31	19:42:06	07더6264	(주)이노션	10,000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1	남산1호터널	2018-12-31	17:43:05	18호4124	주식회사 브이온	10,000	서울 서초구 효령로
452	남산3호터널	2018-12-27	20:48:06	38우9831	사파리엠(이태웅)	10,000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453	남산3호터널	2018-12-26	14:34:44	43하1489	(주)구디자인	10,0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54	남산1호터널	2018-12-27	13:52:36	48호1595	(주)기업금융센타	10,000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55	남산3호터널	2018-12-24	10:17:38	52호5678	주식회사 화음	10,000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56	남산3호터널	2018-12-28	14:56:17	59호1499	최보경	10,000	대전 대덕구 남경마을로15번길
457	남산3호터널	2018-12-26	15:48:16	65하8240	양명식	10,000	서울 강서구 화곡로39길
458	남산1호터널	2018-12-28	19:28:40	68호5110	함현우	10,000	서울 강서구 마곡동
459	남산1호터널	2018-12-17	12:38:14	46호3349	주식회사 제이제이마스터	10,000	대전 서구 도안북로
460	남산1호터널	2018-12-24	17:14:23	57하8793	최형락	10,000	인천 서구 가석로
461	남산1호터널	2018-11-19	14:25:08	36호3862	LI HAIL IAN	10,000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39번길
462	남산1호터널	2018-12-06	13:11:29	05조4801	주식회사 선진모터스	10,000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63	남산3호터널	2018-12-04	17:40:16	12노2353	주식회사 에이치포에이치홀딩스 (허석준)	10,000	서울 종로구 평창13길
464	남산3호터널	2018-12-07	17:55:18	45가7964	홍대칼국수와 족발 사당역점(정의경)	10,000	서울 서초구 방대로45길
465	남산3호터널	2018-12-11	13:47:17	21누4777	아루이엔지(주)	10,000	서울 강남구 헌릉로569길
466	남산3호터널	2018-12-12	9:08:56	39오7373	최재민	10,000	서울 서초구 서운로
467	남산1호터널	2018-12-12	12:18:03	45오0361	이용수	10,000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468	남산1호터널	2018-12-04	10:42:58	12노2353	주식회사 에이치포에이치홀딩스 (허석준)	10,000	서울 종로구 평창13길
469	남산1호터널	2018-12-18	10:34:08	01고5555	어드레스머렐(김정준)	10,00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5길
470	남산3호터널	2018-12-20	7:20:49	06호5023	김공주	1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2동
471	남산3호터널	2018-12-20	7:08:54	09하8446	콩(공현정)	10,000	인천 미추홀구 주안중로
472	남산3호터널	2018-12-18	20:02:50	15마3589	김민정	10,000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473	남산3호터널	2018-12-21	8:04:30	15호9150	볼보5555	10,000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2길
474	남산3호터널	2018-12-21	14:19:36	27하8007	(주)우리은행(손태승)	10,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
475	남산1호터널	2018-12-18	15:59:49	39호7078	최정현	10,000	서울 강남구 연삼로12길
476	남산1호터널	2018-12-21	16:28:22	51호7357	XU YINGMEI	10,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77	남산3호터널	2018-12-19	15:52:56	54수6651	임경미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78	남산1호터널	2018-12-19	13:46:15	60하2449	정철웅	10,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31번길
479	남산1호터널	2018-12-18	17:42:15	64하8667	(주)동방지앤비(백인호)	10,000	경기 안성시 대덕면 무능로
480	남산3호터널	2018-12-28	20:10:45	09호9449	김시완	10,000	광주시 북구 양산로
481	남산3호터널	2018-12-26	12:54:25	14더0789	이종남	10,000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무드리2길
482	남산1호터널	2018-12-31	19:53:31	34호9378	김주안	10,00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9길
483	남산1호터널	2018-12-26	15:06:49	39하4599	초원양꼬치	10,00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484	남산1호터널	2018-12-31	17:35:24	45하1160	(주)힌앤하이	10,00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85	남산1호터널	2018-12-31	18:42:06	55호2233	최명철	10,000	서울시 관악구 승방4길
486	남산3호터널	2018-12-18	15:12:20	09호4035	엠팩토리(김미선)	5,000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12길
487	남산1호터널	2018-12-19	20:52:56	39하3906	(주)와이티엔	10,00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488	남산3호터널	2018-12-19	20:44:04	43보5283	김성희	1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89	남산3호터널	2018-12-20	9:22:11	56호8137	(주)에스알지코리아	10,000	서울 서대문구 성신로
490	남산3호터널	2018-12-18	15:16:19	59하1622	(주)주원엔지니어링	1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주택로18번길
491	남산1호터널	2018-12-20	15:39:09	60하3454	(주)네오위드넷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492	남산3호터널	2018-12-31	16:41:50	05가0999	디이시스주식회사	10,000	경기 김포시 대곶면 삭시갈마로
493	남산1호터널	2018-12-27	15:18:52	15호1998	동그라미푸드 주식회사	10,000	서울 강북구 덕릉로
494	남산1호터널	2018-12-24	17:35:26	39하2245	(주)서원솔루션	10,0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8길
495	남산3호터널	2018-12-24	15:58:27	39하4599	초원양꼬치	10,00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496	남산1호터널	2018-12-27	20:40:42	39하8727	이근수	10,000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497	남산3호터널	2018-12-24	14:29:41	45하6161	이정원	10,000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10길
498	남산1호터널	2018-12-28	15:20:42	59호3705	태광식	10,00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499	남산3호터널	2018-12-17	12:17:21	59하1264	장효원	1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500	남산3호터널	2018-12-18	20:11:47	45하7114	홈앤서비스 주식회사	10,000	서울 중구 퇴계로
501	남산1호터널	2019-01-03	18:42:21	12호4644	LI CHENG LAI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다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02	남산1호터널	2019-01-04	8:49:31	12호4644	LI CHENG LAI	1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다길
503	남산1호터널	2019-01-04	7:20:09	14호1015	이용봉	10,000	서울 강서구 강서로56나길
504	남산3호터널	2019-01-07	16:58:14	20호5657	윤원희	10,000	서울시강동구아리수로
505	남산1호터널	2019-01-03	17:39:59	27보0396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주)	1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도하길
506	남산3호터널	2019-01-02	19:00:40	32호5374	아폴로트레이딩코리아 주식회사	10,000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3길
507	남산1호터널	2019-01-08	13:39:52	34호7494	진장원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08	남산3호터널	2019-01-03	17:59:36	42하3247	피플푸드(우수정)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09	남산1호터널	2019-01-03	11:41:30	44호8851	정안세무법인	10,000	서울 중구 충무로
510	남산1호터널	2019-01-02	17:03:00	53하5442	주식회사 엘엠지코리아	10,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일로
511	남산3호터널	2019-01-02	9:16:25	63호1315	신나은	5,0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512	남산1호터널	2019-01-03	17:58:34	69허1320	장성근	10,000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길
513	남산1호터널	2019-01-15	11:16:34	20호4710	남태현	10,000	서울 중구 동호로7길
514	남산3호터널	2019-01-11	20:56:01	28호9788	박광천	10,000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515	남산1호터널	2019-01-11	20:20:21	38호6676	장석진	10,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170번길
516	남산1호터널	2019-01-15	15:51:07	40하3229	이승엽	10,000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남산1호터널	2019-01-15	9:29:37	46하1564	이필열	10,000	서울 도봉구 도봉로149길
518	남산1호터널	2019-01-10	20:53:05	46호3875	주식회사 케이티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19	남산1호터널	2019-01-14	7:22:15	67하4124	에이치엠디(박이안)	10,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520	남산3호터널	2019-01-04	18:53:04	16허2619	김인태	10,000	대구시 남구 봉덕로
521	남산3호터널	2019-01-04	16:01:58	20호7360	탁종수	10,000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22	남산3호터널	2019-01-07	13:11:36	21호1242	(주)미광드림	10,000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170번길
523	남산3호터널	2019-01-03	19:50:52	38호3160	박정태	1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임산로427번길
524	남산3호터널	2019-01-07	19:11:46	44호2080	한경환	10,00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525	남산3호터널	2019-01-04	19:22:56	49더1179	피에이씨(박혜경)	10,000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526	남산1호터널	2019-01-04	20:32:47	50하6397	박성현	1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527	남산1호터널	2019-01-04	7:40:19	63하5356	박찬우	10,000	서울 강남구 언주로138길
528	남산3호터널	2019-01-07	17:12:46	67하4194	명한나	10,00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529	남산1호터널	2019-01-07	17:33:15	69호1491	조민형	1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530	남산3호터널	2019-01-10	16:49:38	20호4728	김다연	10,000	울산 울주군 태화8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31	남산3호터널	2019-01-10	12:24:32	40하1611	정석순	10,000	전라남도 순천시 상인제1길
532	남산1호터널	2019-01-10	10:16:38	51하9731	방승현	10,000	서울 강남구 학동로
533	남산1호터널	2019-01-10	9:32:08	61하4923	(주)강산이엔지	10,000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라길
534	남산1호터널	2019-01-14	20:45:51	63호1051	롯데칠성음료(주)	10,00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35	남산3호터널	2019-01-09	19:34:27	63호1950	JIN LINGJUN	10,00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1
536	남산3호터널	2019-01-10	16:10:42	65하7527	(주)코리아스크린	10,000	서울 강남구 삼성로75길
537	남산3호터널	2019-01-10	12:50:54	65하7527	(주)코리아스크린	10,000	서울 강남구 삼성로75길
538	남산3호터널	2019-01-09	18:59:44	65하9309	주식회사 케이티	1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39	남산1호터널	2019-01-15	18:46:12	63호8189	오성호	10,000	서울 강남구 논현로119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10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에 의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의견제출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3인 탑승차량, 장애인 차량, 공무(보도용)차량, 저공해/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 등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6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면제 혹은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인터넷 : www.sisul.or.kr 접속 후 교통사업 → 기타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혼잡통행료 의견제출 클릭·작성
   - 팩스 : 02-756-1398　※ 성명, 차량번호, 일자, 사유, 탑승자 연락처 등 필요
   -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	남산3호터널	2019-02-15	18:20:27	01고0348	홍소현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일동로
2	남산3호터널	2019-02-15	20:43:55	01저3278	박승일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	남산3호터널	2019-02-11	10:51:52	02두6117	산은캐피탈(주)	8,000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4	남산1호터널	2019-02-01	14:22:00	02라2800	서원현	8,000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5	남산1호터널	2019-02-13	19:58:08	02마3435	황혜준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6	남산3호터널	2019-02-07	12:03:37	02오4903	장규호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7	남산1호터널	2019-02-15	9:40:30	03구1004	박현미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8	남산3호터널	2019-02-11	11:33:10	03허5870	(주) 금성	8,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화합로
9	남산3호터널	2019-02-15	7:04:02	04주6552	최영희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나길
10	남산1호터널	2019-02-08	13:43:48	05거9263	김민정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2길
11	남산3호터널	2019-02-08	18:59:05	05너7470	강대효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12	남산3호터널	2019-02-07	16:17:28	05저4331	조환준	8,000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13	남산1호터널	2019-02-12	7:55:20	06로6363	김재곤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4	남산1호터널	2019-02-14	15:42:59	06수4042	오장혁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5	남산3호터널	2019-02-12	16:40:49	07모4528	김영희	8,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가청로
16	남산3호터널	2019-02-14	10:40:30	07보0477	노주영	8,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6길
17	남산1호터널	2019-02-08	19:23:48	07수6403	김정헌	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18	남산3호터널	2019-02-08	11:18:42	08다6223	최혜진	8,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46번길
19	남산1호터널	2019-02-14	7:11:16	08로0933	김은주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20	남산1호터널	2019-02-14	7:12:00	08부1386	홍정숙	8,000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21	남산1호터널	2019-02-13	19:22:17	09모1961	(주)뉴미라코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22	남산1호터널	2019-02-15	7:27:07	10러6950	김창식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3	남산3호터널	2019-02-01	11:08:44	10무6883	이종훈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4	남산3호터널	2019-02-13	17:08:22	11라0628	박노항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천길
25	남산1호터널	2019-02-07	19:14:37	11머4833	한강일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	남산3호터널	2019-02-07	7:13:33	11조5338	안진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9길
27	남산1호터널	2019-02-11	12:03:29	12노9921	구본환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6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8	남산1호터널	2019-02-11	20:43:40	12머6649	주식회사 네비아뷰틱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74길
29	남산1호터널	2019-02-07	14:34:47	12우9476	권성진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다길
30	남산3호터널	2019-02-01	13:38:49	13가8969	홍성준	8,000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1	남산3호터널	2019-02-15	11:17:15	14너9205	권태용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32	남산1호터널	2019-02-14	18:33:16	14어6336	이종형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길
33	남산1호터널	2019-02-15	12:20:55	15고7354	(주)케이이씨씨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9길
34	남산3호터널	2019-02-08	14:06:16	15머7843	서태준	4,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5	남산3호터널	2019-02-07	10:26:17	15모8388	주식회사 이엘테크	8,000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로73번길
36	남산3호터널	2019-02-15	16:04:44	15부4886	고병문외1(고성기)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4길
37	남산3호터널	2019-02-01	19:11:05	15소7017	김현순	8,000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38	남산1호터널	2019-02-11	16:56:34	15오9125	김지훈	8,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84번길
39	남산1호터널	2019-02-08	10:58:22	16루9078	홍형기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5길
40	남산3호터널	2019-02-12	7:00:58	16부9450	홍지원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41	남산1호터널	2019-02-15	13:08:49	17구5499	이선영	8,000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42	남산3호터널	2019-02-11	16:19:06	17다8024	이윤석	8,000	인천광역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43	남산1호터널	2019-02-07	14:32:05	17더0194	신동훈	8,000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44	남산1호터널	2019-02-07	17:39:52	17수1838	강석준	4,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3번길
45	남산3호터널	2019-02-13	7:07:03	19나2890	오창규	8,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46	남산1호터널	2019-02-12	17:49:13	19버5507	(주)올윈웨어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47	남산1호터널	2019-02-14	20:52:22	20저0642	강지훈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48	남산3호터널	2019-02-15	8:00:45	21더5718	ZHENG HAISONG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49	남산1호터널	2019-02-01	10:13:54	21무5272	정경범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38길
50	남산3호터널	2019-02-08	16:17:29	22고0641	(주)농심기획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1	남산1호터널	2019-02-07	8:59:11	22마7444	(주)미림	8,000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52	남산1호터널	2019-02-01	8:08:32	24라6540	김기범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53	남산1호터널	2019-02-15	11:50:07	24우5237	우영태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4길
54	남산3호터널	2019-02-15	20:24:33	25마2946	김영권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55	남산3호터널	2019-02-13	19:23:33	25서8375	황찬주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6	남산1호터널	2019-02-13	20:17:16	26더9635	이종근	8,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79번길
57	남산3호터널	2019-02-15	11:41:39	26라4290	정말임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58	남산3호터널	2019-02-08	17:02:43	26로1721	고미림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59	남산3호터널	2019-02-01	19:48:16	26오0762	이미자	8,000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60	남산3호터널	2019-02-11	16:13:48	27고5981	이정희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61	남산3호터널	2019-02-01	20:47:05	27모0404	박유환	8,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115번길
62	남산1호터널	2019-02-13	7:11:33	27버7666	(주)씨이씨코리아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63	남산1호터널	2019-02-14	14:18:48	27우4614	이영민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64	남산3호터널	2019-02-08	18:48:50	28도1984	이명구	8,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65	남산3호터널	2019-02-08	16:12:10	28머1714	서대현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6	남산3호터널	2019-02-08	20:56:03	28부0650	김애희	8,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67	남산3호터널	2019-02-07	8:35:19	28우4373	박재연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8	남산1호터널	2019-02-01	14:41:18	28주0796	최성규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69	남산1호터널	2019-02-08	7:06:18	29라5914	유성건설(주)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50길
70	남산1호터널	2019-02-14	19:45:13	29오8009	이우종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
71	남산1호터널	2019-02-15	11:05:24	30도6226	이광준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353번길
72	남산3호터널	2019-02-13	20:07:23	31너8404	반상우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2길
73	남산1호터널	2019-02-14	18:08:50	31두7336	임석우	8,000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74	남산3호터널	2019-02-07	10:22:12	31어1338	강가현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75	남산1호터널	2019-02-14	10:17:44	32러4027	정영민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76	남산3호터널	2019-02-01	13:33:53	33두7995	이석윤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7	남산3호터널	2019-02-13	17:13:42	33오1393	정재춘	8,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5번길
78	남산1호터널	2019-02-11	7:48:41	33저0972	윤준혁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79	남산1호터널	2019-02-08	15:44:53	35누0799	(주)대승사현	8,000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현로
80	남산3호터널	2019-02-11	8:26:36	35머6600	양태영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81	남산3호터널	2019-02-15	13:09:15	36라6442	신현철	8,000	경기도 광명시 연서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82	남산3호터널	2019-02-08	11:22:51	36버3764	주식회사 서진홀딩스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83	남산3호터널	2019-02-11	11:09:38	37거3747	김수빈	8,000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84	남산3호터널	2019-02-12	16:25:46	37고3756	이광복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5	남산1호터널	2019-02-12	16:19:11	37구3844	박재홍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86	남산3호터널	2019-02-15	12:30:37	37두7514	박기열	8,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87	남산3호터널	2019-02-12	10:57:45	37러4076	배애경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길
88	남산3호터널	2019-02-07	13:17:27	37러9801	이상헌	4,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39가길
89	남산1호터널	2019-02-11	15:20:52	37보5368	민웅기	8,00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화동로
90	남산1호터널	2019-02-13	17:14:18	37서8000	강지해	8,000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91	남산3호터널	2019-02-13	20:49:39	38두3085	우성진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92	남산1호터널	2019-02-08	14:48:53	38우7209	박영자	4,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93	남산3호터널	2019-02-07	20:05:27	39부7222	정규창	8,000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94	남산3호터널	2019-02-07	19:02:35	40도0824	이승아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95	남산1호터널	2019-02-07	12:22:49	40버7570	주해붕	8,0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11번길
96	남산1호터널	2019-02-13	16:06:32	41누8462	김태형	8,000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97	남산3호터널	2019-02-08	12:53:07	41서1285	SUN SHUANGCHENG	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8	남산3호터널	2019-02-01	20:28:09	41우6218	박승기	8,000	경기도 의왕시 위인로
99	남산1호터널	2019-02-07	15:42:00	42더8487	㈜제이스타일 코리아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100	남산3호터널	2019-02-11	7:51:39	42두6046	이종필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26길
101	남산1호터널	2019-02-15	20:50:48	42모2950	이진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02	남산1호터널	2019-02-08	8:43:10	42버7871	음성군수(회계과)	8,00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03	남산3호터널	2019-02-15	19:33:21	42어5464	남보성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4	남산1호터널	2019-02-08	17:04:01	43저8409	한후남	8,000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태2길
105	남산3호터널	2019-02-15	18:08:12	45나9134	강옥순	8,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로41번길
106	남산3호터널	2019-02-14	19:10:29	45다6168	송은정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07	남산3호터널	2019-02-14	11:16:29	45두3373	나웅선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108	남산1호터널	2019-02-14	17:36:00	45로7983	신영미	8,000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109	남산1호터널	2019-02-07	17:02:26	45머3797	이종진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10	남산3호터널	2019-02-13	16:48:59	46오1984	김진훈	8,000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11	남산1호터널	2019-02-11	7:31:28	47구7137	(주)성일산업개발	8,00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12	남산3호터널	2019-02-11	11:41:25	47라4735	표용안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113	남산1호터널	2019-02-15	12:47:03	47마8570	주식회사 무진테크	8,000	경기도 군포시 농심로
114	남산1호터널	2019-02-11	7:15:15	48고4167	권구순	4,00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신길
115	남산3호터널	2019-02-07	16:53:10	48더0473	박준혁	8,0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남산1호터널	2019-02-01	19:10:22	48보7046	정세영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117	남산1호터널	2019-02-14	18:50:39	50더0161	조정화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18	남산3호터널	2019-02-12	16:12:15	50러9799	박무영	8,0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박달골길
119	남산3호터널	2019-02-15	19:49:06	51부9544	유근우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길
120	남산3호터널	2019-02-08	8:21:05	51주4819	심금옥	8,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5나길
121	남산3호터널	2019-02-12	8:16:40	51주4819	심금옥	8,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5나길
122	남산3호터널	2019-02-07	18:17:35	52보8435	안성준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5길
123	남산1호터널	2019-02-08	18:23:49	52주0648	송정섭	8,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24	남산3호터널	2019-02-12	14:30:33	53머1821	REN XIANGHAO	8,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25	남산3호터널	2019-02-15	18:50:32	53소6103	이종철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12길
126	남산3호터널	2019-02-11	7:38:09	53조7772	장중렬	8,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127	남산1호터널	2019-02-01	12:44:36	53주1889	박상현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128	남산3호터널	2019-02-13	20:32:19	54거9245	윤상호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29	남산3호터널	2019-02-11	15:15:15	54로0722	박시예	8,000	경상남도 진주시 대밭골로
130	남산3호터널	2019-02-15	12:44:18	54마8235	박충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31	남산1호터널	2019-02-01	9:31:14	54버9753	마크주어소시에트(주)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132	남산3호터널	2019-02-15	17:29:53	55구3908	유한회사 남성자동차공업사	8,000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133	남산1호터널	2019-02-08	17:57:27	55도2681	이재성	8,000	경기도 화성시 탄요1길
134	남산3호터널	2019-02-15	17:53:52	55마1747	(주)행복예감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35	남산1호터널	2019-02-08	19:27:37	55모6982	김선배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136	남산3호터널	2019-02-14	14:48:28	56러4004	김혜영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독주길
137	남산3호터널	2019-02-01	10:32:17	56주0545	㈜커뮤니케이션우디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138	남산3호터널	2019-02-11	16:31:39	57고1053	신진호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14길
139	남산3호터널	2019-02-15	14:54:02	57나9770	윤미진	8,00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40	남산1호터널	2019-02-07	16:53:55	57로0159	이재돈	8,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141	남산1호터널	2019-02-14	19:42:19	57어2349	한승수	8,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13번길
142	남산3호터널	2019-02-08	19:47:39	58가7266	이상도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143	남산3호터널	2019-02-12	9:29:17	58머4848	조승원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44	남산1호터널	2019-02-01	8:35:20	58버6688	황윤필	8,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145	남산3호터널	2019-02-12	14:07:39	58소0465	PAN JIANXU	8,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146	남산3호터널	2019-02-15	15:46:36	58오9275	노경일	8,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63번길
147	남산1호터널	2019-02-14	17:28:28	58우7341	권기호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48	남산3호터널	2019-02-12	12:11:16	59두0178	주식회사 알리트레이딩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
149	남산3호터널	2019-02-08	7:16:33	59보2061	이소미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50	남산1호터널	2019-02-15	17:21:50	59조1751	이성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5길
151	남산1호터널	2019-02-01	20:44:16	60오6621	김은실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52	남산1호터널	2019-02-07	18:22:42	60저2754	황근연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153	남산3호터널	2019-02-12	12:12:37	61어3421	김나경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54	남산3호터널	2019-02-11	12:24:43	61어3421	김나경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55	남산1호터널	2019-02-15	14:13:16	62머7247	오윤선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56	남산1호터널	2019-02-01	7:09:01	64보0709	강성관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157	남산3호터널	2019-02-12	9:38:48	64우5529	법무법인 유스트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58	남산3호터널	2019-02-01	10:20:44	65나1505	김진수	8,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5길
159	남산1호터널	2019-02-07	19:37:25	65더2127	김제록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80길
160	남산1호터널	2019-02-08	18:13:43	65수5855	고송이	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61	남산1호터널	2019-02-08	11:11:08	66너1412	임주리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길
162	남산3호터널	2019-02-15	13:45:54	66두7784	강순자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5길
163	남산1호터널	2019-02-08	7:01:59	66서4599	권도웅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64	남산3호터널	2019-02-13	12:26:30	67구9987	주희영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느르머리길
165	남산1호터널	2019-02-08	10:31:04	67라0430	고중설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166	남산1호터널	2019-02-14	7:40:39	67라1281	권진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67	남산1호터널	2019-02-15	16:16:59	67소0611	양선미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68	남산3호터널	2019-02-12	15:06:32	68가0688	이명근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169	남산3호터널	2019-02-14	16:19:30	68더9019	이용섭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272번길
170	남산3호터널	2019-02-11	10:35:59	69구1693	고한상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1	남산1호터널	2019-02-13	12:02:17	69두2141	신칠성	8,00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172	남산1호터널	2019-02-01	20:05:20	69로0389	이용자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173	남산3호터널	2019-02-13	15:55:18	69수0722	김상언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174	남산3호터널	2019-02-07	20:58:12	서울31거8174	INDER SINGH TILVENDER SINGH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44가길
175	남산3호터널	2019-02-07	16:37:19	01보4547	한상문	4,00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은천동길
176	남산3호터널	2019-02-15	17:31:11	02머1661	윤동재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151번길
177	남산3호터널	2019-02-12	14:44:49	02우4776	장희조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178	남산1호터널	2019-02-11	11:57:43	03고0885	구준우	8,000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성안로
179	남산1호터널	2019-02-15	16:50:34	04너3657	도지원	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80	남산3호터널	2019-02-08	11:43:07	05거1111	정광식	8,000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로
181	남산1호터널	2019-02-15	7:20:07	05수8810	유욱태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82	남산3호터널	2019-02-14	18:57:46	05조9723	김정두외1(조복순)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83	남산1호터널	2019-02-08	14:50:51	06부4046	이각화	8,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148번길
184	남산3호터널	2019-02-12	13:38:47	08나8792	이성연	8,000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185	남산3호터널	2019-02-12	18:02:26	08더5336	양진석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8길
186	남산1호터널	2019-02-11	11:55:24	09버1349	안지현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4길
187	남산1호터널	2019-02-07	20:26:41	10무6413	(주)새턴바스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7길
188	남산1호터널	2019-02-14	17:25:01	10수4342	신희완	8,000	경기도 광주시 장지3길
189	남산3호터널	2019-02-13	14:57:02	11거7740	박정인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1742번길
190	남산3호터널	2019-02-13	20:55:32	11마1580	조일흠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91	남산1호터널	2019-02-07	8:40:16	11머4833	한강일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192	남산1호터널	2019-02-11	20:01:55	11우0527	박정호	4,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193	남산1호터널	2019-02-07	12:24:15	12러1049	정서인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194	남산1호터널	2019-02-14	19:11:39	13루5678	정철훈	8,000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195	남산3호터널	2019-02-14	14:55:46	13소9212	최서경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196	남산3호터널	2019-02-01	12:32:11	14두2496	(주)꼬레아랍	8,000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47번길
197	남산3호터널	2019-02-11	13:54:27	14수9421	이우근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98	남산3호터널	2019-02-13	16:07:54	14오7434	박장훈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66번길
199	남산1호터널	2019-02-14	16:13:02	14저2239	최정희	8,000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장승백안길
200	남산3호터널	2019-02-01	17:45:29	15모6773	장세준	8,00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201	남산3호터널	2019-02-14	12:16:09	15오7747	QIAN GUANGYU	8,000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정영로277번길
202	남산1호터널	2019-02-11	15:09:44	15저6374	김동선	8,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326번길
203	남산1호터널	2019-02-12	20:12:43	16고6844	박영동	8,00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204	남산3호터널	2019-02-12	15:02:30	16너1984	유은정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5	남산1호터널	2019-02-11	19:47:38	16부4488	권기학	8,00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섭밭말길
206	남산3호터널	2019-02-07	20:47:28	16수0715	조성천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207	남산1호터널	2019-02-12	7:23:00	17보3102	황윤임	4,000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208	남산3호터널	2019-02-01	9:42:58	17수0290	(주)승산산업조경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209	남산1호터널	2019-02-14	19:16:46	18고0448	이상훈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210	남산1호터널	2019-02-01	20:17:35	18다3214	주식회사 우리건흥엘앤엘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익로6길
211	남산3호터널	2019-02-15	15:07:05	18주5303	이완영	8,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02번길
212	남산3호터널	2019-02-08	13:01:31	19거6888	이외철	4,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213	남산3호터널	2019-02-15	11:03:05	19라7222	주식회사 미성에스아이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214	남산3호터널	2019-02-01	13:09:48	19로8849	장주환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길
215	남산3호터널	2019-02-01	12:42:33	20모9957	홍용표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길
216	남산1호터널	2019-02-14	20:38:30	20조9365	채동식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217	남산1호터널	2019-02-13	19:26:04	22서8504	유재곤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218	남산3호터널	2019-02-15	14:01:24	22우8520	남재우	8,0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219	남산3호터널	2019-02-15	10:17:52	23너2077	박시연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20	남산3호터널	2019-02-01	20:16:38	24버5997	김창옥	8,000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소학정길
221	남산1호터널	2019-02-15	11:54:08	25두9998	전라남도지사 (회계과)	8,0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222	남산1호터널	2019-02-15	13:23:23	25루2530	박진호	8,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3	남산1호터널	2019-02-12	12:00:12	26더0635	정한진	8,000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224	남산1호터널	2019-02-13	17:31:28	26더9755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8,000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225	남산1호터널	2019-02-12	12:41:08	26러1871	차승진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26	남산3호터널	2019-02-13	11:15:08	26마6526	윤태순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27	남산3호터널	2019-02-12	14:23:38	26소2816	정남영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40번길
228	남산3호터널	2019-02-07	19:13:29	27고0863	허정숙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0길
229	남산1호터널	2019-02-15	15:09:15	27보9152	신현수	8,000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30	남산1호터널	2019-02-13	19:56:14	27소1327	박정희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25번길
231	남산1호터널	2019-02-01	18:50:34	28거2957	이영화	8,000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232	남산3호터널	2019-02-08	8:04:07	28도1984	이명구	8,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233	남산3호터널	2019-02-11	8:30:27	28모7070	윤태일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7길
234	남산1호터널	2019-02-14	12:32:47	28소4822	위영오	8,000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35	남산1호터널	2019-02-08	15:39:57	28수8613	손정용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길
236	남산3호터널	2019-02-15	8:57:55	29다5777	에스알테크노팩 주식회사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봉주로
237	남산1호터널	2019-02-15	19:35:28	29조0510	한용진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불사길
238	남산3호터널	2019-02-07	10:02:53	30노8917	박종천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당로
239	남산1호터널	2019-02-07	9:59:47	31노0607	황승환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7가길
240	남산1호터널	2019-02-14	7:09:56	31두5152	정종연	4,0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1350번길
241	남산1호터널	2019-02-12	18:03:37	32우3949	송주열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242	남산3호터널	2019-02-07	11:41:07	33오5439	손경호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243	남산1호터널	2019-02-15	20:47:40	34오0996	주식회사 부천주물	8,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전로37번길
244	남산1호터널	2019-02-07	14:27:27	35너2231	최선화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5	남산3호터널	2019-02-15	12:39:41	35도9421	신지훈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46	남산3호터널	2019-02-15	7:12:13	36노1355	정동현	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08길
247	남산3호터널	2019-02-08	14:35:33	36러8043	이노재	8,0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군자길
248	남산1호터널	2019-02-08	19:33:12	36마0675	손은진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249	남산1호터널	2019-02-15	20:52:26	36저4748	박천성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0길
250	남산3호터널	2019-02-07	10:38:40	37러4076	배애경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길
251	남산1호터널	2019-02-13	14:13:30	37서8000	강지해	8,000	경기도 화성시 서동탄로
252	남산1호터널	2019-02-15	8:30:19	37소8311	김명선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53	남산1호터널	2019-02-08	17:25:59	37어3942	최경숙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254	남산1호터널	2019-02-15	18:49:12	38노6709	김영준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9길
255	남산1호터널	2019-02-14	8:28:37	38마0123	김민경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56	남산1호터널	2019-02-08	14:43:40	38우7209	박영자	4,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57	남산1호터널	2019-02-08	20:32:59	38조7650	권미영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258	남산3호터널	2019-02-01	7:07:03	39도7121	이근선	8,000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수촌길
259	남산3호터널	2019-02-01	20:39:11	39모0158	김용운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260	남산3호터널	2019-02-08	18:12:18	41노6743	진성일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61	남산1호터널	2019-02-08	7:34:43	41주0296	CAO YONGHAI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나길
262	남산1호터널	2019-02-11	20:16:19	42가1782	이정희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63	남산3호터널	2019-02-14	20:01:33	42더8329	박병권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11길
264	남산1호터널	2019-02-07	8:50:21	42도9461	임봉규	8,00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길
265	남산1호터널	2019-02-14	14:55:54	42마9521	신두인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6	남산3호터널	2019-02-08	14:30:32	42버7871	음성군수(회계과)	8,00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7	남산1호터널	2019-02-12	11:33:31	42조1067	㈜이미징테크이노베이션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268	남산1호터널	2019-02-01	20:30:30	43누5225	김병수	8,000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83번길
269	남산1호터널	2019-02-13	20:09:43	46가6831	LI ALEKSANDR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길
270	남산1호터널	2019-02-11	19:57:29	46나8670	박지영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71	남산3호터널	2019-02-12	14:12:39	46더7429	김옥순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87길
272	남산1호터널	2019-02-13	20:40:45	46모6924	이길호	4,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4길
273	남산3호터널	2019-02-07	15:20:49	46소9704	주혜리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5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274	남산1호터널	2019-02-14	10:10:20	47버3576	송호철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길
275	남산3호터널	2019-02-01	19:56:22	47우1545	김동주	8,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29번길
276	남산3호터널	2019-02-13	12:52:33	48노6160	이영전	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
277	남산3호터널	2019-02-01	19:58:37	48로6280	민명숙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78	남산1호터널	2019-02-07	8:18:40	49루3185	안현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279	남산3호터널	2019-02-08	18:42:51	49보1146	임재훤	8,000	전라북도 군산시 궁멀길
280	남산1호터널	2019-02-07	18:31:39	51라6224	손중호	8,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281	남산3호터널	2019-02-11	12:58:48	51우9179	신봉주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래비로11번길
282	남산3호터널	2019-02-11	19:25:15	51주4819	심금옥	8,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65나길
283	남산1호터널	2019-02-14	20:17:19	52로7507	남종임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8길
284	남산3호터널	2019-02-13	19:59:41	52버3543	함태화	8,0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285	남산3호터널	2019-02-12	10:26:01	53다7640	성민화	4,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102번길
286	남산3호터널	2019-02-01	17:34:53	53머2277	김재현	8,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4로
287	남산1호터널	2019-02-07	11:27:58	54가1275	이현우	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12길
288	남산1호터널	2019-02-13	18:13:42	54버9737	정은영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89	남산3호터널	2019-02-15	16:32:21	55거9710	김주훈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길
290	남산1호터널	2019-02-11	20:23:41	55나9370	김청송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291	남산1호터널	2019-02-12	17:54:46	55라5517	나미영	4,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92	남산1호터널	2019-02-15	9:19:30	55마2324	안태준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293	남산3호터널	2019-02-14	20:02:03	55오4423	김종훈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다길
294	남산3호터널	2019-02-15	16:20:15	57고8494	주경희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97번길
295	남산3호터널	2019-02-15	15:40:37	57어2855	두루약품주식회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6길
296	남산3호터널	2019-02-07	17:50:17	58라2225	주식회사 모던무역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로
297	남산1호터널	2019-02-14	11:42:32	58모4858	이계순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6나길
298	남산3호터널	2019-02-12	7:26:49	58보7903	안영찬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포도원로27번길
299	남산1호터널	2019-02-12	11:06:35	58수0916	김광태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6길
300	남산3호터널	2019-02-15	17:19:53	58오0891	박명홍	8,000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124번길
301	남산3호터널	2019-02-11	20:42:11	58우2407	정재원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02	남산1호터널	2019-02-01	10:59:02	59러2698	남궁준호	8,000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03	남산3호터널	2019-02-11	20:37:54	60고8481	김혜영	4,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9길
304	남산3호터널	2019-02-12	7:01:10	60로0297	이용훈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45길
305	남산3호터널	2019-02-14	16:35:54	61고5892	이인실	8,00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사나사길
306	남산3호터널	2019-02-08	16:12:09	61루1178	김웅회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07	남산3호터널	2019-02-13	12:07:37	61어3421	김나경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08	남산3호터널	2019-02-14	19:01:41	62구0281	JIN XIANGYAN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35가길
309	남산1호터널	2019-02-01	8:27:38	62도2885	강석철	8,00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웃말길
310	남산1호터널	2019-02-07	14:50:30	62우6145	허경만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311	남산3호터널	2019-02-11	7:47:49	62조1401	김대윤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12	남산3호터널	2019-02-07	20:50:49	63수2369	황재희	8,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313	남산3호터널	2019-02-01	19:19:11	63어7309	김예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314	남산1호터널	2019-02-15	19:44:17	64거0585	박진홍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15	남산1호터널	2019-02-12	20:44:54	64너6788	강명순	8,000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316	남산1호터널	2019-02-15	20:37:54	65누0134	OH, LANCE JOHN	8,000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317	남산1호터널	2019-02-12	13:29:14	65저8697	박미현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10길
318	남산3호터널	2019-02-12	18:23:36	66라4892	문미숙	8,000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319	남산3호터널	2019-02-07	18:44:28	66서4646	이정우	8,000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320	남산3호터널	2019-02-11	8:06:29	66조5932	고은애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321	남산3호터널	2019-02-13	13:02:38	67노3722	장미숙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322	남산1호터널	2019-02-14	17:04:33	67라1281	권진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323	남산1호터널	2019-02-12	20:18:36	67라1281	권진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5길
324	남산3호터널	2019-02-08	20:18:03	68거0988	이동명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44가길
325	남산1호터널	2019-02-08	16:46:47	68루8206	(주)에스에이정보기술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326	남산3호터널	2019-02-12	19:33:09	68보3450	박현선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327	남산1호터널	2019-02-15	9:48:44	69라6581	박우헌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328	남산3호터널	2019-02-07	15:13:01	39두3298	골든벨씨엠(주)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9길
329	남산1호터널	2019-02-01	11:48:57	51더8124	HUANG CHANGCHUN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271가길
330	남산3호터널	2019-02-07	18:08:40	26무4435	안준석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31	남산3호터널	2019-02-08	20:52:27	60소5453	이수형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332	남산1호터널	2019-02-08	17:39:24	27도2834	우정미	8,000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333	남산3호터널	2019-02-12	20:28:03	40어4365	이상규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87길
334	남산1호터널	2019-02-15	12:42:34	20고4411	강운혁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335	남산3호터널	2019-02-07	11:51:13	47마7454	이주희	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36	남산1호터널	2019-02-22	11:47:44	01누4792	주식회사 한국경영연구원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20길
337	남산3호터널	2019-02-20	12:34:55	01무0496	김은형	8,0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38	남산3호터널	2019-02-25	8:46:50	01조4990	예민수 외1 (김수미)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6길
339	남산3호터널	2019-02-27	19:03:45	02부2958	성익환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0	남산1호터널	2019-02-28	8:17:37	03노3788	하주연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341	남산1호터널	2019-02-27	17:22:38	03허5572	(주) 금성	8,000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화합로
342	남산1호터널	2019-02-22	7:54:42	04머6203	전규성	8,000	강원도 강릉시 하평길
343	남산1호터널	2019-02-19	16:03:46	04어0401	김동수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4	남산3호터널	2019-02-18	9:34:43	05도1095	신미정외1인 (박동헌)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788번길
345	남산1호터널	2019-02-20	13:16:29	06너8949	박정만	8,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346	남산3호터널	2019-02-27	17:47:53	06다8394	이홍규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347	남산3호터널	2019-02-26	17:55:22	06로0145	김광자	8,000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7번길
348	남산1호터널	2019-02-22	19:34:30	07로6402	허보경	8,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49	남산1호터널	2019-02-26	11:23:59	08구0548	한재건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350	남산3호터널	2019-02-21	10:06:11	08루3000	박주은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가길
351	남산3호터널	2019-02-18	11:56:57	08소5168	오병렬	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352	남산3호터널	2019-02-26	15:20:03	09가3658	정오석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16길
353	남산3호터널	2019-02-27	15:29:41	09가3658	정오석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16길
354	남산3호터널	2019-02-19	17:37:12	10러6260	김보경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355	남산1호터널	2019-02-22	8:08:52	11머4833	한강일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6	남산1호터널	2019-02-20	16:22:02	11오1730	김선영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57	남산1호터널	2019-02-22	11:37:43	12노6664	박은숙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58	남산3호터널	2019-02-18	15:57:50	12더2710	임충길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359	남산1호터널	2019-02-18	17:56:23	12보0836	김지훈	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26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60	남산1호터널	2019-02-25	9:30:35	13다3148	차건동	8,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361	남산1호터널	2019-02-26	17:21:13	13보7691	(주)스타디움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62	남산3호터널	2019-02-21	13:16:12	13서2640	최승집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창목길
363	남산1호터널	2019-02-18	15:51:05	13어2741	최영철	8,00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364	남산1호터널	2019-02-18	20:39:03	14거9114	김정은	8,000	강원도 강릉시 율곡초교길
365	남산3호터널	2019-02-18	17:06:19	14누0328	(주)바이오팩	8,00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앞실길
366	남산3호터널	2019-02-18	18:13:40	14누0457	김종우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367	남산3호터널	2019-02-18	16:17:45	15조6274	김연수	8,000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
368	남산1호터널	2019-02-19	14:21:50	16너8518	황선애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69	남산1호터널	2019-02-27	18:36:19	16러3145	김영민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4길
370	남산1호터널	2019-02-27	16:31:00	16마1918	김상현	4,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371	남산1호터널	2019-02-19	19:43:10	16서7461	이주현	4,000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372	남산1호터널	2019-02-27	16:25:25	16우2110	최병용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73	남산1호터널	2019-02-25	7:45:08	17너8305	차윤지	8,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374	남산3호터널	2019-02-20	19:21:28	17노8560	ZHANG MINYU	8,000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255번길
375	남산1호터널	2019-02-26	19:25:43	17두4738	신성철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376	남산1호터널	2019-02-18	15:27:41	17보0618	백기호	8,000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로117번길
377	남산3호터널	2019-02-21	14:35:18	17수2552	NGUYEN XUAN NAM	8,000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378	남산3호터널	2019-02-26	15:18:33	18더3896	한희석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379	남산3호터널	2019-02-21	16:04:49	18루7627	김주민	8,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80	남산3호터널	2019-02-19	17:40:54	18호0694	(주)한진	8,000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381	남산1호터널	2019-02-25	12:31:06	19라1736	한재현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82	남산3호터널	2019-02-28	9:42:38	19보4830	TSAI SHU LING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383	남산1호터널	2019-02-22	7:43:32	20나7912	강세정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9길
384	남산1호터널	2019-02-21	10:00:08	20다4995	이현성	8,000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385	남산1호터널	2019-02-26	18:24:58	20도9497	홍복표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10길
386	남산3호터널	2019-02-27	11:50:50	21보3572	하위영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길
387	남산3호터널	2019-02-27	19:57:31	21저0397	LI LONGHAI	8,00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388	남산3호터널	2019-02-19	18:21:42	22누9111	법무법인 향법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389	남산1호터널	2019-02-25	9:02:18	22마7444	(주)미림	8,000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90	남산1호터널	2019-02-27	19:52:56	22오5627	에이제이캐피탈 파트너스(주)	8,000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391	남산1호터널	2019-02-19	12:58:20	24너2431	주식회사 이센스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392	남산3호터널	2019-02-22	18:39:17	25어5674	박상준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393	남산3호터널	2019-02-27	7:19:57	26보2798	박재현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4	남산1호터널	2019-02-18	20:54:00	26주6372	임채진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395	남산3호터널	2019-02-28	17:44:21	27고5981	이정희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396	남산1호터널	2019-02-22	20:12:56	27도1041	최유진	8,000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내서길
397	남산3호터널	2019-02-25	9:03:34	27루4981	정범수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8	남산1호터널	2019-02-19	13:37:47	27수3310	(주)에이비씨마트 코리아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99	남산1호터널	2019-02-18	9:33:25	28도8593	정모아	4,000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400	남산1호터널	2019-02-21	16:30:44	29구0777	전찬호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8길
401	남산1호터널	2019-02-25	17:11:19	29우0219	주식회사 아리온	8,000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402	남산3호터널	2019-02-19	20:42:27	29주0928	신영식	4,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403	남산1호터널	2019-02-27	9:21:29	30구7523	진상현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404	남산3호터널	2019-02-26	8:29:33	30누2406	이준혁	8,000	경기도 부천시 고강로132번가길
405	남산1호터널	2019-02-21	10:38:59	30두6900	김인교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406	남산3호터널	2019-02-27	15:26:07	31거0971	김종원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5길
407	남산3호터널	2019-02-27	18:16:41	31두3688	김광진	8,000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복주산길
408	남산3호터널	2019-02-22	13:10:43	31버0910	최진호	8,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409	남산1호터널	2019-02-26	18:46:09	31조0360	임홍우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51길
410	남산3호터널	2019-02-20	10:23:27	32더6677	김상문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31길
411	남산1호터널	2019-02-18	19:13:55	32머3441	김태선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12	남산1호터널	2019-02-28	18:50:31	32무3578	우경화	8,000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413	남산3호터널	2019-02-19	10:34:12	32보7384	백미나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414	남산3호터널	2019-02-22	7:19:52	32조7213	함천혜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415	남산1호터널	2019-02-25	18:06:15	33무9360	(주)아누리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남산3호터널	2019-02-25	12:27:58	33수2074	심재혁	8,000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17	남산3호터널	2019-02-26	9:56:57	34두1418	이준권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1길
418	남산3호터널	2019-02-25	20:42:51	34마6061	윤인수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419	남산1호터널	2019-02-25	7:53:29	34무7969	임영신	8,000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신흥로
420	남산3호터널	2019-02-18	8:51:45	35도9421	신지훈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421	남산3호터널	2019-02-18	19:35:17	35보0617	이승연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40길
422	남산1호터널	2019-02-28	18:32:22	35수3776	황미숙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423	남산1호터널	2019-02-28	7:31:55	35우7954	최준수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24	남산3호터널	2019-02-21	15:28:06	36라6442	신현철	8,000	경기도 광명시 연서로
425	남산1호터널	2019-02-20	16:01:56	36마1252	정창식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426	남산1호터널	2019-02-26	17:03:46	37러4076	배애경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5길
427	남산1호터널	2019-02-25	19:57:28	37저0583	방주광학 주식회사	8,00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남로
428	남산3호터널	2019-02-20	13:33:57	37저8650	배시풍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429	남산3호터널	2019-02-28	19:30:15	39어0708	법무법인(유한) 광장	8,0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30	남산3호터널	2019-02-26	15:22:04	40누4592	손세운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431	남산1호터널	2019-02-22	18:09:04	40무0142	주식회사 고려퍼프	8,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51번길
432	남산1호터널	2019-02-28	19:23:17	40부2464	구원창	4,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433	남산1호터널	2019-02-28	9:58:13	41다7571	이유미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30길
434	남산1호터널	2019-02-22	16:12:54	41루6382	QUAN WEILIN	8,000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로48번길
435	남산1호터널	2019-02-22	16:41:41	41수8393	정경오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436	남산3호터널	2019-02-28	8:28:56	41주0312	강희정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3길
437	남산1호터널	2019-02-18	7:09:29	42나5198	한인호	8,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438	남산3호터널	2019-02-27	19:17:00	43노4394	이은화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39	남산1호터널	2019-02-28	13:31:09	43마3862	김민영	8,000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440	남산1호터널	2019-02-19	20:55:21	43모8207	백인기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41	남산3호터널	2019-02-28	7:07:22	45고1216	조재산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42	남산1호터널	2019-02-22	11:25:53	45마1413	민안나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3길
443	남산3호터널	2019-02-18	8:55:35	45모2642	박일웅	8,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44	남산1호터널	2019-02-19	13:30:40	45조8073	박용혁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45	남산3호터널	2019-02-18	18:09:01	46구5740	김윤정	8,00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46	남산3호터널	2019-02-22	15:02:28	47거1282	이영송	8,000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선운대로
447	남산1호터널	2019-02-28	11:32:38	47버5983	봉우리영농조합법인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고래산로
448	남산1호터널	2019-02-25	15:43:03	49노3552	양서영	8,000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로
449	남산3호터널	2019-02-22	17:07:51	49수3501	SANGARE AMADOU MAMADOU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길
450	남산3호터널	2019-02-25	18:50:22	50라6681	이선미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32번길
451	남산1호터널	2019-02-22	15:39:37	50머4788	김현범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2길
452	남산3호터널	2019-02-28	10:54:34	51마5620	최종민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453	남산1호터널	2019-02-28	20:56:57	52거3027	김동현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9길
454	남산3호터널	2019-02-27	20:45:28	52로5079	삼진선박(주)	8,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455	남산3호터널	2019-02-21	10:21:23	52모3075	국민복지의료생활협동조합	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56	남산1호터널	2019-02-22	20:19:48	52부0252	김이찬	8,000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두만곡로
457	남산3호터널	2019-02-22	19:05:46	52수4925	이연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7길
458	남산3호터널	2019-02-20	17:30:10	52주7370	박명희	8,000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459	남산3호터널	2019-02-25	13:26:25	53도2982	이미숙	8,000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460	남산1호터널	2019-02-21	12:19:38	53머8860	브레인즈스퀘어(주)	4,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461	남산3호터널	2019-02-19	14:58:36	53저7127	정순자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462	남산1호터널	2019-02-22	14:36:13	54구0532	황진선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463	남산1호터널	2019-02-26	10:00:06	55가0884	김영기	8,0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464	남산1호터널	2019-02-20	16:35:51	55무1619	YAKUBOV LAZIZBEK	8,000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원터길
465	남산3호터널	2019-02-21	15:25:58	55수9648	김동아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01번길
466	남산3호터널	2019-02-22	11:46:04	56고1724	김재현	8,00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467	남산1호터널	2019-02-22	11:39:46	56다4975	주식회사 주영엔지니어링	8,000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68	남산3호터널	2019-02-18	12:52:33	56루5202	민동호	8,000	경기도 광주시 벼루개길42번길
469	남산1호터널	2019-02-28	16:59:18	56수8899	김필민	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34길
470	남산3호터널	2019-02-20	16:23:35	57가2888	김해림	8,000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471	남산3호터널	2019-02-22	14:37:44	57고0890	KIM DANIEL JOHNGUK	8,000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472	남산1호터널	2019-02-25	13:24:05	57더6721	이광희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7길
473	남산1호터널	2019-02-28	7:55:01	57도3977	양재율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1길
474	남산1호터널	2019-02-28	12:55:30	58거7225	이기양	8,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475	남산3호터널	2019-02-18	10:37:34	58오0891	박명홍	8,000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124번길
476	남산1호터널	2019-02-26	15:43:44	60고0393	노광래	8,000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477	남산3호터널	2019-02-22	15:35:57	60다4075	임종경	8,000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478	남산1호터널	2019-02-18	20:27:44	60도8868	배지니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479	남산1호터널	2019-02-25	15:58:07	61부6188	김민주	4,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4길
480	남산3호터널	2019-02-26	14:11:34	61어3421	김나경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481	남산3호터널	2019-02-25	19:37:56	61오0938	김경희	4,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8길
482	남산3호터널	2019-02-19	12:17:44	62가0185	김종범	8,000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54번길
483	남산3호터널	2019-02-25	20:43:53	62마6375	김동준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484	남산3호터널	2019-02-18	13:38:52	62수4347	XU XISONG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34번길
485	남산3호터널	2019-02-25	10:59:01	62어1576	김선태	8,000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7번길
486	남산3호터널	2019-02-19	19:31:38	62주7819	김미희	8,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다길
487	남산1호터널	2019-02-28	9:25:59	63더7001	조준식	8,000	경기도 부천시 성지로
488	남산1호터널	2019-02-20	18:54:07	63두4012	권미애	8,000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489	남산3호터널	2019-02-18	18:23:40	63조2444	신혜원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8길
490	남산3호터널	2019-02-25	10:02:28	65라9953	WILLIAMSON, EVERITT AL	8,000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91	남산3호터널	2019-02-21	20:14:25	66노2667	전지현	8,000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492	남산3호터널	2019-02-28	8:59:17	66누1402	전강근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0길
493	남산1호터널	2019-02-18	16:52:21	66부8423	김교환	8,00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소곳이길
494	남산1호터널	2019-02-21	15:42:07	66소2022	종로구청장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95	남산3호터널	2019-02-20	9:44:48	66소2525	주식회사 이오투어	4,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496	남산1호터널	2019-02-25	19:11:38	67나6754	기준영	4,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화1로
497	남산3호터널	2019-02-22	20:00:28	68고0299	안호남	8,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촌3길
498	남산1호터널	2019-02-20	12:24:44	68너2394	김용국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99	남산1호터널	2019-02-18	10:20:02	68부6000	㈜ 현대아트솔루션	8,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00	남산3호터널	2019-02-19	12:09:41	69고9828	손형선	8,000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501	남산1호터널	2019-02-26	18:16:48	69부7833	임영수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502	남산3호터널	2019-02-22	20:38:27	서울34너2743	강희자	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9길
503	남산3호터널	2019-02-20	12:21:08	서울55로2789	㈜이래건축사 사무소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504	남산1호터널	2019-02-22	11:34:06	02노8477	주식회사 드림아이씨티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200길
505	남산3호터널	2019-02-20	20:37:40	02루3762	박현룡	8,000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506	남산3호터널	2019-02-18	20:55:57	02보3485	이재학	4,000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07	남산3호터널	2019-02-27	10:27:32	03노3788	하주연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508	남산1호터널	2019-02-18	18:46:45	03보5675	임무디	8,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509	남산3호터널	2019-02-27	14:36:12	04노7821	심남우	8,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80번길
510	남산3호터널	2019-02-28	11:04:40	04루2537	강기정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511	남산1호터널	2019-02-28	16:04:48	04어9308	배성원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2	남산1호터널	2019-02-20	17:00:29	06도3641	이윤상	8,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513	남산3호터널	2019-02-18	15:16:17	06무0829	조은하루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14	남산1호터널	2019-02-22	15:37:44	06어2403	김종현	8,00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2길
515	남산1호터널	2019-02-21	9:36:22	07부4098	㈜ 이모드환경산업	4,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8길
516	남산1호터널	2019-02-26	15:04:32	08구1358	박준수외1(임형순)	8,000	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길
517	남산1호터널	2019-02-28	9:28:40	08버5132	미래교회(김현민)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518	남산3호터널	2019-02-20	15:49:15	08서7587	김정래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519	남산1호터널	2019-02-28	12:55:09	09라0991	금호전기통신 주식회사	4,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41길
520	남산3호터널	2019-02-18	14:49:05	09모3346	JIA JING	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정2길
521	남산3호터널	2019-02-26	18:39:17	10주7783	이우열	8,000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17번길
522	남산1호터널	2019-02-18	10:04:21	11머4833	한강일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23	남산1호터널	2019-02-28	20:32:52	12나8333	백성현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524	남산3호터널	2019-02-20	12:53:09	12도5311	신현기	4,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1길
525	남산1호터널	2019-02-19	15:13:17	12보5319	신한카드(주)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26	남산1호터널	2019-02-25	7:37:24	12조0171	이성철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3길
527	남산1호터널	2019-02-26	10:25:40	13러5439	윤우성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28	남산3호터널	2019-02-27	9:07:40	14너4893	이현미	8,000	강원도 속초시 청학로1길
529	남산3호터널	2019-02-20	11:52:02	14도0516	신현우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530	남산1호터널	2019-02-28	17:30:45	14오1665	목정훈	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묘봉로
531	남산3호터널	2019-02-22	13:33:57	14저2646	박현정	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532	남산1호터널	2019-02-18	12:57:44	15가3500	김현우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33	남산3호터널	2019-02-28	10:38:14	15구6825	지윤진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534	남산3호터널	2019-02-27	11:04:15	15누1233	임경훈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535	남산3호터널	2019-02-20	19:15:28	15소9242	(주)꿈의전원	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536	남산3호터널	2019-02-22	10:30:40	15조1539	황진욱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5가길
537	남산3호터널	2019-02-27	10:23:51	16고4933	LU ZHENHONG	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2길
538	남산1호터널	2019-02-18	19:04:56	16주6017	박형옥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539	남산1호터널	2019-02-25	13:20:29	17너8305	차윤지	8,000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송원길
540	남산1호터널	2019-02-19	20:08:54	17오2224	강영실	8,000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541	남산1호터널	2019-02-25	17:14:26	19나5772	김희진	4,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542	남산3호터널	2019-02-18	18:24:09	19도2497	(주)서울자동차판매상사(상품용)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543	남산1호터널	2019-02-18	18:45:23	20구6100	김성우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432번길
544	남산1호터널	2019-02-20	19:25:25	20다4966	김옥자	8,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30번길
545	남산3호터널	2019-02-22	14:17:24	20로8875	OCI주식회사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46	남산1호터널	2019-02-27	7:52:05	21고2151	조진형	4,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로12길
547	남산3호터널	2019-02-18	14:10:26	22보5932	손창식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8	남산3호터널	2019-02-18	19:36:14	23두0606	임동근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49	남산3호터널	2019-02-25	12:37:14	23모9907	김창원	8,00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550	남산1호터널	2019-02-28	19:44:17	24가1965	손영우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551	남산3호터널	2019-02-20	17:55:30	24나2006	김윤정	4,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2길
552	남산3호터널	2019-02-27	14:03:02	24두5446	김용섭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24길
553	남산3호터널	2019-02-18	18:41:27	24머7651	김지훈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554	남산1호터널	2019-02-22	18:21:54	24주0432	전준현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5	남산1호터널	2019-02-28	14:42:52	25더8732	김창하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86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56	남산3호터널	2019-02-27	14:10:45	25머9115	김알렌	8,00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57	남산1호터널	2019-02-28	9:02:14	25우0950	MUN OLEG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가길
558	남산3호터널	2019-02-22	19:33:44	26나0749	박준상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559	남산3호터널	2019-02-19	12:12:10	26러8139	JIN SONGRI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3길
560	남산1호터널	2019-02-26	17:54:01	26보2805	김선희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다길
561	남산1호터널	2019-02-28	19:34:14	26부9336	서동진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113번길
562	남산1호터널	2019-02-22	18:00:08	27더2573	주식회사 화인투자파트너스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563	남산3호터널	2019-02-20	20:06:05	28루8337	한민석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안길
564	남산1호터널	2019-02-26	10:10:11	28오8001	고원선	8,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8번길
565	남산3호터널	2019-02-26	16:45:56	30노6566	배미성	8,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90번길
566	남산3호터널	2019-02-20	14:12:35	30다8046	윤영록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567	남산1호터널	2019-02-26	13:30:12	30도6261	조영은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568	남산3호터널	2019-02-27	11:00:39	30무2172	(주)청솔플랜트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69	남산1호터널	2019-02-20	18:41:09	31두5718	최용헌	8,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76번길
570	남산3호터널	2019-02-20	14:07:45	31머6835	이민주	8,0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1번길
571	남산3호터널	2019-02-22	17:41:03	31보4068	안은수	4,000	경기도 부천시 정주로34번가길
572	남산3호터널	2019-02-25	12:45:47	32거0568	SHEN XIANNA	8,000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573	남산3호터널	2019-02-28	15:45:17	32버5778	SHIM IL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574	남산3호터널	2019-02-27	13:25:37	32소1418	염정대	8,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연산4길
575	남산1호터널	2019-02-18	10:45:01	33보2623	한동철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576	남산3호터널	2019-02-26	16:15:53	34루7874	차지수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77	남산3호터널	2019-02-19	15:02:39	34어3631	신의수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3길
578	남산3호터널	2019-02-19	11:54:27	35도9421	신지훈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579	남산1호터널	2019-02-25	10:24:26	35도9809	이정환	8,0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580	남산3호터널	2019-02-21	16:35:45	35로8427	소병천	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81	남산3호터널	2019-02-26	15:11:39	35마1970	안혜선	8,000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582	남산1호터널	2019-02-21	10:36:15	36모3914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 사업유지재단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83	남산3호터널	2019-02-28	10:43:09	36우3361	배현희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584	남산3호터널	2019-02-22	19:21:12	37러8353	박현주	8,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585	남산3호터널	2019-02-22	20:58:40	37부0423	권영현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86	남산1호터널	2019-02-25	7:54:05	37서8892	김용준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587	남산1호터널	2019-02-19	15:21:23	37저8650	배시풍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588	남산3호터널	2019-02-25	11:44:08	37조6711	박용은	4,000	경기도 화성시 작현길24번길
589	남산1호터널	2019-02-18	18:21:56	38두1144	양경열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용정1길
590	남산1호터널	2019-02-27	18:25:38	39마7879	최상욱	8,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591	남산1호터널	2019-02-27	15:56:41	40구7716	(주)용희시스템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14길
592	남산1호터널	2019-02-22	15:20:25	40루9058	김익수	8,000	강원도 강릉시 연당길
593	남산3호터널	2019-02-25	17:56:36	40버6298	변재정	8,000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39번길
594	남산1호터널	2019-02-28	10:47:45	40부4224	이창준	8,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595	남산3호터널	2019-02-21	8:40:18	40부9053	문찬수	8,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596	남산1호터널	2019-02-26	19:29:01	40저7370	김도환	8,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충렬로8번길
597	남산3호터널	2019-02-25	17:33:45	41마2506	김동학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19번길
598	남산3호터널	2019-02-25	7:06:23	41마2506	김동학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19번길
599	남산3호터널	2019-02-28	11:42:01	41수7241	이동정	8,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600	남산1호터널	2019-02-28	14:22:23	41호2291	(주)블루렌트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1로
601	남산1호터널	2019-02-18	8:08:42	42나5198	한인호	8,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602	남산3호터널	2019-02-25	13:33:15	42부6698	김지영	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185번길
603	남산3호터널	2019-02-28	11:32:00	42조8877	정창일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604	남산3호터널	2019-02-25	19:36:47	43어1050	이주철	8,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605	남산3호터널	2019-02-21	14:44:41	45로4723	이채린	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4길
606	남산3호터널	2019-02-19	7:58:21	45마4724	박민영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3길
607	남산3호터널	2019-02-20	13:33:10	45우6628	김시온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608	남산1호터널	2019-02-18	20:44:59	46부4452	장경미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609	남산1호터널	2019-02-27	20:55:56	46조0569	손명락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610	남산3호터널	2019-02-18	14:56:18	47저7255	최윤열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611	남산3호터널	2019-02-22	19:48:40	48나1763	김지은	8,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가길
612	남산1호터널	2019-02-25	14:26:53	49노3309	㈜ 아이오케이컴퍼니	8,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13	남산1호터널	2019-02-21	14:14:47	49도1096	이광근	4,00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덕생로
614	남산1호터널	2019-02-18	20:13:42	49조4847	주은화	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5	남산1호터널	2019-02-21	13:12:26	50너8495	나기영	8,000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16	남산1호터널	2019-02-22	12:28:06	50버9488	하기주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617	남산1호터널	2019-02-25	20:51:03	50수2631	신준섭	8,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618	남산1호터널	2019-02-21	20:36:24	51거6515	최광옥	8,000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619	남산3호터널	2019-02-20	17:34:26	51도0733	김경수	8,00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620	남산1호터널	2019-02-20	17:08:00	51머6814	서봉주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5안길
621	남산1호터널	2019-02-22	8:14:33	51서1370	김미영	8,00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622	남산3호터널	2019-02-25	12:28:51	52가1459	김상윤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623	남산3호터널	2019-02-22	19:35:56	52머4258	(주)대림기업	8,00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설악로
624	남산1호터널	2019-02-21	8:51:03	52오1915	배은희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25	남산1호터널	2019-02-26	14:42:34	52주0717	㈜목양 종합건축사사무소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626	남산3호터널	2019-02-22	19:50:48	54너4315	김치규	8,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27	남산3호터널	2019-02-18	12:01:44	54우7775	전성재	8,000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46번길
628	남산1호터널	2019-02-19	15:47:58	55더8635	주식회사 렛그린	4,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로53번길
629	남산1호터널	2019-02-22	12:13:32	56가0745	노미혜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630	남산1호터널	2019-02-25	20:26:49	56거6297	강성예	8,000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21번길
631	남산1호터널	2019-02-21	7:23:18	56고3742	김희삼	8,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32	남산1호터널	2019-02-20	19:48:58	56나1375	최현규	8,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633	남산1호터널	2019-02-28	19:26:23	56두1158	방민자	8,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4	남산1호터널	2019-02-22	20:11:10	56모1459	이충헌	8,000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3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635	남산1호터널	2019-02-28	18:01:31	56우8451	권상희	8,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636	남산3호터널	2019-02-20	14:13:33	57가2888	김해림	8,000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637	남산1호터널	2019-02-28	16:11:57	57다0503	전윤기	8,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9길
638	남산1호터널	2019-02-28	11:32:02	57머7638	김태우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74번길
639	남산3호터널	2019-02-19	15:08:23	58구6251	권현우	8,00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엘씨디로241번길
640	남산1호터널	2019-02-20	7:39:44	58두4133	(주)엑스포럼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641	남산1호터널	2019-02-27	7:21:01	60고0887	JIN XIONGJIE	8,000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642	남산1호터널	2019-02-18	8:23:05	60도1488	이우철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643	남산1호터널	2019-02-27	9:15:51	60러5262	배천웅	8,000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금강2길
644	남산1호터널	2019-02-26	7:05:54	60수0412	박희규	8,000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95번길
645	남산1호터널	2019-02-26	15:27:36	61도3465	유하나	8,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646	남산3호터널	2019-02-21	20:04:14	61소3025	김영숙	8,000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로
647	남산3호터널	2019-02-18	9:45:13	61어3421	김나경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648	남산3호터널	2019-02-22	10:40:18	61어3421	김나경	8,000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649	남산1호터널	2019-02-18	19:51:00	63고2865	김성훈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650	남산1호터널	2019-02-28	17:36:30	63도9956	정철호	8,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651	남산3호터널	2019-02-25	17:55:08	63머8877	안성환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652	남산1호터널	2019-02-28	10:16:13	63무8868	오상익	8,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653	남산3호터널	2019-02-26	8:04:36	63어0635	박용팔	8,000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654	남산1호터널	2019-02-25	7:44:57	64고1063	김회수	4,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2길
655	남산3호터널	2019-02-20	9:50:43	64소6491	서용기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656	남산3호터널	2019-02-28	13:39:38	64오7184	신숙례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다길
657	남산1호터널	2019-02-26	14:19:25	67노7482	변귀자	8,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20길
658	남산3호터널	2019-02-26	9:10:36	67누0893	김동훈	8,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659	남산3호터널	2019-02-18	17:28:13	68더6300	최지인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정3길
660	남산1호터널	2019-02-22	15:20:13	68버1144	김용진	4,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60가길
661	남산1호터널	2019-02-28	14:45:59	69무2699	양완선	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662	남산3호터널	2019-02-18	8:46:51	39무2176	이래규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663	남산1호터널	2019-02-18	20:54:17	07노3207	(주)뉴본	8,000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177번길
664	남산1호터널	2019-02-22	20:02:21	09가5370	강영찬	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9길
665	남산1호터널	2019-02-25	16:31:36	56주2026	설국남	8,000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선동길
666	남산1호터널	2019-02-26	10:23:36	60무3639	LIU LINHAI	8,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8길
667	남산3호터널	2019-02-26	12:46:13	43루4179	권배근	8,000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37번길
668	남산3호터널	2019-02-27	14:43:33	25머7372	김재연	8,000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669	남산1호터널	2019-02-28	8:49:42	01조1003	장정원	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8길
670	남산1호터널	2018-12-03	12:42:16	60호9963	(주)대웅제약	8,0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671	남산3호터널	2019-01-03	18:17:15	14수3924	맘스(서지영)	8,000	서울 서초구 효령로31길
672	남산1호터널	2019-01-02	16:07:47	29하1126	이선호	8,000	경기 파주시 평화로348번길
673	남산3호터널	2019-01-04	14:47:36	44하3690	㈜제너시스비비큐	4,0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674	남산1호터널	2019-01-03	7:03:10	46호8232	(주)아이오케이컴퍼니 TN엔터사업부	8,000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75	남산1호터널	2019-01-02	13:42:20	51너7926	㈜라이브스케이프	8,000	서울 강남구 개포로21길
676	남산3호터널	2019-01-04	14:21:56	67호2762	ALSHEHHI SAEED MOHAMMED	8,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677	남산1호터널	2019-01-08	18:48:25	67호9426	주식회사 피제이	8,00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678	남산3호터널	2019-01-15	18:55:07	33하4722	이엔에이아키텍츠(주)(김용재)	8,000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679	남산1호터널	2019-01-10	19:36:28	40호8803	리양필름 주식회사	4,0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1길
680	남산1호터널	2019-01-14	17:50:10	49하3065	한국토지주택공사	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81	남산1호터널	2019-01-09	13:18:27	49호2215	방준형	8,000	서울 마포구 염리동
682	남산1호터널	2019-01-14	18:10:13	57호8487	유정환	8,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683	남산1호터널	2019-01-09	15:10:57	58하4059	국민건강보험공단	8,000	강원 원주시 반곡동
684	남산3호터널	2019-01-09	7:18:02	68가8513	추희명	8,0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85	남산3호터널	2019-01-09	15:20:03	69오8451	서울종합유통(유걸)	8,000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12번길
686	남산3호터널	2019-01-04	19:16:43	03주0256	(주)도시매래종합기술공사	8,000	서울 성북구 정릉로10다길
687	남산3호터널	2019-01-07	20:39:51	07노2364	대성스틸(주)	8,000	경기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688	남산1호터널	2019-01-02	20:24:40	29하1301	김정환	8,000	서울 강남구 개포로109길
689	남산3호터널	2019-01-03	18:30:52	40우7158	데레사(Theresa)	8,000	서울 종로구 동숭길
690	남산3호터널	2019-01-08	20:19:34	44하2093	주식회사 키이스트	8,00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691	남산3호터널	2019-01-03	20:59:01	49하7975	(주)경방	8,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692	남산3호터널	2019-01-03	18:07:53	63어9430	파인프라자(양해구)	8,000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693	남산1호터널	2019-01-02	18:15:33	64호2424	김미미	8,000	부산시 금사동 중군진로
694	남산3호터널	2019-01-03	9:46:23	67호7930	(주)삼오제약	8,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5	남산1호터널	2019-01-07	17:21:55	68호3219	주식회사 픽업	8,00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696	남산3호터널	2019-01-10	13:33:10	46호6586	(주)하나은행	8,000	서울 중구 을지로
697	남산3호터널	2019-01-09	16:17:39	52하3930	김규남	8,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698	남산3호터널	2019-01-14	9:35:00	58하6416	풀코스(민재인)	8,000	서울 성동구 동일로
699	남산3호터널	2019-01-09	17:05:11	66호2418	(주)대명홀딩스 서울지점	8,0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700	남산1호터널	2019-01-16	10:56:27	02거5450	장혜성	8,000	울산시 북구 신명길
701	남산1호터널	2019-01-22	9:39:03	16부8812	(주)서우	8,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702	남산1호터널	2019-01-22	15:00:26	18하5065	디지털PC종합병원 (이성환)	8,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03	남산3호터널	2019-01-21	8:09:45	18호7659	세마피앰씨(주)	8,000	서울 강남구 광평시47길
704	남산1호터널	2019-01-18	10:39:55	21하9680	(주)라니크	8,000	경기 파주시 책향기로
705	남산1호터널	2019-01-16	16:13:55	32머0241	주식회사버드케인	8,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6	남산3호터널	2019-01-18	14:28:05	34호5871	서현주	8,000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707	남산3호터널	2019-01-16	12:14:45	44하2093	주식회사 키이스트 (신필순,박성혜)	8,00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708	남산1호터널	2019-01-16	12:08:46	44호5155	황정욱	8,000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709	남산1호터널	2019-01-18	18:08:04	46가3699	SK증권(주)	8,0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710	남산3호터널	2019-01-22	14:07:45	46호0492	㈜이화텔레콤 (윤영배)	8,00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11	남산1호터널	2019-01-22	9:31:08	49하5861	윤선애	8,000	서울 종로구 평창동21길
712	남산3호터널	2019-01-22	17:50:08	52하4772	거인의어깨기성쌤 수학학원(이기성)	8,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223번길
713	남산3호터널	2019-01-16	10:58:25	59모0502	삼성전자(주)	8,0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714	남산1호터널	2019-01-23	9:02:48	60하3394	㈜ 제이앤제이콥스	8,00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4길
715	남산1호터널	2019-01-22	8:38:20	61하6132	지우테크(주)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40번길
716	남산3호터널	2019-01-18	11:00:09	61호7354	(주)전북은행	8,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17	남산3호터널	2019-01-21	15:10:31	63보0679	전영옥	8,000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6길
718	남산3호터널	2019-01-23	9:54:56	63하1954	코오롱인더스트리 (주)	8,000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719	남산1호터널	2019-01-22	15:29:13	64하7288	홍두표	8,000	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317번길
720	남산1호터널	2019-01-22	11:29:26	65하5009	주식회사 헤럴드아트데이	8,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길
721	남산3호터널	2019-01-18	14:15:33	66호2515	김기훈	8,000	서울시 관악구 복은2길
722	남산3호터널	2019-01-17	15:16:59	67하4489	나이스알앤씨 주식회사	8,00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723	남산3호터널	2019-01-18	10:31:41	68하8425	(주)우리은행	8,0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0길
724	남산3호터널	2019-01-17	13:37:57	69호5654	의정부농협	8,000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725	남산1호터널	2019-01-30	11:45:40	04두4436	(주)천일오토모빌	8,00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726	남산1호터널	2019-01-31	16:20:26	06호3960	(주)지리산쌀	8,000	전북 남원시 보절면 보산로
727	남산3호터널	2019-01-24	19:48:10	18하8158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8,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28	남산1호터널	2019-01-28	15:56:18	20하9710	코디아어쿠스틱	8,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42번길
729	남산3호터널	2019-01-24	20:05:23	21호8860	김경호 (목수와나무)	8,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730	남산3호터널	2019-01-29	10:49:28	35호9313	삼정회계법인	8,0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31	남산3호터널	2019-01-29	12:33:47	44하2093	주식회사 키이스트 (신필순,박성혜)	8,000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732	남산1호터널	2019-01-31	13:27:08	44하8119	법무법인 세종	8,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733	남산3호터널	2019-01-25	18:11:37	44호9214	㈜ 에스엘메디케어	8,000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734	남산3호터널	2019-01-30	17:32:28	46호2137	(주)마임(홍혜실)	8,000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735	남산3호터널	2019-01-30	11:14:30	49하7045	로봇김밥(이윤경)	4,000	서울 종로구 종로5길
736	남산1호터널	2019-01-31	8:12:29	50도0611	(주)예서림	8,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737	남산1호터널	2019-01-31	14:21:44	52소6582	황시현	8,0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38	남산1호터널	2019-01-29	9:42:22	52하6593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황세준)	8,000	서울 강남구 신사동
739	남산1호터널	2019-01-30	10:22:54	53하8996	(주)부영주택	8,000	서울 중구 서소문동
740	남산3호터널	2019-01-30	11:13:10	54호6024	오리엔트전자	8,000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741	남산1호터널	2019-01-31	10:26:32	57호1370	박승자	8,0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742	남산3호터널	2019-01-24	13:57:18	57호1640	(주)서연이화 R&D센터(김근식)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743	남산1호터널	2019-01-30	20:04:48	58호8427	대한사료주식회사 (이상민)	8,000	인천시 중구 북성포길
744	남산1호터널	2019-01-24	17:59:10	62마3432	(주)라라디자인	8,000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745	남산3호터널	2019-01-29	17:23:47	63하4808	HAN JENNY	8,000	서울 중구 삼일대로
746	남산3호터널	2019-01-25	15:54:37	65호1079	YIN YI	8,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747	남산1호터널	2019-01-31	18:34:27	66호5617	HAZZAA SAEED HUMAID MOHAMED	8,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748	남산1호터널	2019-01-29	20:30:15	67하7898	대한전선(주) (최진용)	8,00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49	남산3호터널	2019-01-25	19:06:39	68호1404	호화수(박경희)	8,000	서울 용산구 보광로
750	남산1호터널	2019-01-30	12:09:43	69러0975	주식회사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박진용)	8,000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751	남산3호터널	2019-01-28	11:26:18	69하5040	김경식	8,00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6길
752	남산1호터널	2019-01-24	14:19:45	69하6421	은산해운항공(주)	8,000	부산시 중구 해관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753	남산1호터널	2019-01-31	19:39:35	69호9690	주식회사 유신(지미향)	8,000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754	남산3호터널	2019-01-17	10:24:34	04호1032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	8,000	경기 부천시 신흥로
755	남산1호터널	2019-01-22	10:05:47	14허8978	양석봉	8,000	서울시 중구 후암로
756	남산1호터널	2019-01-17	20:05:10	18하0128	웜지컬디자인 스튜디오(박성환)	8,000	서울 중구 다산로32길
757	남산1호터널	2019-01-16	13:19:35	18하7282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한재준)	8,000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758	남산3호터널	2019-01-16	16:06:07	20하8155	박진성	8,00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59	남산3호터널	2019-01-16	14:11:30	21하7975	(주)토니모리	8,000	서울서초구 남부순환로
760	남산1호터널	2019-01-18	8:57:45	26주2275	(주)명승	8,000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관산길
761	남산3호터널	2019-01-21	12:53:24	27버3769	㈜ 삼성경제연구소	8,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762	남산3호터널	2019-01-21	20:44:50	29호1625	김태원	8,000	서울 강서구 등촌로35가길
763	남산3호터널	2019-01-21	15:34:33	33너0248	티 플레이트 (서순영)	8,000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64	남산3호터널	2019-01-18	19:26:38	33호5192	이민정	8,000	경북 구미시 장천면 하장3길
765	남산1호터널	2019-01-18	9:03:21	46호6812	㈜하나은행 (지성규)	8,000	서울 중구 을지로
766	남산3호터널	2019-01-17	14:44:43	48하7446	모아특허법인	8,000	서울 서초구 명달로
767	남산1호터널	2019-01-16	16:23:42	49하5686	주식회사 루크투어	8,000	서울 중구 삼일대로
768	남산1호터널	2019-01-16	11:44:37	52하1316	곽용화	4,000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769	남산1호터널	2019-01-22	20:14:05	52하3887	SHIOZUKA YOSHIHITO	8,0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770	남산1호터널	2019-01-23	12:51:22	52허8504	송하슬	8,000	서울 마포구 손기정로12길
771	남산3호터널	2019-01-18	14:22:38	56하9155	손병호	8,000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평창36길
772	남산3호터널	2019-01-21	18:07:16	60호8490	(주)에이치티엠	8,000	서울 강남구 언주로
773	남산3호터널	2019-01-22	19:18:32	62호7763	메타빌드 주식회사(조풍연)	8,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774	남산3호터널	2019-01-18	8:48:14	63하8543	원동호	8,00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75	남산3호터널	2019-01-21	14:48:08	67하2271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정도현)	8,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6	남산1호터널	2019-01-23	18:55:34	67호3053	(주)퀸즈	8,000	제주 제주시 죽성서길
777	남산1호터널	2019-01-22	20:57:43	68호9677	이원섭	8,0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778	남산1호터널	2019-01-24	20:52:25	13하4278	주식회사고우스틸	8,0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779	남산1호터널	2019-01-31	14:47:31	18호2647	㈜에이치켐 (박종범)	8,000	울산시 남구 용잠로
780	남산3호터널	2019-01-29	19:07:21	20하6060	강건하	8,000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8다길
781	남산1호터널	2019-01-24	19:27:06	22가1766	(주)씨엔앤케이	8,000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782	남산3호터널	2019-01-31	15:32:30	23구8257	삼성에스디아이 (주)	8,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783	남산1호터널	2019-01-30	7:04:17	34호2088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8,000	서울 중구 을지로5길
784	남산1호터널	2019-01-25	19:32:19	35하0176	(주)국민은행	8,000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785	남산3호터널	2019-01-28	17:01:56	44호4602	이일순	4,000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786	남산1호터널	2019-01-28	9:02:17	44호7117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김성환)	8,000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 금강로
787	남산1호터널	2019-01-24	20:53:31	46하9680	대성건설(주)	8,0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중학교길
788	남산1호터널	2019-01-24	19:56:18	46호3420	이상옥	8,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789	남산1호터널	2019-01-29	16:43:26	52하5541	롯데로지스틱스(주)	8,000	서울 중구 통일로
790	남산3호터널	2019-01-31	20:53:16	52호5211	(주)제니아(최강무)	8,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791	남산3호터널	2019-01-25	20:55:07	57누4527	㈜중앙아이씨에스	8,00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792	남산1호터널	2019-01-24	10:31:10	58두2018	임형준	8,0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93	남산1호터널	2019-01-31	20:45:01	63하6105	송인선	8,000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
794	남산1호터널	2019-01-28	18:34:10	63호1120	롯데건설(주)	8,000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795	남산1호터널	2019-01-28	13:33:30	64호6373	축산기획부	8,000	서울 중구 새문안로
796	남산1호터널	2019-01-29	19:37:50	65호4666	㈜블루코어(이동화)	8,00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797	남산1호터널	2019-01-24	17:43:28	66하8108	화담디자인(이한주)	8,000	경기 광주시 중앙로346번길
798	남산1호터널	2019-01-29	11:05:15	67하4309	주식회사 테스	8,0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6번길
799	남산1호터널	2019-01-30	17:55:52	67하7388	(주)국민은행(허인)	8,00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00	남산1호터널	2019-01-28	13:23:36	67호8851	마커스랩(주)	8,000	서울 은평구 통일로
801	남산1호터널	2019-01-28	14:41:54	69하7415	권현진	4,000	서울 마포구 신촌로
802	남산3호터널	2019-01-21	10:50:15	54하9708	주식회사 더에스와이지연구원(이성운)	8,0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03	남산3호터널	2019-01-21	15:55:31	02하5545	신연서	8,0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804	남산3호터널	2019-01-21	16:22:45	04호5000	이준석	8,000	경기 김포시 운양동
805	남산3호터널	2019-01-21	20:16:54	04호8416	(주)디앤씨팩토리	8,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4길
806	남산1호터널	2019-01-17	11:17:12	22하0332	(주)매일경제티브이(서정희)	8,000	서울 중구 필동1가
807	남산3호터널	2019-01-22	16:09:37	04모1895	체크앤업학원(이은성)	8,000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40번길
808	남산1호터널	2019-02-12	12:42:04	04호4793	주식회사 네오랩	8,000	서울 강서구 양천로67길
809	남산3호터널	2019-02-14	8:58:24	09마2579	신한은행	8,00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810	남산1호터널	2019-02-07	16:30:23	09하0439	이재훈	8,000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811	남산3호터널	2019-02-08	15:08:45	09호9126	ZHANG ZHE	8,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15길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812	남산1호터널	2019-02-07	10:37:40	10호2885	안일모	8,000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813	남산3호터널	2019-02-12	17:17:16	16오8283	한국산업은행	8,0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814	남산1호터널	2019-02-11	17:52:02	20하6513	김일태	8,000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47길
815	남산3호터널	2019-02-08	20:26:34	32어7079	예학영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80번길
816	남산1호터널	2019-02-08	18:14:25	34호9137	우성인	8,000	서울 강남구 자곡로3길
817	남산3호터널	2019-02-15	18:58:54	35하0434	김희태	8,00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15길
818	남산1호터널	2019-02-15	10:11:30	37하2681	(주)우리은행	8,000	서울시 중구 소공로
819	남산1호터널	2019-02-14	9:23:34	37호4576	한전아트스포츠클럽(박흥식)	8,00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2길
820	남산1호터널	2019-02-11	19:11:53	37호8207	CAI XINNAN	8,00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9가길
821	남산3호터널	2019-02-07	8:09:03	37호9723	PIAO YUNHE	8,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822	남산1호터널	2019-02-13	20:29:37	39하6304	GC녹십자랩셀	8,0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823	남산1호터널	2019-02-14	10:08:20	39호1620	성원F&B와팡	8,000	경기 화성시 동탄하나3길
824	남산1호터널	2019-02-15	10:44:17	39호2494	에이스하우스주식회사	8,000	서울 중랑구 망우로
825	남산3호터널	2019-02-14	11:13:35	39호5003	(주)이엔팜	8,000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826	남산1호터널	2019-02-13	7:36:02	40하0642	지에스건설(주)	8,000	서울 종로구 종로
827	남산1호터널	2019-02-08	16:00:03	40하3924	(주)대승인터컴	8,000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828	남산3호터널	2019-02-13	7:09:17	42호1707	(주)우리은행	8,00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0길
829	남산1호터널	2019-02-13	14:41:04	45호3337	EPS KOREA(주)	8,000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830	남산1호터널	2019-02-14	13:49:02	45호4454	최수진	8,000	서울 강북구 솔매로41길
831	남산1호터널	2019-02-08	20:27:43	45호8397	주식회사 하나은행	8,000	서울 중구 을지로
832	남산3호터널	2019-02-01	20:41:59	47호5529	정웅교	4,000	경기도 김포시 북변1로16번길
833	남산1호터널	2019-02-11	19:16:05	48호1898	김성주	8,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834	남산3호터널	2019-02-08	14:42:14	51호7971	LI CHENGBIN	8,000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11길
835	남산3호터널	2019-02-07	20:04:52	53호5088	한국노바티스(주)	8,0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36	남산1호터널	2019-02-07	18:57:15	55하0245	고봉삼계탕 코엑스점	8,000	서울 중구 명동7길
837	남산3호터널	2019-02-08	15:22:51	55호9798	SK이노베이션(주)	8,000	서울시 종로구 종로
838	남산3호터널	2019-02-11	20:23:14	61고0416	한국산업은행	8,00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839	남산3호터널	2019-02-07	12:49:54	63하9559	농협양곡	8,000	서울 서초구 매헌로
840	남산3호터널	2019-02-14	12:13:06	63호3896	㈜엘케이토탈공조	8,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41	남산3호터널	2019-02-14	8:37:05	64호2078	GS25정왕유호점(이희성)	8,000	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842	남산3호터널	2019-02-12	20:38:09	69하3740	새롬(이순자)	8,000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29길
843	남산1호터널	2019-02-12	17:31:53	69호5269	JIN LONGDE	8,000	경기 광명시 광삼로13번길
844	남산3호터널	2019-02-13	15:39:31	01하1144	우이경	8,000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845	남산3호터널	2019-02-15	13:51:29	04하5809	성은수	8,000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624번길
846	남산1호터널	2019-02-14	9:41:12	09하7761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8,0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847	남산3호터널	2019-02-13	7:24:55	09호7488	주식회사 폰애드	8,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202번길
848	남산1호터널	2019-02-14	10:35:05	12호4777	이현정	8,000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4길
849	남산1호터널	2019-02-08	15:30:54	14호8996	주식회사 가원건설	8,000	전북 군산시 백토로
850	남산1호터널	2019-02-07	18:08:08	17호6813	한화투자증권(주)	8,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51	남산3호터널	2019-02-11	17:57:50	18하8000	ROGERS PAUL JAMES	8,000	서울 서초구 심반포로
852	남산1호터널	2019-02-14	7:04:17	20호6781	최미미	8,00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853	남산3호터널	2019-02-11	18:15:34	29호5565	㈜엠에이치알 커뮤티케이션즈	8,000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54	남산1호터널	2019-02-13	18:02:00	37호1489	㈜ 클라우드게이트	8,000	서울 강남구 언주로
855	남산3호터널	2019-02-12	17:37:11	37호5851	방승철 (비씨커뮤니케이션즈)	8,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856	남산3호터널	2019-02-14	10:29:57	37호9723	PIAO YUNHE	8,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857	남산1호터널	2019-02-07	18:12:24	37호9723	PIAO YUNHE	8,000	서울시 중구 퇴계로
858	남산3호터널	2019-02-01	13:58:44	39도5612	최중규	8,000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98길
859	남산1호터널	2019-02-12	10:02:56	39호0820	즐거운쇼핑 (장형철)	8,000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45번길
860	남산1호터널	2019-02-01	17:50:20	39호2061	주식회사 디자인스틸	8,000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861	남산1호터널	2019-02-14	20:13:24	39호2494	에이스하우스 주식회사	8,000	서울 중랑구 망우로
862	남산1호터널	2019-02-12	20:30:47	40호4216	법무법인 써밋	8,000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863	남산3호터널	2019-02-15	18:05:06	44하5129	(주)돌든포우	8,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가룡길
864	남산3호터널	2019-02-13	16:26:12	45하1698	(주)조선방송	8,00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865	남산3호터널	2019-02-13	20:44:11	45호0282	대검찰청	8,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866	남산1호터널	2019-02-08	14:42:27	45호4370	통영시청	8,00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867	남산3호터널	2019-02-08	15:37:34	45호8271	LIU JUN	8,000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41길
868	남산1호터널	2019-02-07	18:14:06	48호5004	이영옥	8,000	경기 광주시 목동길46번길
869	남산1호터널	2019-02-15	11:12:38	51호5344	삼정이엔지	8,000	경기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870	남산1호터널	2019-02-13	7:11:08	51호9823	(주)밸리브	8,000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
871	남산1호터널	2019-02-11	19:35:40	52도1207	(주)아이캔아이디자인	8,000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872	남산3호터널	2019-02-11	17:24:07	55하0245	고봉삼계탕 코엑스점	8,000	서울 중구 명동7길
873	남산3호터널	2019-02-01	10:04:25	56하5633	국민은행	8,0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874	남산3호터널	2019-02-15	16:11:11	56호2045	주식회사 우리기술미래	4,000	서울 금천구 두산로

연번	요금소	통행일자	통행시간	차량번호	소유자	과태료	주소
875	남산3호터널	2019-02-13	15:54:20	57호3008	(주)제이알인더스트리	8,000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876	남산3호터널	2019-02-14	15:01:57	63하5636	(사)한국능률협회	8,000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77	남산3호터널	2019-02-15	10:20:12	63호3896	㈜엘케이토탈공조	8,00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78	남산1호터널	2019-02-14	20:43:33	64하5257	박현진	8,000	서울 은평구 구산동
879	남산3호터널	2019-02-15	17:24:29	67호7546	천지개발(주)	8,000	부산 금정구 부곡로
880	남산3호터널	2019-02-07	14:07:45	63루2369	선일기업(주)	8,000	서울 강남구 도곡로
881	남산3호터널	2019-02-11	15:26:31	09호4906	옴프 주얼리 (이유진)	8,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9길
882	남산3호터널	2019-02-13	20:53:10	51호2579	주식회사 동해인터내셔널	8,000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3	남산1호터널	2019-02-14	20:34:27	62하4694	(주)넷케이티아이	8,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24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폐업사유	비 고
1	아산종합건설(주)	김영윤	2019.04.04.	서울1900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5층 1515호(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500,000	
2	㈜에프엠산업개발	어준경	2019.04.10.	서울1900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12, 2층(성수동2가, 성수빌딩)	400,000	
3	㈜호원평택고덕대토개발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일성	2019.04.22.	서울1900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9층(여의도동, 에스케이증권빌딩)	8,765,567	
4	동암건설산업(주)	김형수	2019.04.22.	서울19003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47, B03-1호(마곡동,경동미르웰플러스오피스텔)	1,200,000	
5	㈜용민	이용성	2019.04.24.	서울1900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95, 서관 806호(수서동, 사이룩스오피스텔)	1,300,000	
6	㈜팀스페이스파트너스	박위순	2019.04.30.	서울1900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24, 3층(대치동, 진영빌딩)	300,000	
7	㈜평구파이낸스대부	이성원	2019.04.30.	서울1900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901호(역삼동, 혜천빌딩)	1,500,000	
8	㈜티시스	김기유, 윤일중	2019.04.01.	서울190024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0, 별관8층(장충동2가)	법인합병	
9	㈜다산종합건설	이명길	2019.04.01.	서울190025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89, 4층(잠실동, 영우빌딩)	경기도→서울시	전입
10	㈜초이스건설	이문영	2019.04.01.	서울190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에이동 1216호	경기도→서울시	전입
11	㈜씨플랜	장민구	2019.04.10.	서울17003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901호(역삼동, 혜천빌딩)	기타	
12	㈜태림리더스	김명현	2019.04.17.	서울1800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0, 13층 1302호(상수동, 세방글로벌시티)	사업종료	
13	㈜더조은산업개발	박은기	2019.04.22.	서울16006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501호(가산동, 더루벤스밸리)	사업종료	
14	㈜리메르	김경배	2019.04.22.	서울1400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29길 7, 2층(양재동, 서울빌딩)	기타	
15	새울건설(주)	윤경옥	2019.04.24.	서울17010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21, 302호(창동, 새울)	사업종료	
16	㈜케이알원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링징팅까리나	2019.04.24.	서울0801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9층(여의도동, 에스케이증권빌딩)	사업종료	
17	에쓰-오일(주)	오스만 알-감디	2019.04.26.	서울11009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사업종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27호

설계 ·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케이이테크 (110111.6608959)	황영록	전문감리업 (서울S-2-545)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06, 203호(군자동, 동서울빌딩)	2019. 5. 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47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임*구 외 3명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19. 5. 9. ~ '19. 5. 24.

● 공고 사항

위 내용과 같이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대상자는 근거 법령에 의해 부동산 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02-2133-4570~76)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전용차로위반과태료 체납 부동산압류 공시송달 내역(2019년 5월)

연번	건명	압류번호	성명	등기번호	반송사유	건수	체납액(원)	차량번호	압류물건	기본주소	상세주소
1	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교통지도과-8823 2019.4.16.	임*구	1091863498536	수취인불명	1	2,174,000	46나15*3, 서울36허88*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820 대동다숲아파트 ***동 *층 ***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은행마을로46-**	(식사동)
2	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교통지도과-8823 2019.4.16.	김*중	1091863498541	수취인불명	1	1,910,800	서울85너37*6, 90다28*8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6**	서울서 초구 방배동 761-*	*층
3	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교통지도과-8823 2019.4.16.	손*미	1091863498535	기타	1	1,500,000	경기34모13*6, 32더60*0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31-56 벧엘하우스 *층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3 가길**	***호 (중화동,지층)
4	전용차로위반과태료체납자재산압류통지서	교통지도과-8823 2019.4.16.	이*주	1091863498548	폐문부재	1	1,416,000	경기64거17*5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157-*	경기도 여주시 상거동 149-*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 2019. 5. 1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51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보람상조개발 (주)	서울 후-제551호	오준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3층 (☎ 02-1588-7979)	소재지 ('19.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2층(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3층
2	보람상조 라이프(주)	서울 후-제552호	오준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4층 (☎ 02-1588-7979)	소재지 ('19.4.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2층(역삼동, 역삼하이츠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3, 태평로빌딩 24층
3	토탈스위스코리아(주)	서울 제852호	왕웬친 (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0, 7층(역삼동, 토탈스위스빌딩) (☎ 02-2051-8833)	소재지 ('19.4.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6, 8층(대치동, 연봉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0, 7층(역삼동, 토탈스위스빌딩)
5	스마트스템셀 (주)	서울 제874호	박진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13 태현빌딩 6층(역삼동) (☎ 1833-9996)	소재지 ('19.3.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0, 701호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13 태현빌딩 6층(역삼동)
6	메리케이코리아(유)	서울 제750호	김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길 8, 4층 (역삼동) (☎ 02-566-1963)	소재지 ('19.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12층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3길 8, 4층 (역삼동)
7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주)	서울 제897호	강영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현익빌딩 7층 (역삼동) (☎ 02-6204-5678)	소재지 ('19.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45, 한독빌딩 4층 408호 (도곡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현익빌딩 7층 (역삼동)
8	포데이즈 코리아(주)	서울 제879호	와다케이코(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 11층(역삼동, 타워432) (☎ 02-2954-0651)	소재지 ('19.3.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45, 4층 (신사동, 우림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32, 11층(역삼동, 타워432)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9	(주)에이뉴힐	서울 제896호	김 충 륜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로 383, 1층 (☎ 02-6250-7100)	소재지 ('19.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47, 1층 111호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로 383, 1층
10	파시글로벌코리아(주)	서울 제888호	정지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3, 4층(역삼동, 고운빌딩) (02-562-5550)	소재지 ('19.4.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363호, 1620호(역삼동, 포스코P&S타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3, 4층(역삼동, 고운빌딩)
					전화번호 ('19.4.5.)	02-2015-7771	02-562-5550
11	알즈너디디고대리점	서울 후-제754호	장미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30 4층 (☎ 02-765-5380)	소재지 '19.3.22	서울시 성북구 28길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30 4층
12	㈜대노복지사업단	서울 후-제375호	박남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71, 5층 5호(당산동4가,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 02-1588-3543)	소재지 '19.3.4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정로 54(효창동,대한노인회 중앙회별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71, 5층 5호(당산동4가, 금강펜테리움아이티타워)
13	리엔케이화장품 영등포대림지사	서울 후-제757호	증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32, 202호 (대림동) (☎ 010-2473-****)	상호 '19.3.8	스위트드림	리엔케이화장품 영등포대림지사
14	더휴앤컴퍼니(주)	서울 제197호	류석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3길 6, 비케이40빌딩 2층 (역삼동) (☎ 02-556-2194)	소재지 ('19.3.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8길 18 (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3길 6, 비케이40빌딩 2층 (역삼동)
15	도담	서울 후601호	김진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25, 청구3차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110호 (중계동) (☎ 010-3941-****)	소재지 '19.2.2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50, 105호(중계동, 그린코아빌딩)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 225, 청구3차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110호 (중계동)
16	코리아나 구로점	서울 후제640호	최찬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99, 4층(영등포동6가, 1호) (☎ 02-852-8208)	소재지 ('19.2.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0, 702-1호(구로동, 대림오페라타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99, 4층(영등포동6가, 1호)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7	㈜ 베스트라이프 케이	서울 제856호	김성호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7, 5층(서초동, 평환빌딩) (1522-8002)	폐업신고 '19.4.16		
18	마임 종로동부지사	서울 후-제86호	성조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5-5, 3층(창신동,세화빌딩) (☎ 02-743-5088)	폐업신고 '19.4.11		
19	리엔케이 서초지사	서울 후-제496호	강 원 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3길 25, 2층(사당동) (☎ 010-3062-****)	폐업신고 '19.4.9		
20	마임우이지사	서울 후-제78호	허미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62, 2층(수유동) (☎ 02-997-5100)	폐업신고 '19.4.8		
21	럭셔리뷰티 당산역점	서울 후-제681호	윤만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97 (☎02-6925-1400)	폐업신고 '19.4.4		
22	마포용산 건강생활	서울 후-제350호	오 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36, 4층(도화동) (☎ 02-711-7425)	폐업신고 '19.4.3		
23	㈜메르시라이프	서울 후-제642호	이 광 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5, 3층 (도곡동) (☎1899-8056)	폐업신고 '19.3.29		
24	마임 도봉방학지사	서울 후 제70호	한춘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146, 2층(방학동) (☎ 02-955-2340)	폐업신고 '19.3.25		
25	아모레보라매 특약점	서울 후 제635호	이용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 258, 4층 (신길동) (☎02-849-8971)	폐업신고 '19.3.22		
26	오휘신대방지사	서울 후 제383호	서민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34, 2층 (신대방동) (☎ 02-834-0696)	폐업신고 '19.3.21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7	마임불광 중부지사	서울 후 제76호	홍미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23, 2층(불광동) (☎ 02-359-2938)	폐업신고 '19.3.20		
28	마임 서울대지사	서울 후 제247호	황규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4, 203호(봉천동) (☎ 02-879-1914)	폐업신고 '19.3.19		
29	유니베라	서울 후 제36호	승은정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430-37번지 6층 (010-7226-8067)	폐업신고 '19.3.13		
30	리엔케이화장 품강남선릉지사	서울 후 제147호	김용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1416호 (대치동, 샹제리제센터) (☎ 02-554-4494)	폐업신고 '19.3.18		
31	성찬상사	서울 후 제566호	이미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9길 19-5, 102호(쌍문동) (☎ 02-994-8900)	폐업신고 '19.3.15		
32	㈜유니베라	서울 후 제550호	박영주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8(성수동2가) (02-463-3100)	폐업신고 '19.3.14		
33	(주)큐사이언 스코리아	서울 후 제813호	마크윌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14층(역삼동, 한독빌딩) (02-539-7733)	폐업신고 '19.3.8		
34	아모레대림특 약점	서울 후-제626호	류기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71, 3층 (대림동, 영강빌딩) (☎ 02-833-2138)	폐업신고 '19.3.6		
35	웰라이프(주)	서울 후-제501호	강기덕, 이윤창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5, 4층(남현동) (02-795-4413)	폐업신고 '19.3.6		
36	마임미아서부	서울 후-제80호	박길엽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83-1, 2층(미아동) (02-984-5114)	폐업신고 '19.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0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2019 상반기 희망지사업 최종선정 결과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이전 주민모임·자치구의 제안으로 도시재생 공감대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공모한 2019년도 상반기 희망지사업의 최종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최종선정결과

연번	자치구	선정지역	신청면적	비고
1	종로구	사직동 8,9,13,14통 일대/ 청운 · 효자동 3~8, 10통 일대	15만㎡	-
2	중랑구	망우본동 2,6,7,34통 일대	13만㎡	조건부선정
3	광진구	자양4동 63-1번지 일대	14만㎡	조건부선정
4	양천구	목3동 5~17통 일대	15만㎡	
5	강서구	공항동 12~28통 일대	13만㎡	조건부선정

2. 문의처

☐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 ☎ 2133-7167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 6929-3253.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2호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9호(2013.03.21.)'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광장	교통광장	종로구 적선동 202-3 일대	25,900.8 (25,467)	-	13,289.3 (13,277.9)	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	경복궁 앞 광장 ※ 중복결정 - 도시철도① (1,281㎡) - 광로 2-106 (13,289.3㎡)
변경	②	광장	교통광장	종로구 세종로 77-6 일대	8,500.0	감)350.0	8,150.0	-	※ 중복결정 - 지하도로① (44㎡) - 공공청사① (8,15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④	광장	일반 광장	종로구 세종로	80,856.6 (62,923.2)	증)22,893.7	103,750.3 (85,817.4)	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	광화문광장 ※ 중복결정 - 광로 1-1 (54,856㎡) - 광로 3-7 (1,604㎡) - 광로 2-106 (3,517㎡) - 지하도로① (801㎡) - 지하도로② (31㎡) - 문화시설② (3,342㎡) - 도시철도① (396㎡) - 도시철도② (3,254㎡)
변경	⑤	광장	경관 광장	종로구 세종로 76-2 일대	9,494.6	감)3,017	6,477.6	서울특별시고 제1996-144호 (1996.05.30)	의정부터
변경	⑥	광장	경관 광장	종로구 세종로 80-1 일대	8,855.3	감)86.6	8,768.7	서울특별시 고시 제26호 (1976.02.13)	세종로공원 ※ 중복결정 - 주차장① (8,768.7㎡)
신설	⑦	광장	교통 광장	적선동 36-2 일대	-	증)10,268.7	10,268.7 (9,746.6)	-	※ 중복결정 - 광로 2-106 (10,268.7㎡)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교통광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위치 및 면적변경
②	광장	교통광장	면적 변경	•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면적변경
④	광장	일반광장	면적 변경	•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면적변경
⑤	광장	경관광장	면적 변경	•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면적변경
⑥	광장	경관광장	면적 변경	•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면적변경
⑦	광장	교통광장	신설	•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광장신설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등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생략(정보통신망 및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요약문) 게재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02-2133-7740, 7742, FAX 02-2133-0894)
- 종 로 구 건축과(☎ 02-2148-2813)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도서로 갈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4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5. 16. ~ 2019. 5. 30.(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소유자	주소	우편번호	반송사유
	16건												
1	20208308	08러4909	렉서스 NX300h	한강진역	2019-02-23	14:52	2019-02-23	16:41	2,700	박지훈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100	10905	폐문부재
2	20208245	18다3868	마칸 S	창동역	2019-02-16	21:56	2019-02-17	05:42	9,400	이재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5번길	11675	폐문부재
3	20208210	20노7586	E250 BlueTEC 4Matic	세종로	2019-02-10	13:42	2019-02-10	16:27	4,700	김영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1안길	15543	주소불명
4	20208293	21모1147	그랜저 (GRANDEUR)	신설동	2019-02-24	09:00	2019-02-24	19:00	18,000	권지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음암로 499	31942	폐문부재
5	20208254	21부0832	SM6	신천유수지	2019-02-18	09:27	2019-02-18	19:38	18,400	조영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50	02727	폐문부재
6	20208185	25누7069	Scirocco R-Line	복정역	2019-02-01	15:36	2019-02-01	20:42	6,200	이종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80번길	13119	폐문부재
7	20208249	27고4552	싼타페 (SANTAFE)	신설동	2019-02-17	15:12	2019-02-17	19:00	6,900	배규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730번길	10550	수취인 불명
8	20208321	28로6863	모하비	종묘	2019-02-25	15:12	2019-02-25	15:28	1,600	대성금속(주)	경기도시흥시군자천로31번길	15101	수취인 불명
9	20208218	32러4615	체어맨	신대방역	2019-02-11	22:46	2019-02-11	23:06	600	YIN JINSONG	대구광역시남구대명복개로3길	42477	폐문부재
10	20208277	35두0719	스파크 1.0	신대방역	2019-02-21	21:58	2019-02-22	01:20	3,000	김근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76	31168	폐문부재
11	20208228	38러9740	SM5	창동역	2019-02-12	11:42	2019-02-12	23:15	13,900	조한정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32	11742	폐문부재
12	20208244	39마6462	그랜저 하이브리드	종묘	2019-02-16	12:55	2019-02-16	17:02	20,000	김종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02461	수취인 불명
13	20208273	45보0662	CLS250 d 4Matic	신설동	2019-02-21	16:39	2019-02-21	19:00	4,300	(주)청담라이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06105	수취인 불명
14	20208229	48나4229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용산주차빌딩	2019-02-12	09:29	2019-02-12	10:39	3,500	윤솔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22길	07432	폐문부재
15	20208297	55머1675	액티언	신문로	2019-02-24	13:33	2019-02-24	19:00	33,000	임충환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1길	02166	폐문부재
16	20208264	98보1919	KJM 언더리프트	동대문	2019-02-20	03:36	2019-02-20	03:52	1,600	이미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6길	06144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5호

설계 · 감리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설계·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대한기술단 (110111.6534013)	강석운	전문감리업 (서울S-2-54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7길 13-8(갈현동)	2019. 5. 9.
		전문설계업2종 (서울E-3-2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8호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9 주민공모사업』 선정 결과

정동 역사재생활성화 지역의 주민(기관)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 주민(기관)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한 「정동 역사재생활성화지역 2019 주민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사 선정 결과

□ 기획공모 : 9건(235,836,000원)

<단위: 천원>

구분	연번	보조사업자	사 업 명	선정결과	보조금	
					신청액	결정액
기획공모	1	성공회 정오음악회	문화의 공간에서 함께하는 정동음악제 : 성공회 정오음악회	적격	26,600	26,600
	2	뉴코리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정동 역사재생 열린음악회	미선정	30,000	-
	3	50+사회적기업연구회	시민 참여 플래시몹, 근대한복체험 시민행사 '그대, 그날, 그렇게'	미선정	29,930	-
	4	K공방커뮤니티	史(사)려깊은 정동체험	미선정	26,560	-
	5	플레이더월드	정동 역사 게이미피케이션 투어 프로그램	조건부	30,000	30,000
	6	엠버스어즈	시간여행자와 함께 떠나는 스토리텔링투어 : 정동포스트 (The Post of Jeong Dong)	미선정	30,000	-
	7	앤다	1인 테마 스트리텔링투어 플랫폼<정동 플레이 컷> : 디자인씽킹 방법을 활용	조건부	29,962	29,960
	8	아트브릿지	미션형 정동역사탐방 프로그램 : "고종의 꿈"	적격	30,000	30,000
	9	정동도시건축세미나운영위원회	정동도시건축세미나 및 정동답사	적격	4,900	4,900
	10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토요 인문학 산책 <정동, 깊이 보기>	조건부	30,000	30,000
	11	한국맥주문화협회	정동 주민(대사관)과 맥주 문화와 함께 하는 정동 맥주 인문학	미선정	22,290	-
	12	정동-생활 연구	정동 생활문화 조사 : 역사, 공간, 인물	조건부	24,376	24,376
	13	정동역사재생지역협의체	정동 역사재생 지역협의체 매거진 <정동이야기(가칭)> 발간 사업	조건부	30,000	30,000
	14	한성교회	시민과 함께 하는 중화기독교 한성교회 역사콘텐츠 전시	조건부	30,000	30,000

□ 문의사항

○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 02-2133-8497).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69호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및 제10조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분)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및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9. 5. 16.~30.(14일)
4. 대　　상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과세년월	송달 주소지	반송사유
1	김○수	1973.03.**	2019.0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 **	수취인불명
2	임○성	1963.06.**	2019.03.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경강로 ****	수취인불명
3	이○우	1955.05.**	2019.03.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8길 **	폐문부재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 팩스(02-768-8835)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 (☎02-2133-7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70호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및『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및 제10조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분)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실외 공공장소 금연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5조 및 제1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9. 5. 16.~30.(14일)
4. 대　　상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과세년월	송달 주소지	반송사유
1	김○미	1997.06.**	2019.0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길 **	수취인 불명
2	박○희	1966.07.**	2019.02.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59번길**-*	폐문부재
3	장○성	1956.03.**	2019.0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폐문부재
4	이○건	1975.02.**	2019.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	폐문부재
5	나○수	1963.11.**	2019.02.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42번길**	폐문부재
6	김○국	1959.02.**	2019.02.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폐문부재
7	차○주	1991.07.**	2019.0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83번길 **-*	폐문부재
8	신○문	1966.12.**	2019.02.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 ***-**	수취인 불명

5.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 (☎02-2133-75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75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철도안전법 제47조, 철도안전법 제4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 5. 16. ~ 2019. 5. 30.(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당사자의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이메일(benecia12@seoul.go.kr), 팩스(02-2133-1069), 우편(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방문(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19. 6. 7.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 반송)대상자

순번	과세년월	납부기한	과세금액	고지구분	세목명	성명	발송지 주소	반송사유
1	2019-04	2019-04-16	9,500,000	사전통지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오을석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양청택지3길 22	수취인불명
2	2019-04	2019-04-16	7,250,000	사전통지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장두호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64번길 43	수취인불명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금액의 50%가 감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 **자진납부감면 20%와 기초생활감면 50%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후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면된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7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별표4]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바, 귀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 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부적격 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일자 : 2019. 4. 19.
3. 법적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84조[별표5] 등록취소 및 업무정치처분의 기준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사 유	적용법규
1	2006-5	㈜상지 도시개발	노중흠	광진구 아차산로73길 11, 2층(광장동)	등록취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	「도정법」 제10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2.개별기준 나목
2	2016-1	㈜창조씨엠	허강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309호(가산동, 한라시그마벨리)	등록취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2차 위반	「도정법」 제10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 [별표5] 2.개별기준 나목

5. 등록취소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현재 정비사업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06조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당해 처분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6. 위 행정처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아울러,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2133- 7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81호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5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16. ~ 2019. 5.29. (14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별첨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서울시청 재무과 지출팀(☎ 02-2133-3229)

반환기일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봉급공제금	2007-01-18	07.1월 직원 급여공제	재무과	2008-12-31	73,75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7-01-19	휴직자 연말정산 추징금 총무과	재무과	2008-12-31	192,14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7-09-28	소득세,주민세 - 마케팅담당관20020 환경35200 민원조사13200 문화정책198000	재무과장-기타소득	2008-12-31	20,0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8-08-19	08.8월 직원급여 원천	재무과	2008-12-31	5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1-19	09.1월 직원 고용보험료 원천	재무과	2009-02-19	887,0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2-19	2009.2월 직원 고용보험료 공제	재무과	2009-03-19	993,8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3-02	2009.1~2월실무수습공무원봉급원천	재무과	2009-04-02	59,2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3-19	2009.3월 직원 고용보험료 공제	재무과	2009-04-19	1,177,8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4-06	2009.3월공공근로원천징수-홍보담당관	재무과	2009-04-10	11,4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4-17	2009.4월직원급여원천	재무과	2009-05-11	218,2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4-17	2009.4월직원고용보험료원천	재무과	2009-05-11	1,715,9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4-21	원천세,수당추징액-교통지도담당관	재무과	2009-05-21	102,5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5-04	2009.4월실무수습임금원천-교통정책담당관	재무과	2009-06-04	6,24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5-06	2009.4월행정서포터즈임금원천세-청소년담당관	재무과	2009-05-11	2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5-06	2009.4월행정서포터즈임금원천세-도심재정비2담당관	재무과	2009-05-11	2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5-08	2009.4월행정서포터즈임금(조*홍)-뉴타운사업1담당관	재무과	2009-06-08	2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5-14	2009.5.11자 세입세출외현금 지급명령과납금 환급(박*선-실무수습,인사과3553(09.5.7)	(주)우리은행 서울시청영업본부	2009-06-14	47,6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6-18	2009.6월직원급여원천(국민연금)	재무과	2009-07-18	19,6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6-18	2009.6월직원급여원천(고용보험료)	재무과	2009-07-18	1,651,62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7-08	2006.5월실무수습(이*하,최*화,손*성)국민연금,건강보험료부족분추가납부	손*성	2009-08-02	169,8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7-10	2009.5~6월실무수습국민연금(학교지원담당관-이*만)55,120*2-20원=110220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8-10	110,2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7-13	2009.6월희망근로임금추가지급(현장밀착납세자-김*호)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8-13	31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7-17	2009.7월직원급여원천(고용보험료)2,081,520원중41,100직원급여에포함	재무과	2009-08-17	1,480,2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7-20	2009.7월직원급여원천(미이체자)	재무과	2009-08-20	9,59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04	2009.7월실무수습(6~7월소급)임금-재무과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04	151,2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05	2009.7월행정인턴임금(잠실)-디자인기획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05	98,2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05	2009.7월행정인턴임금(잠실1)-디자인기획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05	13,8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17	2009.7월비전임계약직(이*숙)보험료납부-마곡개발과6347(09.8.10)오*자 3517	이*숙	2009-09-11	93,1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11	2009.7월청소년진로정보사업참여자임금-일자리정책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11	1,6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13	2009.6~7월실무수습임금(위생과 주*명)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13	102,0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14	2009.6~7월실무수습임금소급지급-식품안전 장*경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14	28,2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18	봉급공제금부족분납부-정혜원 총무과27540(09.8.18)이*규 6607	정*원	2009-09-18	134,54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18	2009.8월 비전임계약직(유*)퇴직소득세주민세-교통지도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18	31,65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19	2009.8월 직원급여공제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19	366,37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8-31	2009.7월국민연금보험 부족분(유*진외35명) 납부(교통지도담당관-18278('09.8.13))김*희3655	유*진	2009-09-30	140,11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9-17	2009.9월직원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10-17	10,51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09-17	2009.9월직원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10-17	1,405,2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10-19	2009.10월직원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11-19	175,6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10-19	2009.10월직원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11-19	1,345,5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11-19	2009.11월직원국민연금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09-12-19	60,59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11-19	2009.11월직원고용보험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09-12-19	1,376,4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12-17	2009.12월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17	37,9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09-12-17	2009.12월고용보험료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17	1,285,6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1-19	2010.1월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19	1,0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1-19	2010.1월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19	851,3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2-25	실무수습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과다 지급분 차액 정산 납부(학교지원담당관 이*만)	이*만	2010-03-18	68,8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2-18	2010.2월직원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2-18	1,0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2-18	2010.2월직원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2-18	744,51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3-18	2010.3월직원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18	59,4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3-18	2010.3월직원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18	3,159,47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4-19	'10.4월 직원봉급공제액(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19	1,0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4-19	'10.4월 직원봉급공제액(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19	5,308,8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4-20	'10.4월 직원봉급공제액(소득세,실무수습19)-미이체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20	15,8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5-10	재무과 김*학,이*섭 공공근로 4월 임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6-10	123,8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5-19	'10. 5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6-19	4,770,5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5-19	'10. 5월 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6-19	1,0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6-17	2010. 6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7-17	4,692,06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7-19	2010.7월 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8-19	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7-19	2010.7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8-19	4,589,3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8-19	2010. 8월 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8-19	1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8-19	2010. 8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8-19	4,589,3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8-19	복지정책과 기간제근로자급여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9-19	13,57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9-17	2010.9월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9-17	1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09-17	2010.9월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9-17	4,561,68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0-19	2010.10월 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11-19	1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0-19	2010.10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11-19	6,643,8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1-18	2010.10월 -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12-18	247,29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1-18	2010.11월-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12-18	5,719,49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1-19	2010.10월 - 기여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12-19	165,6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2-17	2010.12월 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1-17	173,75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2-17	2010.12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1-17	1,307,5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0-12-17	2010.12월 소득세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1-17	59,2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1-19	2011.1월 국민연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2-19	114,00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1-19	2011.1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2-19	3,11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2-17	2011. 2월 고용보험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3-17	9,54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4-19	2011.4월 국민연금	재무과	2011-05-19	41,5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4-19	2011.4월 고용보험	재무과	2011-05-19	6,44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5-19	5월국민연금원천징수	재무과	2011-06-19	83,06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5-19	5월고용보험원천징수	재무과	2011-06-19	8,420

서울시립 제3520호 | 서울특별시 | 2019. 5. 16.(목)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6-17	2011년6월국민연금	재무과	2011-07-17	41,53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7-19	7월국민연금	재무과	2011-08-19	61,59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1-07-19	7월고용연금	재무과	2011-08-19	2,52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2-01-19	2012년1월고용보험료원천징수(행정과)	재무과	2012-02-10	5,77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3-09-16	2013년 9월 국민연금 봉급공제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3-10-10	81,990
보관금-봉급공제금	2013-09-16	2013년 9월 고용보험료 봉급공제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3-10-10	25,27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3-16	소득세,주민세-뉴미디어33,000 경쟁력정책17,220 관광진흥85,800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4-16	68,64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5-04	2009.4월행정서포터즈임금-토지관리과	재무과	2009-06-04	6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5-04	2009.4월행정서포터즈임금원천(장*진)-도심활성화담당관	재무과	2009-06-04	22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5-19	2009.5월직원급여원천징수(고용보험료)	재무과	2009-06-19	1,347,39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5-20	2009.5월직원급여원천징수(미이체)	재무과	2009-06-20	23,74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5-22	퇴직소득세주민세-교통지도담당관(하*선)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6-10	29,6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6-02	2009.5월행정서포터즈임금-토지관리과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6-10	6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6-24	2009.6월소득세주민세-푸른도시정책과(제안당선자시상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7-24	220,0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6-29	2009.6월실무수습급여(도로행정담당관 박*란)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7-10	49,95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6-30	실무수습국민연금착오지급분반환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7-30	22,54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7-01	2009.6월행정서포터즈임금-토지관리과(장*희,최*연)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7-10	22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8-20	2009.8월소득세주민세-재무과(미이체자:황*영,최*규)	재무과장-기타소득	2009-09-20	814,71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09-25	2009.9월시간제계약직(하*주)퇴직급여-38세금징수과	하*주	2009-10-25	64,22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0-26	2009.10월청소년진로상담사8~9월임금-일자리정책담당관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09-11-26	65,08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1-06	2009.10월행정인턴임금-문화산업담당관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09-12-06	14,64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1-11	2009.10월행정인턴임금-세제과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09-12-11	5,52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1-12	2009.10월행정인턴임금-푸른도시정책과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09-12-12	9,7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1-13	2009.10월청소년진로제공상담사임금-일자리정책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09-12-13	1,23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2-11	2009.11월희망근로임금-언론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11	44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2-11	2009.11월청소년진로정보제공자임금-일자리정책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11	3,6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2-29	2009.12월행정인턴임금-도시계획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29	5,4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09-12-31	2009.12월청년일자리진로제공-일자리정책담당관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1-31	1,29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1-22	2010.1월소득세주민세-행정과(마술사인건비)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2-22	92,4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03	2010.3월소득세주민세-학교지원(공공근로임금)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0-04-03	99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05	2010.3.소득세주민세/관광,명퇴수당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05	1,812,77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22	소득세주민세시간제계약짇퇴직금지급일자리지원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22	98,8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23	소득세주민세실무수습직원임금재무과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23	104,98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26	명퇴수당(조*윤)재무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26	558,03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29	소득세주민세실무수습3월급여((신청사이*현)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29	9,9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30	소득세주민세실무수습3월급여(일자리정책김*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30	100,69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30	소득세주민세명퇴수당지급조*윤(재무과)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30	558,03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3-30	소득세주민세실무수습3월급여(산업지원장*월)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4-30	6,67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4-05	2009.12소득세주민세행정인턴임금홍보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05	20,5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4-12	명예퇴직수당지급(도심재정비2담당관　원*희)(재무과)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12	690,50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4-16	3월분실무수습직원급여및수당지급(위생과,이*영)(재무과)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16	7,26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4-23	퇴직계약직공무원성과연봉지급(여성정책담당관 장*순)(재무과)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23	13,11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4-30	실무수습직원급여및수당지급(복지정책과 고*원)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5-30	13,2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5-07	재무과 행정인턴(이*현외3)	이*현외3	2010-05-07	38,22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5-12	재무과 김*아 2010.2단계 공공근로임금지급(4월)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6-12	59,89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6-28	재무과 퇴직계약직 성과연봉지급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7-28	79,91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7-06	버스정책담당관 희망근로참여자임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8-06	2,01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7-09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업참여자활동비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8-09	2,24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8-13	뉴타운사업1담당관 명예퇴직수당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09-13	301,13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9-06	버스정책-행정인턴임금(8월)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10-06	99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0-09-09	재무과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임금(김*학외1)	재무과장-기타소득	2010-10-09	119,73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3-02	총무과-기간제임금(2월)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4-02	40,97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3-02	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상근인력임금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4-02	17,97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3-09	식품안전관리과- 2011식품안전 보조인력(2월)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4-09	12,81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3-11	도로시설관리과-점검수당	재무과장-기타소득	2011-04-11	52,8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3-17	3월 국민연금	이*경	2011-04-17	11,58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3-17	3월고용보험	진*정	2011-04-17	3,74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4-06	업무보조인력3월임금지급(식품안전과)	재무과	2011-05-06	15,6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1-04-29	4월청도문서고기간제근로자임금지급(총무과)	재무과	2011-05-29	9,1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2-01-05	고증제작비지급(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	재무과	2012-02-10	198,00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요	납부자	반환기일	반환가능액
보관금-원천공제액	2013-07-01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홍보 사진 촬영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3-08-10	17,6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3-07-22	시민참여형신체활동리더 활동비 지급(6월분)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3-08-10	4
보관금-원천공제액	2013-09-17	2013년 9월 급여미이체자 건강보험료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3-10-10	145,25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3-10-08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지급(중도퇴직)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3-11-10	135,58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3-10-3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평가 위원 평가 제수당 지급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3-11-10	13,20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3-12-31	갈등조정관 활동수당지급(갈등조정담당관-강*경)	강*진	2014-01-10	6
보관금-원천공제액	2014-01-20	2014년 1월 공무직 급여지급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4-02-10	9,72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4-03-04	2013 귀속 연말정산 퇴직전출자 징수세액 납부	이*윤	2014-03-11	10
보관금-원천공제액	2014-03-07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1월급여 및 퇴직금 지급	재무과(시청세입세출외현금)	2014-04-10	37,52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84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5. 16. ~ 2019. 5. 30.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공간종합건설(주) (이상봉)	건축공사업 02-087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길 12, 3층(개포동)	사업자등록(605.86.10137) 폐업 - 폐업일자 : 2018.06.30.	등록말소 (2019.5.31.)	법 제83조 제12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전화 02-2133-8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93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따른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서울시청사(본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부과분(2017년도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9.5.16. ~ 2019.5.30.(15일간)
5. 납부방법 :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해 주차요금 및 납부기한 확인하여 납부
6. 유의사항
   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메일(joaing@seoul.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경과시, 향후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압류 등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조근희, ☎02-2133-5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서울시청사(본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부과분(2017년도분)공시송달대상명단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계	69건					775,800			
1	000184	20서9359	2017-01-13	1429	1800	21,000	위경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관문길	폐문부재
2	000189	05다0538	2017-01-13	1729	1800	3,000	주식회사 해밀테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101번길	수취인불명
3	000190	42누6951	2017-01-17	1612	1800	5,500	김소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2길	폐문부재
4	000194	40머6482	2017-01-31	1708	1800	2,500	이종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폐문부재
5	000206	13우1183	2017-02-28	1734	1800	1,000	정미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폐문부재
6	000212	45두6168	2017-04-04	1730	1800	600	김재룡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주소불명
7	000215	40머6482	2017-04-07	1550	1800	6,500	이종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폐문부재
8	000216	51러9720	2017-04-07	1637	1800	8,000	임동준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폐문부재
9	000218	69거8269	2017-04-10	1331	1800	27,000	남소연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보관기간경과
10	000219	16루5680	2017-04-13	1719	1800	4,000	정종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주소불명
11	000223	40머6482	2017-04-21	1541	1800	7,000	이종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폐문부재
12	000225	09더1367	2017-04-24	1717	1800	4,000	정대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폐문부재
13	000227	40머6482	2017-04-28	1504	1800	8,500	이종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1-4	폐문부재
14	000228	67보9368	2017-05-01	709	1800	54,000	양영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폐문부재
15	000236	11구4381	2017-05-17	1707	1800	5,000	배정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수취인불명
16	000238	40머6482	2017-05-19	1503	1800	9,000	이종호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폐문부재
17	000239	48조5664	2017-05-19	1512	1800	8,000	정길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폐문부재
18	000252	11루3381	2017-06-05	900	1800	54,000	황돈영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397번길	폐문부재
19	000257	42고8245	2017-06-09	1539	1800	14,000	이승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1길	폐문부재
20	000258	18두4271	2017-06-09	1712	1800	5,000	박승철	경기도 오산시 발안로	보관기간경과 불요

서울시보 제3520호 | 서울특별시 | 2019. 5. 16.(목)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21	000268	46오6544	2017-06-27	1721	1800	4,000	박현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처리
22	000270	42소0606	2017-06-30	1253	1800	31,000	최은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8길	폐문부재
23	000271	86모9183	2017-06-30	1733	1800	3,000	이진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34길	폐문부재
24	000276	19나3750	2017-07-04	1637	1800	8,000	최규철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56번길	폐문부재
25	000281	40구7565	2017-07-07	1708	1800	5,000	김이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폐문부재
26	000282	89가5457	2017-07-10	1504	1800	17,000	김성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폐문부재
27	000290	12다2832	2017-07-17	841	1800	54,000	박성규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폐문부재
28	000293	47루4311	2017-07-18	1711	1800	2,500	박미영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폐문부재
29	000295	64조7077	2017-07-19	1743	1800	400	유재원,유충헌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1나길	폐문부재
30	000298	60나6438	2017-07-21	1622	1800	5,000	조인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9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
31	000301	02저5208	2017-07-24	1703	1800	1,200	김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이사불명
32	000303	60버1234	2017-07-24	1738	1800	2,000	송운창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수취인불명
33	000304	27구2960	2017-07-25	1643	1800	8,000	김승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1길	폐문부재
34	000306	37버5499	2017-07-28	1706	1800	5,000	신은희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4길	폐문부재
35	000309	49조7967	2017-08-03	1516	1800	8,000	이민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폐문부재
36	000313	11도0411	2017-08-10	1454	1800	9,000	양덕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마길	폐문부재
37	000315	15루1139	2017-08-10	1730	1800	3,000	진명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보관기간경과
38	000317	60더5054	2017-08-14	1411	1800	4,600	이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2가길	주소불명
39	000324	58어3287	2017-08-17	1651	1800	7,000	이지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처리
40	000326	41조1527	2017-08-21	1726	1800	1,500	이명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21번길	폐문부재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41	000328	09루6286	2017-08-22	1503	1800	18,000	용소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75번길	보관일경과반송
42	000330	55나0992	2017-08-24	1644	1800	7,000	지인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1길	보관기간경과
43	000332	14루6142	2017-08-25	1557	1800	6,000	박휘광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주소불명
44	000335	19모0505	2017-08-25	1738	1800	2,000	유호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6가길	폐문부재
45	000342	25너4961	2017-08-31	1740	1800	1,000	서경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보관기간경과후 반송
46	000348	27오2874	2017-09-07	1337	1800	26,000	윤현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53번길	폐문부재
47	000362	18노8512	2017-09-21	1518	1800	16,000	홍정환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둔지길	폐문부재
48	000365	43고5505	2017-09-21	1647	1800	7,000	조세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1길	폐문부재
49	000375	22로7800	2017-09-29	1730	1800	1,500	박상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폐문부재
50	000378	55다0322	2017-10-11	1646	1800	7,000	MOON JAMES JAE WON(문재원)	경기도 하남시 아리수로	폐문부재
51	000380	34나0626	2017-10-13	1648	1800	3,000	김동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27번길	보관기간경과
52	000382	60어6734	2017-10-17	1738	1800	1,000	한상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아길	폐문부재
53	000383	42수5178	2017-10-18	1738	1800	2,000	서향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13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
54	000385	64다5457	2017-10-20	1735	1800	2,000	김현묵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폐문부재
55	000386	92무2151	2017-10-23	1320	1800	28,000	(주)칼라엔터테인먼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7길	폐문부재
56	000392	01노2453	2017-11-01	849	1800	54,000	전종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가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처리
57	000405	29주0875	2017-11-17	1716	1800	4,000	김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처리

연번	과세번호	차량등록번호	방문일자	입차시간	마감시간	부과금액	대표소유자회원명	소유자주소	반송사유
58	000409	46마8734	2017-11-23	1601	1800	12,000	홍위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폐문부재
59	000415	19어3328	2017-11-23	1700	1800	6,000	김영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폐문부재
60	000417	19조0123	2017-11-23	1726	1800	1,500	강대현,강성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63번길	폐문부재
61	000421	서울33러8494	2017-11-27	1643	1800	8,000	이경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보관기간경과 반송(특수)
62	000429	11부2993	2017-11-28	1725	1800	1,500	김하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694번길	보관기간경과
63	000437	20소8868	2017-12-05	1301	1800	30,000	이기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9번길	보관기간경과
64	000441	80라5678	2017-12-08	846	1800	54,000	주시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56번길	폐문부재
65	000445	81나3278	2017-12-11	1242	1800	32,000	장상욱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49	보관기간경과후 반송(불요처리
66	000446	18보5531	2017-12-13	1553	1800	6,500	우수명	경기도 파주시 꽃창포길	보관기일경과 반송불요
67	000450	43루5650	2017-12-19	1737	1800	2,000	신상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길	보관기간경과
68	000454	43서7884	2017-12-27	1613	1800	2,000	이호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폐문부재
69	000455-	12보7266	2017-03-06	1635	1800	8,000	전혜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67번길	폐문부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2018-49호(2018.02.2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6호(2018.08.02.)로 우이동 가족캠핑장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8-618호(2018.05.31.)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90호(2018.06.21.)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나. 사업 시행지 :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지
다. 사업의 내용 : 토지 및 물건 보상 후 캠핑장 조성 등 공원조성
라. 규 모 : 11,561㎡
마.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 변경사유 : 편입되는 토지의 분할 및 물건소유자 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조서 변경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강북구 공원녹지과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2133-8288) 및 강북구청 공원녹지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변경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9필지			12,109	11,561								
1	우이동 316	전	3,692	3,6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2	우이동 334	대	98	98			기획재정부					
3	우이동 334-1	대	177	177			기획재정부					
4	우이동 317	전	1,122	1,1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5	우이동 335	대	228	228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신내두산아파트 526동 101호	임수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대우건설	임차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44 증산마을 605동 905호	임명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7-4	임미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강동구 풍성로42길 31 성내빌라 201호	임효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동대문구 한빛로 39 오션타워빌 605호	임유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성북구 종암로 90 노블레스타워 1214호	조형림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대우건설	임차권	
6	우이동 산96	임야	4,898	4,8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7	우이동 산98-2	임야	38	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8	우이동 산98-4	임야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9	우이동 산99-1	임야	1,853	1,3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변경후)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9필지			11,561	11,561								
1	우이동 316	전	3,692	3,6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2	우이동 334	대	98	98			기획재정부					
3	우이동 334-1	대	177	177			기획재정부					
4	우이동 317	전	1,122	1,1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5	우이동 335	대	228	228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 신내 두산아파트 526동 101호	임수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44 증산마을 605동 905호	임명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7-4	임미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강동구 풍성로42길 31 성내빌라 201호	임효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동대문구 한빛로 39 오션타워빌 605호	임유진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서울 성북구 종암로 90 노블레스타워 1214호	조형림	1/6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5	주식회사 대우건설	임차권	
6	우이동 산96	임야	4,898	4,89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7	우이동 산98-2	임야	38	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8	우이동 산98-4	임야	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9	우이동 산99-6	임야	1,305	1,3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최선옥	100/192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25/19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현정	125/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스텐리	125/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물 건 조 사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변경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계			181.39							
1	우이동 산96	주택(1층)	목조 / 와즙	79.34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00/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0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5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주택(2층)	목조 / 와즙	75.6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2		주택	목조 / 기와	26.4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23 현대아파트 208동 603호	김희정	100/19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41번길 13 장안타운 112동 601호	김수연	10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선규	5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윤성연	150/192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54-6 강남아파트 103동 1303호	최지원	150/1920				
					서울 성동구 마장로 137 텐즈힐 203동 602호	최지나	150/1920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504/192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2길 14-12 헤스티아 301호	이영자	216/1920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 2019. 5. 16.(목)

(변경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계			181.39							
1	우이동 산96	주택(1층) 주택(2층)	목조 / 와즙 목조 / 와즙	79.34 75.6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1				
2		주택	목조 / 기와	26.45	서울 강북구 삼양로181길 26-148	이선명	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397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삼성 IC) ~ 성북구 석관동(월릉 IC)
   다. 사업규모 : L = 10.4km (양방향 4차로)
   라. 설계속도 : V = 80km/hr
   마. 사업 제안자 : (가칭)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
   바. 사업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사. 사업기간(예정)
   - 건 설 기 간 : 착공 후 5년
   - 운 영 기 간 : 개통 후 30년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공청회	2019년 6월 5일(수) 19시 30분	청담평생학습관 강남구 학동로67길 11

3. 의견진술자 추천
   가. 추천대상 : 계획노선 통과구간 주변 주민
   나.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다.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팩스 02-2133-0763, si3219@seoul.go.kr)로 제출
   라. 제출기한 : 2019 5월 29일(수)까지

4. 기타
   가. 주민은 공술내용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진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5. 의견진술자 추천서 서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6. 상세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64)에 문의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

사업명		
사업장 위치		
사업자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진술하려는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의 개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400호

마포구 동교동 167-13외 26필지 복합시설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 당선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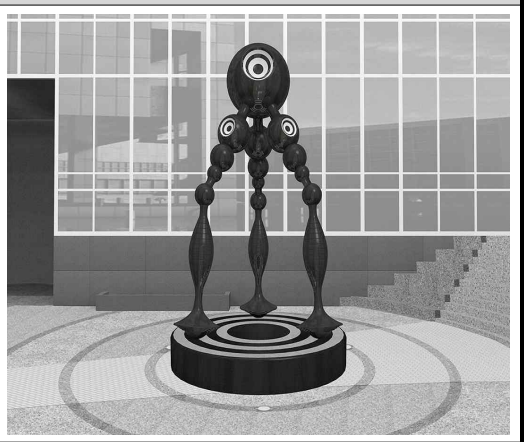
마포구 동교동 167-13외 26필지 복합시설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9. 5. 9.(목) 14:00 ~ 18:0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안건 : 총 80작품
라. 심의결과 : 당선작 '탐미적(耽美的) 블랙홀'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품 이의신청
- 기한: 2019년 5월 22일(수) 까지
- 자격: 미술작품 응모작가 및 유사작품 원작자
- 대상: 작품 표절 등 허위 사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등
(※ 심사위원회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법: 이메일 제출(inspir0129@seoul.go.kr , 주무관 홍경태)
(※ 신원이 확인 되지 않거나 신청방법을 미준수한 자료는 검토불가)

마포구 동교동 167-13외 26필지 복합시설 건축물 미술작품선정 심사결과

구분	작품명	종류	작품 이미지
당선작	**탐미적(耽美的) 블랙홀**	조각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9-66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2008.11.20.)로 결정된「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종로구 인의동 28-26번지 공개공지 위치지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 3.28.)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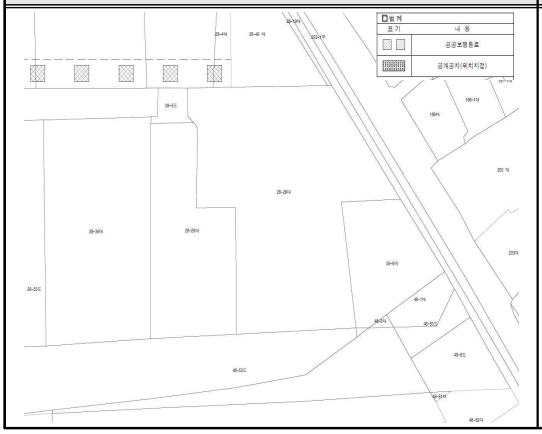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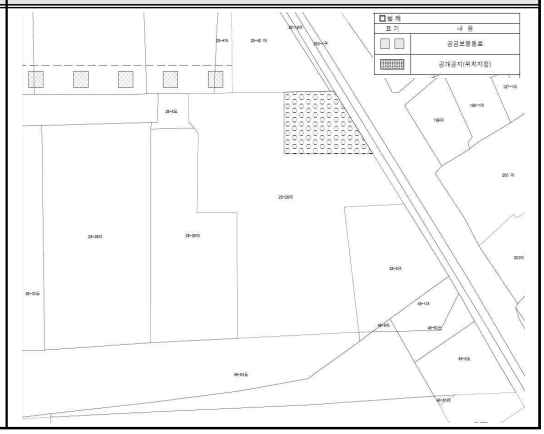
2019년 5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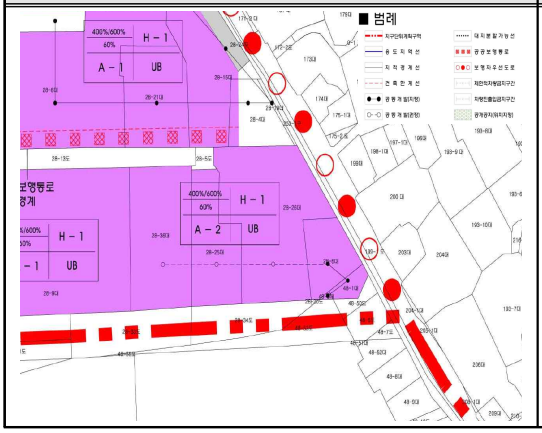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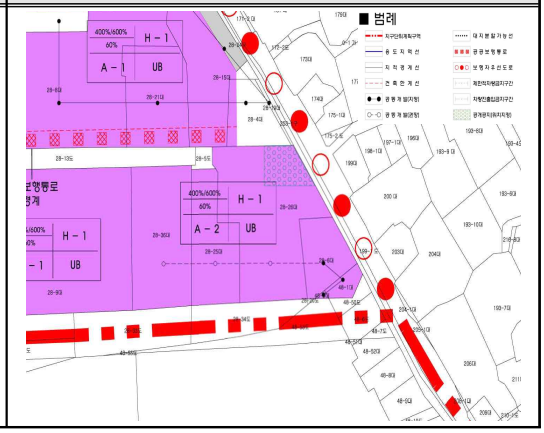
1.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대지내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대지내공지 결정도 : 변경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대지내공지 결정도

기 정	변 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 종로구고시 제2019-67호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2013. 6.13.)로 결정된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운동 25-2번지 골목지정선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3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 4. 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1.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배치계획 결정(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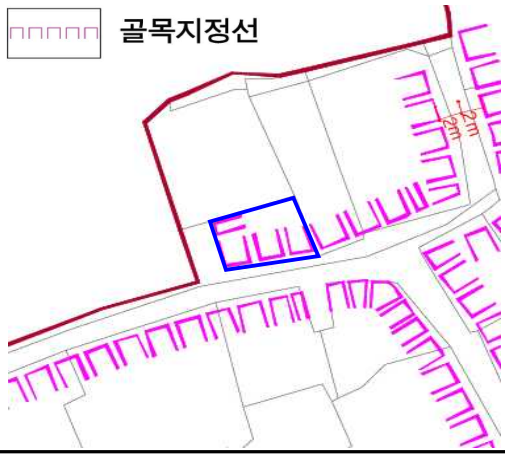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적용구역	계획내용	적용구역	계획내용	
골목 지정선	교동초등 학교 남측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 후퇴	교동초등 학교 남측	• 도로중심선으로부터 각각 2m 후퇴 (다만, 경운동 25-2번지 좌측 골목지정선은 대지경계선에 지정)	

2.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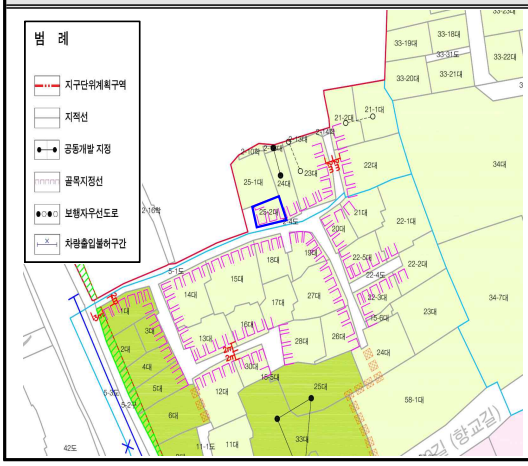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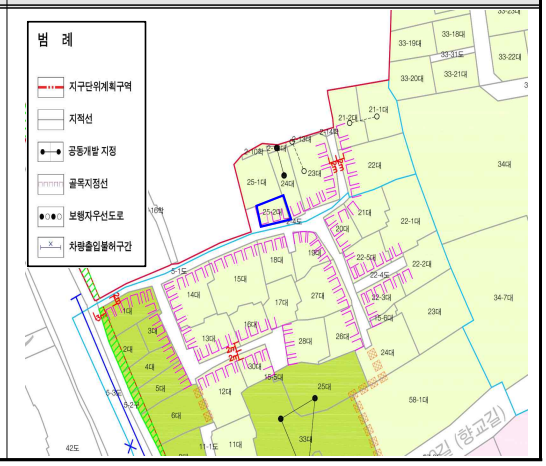
3.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배치 및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산구고시 제2019-6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36호(2017.3.30), 용산구고시 제2018-60호(2018.5.31)로 실시계획 인가된 우리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4)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가. 변경인가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부대 체육시설 신축사업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외 28필지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방부(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 6. 30.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부대 체육시설 신축 : 1동(지상1층), 건축면적 54㎡, 연면적 54㎡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84,064.9	276,97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대지	63,718.0	63,718.0	국방부장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2	도로	2,891.3	782.9	국방부장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3	도로	543.1	543.1	국방부장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1	대지	23,655.2	23,655.2	국방부장관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3	대지	2,756.0	2,756.0	국방부장관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4	대지	1,901.5	1,901.5	국방부장관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5	대지	2,199.7	2,199.7	국방부장관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5-1	대지	33,588.9	32,141.6	국방부장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	대지	15,299.7	15,259.4	국방부장관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4	도로	17,070.3	13,455.4	국방부장관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9	대지	30,476.0	30,476.0	국방부장관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1	대지	17,300.2	7,851.8	국방부장관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2	대지	13,255.2	13,255.2	국방부장관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	대지	1,510.7	1,510.7	국방부장관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1	대지	58,021.3	3,452.3	국방부장관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4	대지	10,145.4	10,145.4	국방부장관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5	대지	3,071.1	3,071.1	국방부장관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6	대지	416.5	416.5	국방부장관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5	대지	1,471.1	109.6	국방부장관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65	대지	4,393.5	3,418.0	국방부장관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1	대지	39,661.0	14,956.5	국방부장관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2	대지	4,934.0	4,934.0	국방부장관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4	대지	7,206.6	7,206.6	국방부장관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5-1	대지	859.7	859.7	국방부장관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1	대지	10,637.0	10,637.0	국방부장관	
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	대지	6,576.2	2,114.7	국방부장관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2	대지	284.9	284.9	국방부장관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	대지	7,083.7	2,721.0	국방부장관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781	도로	3,137.1	3,137.1	국방부장관	

◈ 강서구고시 제2019-58호

도시계획시설(꿩고개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29호(1997. 2. 6)로 최초 조성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6호(2008.12.26)로 조성계획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꿩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9-409호(2019. 3. 21)로 열람공고를 마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136-10 등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사업의 명칭 :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10,198㎡

라.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3년간

아.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별도 첨부

자.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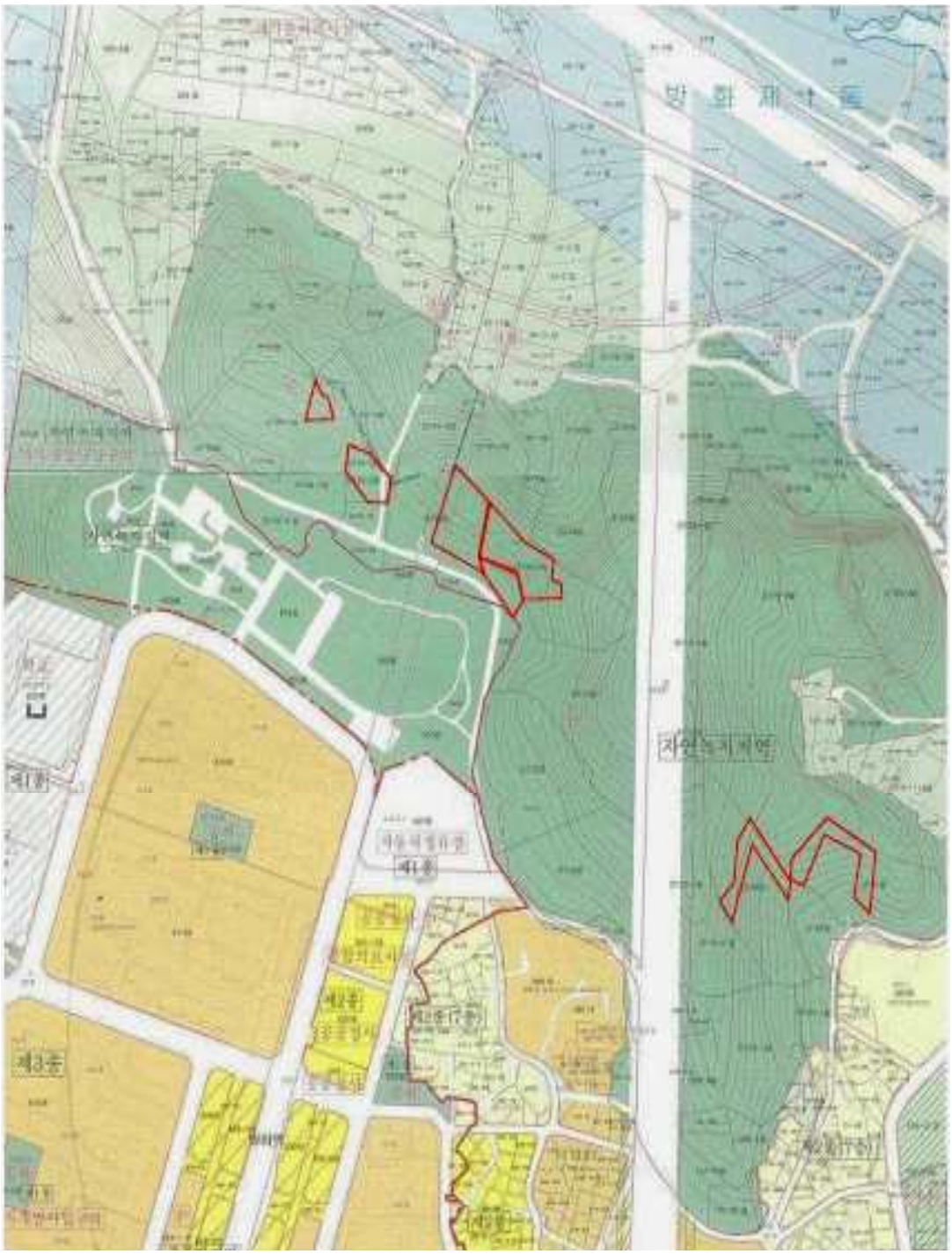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조서

□ 사업명 : 꿩고개근린공원 조성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합계	7필지		10,198	10,198							
1	방화동 산136-10	임야	500	500	1/2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2-8	김용구				
					1/2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21-1	이화생				
2	방화동 산135-6	임야	1,263	1,263	1/2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7, 심미아파트 1803호	강석주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압류	
					1/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184 삼성아파트 101-1105	강종구				
3	방화동 산133	임야	2,820	2,820	1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179-1(수유동)	한은신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4	방화동 산130-6	임야	2,550	2,550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22 (공항동)	권순직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25동 1304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이태경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3-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지상권	
5	방화동 산115-8	임야	765	765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2동 1104호(광장동, 워커힐아파트)	강찬구				
6	방화동 산109-4	임야	1,100	1,100	1696/763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21 드와이드웨이 1947	문경자				
					3960/76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마을 544-1102	박희만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782-2	김영식	근저당권	
					1980/7636	211-10, lion pl epsom okland newzland	박우식				

연번	지번	지목	지적(㎡)		공유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내용	
7	방화동 산107-10	임야	1,200	1,200	7/3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930동 706호(중동, 미리내마을)	박노국				
					7/30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8길10 밤섬경남아너스빌 104동 1503호	박노혁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후곡마을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4/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26번길 22, 104동 401호(송내동, 송내자이아파트)	박귀천				
					4/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6-9, 지하1층	박옥선				
					4/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6-9, 지하1층	박노월				
					4/30	미합중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시더 포트코트 9026(9026 cedar fort ct Las Vegas Nevada 89113 U.S.A.)	박노숙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위치



◈ 구로구고시 제2019-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개웅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개웅산근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0호(1997.2.7)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개웅산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2.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9-399호(2019.3.7)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13-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개웅산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93㎡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 명 :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바.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개웅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93	193						
1	구로구 오류동 산13-7	임야	193	193	오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 임광아파트 ○동 ○호				
					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29 삼성동힐스테이트 ○동 ○호				

◈ 구로구고시 제2019-9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온수도시자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66호(2015.9.10)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2.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9-435호(2019.3.14)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5-21번지 일대, 온수동 산4-2일대 및 궁동 산10-5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3,294㎡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 명 :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 ·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8,666	13,294						
1	구로구 오류동 산5-21	임야	18,666	6,026	박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230, ○동 ○호 (장지동, 위례2차아이파크아파트)				
					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3길 21, ○호 (도곡동, 이니그마빌)				
					박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숞환로373길 21, 이그니마빌-3 ○호				
2	구로구 오류동 18-95	대	398	338	고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2, ○동 ○호 (오류동, 천왕이펜하우스 2단지)				
					고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10길 6, ○동 ○호 (일원동, 한솔마을)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	구로구 오류동 18-90	도로	122	73	권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0길 ○○				
4	구로구 오류동 18-130	임야	575	45	한상○	서울특별시구로구 고척로 ○○				
					한성○	강원도 동해시 구미2길 17, ○호 (구미동, 씨티빌라)				
					한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6길 ○○				
5	구로구 오류동 18-128	대	35	35	왕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15, ○동 ○호 (호수마을계룡리슈빌)				
6	구로구 오류동 18-28	전	36	34	김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2길 ○○(오류동)				
7	구로구 오류동 14-378	대	9	7	박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04, ○동 ○호 (신천동, 장미아파트				
8	구로구 오류동 18-126	대	119	7	한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9	구로구 개봉동 60-92	임야	13	13	민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곡로 7, 마빌르스위트@ ○동 ○호				
10	구로구 궁동 산10-5	임야	24,916	868	박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37길 ○○(고척동)				
					신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37길 ○○(고척동)				
11	구로구 궁동 산10-57	임야	338	140	박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37길 ○○(고척동)				
					신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37길 ○○(고척동)				
12	구로구 온수동 산4-2	임야	16,668	5,094	이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38번길 34-1 ○동 ○호 (죽전GS자이아파트)				
					이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22, ○동 ○호 (자봉마을써니밸리)				
					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동 ○호 (무지개아파트)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3길 23-2, ○호				
					이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3길 23-2, ○호				
					이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5길 22-6, ○호 (디아이빌 3차)				
					이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5길 22-6, ○호 (디아이빌 3차)				
					이철○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1길 18, ○동 ○호 (월계2단지주공아파트)				
					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나길 30, ○동 ○호 (응암우성아파트)				
13	구로구 온수동 산4-3	임야	608	608	이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8길 64, ○동 ○호 (영풍마드레빌아파트)				
					허성○	경기도 광명시 광복로3번길 22, ○호(럭키빌라)	기복교회 신용협종조합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8-19	근저당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계				1,186						
1	구로구 오류동 산5-21	건물	스레트	93	장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5길 ○○	장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212-11, ○동 ○호 (청천그린빌라)		
							장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5길 ○○		
							장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동 ○호 (신현e편한세상 하늘채아파트)		
		건물	세멘조	102	강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6 현대아파트 ○동 ○호				
		건물	세멘조	86	정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140 도램마을1단지 ○동 ○호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건물	세멘조	117	김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중앙로8길 104 태영아파트상봉동데시앙 ○동 ○호				
		건물	세멘조	92	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126가길 41-4 정은빌라 ○호				
		건물	스레트	40	박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47 미사강변브라운스톤 엔에이치에프 ○동 ○호				
		건물	세멘조	105	강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5가길 96, ○호				
		건물	세멘조	118	서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				
		건물	스레트	80	오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5길 ○○				
		건물	스레트	118	장창○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5길 ○○				
		건물	세멘조	90	박성○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336번길 40-10 연천로하스@ ○동 ○호				
		건물	세멘조	84	천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2	구로구 궁동 산10-5	가건물	천막	41	대한불교조계종 다보사 대표 김○○	서울 구로구 부일로13길 ○○				
3	구로구 궁동 산10-57	계단	철재	20						

◈ 구로구고시 제2019-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천왕도시자연공원은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공원의 조성계획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5호(2014.4.24)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천왕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2.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9-405호(2019.3.7)로 열람공고를 마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45-1번지 일대 및 천왕동 산25-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천왕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28,887㎡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 명 :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바.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천왕도시자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68,315	28,887						
1	구로구 항동 145-1	전	2,372	2,372	최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13길 25, ○동 ○호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스위트)				
2	구로구 항동 146	전	1,296	1,296	최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13길 25, ○동 ○호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스위트)				
3	구로구 항동 147-1	전	2,727	2,727	장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2길 84, 동도센트리움@ ○호				
4	구로구 항동 147-2	전	1,960	1,960	박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19길 ○○				
5	구로구 항동 148	전	1,706	1,706	장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2길 84, 동도센트리움@ ○호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6	구로구 항동 149	잡	2,569	2,569	이주○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47 연화마을 ○동 ○호	허윤○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47 연화마을 ○동 ○호	가등기	
							부천제일새마을금고	경기 부천시 신흥로 84 MG제일빌딩	지상권 근저당권	
							허윤○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47 연화마을 ○동 ○호	근저당권	
7	구로구 항동 150	전	170	170	최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13길 25, ○동 ○호 (서울수묵원현대홈타운 스위트)				
8	구로구 항동 산39-3	임	17,256	249	이규○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거치라리길 ○○	주복○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50 송도더샵퍼스트파크 ○동 ○호	근저당권	
							이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2, ○동 ○호 (백현마을)	근저당권	
							최영	대전 유성구 죽동로 321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동 ○호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보래령로 ○○	근저당권	
							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4길 7, ○동 ○호 (은평뉴타운 폭포동)	근저당권	
							이광○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준전대로527번길 80, ○동 ○호(신동백롯데캐슬에코1단지)	근저당권	
							고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26, ○동 ○호 (대림2차아파트)	근저당권	
9	구로구 항동 산39-6	임	2,253	2,253	김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동 ○호				
10	구로구 항동 산43-1	임	7,605	7,605	최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13길 25, ○동 ○호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스위트)				
11	구로구 천왕동 174	답	1,534	1,534	김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39 ○동 ○호 (동백동,호수마을동보노빌리티)				
					이상○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740 장릉마을 ○동 ○호	구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362, ○동 ○호(청송마을중흥S클래스@)	배우자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2	구로구 천왕동 산25-1	임야	121,710	3,900	이건○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 ○동 ○호 (중앙하이츠빌라)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	구분지상권	
					이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6, ○동 ○호 (삼성파크빌라)				
					이태○	미국 뉴저지주 07095 우드브리지 드라이브 ○○ 플라자				
					이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57, ○동 ○호 (서초트라펠리스)				
13	구로구 천왕동 산28	임야	198	198	이건○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 ○동 ○호 (중앙하이츠빌라)				
					이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6, ○동 ○호 (삼성파크빌라)				
					이태○	미국 뉴저지주 07095 우드브리지 드라이브 ○○ 플라자				
					이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57, ○동 ○호 (서초트라펠리스)				
14	구로구 천왕동 산30	임야	4,959	348	이건○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 ○동 ○호(중앙하이츠빌라)				
					이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6, ○동 ○호(삼성파크빌라)				
					이태○	미국 뉴저지주 07095 우드브리지 드라이브 ○○ 플라자				
					이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57, ○동 ○호 (서초트라펠리스)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천왕도시자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계				2,406						
1	구로구 항동 147-1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21	장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2길 84, 동도센트리움@ ○호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41	백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2차 ○동 ○호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39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40						
2	구로구 항동 149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85	이주○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47 연화마을 ○동 ○호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3	구로구 항동 148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19	장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2길 84, 동도센트리움@ ○호				
4	구로구 항동 149-3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39	백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2차 ○동 ○호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40						
5	구로구 항동 147-2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76	박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19길 ○○				
6	구로구 항동 146	가설 건축물	경량판넬	147	최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13길 25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동 ○호				
7	구로구 항동 145-1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275	최봉○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13길 25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동 ○호				
8	구로구 항동 150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140	최승○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13길 25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 ○동 ○호				

연번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9	구로구 천왕동 산25-1	공작물 (정자)	목구조	12	강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2차 ○동 ○호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329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232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165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128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50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382						
10	구로구 천왕동 산30	비닐 하우스	철파이프	146	강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2차 ○동 ○호				

◈ 동작구고시 제2019-39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5호(2013. 3.21.) 및 동작구고시 제2017-8호(2017. 2.16.), 동작구고시 제2019-25호(2019. 4. 4.), 동작구고시 제2019-31호(2019. 4.18.)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 현황여건(공공보행통로 조성)을 반영한 면적변경 없는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등 선형변경

2.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724	-	9,724	100.0	
자연녹지지역	3,898	-	3,898	40.1	
제2종일반주거지역	5,826	-	5,826	59.9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후	
-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3,898	3,898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없는 용도지역 선형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5,826	5,826	

-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현충로 양측	80,000 (2,174)	2,000 (119)	20	건고시 2986 (66.12.26.)	
기정	①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1-17대, 1-4도 양측	782,400 (1,282)	32,600 (105)	12	서고 164 (82. 4.22.)	

※ ( )의 면적은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근린 공원	흑석동 141-2일대	80,870 (3,332)	-	80,870 (3,332)	건고 138 (77.7.9)	용봉정 근린공원

※ ( )의 면적은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방수설비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방수 설비	흑석동 7-1일대	1,379 (566)	-	1,379 (566)	동작구 고시 2003-109 (2003.10.15)	자연녹지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 )의 면적은 원불교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방수설비	·면적변경 없는 선형변경	•현황여건(공공보행통로 조성) 반영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도면 표시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	9,724	1-1대 374㎡, 1-3종 3,741㎡, 1-18종 527㎡, 114-1대 72㎡, 114-3대 30㎡, 114-14대 50㎡, 114-49종 30㎡, 114-50종 9㎡, 114-45대 190㎡, 115-1전 803㎡	5,826	면적변경 없는 획지 선형변경
		1-19종 637㎡, 115-2전 4㎡, 116-1체 1,572㎡, 116-4대 661㎡, 116-13체 142㎡, 116-9도 111㎡, 116-5대 93㎡, 116-29도 22㎡, 130-3도 90㎡	3,332	용봉정 근린공원
		1-1대 566㎡	566	면적변경 없는 방수설비 선형변경

-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면적(㎡)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9,724	·면적변경 없는 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없는 획지계획 선형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마.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942	좌동	9.7	좌동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계		641		6.6		①+②-③
	신설	공원	641		6.6		①
		방수설비	566		5.8		②
	기존 국공유지(감)	구거부지등	566		5.8		③
건축물 기부채납	문화복지시설		301		3.1		환산 부지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의 건축규모는 건축허가시점에서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을 적용하여 결정

※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 중 신설된 방수설비는 기정 무상양여된 기존구거 566㎡의 대체시설로 설치된 면적임(무상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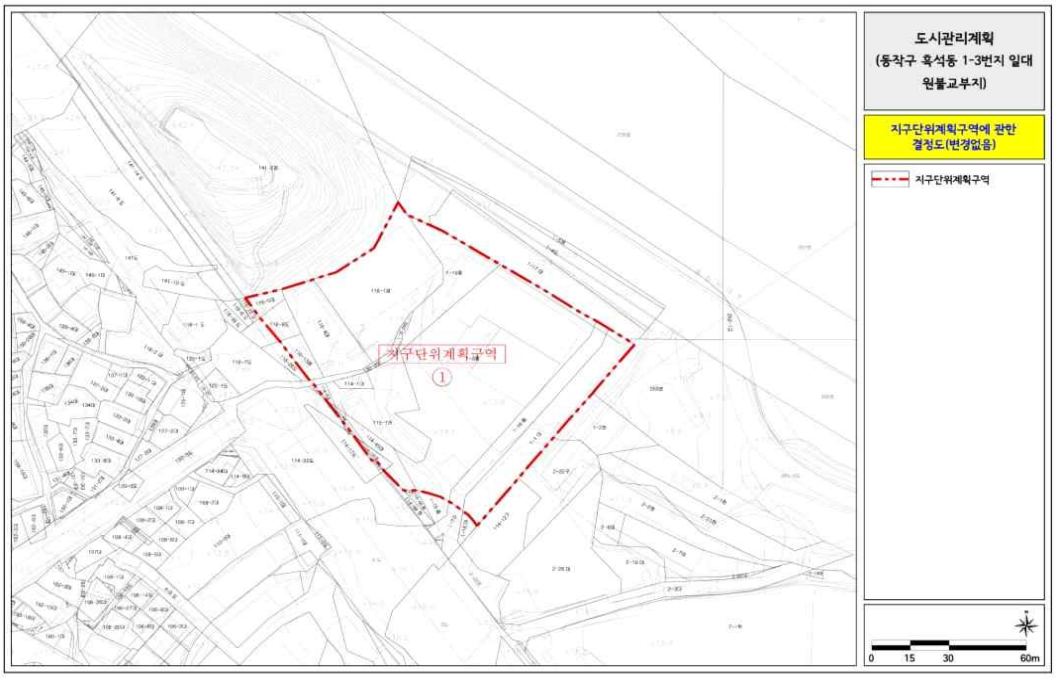
※ 변경사유 : 현황여건(공공보행통로 조성)을 반영한 면적변경 없는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등 선형변경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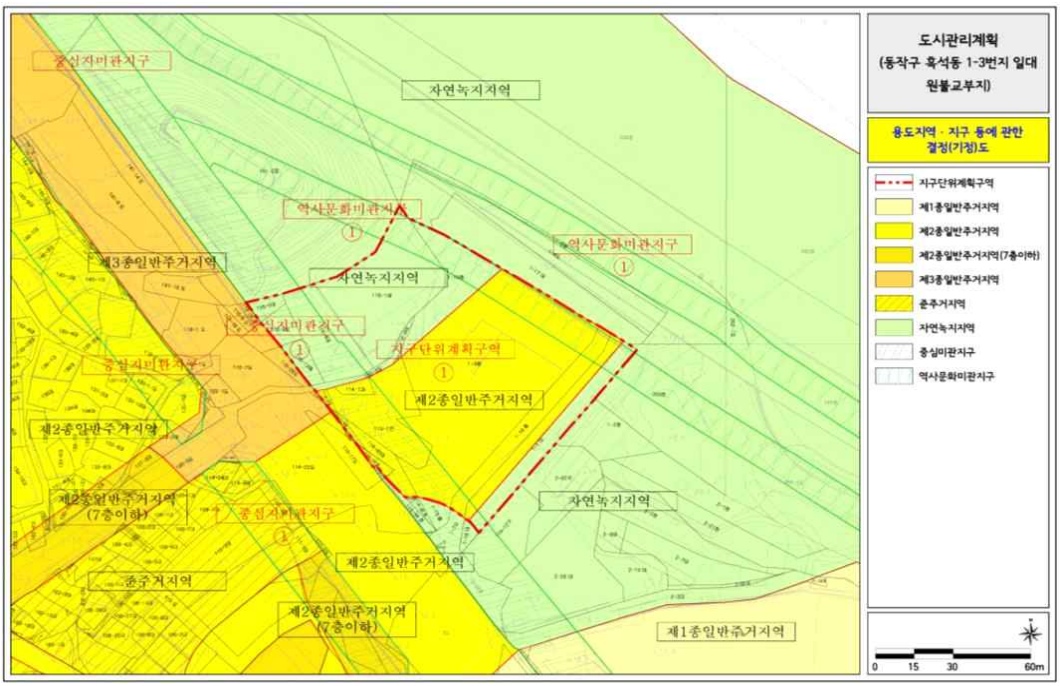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19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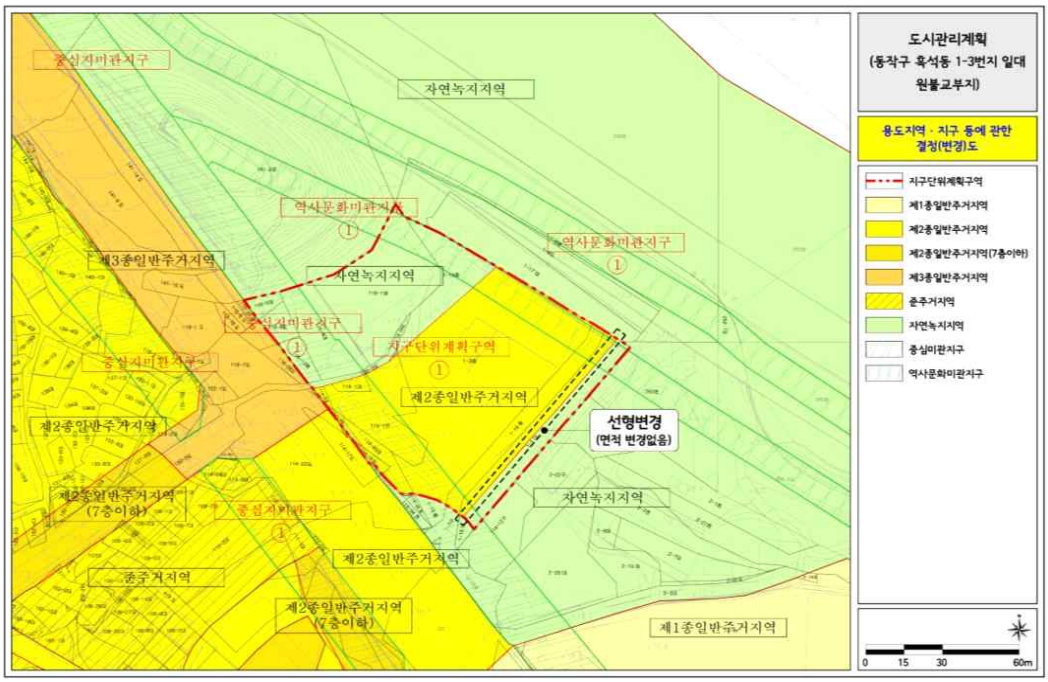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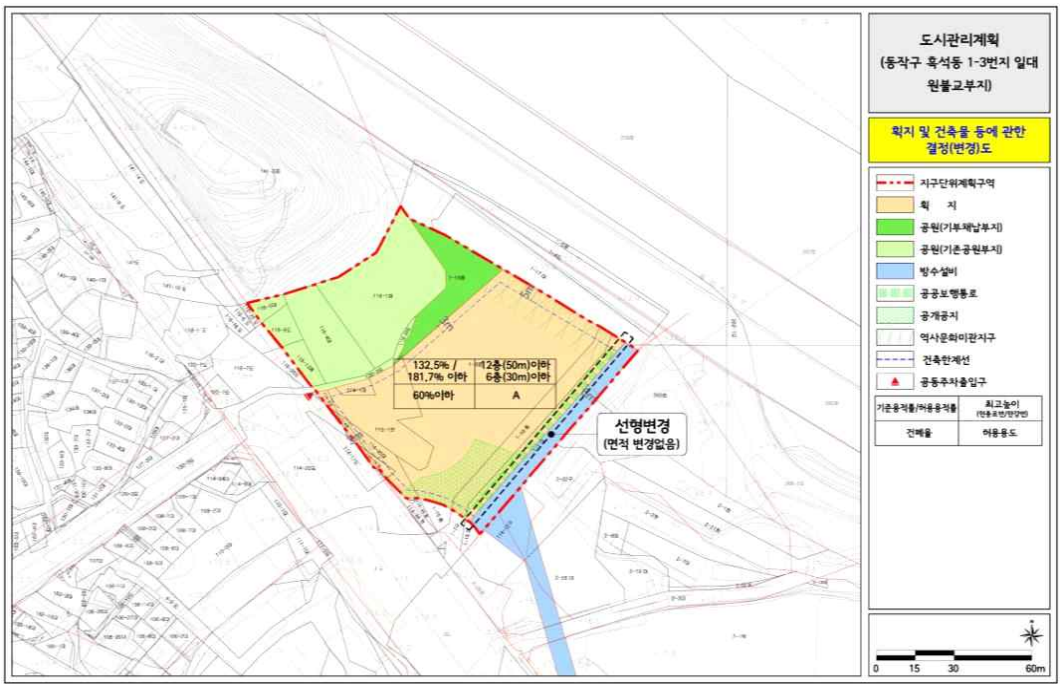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서초구고시 제2019-86호

도시계획시설(도구머리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539호(2019.03.28.)로 열람공고한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73-2 등 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가) 면적 : 4,568.0㎡(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나) 내용 : 토지보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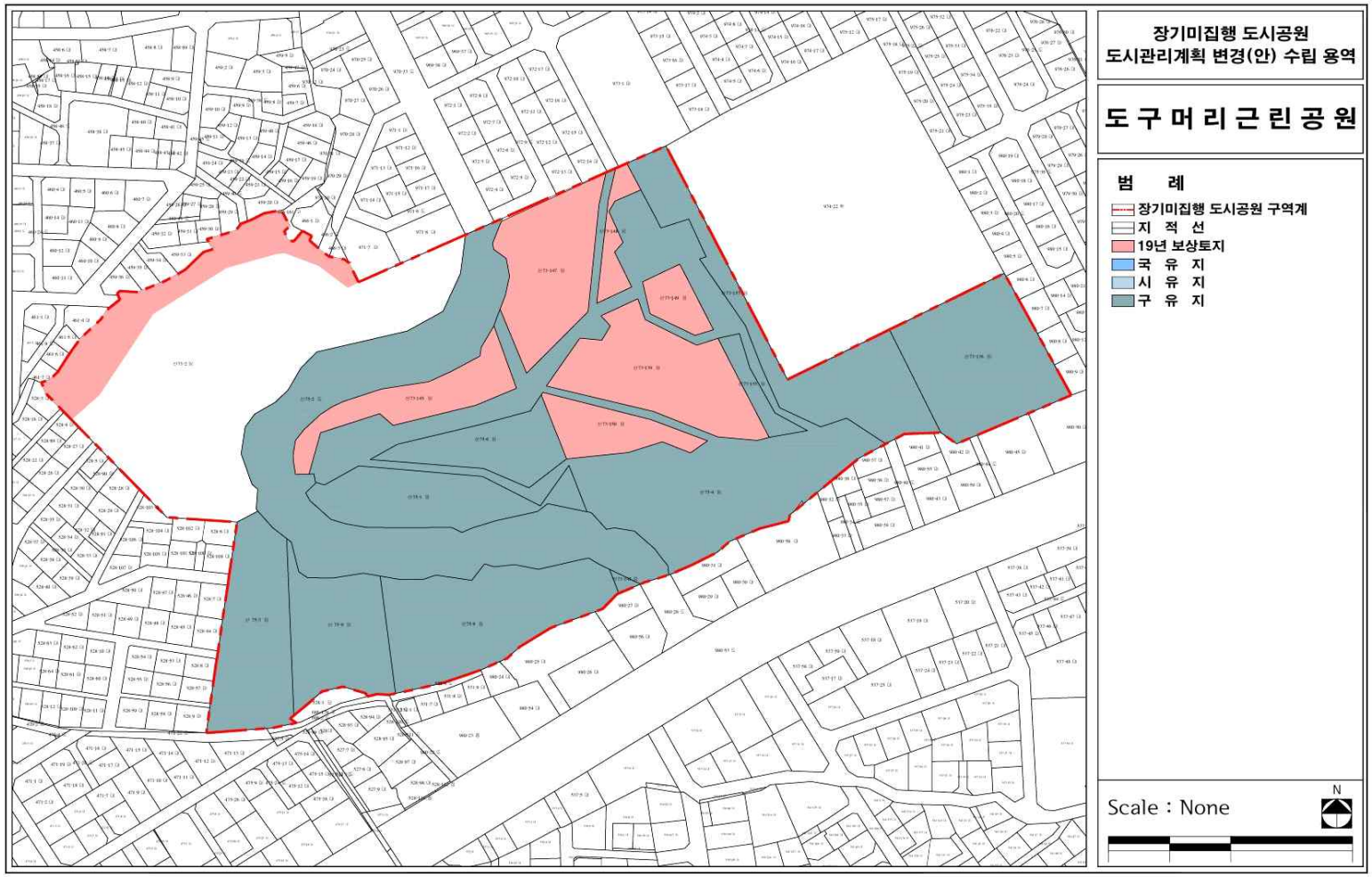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구머리근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배동 산73-2	임야	13,880	1,030.0	김**	4944.81/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방**	5325.18/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김**	4944.81/38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			
2	방배동 산73-145	임야	1,961	784.4	김**	4944.81/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방**	5325.18/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김**	4944.81/38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			
3	방배동 산73-147	임야	2,988	1,195.2	김**	4944.81/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방**	5325.18/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김**	4944.81/38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			
4	방배동 산73-148	임야	597	238.8	김**	4944.81/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방**	5325.18/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김**	4944.81/38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			
5	방배동 산73-149	임야	602	240.8	김**	4944.81/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방**	5325.18/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김**	4944.81/38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			
6	방배동 산73-139	임야	3,468	587.2	김**	4944.81/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방**	5325.18/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김**	4944.81/38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			
7	방배동 산73-150	임야	1,229	491.6	김**	4944.81/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방**	5325.18/38037	경기도 의왕시 독정이길 **(청계동)			
					김**	4944.81/380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 양지마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
도 구 머 리 근 린 공 원
범 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역계
지 적 선
19년 보상토지
국 유 지
시 유 지
구 유 지
Scale : None
N

◈ 서초구고시 제2019-87호

도시계획시설(방배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538호(2019.03.28.)로 열람공고한 방배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102-20 등 3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방배동근린공원 조성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가) 면적 : 7,003.0㎡(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나) 내용 : 토지보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고시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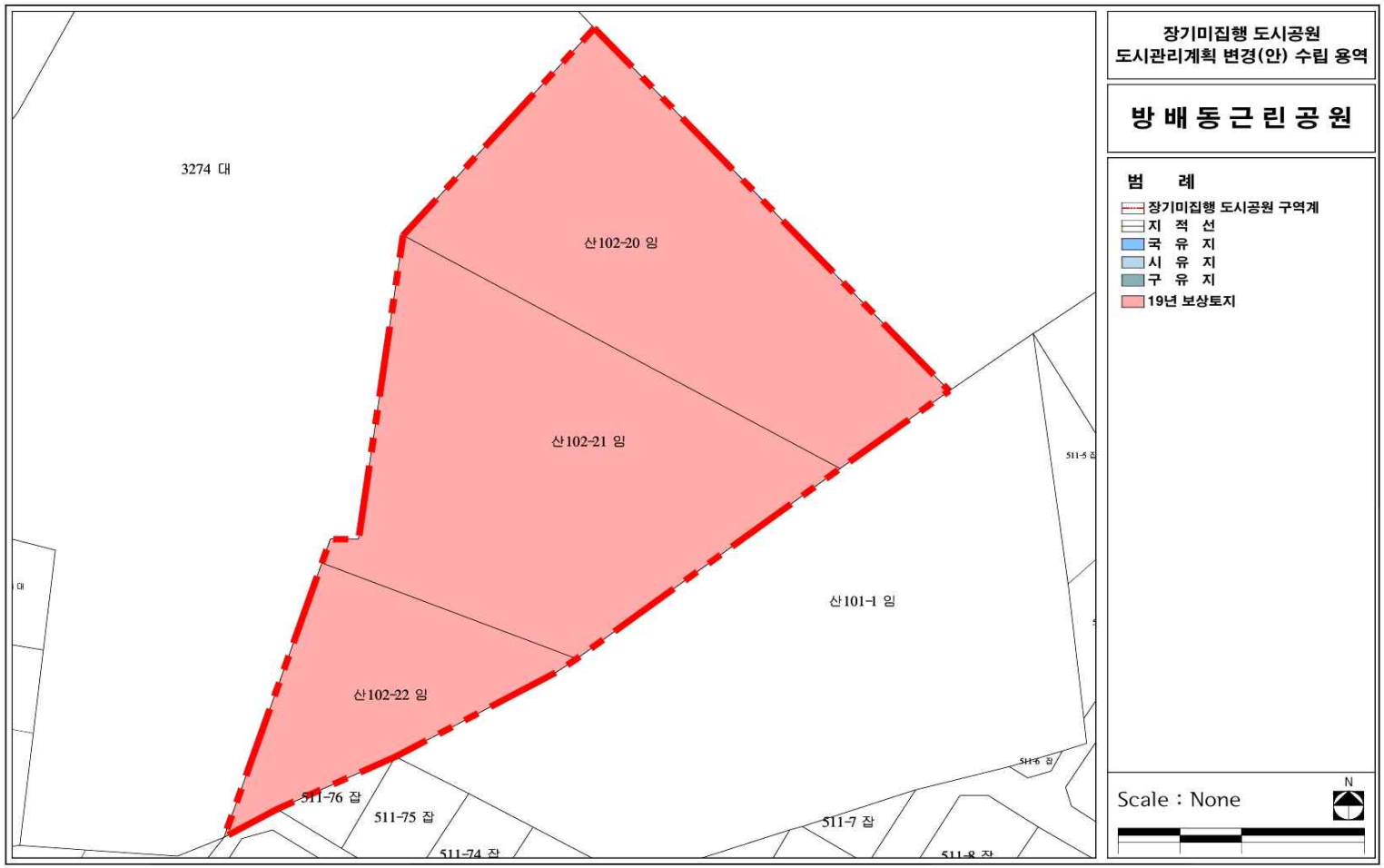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방배동근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방배동 산102-20	임야	2,846	2,846	학교법인 **학원	2,846/2,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길 ***(청파동 2가)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지상권설정
2	방배동 산102-21	임야	3,120	3,120	학교법인 **학원	3,120/3,1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길 ***(청파동 2가)			
3	방배동 산102-22	임야	1,037	1,037	학교법인 **학원	1,037/1,03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길 ***(청파동 2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
방 배 동 근 린 공 원
범 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역계
지 적 선
국 유 지
시 유 지
구 유 지
19년 보상토지
Scale : None
N
3274 대
산102-20 임
산102-21 임
산102-22 임
산101-1 임
511-76 잡
511-75 잡
511-74 잡
511-7 잡
511-8 잡

◈ 서초구고시 제2019-88호

도시계획시설(능안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540호(2019.03.28.)로 열람공고한 능안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68-10번지 등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능안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가) 면적 : 389.9㎡(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나) 내용 : 토지보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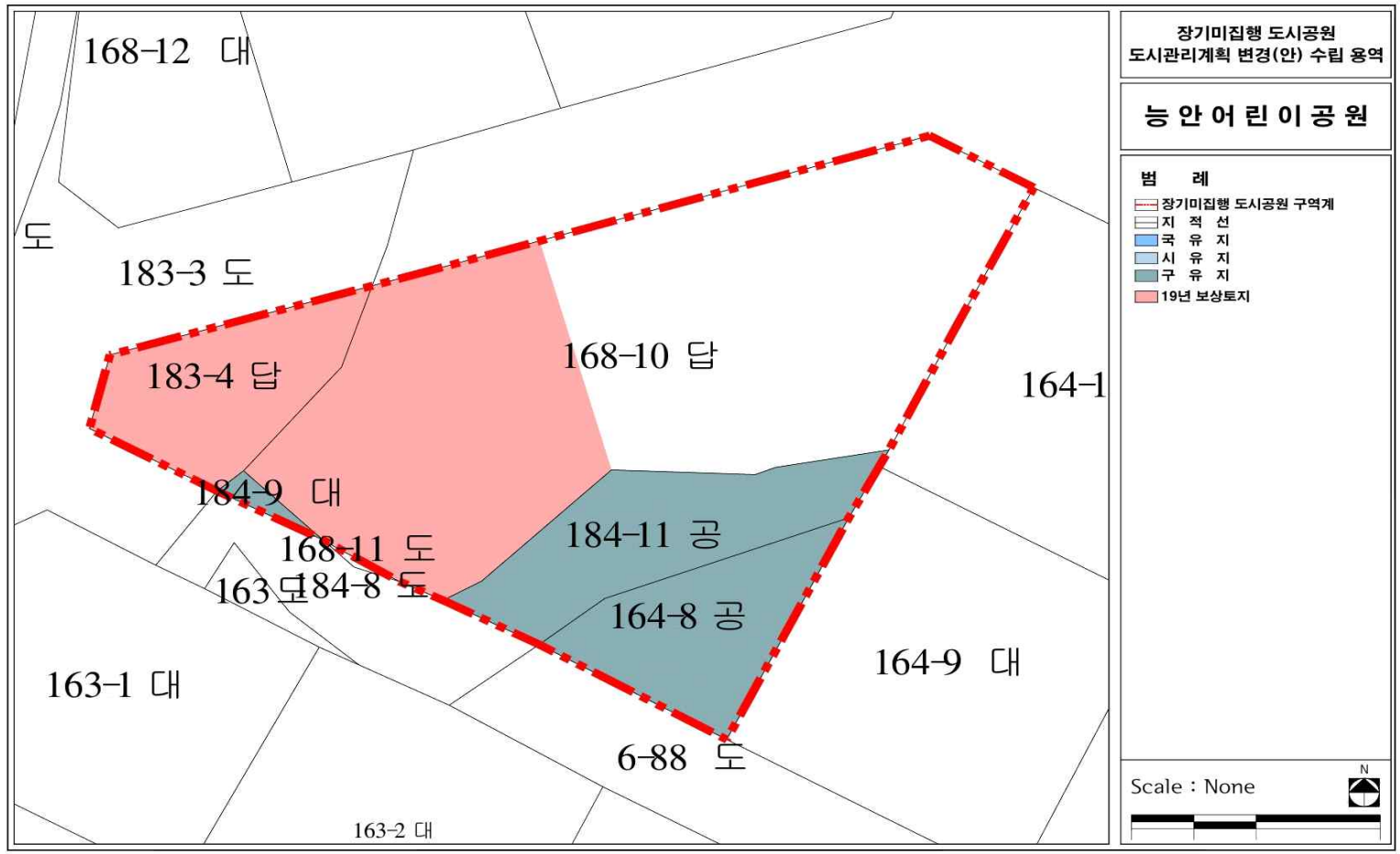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능안어린이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내곡동 168-10	답	773	268.9	김**	773/77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 분당수지 U-TOWER, *동 ****호			
2	내곡동 183-4	답	121	121.0	김**	121/12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 분당수지 U-TOWER, *동 ****호			


168-12 대
도
183-3 도
183-4 답
168-10 답
164-1
184-9 대
168-11 도
163 도
184-8 도
184-11 공
164-8 공
164-9 대
163-1 대
6-88 도
163-2 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
능안어린이공원
범 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역계
지 적 선
국 유 지
시 유 지
구 유 지
19년 보상토지
Scale : None
N

◈ 서초구고시 제2019-89호

도시계획시설(원지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9-541호(2019.03.28.)로 열람공고한 원지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368-1번지 등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원지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내용

가) 면적 : 737.5㎡(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나) 내용 : 토지보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나.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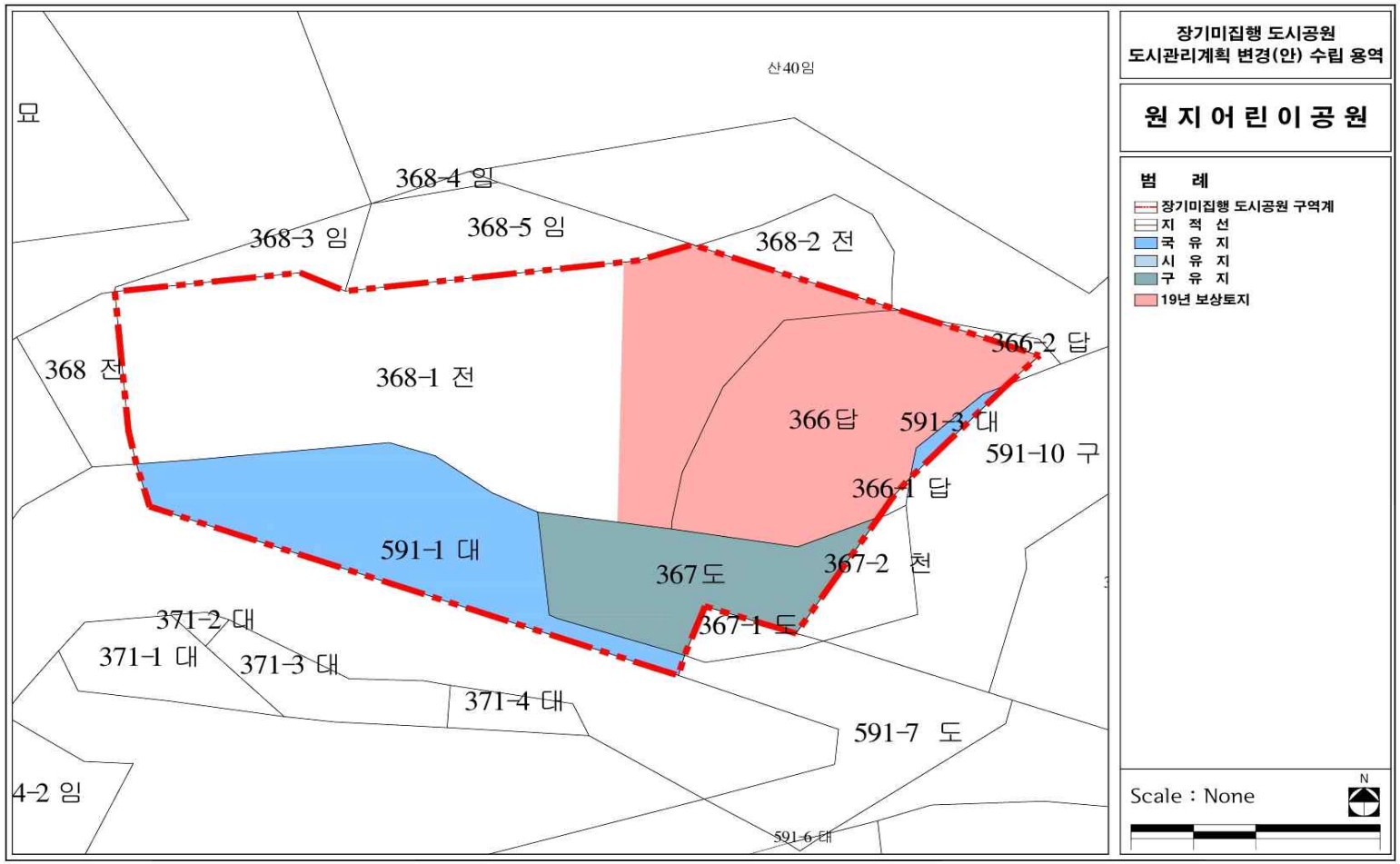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원지어린이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서초구청장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지동 368-1	전	974.0	353.5	조**	974/97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 ***동 ****호			
2	원지동 366	답	384.0	384.0	음**	384/38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길 **, ***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용역
원지어린이공원
범 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구역계
지 적 선
국 유 지
시 유 지
구 유 지
19년 보상토지
Scale : None
N
산40임
묘
368-4 임
368-3 임
368-5 임
368-2 전
366-2 답
368 전
368-1 전
366 답
591-3 대
591-10 구
366-1 답
591-1 대
367 도
367-2 전
367-1 도
371-2 대
371-1 대
371-3 대
371-4 대
591-7 도
4-2 임
591-6 대

◈ 서초구고시 제2019-9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청계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156호(2014.4.2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일대의 청계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19-420호(2019.3.14.)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3번지 등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 청계산도시자연공원 조성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 35,37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구청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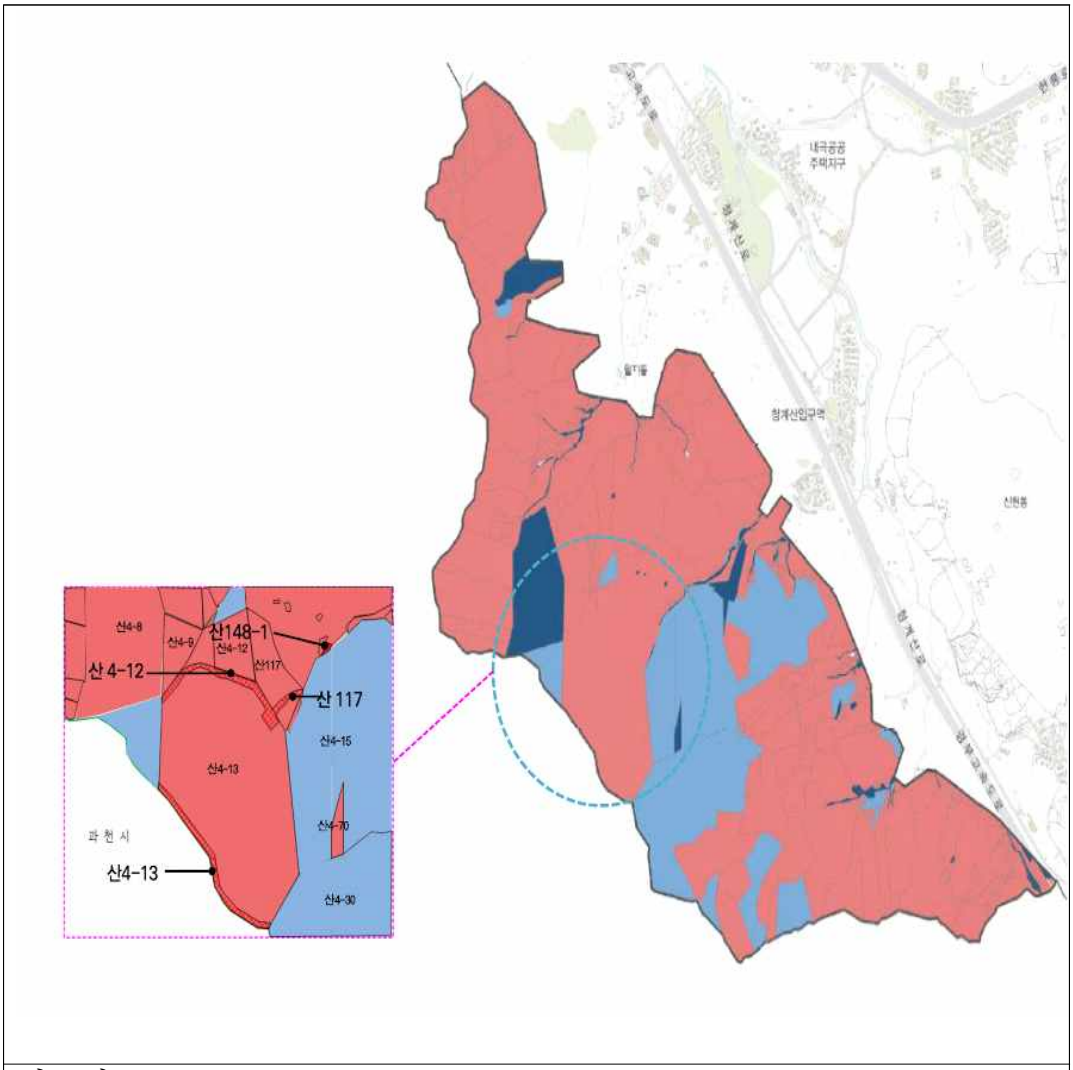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청계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335,691	35,377						
1	원지동 산4-13	임	225,124	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순*	7/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조은*	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29, 112동 ****호 (삼성동 힐스테이트)	이중*	1/10			
2	원지동 산4-12	임	17,851	1,8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8*	오정*				
3	원지동 산117	임	25785	1,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박춘*	3170/257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김현*	4960/2578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59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4-****	김현*	4960/2578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7 소만마을 604-****	김현*	4960/25785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41-14 일우테라스 102동 ***호	김영*	7735/25785			
4	원지동 148-1	답	694	694	8727 우드워드 코트 랜초 쿠카몽가 캘리포니아 91730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07207동 ***호 (개포동, 현대2차아파트))	안규*				
5	원지동 산44	임	34,215	4,200	미합중국 캘이포니아주94558 나파 이스트털드아베뉴41**번지	선우*	1/6			
					미합중국 캘이포니아주92604 일빈 크로브 부로슴 *번지	선우**	1/6			
					미합중국 캘이포니아주92101 산디아고 웨스트 하버 드라이브 700번지 아파트 ****	선우**	1/6			
					미합중국 뉴져지주07078 인벨니스 코트쇼트힐스 *번지	선우*	1/6			
					미합중국 마릴랜드주 21202 벨티모아 사우스 프리지덴트-가 250번지 유니트***	선우**	1/6			
					미합중국 캘이포니아주 94552 카사-트로밸리 파인빌 서클****번지	선우*	1/6			
6	원지동 421	전	83	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이용*	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대*	3/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범*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원*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건*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춘*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화*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지동 37*	문훈*	2/16			
7	원지동 산33	임	24,871	1,400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 56*	최명*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정2길 *	정승*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호* 개발 주식회사	3/5			
8	원지동 산4-16	임	7,068	1,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272,102동****호(금호동대우아파트)	이상*	1/2	광명시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272,102동****호(금호동대우아파트)	김연*	1/2	이경*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76, 102-****	채무자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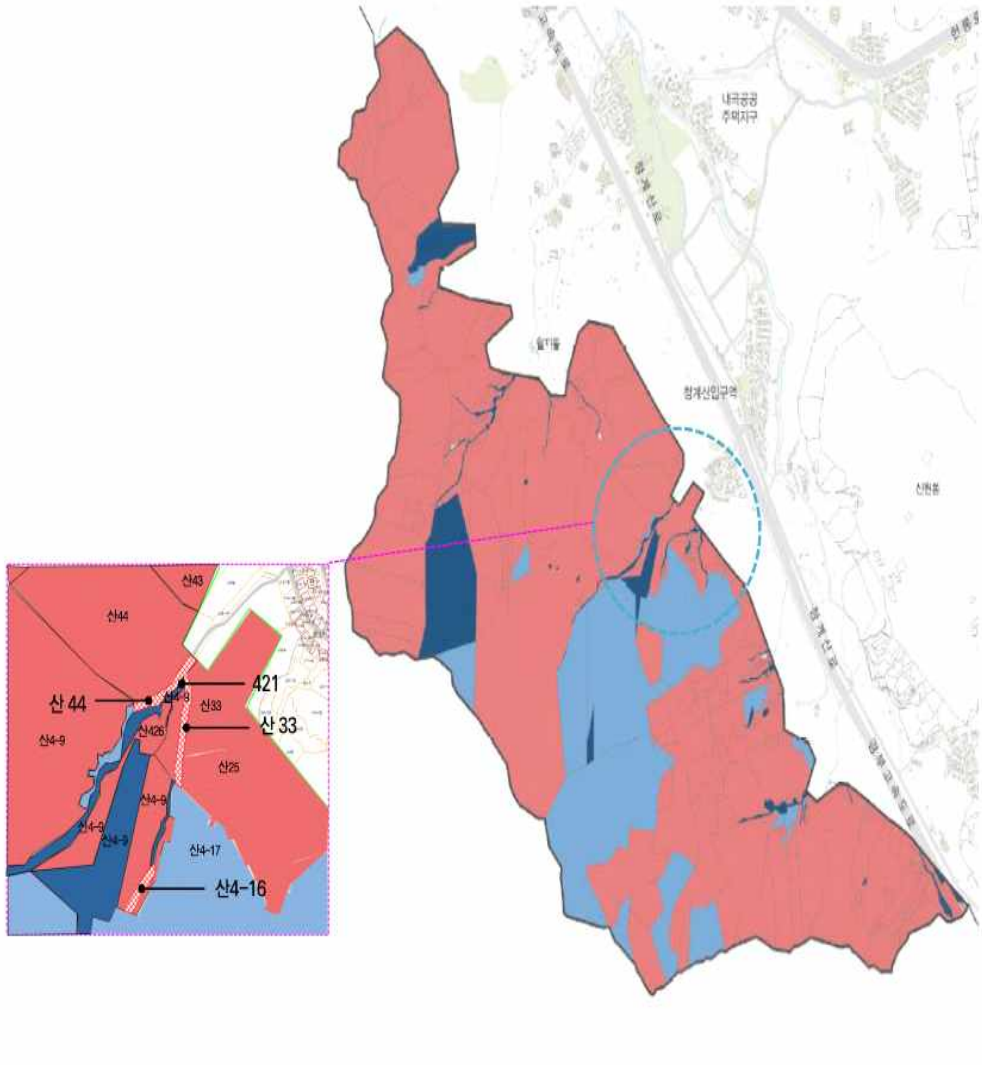
공원보상용지도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청계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범 례

- 공원시설경계
- 사유지
- 국유지
- 시 · 구유지
- 공원시설경계
- 19년 보상토지



범 례

- 공원시설경계
- 사유지
- 국유지
- 시 · 구유지
- 공원시설경계
- 19년 보상토지

◈ 서초구고시 제2019-91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120호(1997.04.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6번지 일대의 방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19-409호(2019.3.14.)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6번지 등 1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 방배근린공원 조성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 20,933.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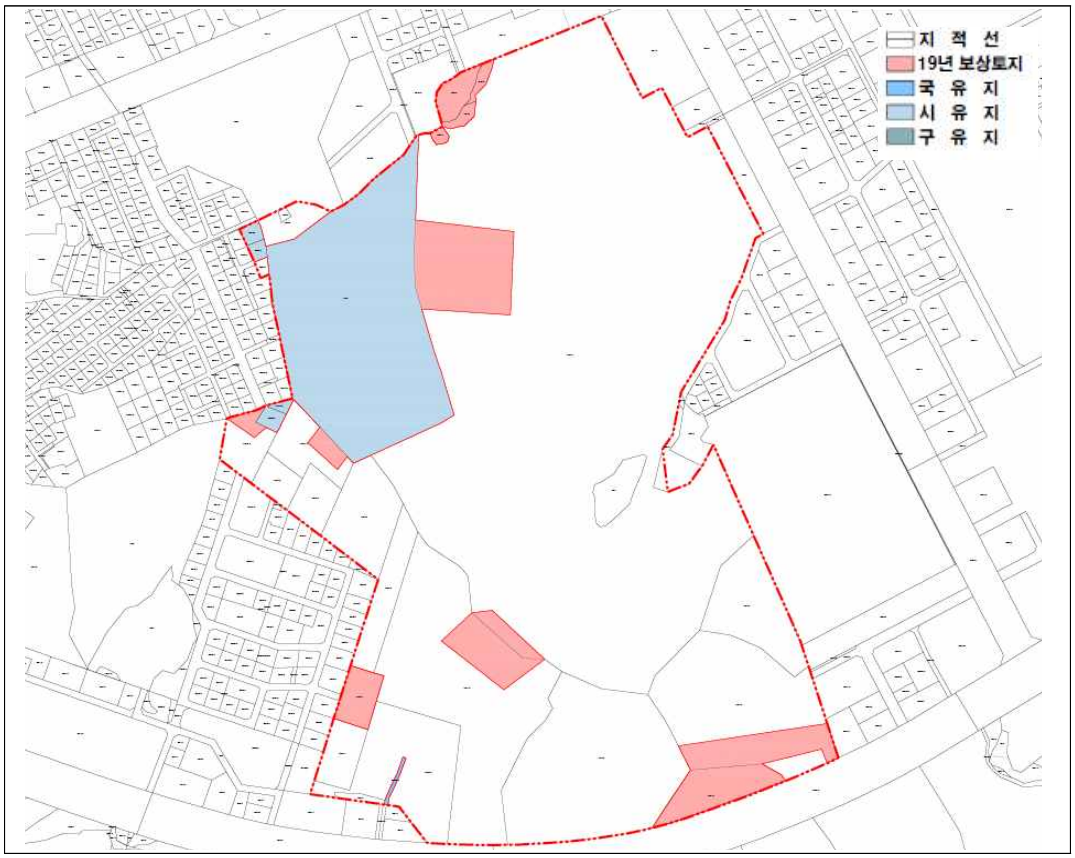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1필지		187,064	20,933.6						
1	방배동 274-2	답	996	996	사단법인 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1			
2	방배동 273-2	대	301	301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1			
3	방배동 273-3	대	301	301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1			
4	방배동 275-2	대	180	180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1			
5	방배동 산43-6	임	137,848	7,655.4	사단법인 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1			
6	방배동 산84-12	임	2,309	940	윤순*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 *** 동 ***호(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1			
7	방배동 산84-11	임	3,104	845	윤용*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 (성북동1가)	1/10			
					윤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0길72, ***동 ****호(서초동, 서초한빛삼성아파트)	4/10			
					윤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길 *	5/10			
8	방배동 산84-7	임	1,488	1,488	윤현*	서울시 성동구 매봉길 15, ***동 ***호(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트)	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9	방배동 산84-1	임	22,497	2,626.2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	1			
10	방배동 산86-3	임	2,721	2,721	임광*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	1			
11	방배동 산40-1	임	15,319	2,880	학교법인 **학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청담동)	1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공원 보상 용지도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조성)사업



◈ 서초구고시 제2019-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우면산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2-94호(2002.03.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3-2번지 일대의 우면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19-418호(2019.3.14.)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고시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3-2번지 등 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1,78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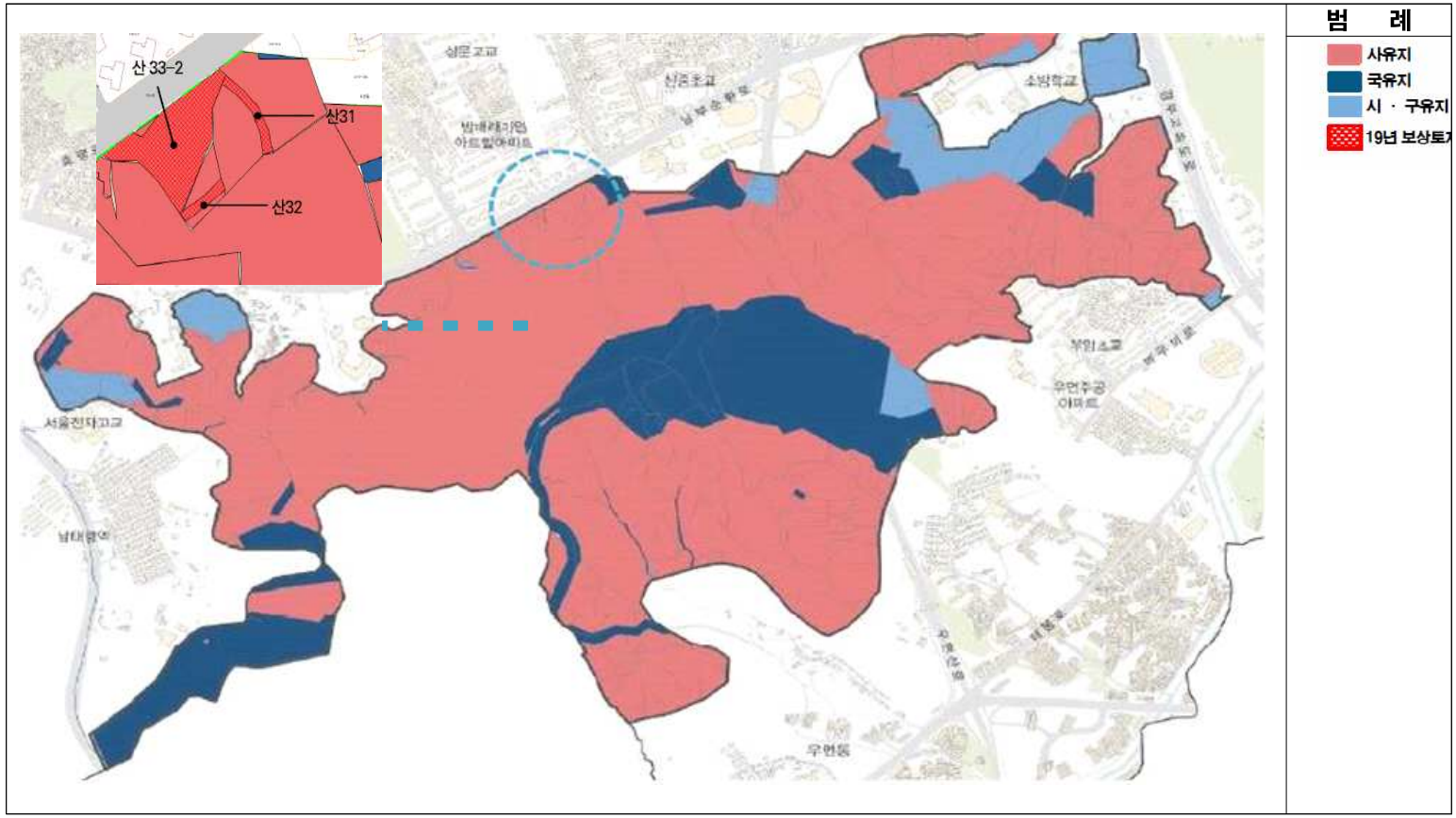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우면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9필지		25,075	11,780						
1	방배동 산33-2	임	9,980	9,980	김가*	제주시 관덕로 ***(삼도이동)	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권
2	방배동 산31	임	6,149	520	이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동 ****호(동천동 동천자이아파트)	992/ 6149			
					안철*	경기도 구리시 산마루로 46, ***동 ***호 (갈매동, 갈매4단지)	661.16/ 6149			
					조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5바길 10, ***호(상도동, 이에스하임5차)	1498.62/ 6149			
					조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6번길 13, ***호(금곡동, 천사의도시111오피스텔)	1498.61/ 6149			
					조민*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10번길 **-**(별내동)	1498.61/ 6149			
3	방배동 산32	임	2,579	200	정진*	경기도 오산시 대원로**번길 **(원동)	1			
4	서초동 산139-1	임	1,504	140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5	서초동 산139-2	임	430	90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6	서초동 산139-3	임	1,878	120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7	서초동 산139-4	임	750	130	이강*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74-2 세종빌라 *동 *호)	1/2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홍성*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길 *	1/4			
					김종*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32길 **-** ***호(방배동, 신한엔시모)	1/4			
8	서초동 산141-1	임	1,536	380	백제불교초전법륜성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9	서초동 산141-2	임	269	220	우정*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25, ***동 ****호(만년동, 강변아파트)	1/3			
					우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46길 28, ***동 ****호(논현동 논현아파트)	1/3			
					우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동 ***호(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아파트)	1/3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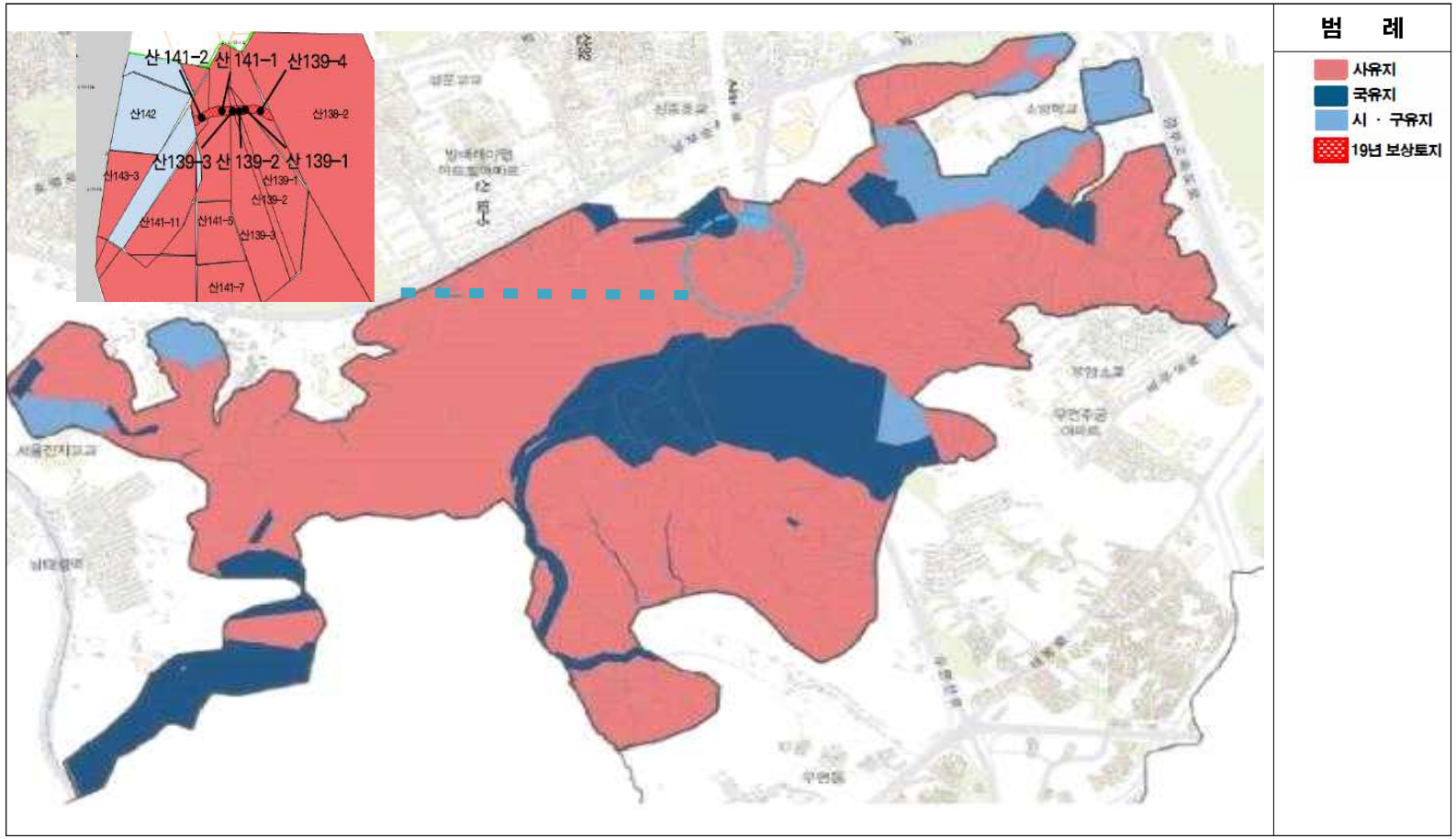
공원 보상 용지도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우면산도시자연공원조성)



공원 보상 용지도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우면산도시자연공원조성)



◈ 강남구고시 제2019-76호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4(2017.07.13)호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4(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Ⅰ.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Ⅱ.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일대	20,876.0	-	20,876.0	

3. 정비계획 수립(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876.0	-	20,876.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76.0	-	20,876.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0,876.0	-	20,876.0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2,376.6	-	2,376.6	11.4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2,376.6㎡ (순부담 11.4%)
	도 로	1,359.9	-	1,359.9	6.5	
	녹 지	1,016.7	-	1,016.7	4.9	
획 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499.4	-	18,499.4	88.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8	25 ~28	보조 간선	526 (49)	광로 1-28	대로 2-6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확보
기정	중로	2	407	15 ~24	국지 도로	620 (205)	광로 1-72	대로 3-108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폭3m, 4-9m 확폭

2)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지	연결녹지	일원동 615-1 일대	1,016.7	-	1,016.7	-	일원로변, 폭 12m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 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계		1,700	증) 750	2,450	
	경로당	획지1 (공동주택용지)	180	증) 10	190	
	관리사무소		110	증) 50	160	
	어린이놀이터		1,100	감) 350	750	
	주민운동시설		-	증) 160	160	
	어린이집		200	증) 10	210	
	작은도서관		110	증) 40	150	
	주민공동시설		-	증) 830	830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20,876.0	일원동 615-1 일대	5	-	-	5	-	

2) 건축물시설계획 : 변경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획지구분</td><td rowspan="2">위 치</td><td rowspan="2">주된
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colspan="2">용적률(%)</td><td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d></tr>
<tr><td>명 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
(㎡)</td><td>정비계획</td><td>예 정
법적상한</td></tr>
<tr><td>기
정</td><td>일원개포한신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td><td>20,876.0</td><td>획지1</td><td>18,499.4</td><td>일원동
615-1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50이하</td><td>250
이하</td><td>299.78
이하</td><td>105m이하/
최고35층</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td><td colspan="10">•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table><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세대수(세대)</td><td rowspan="2">비율(%)</td></tr><tr><td>기정</td><td>변경</td><td>변경후</td></tr><tr><td>전용 60㎡이하</td><td>158
(재건축소형주택 77)</td><td>증) 14</td><td>172
(재건축소형주택 66)</td><td>34.5%</td></tr><tr><td>전용 60초과
~85㎡이하</td><td>205</td><td>증) 23</td><td>228</td><td>45.8%</td></tr><tr><td>전용 85㎡초과</td><td>126</td><td>감) 28</td><td>98</td><td>19.7%</td></tr><tr><td>합계</td><td>489</td><td>증) 9</td><td>498</td><td></td></tr></table>–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50% 이상</td></tr>
<tr><td>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변경없음)</td><td colspan="1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총 5% 완화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4%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10~15%) : 1%
•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99.78%)</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td><td colspan="10">• 건축한계선(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준용)
– 개원길변 : 6m
– 개원길변 건축물의 저층부(3층이하)의 용도가 주민편의시설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인 경우
: 건축지정선 3m</td></tr>
</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3)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 변경없음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 획</td><td>구역면적</td><td>획지
(공동주택)</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td><td>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20,876.0㎡</td><td>18,499.4㎡</td><td>2,376.6㎡</td><td>-</td><td>-</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376.6㎡ - 0㎡ - 0㎡ = 2,376.6㎡</td></tr>
<tr><td>계획용적률</td><td colspan="5">•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계획(기준)용적률 : 210.0%이하</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10% +5% = 215%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총 5% 완화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4%
-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10-15%) : 1%
※ 위에서 적용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td></tr>
<tr><td>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상한용적률(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215% × (1 + 1.3 × 0.12847) = 250.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376.6㎡ / (20,876.0㎡-2,376.6㎡) = 0.12847
• 정비계획용적률 : 25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8%</td></tr>
</table>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인공적인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며, 이용객 편익 및 휴식공간이 되도록 계획 • 사업대상지 경계부의 녹지대는 외부에서의 시각적 경관을 고려하여 조화된 수림대 형성 • 시각적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조경 및 구조물 선정은 형태, 색채, 질감 등이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재료와 구성의 변화로 시각적 경험을 다양화
환경보전	• 토양포장면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대한 틈새투수포장 활용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2007. 12, 서울시 도시계획국』에 제시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율 기준인 30%(공동주택기준) 이상 확보하되, 개포택지(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생태면적률40%, 자연지반율 10% 확보 •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톱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 주변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공사시 정온시설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재난방지	• 사업대상지내 전면공지 등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 방지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 시행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364 • 계획세대수 : 489 • 증)125세대	이상없음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세대수 : 364 • 계획세대수 : 498 • 증)134세대	이상없음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가 구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499.4	-	18,499.4	도로, 녹지 제외
획 지	1	18,499.4	일원동 615-1번지 일대	18,499.4	공동주택용지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 colspan="2">정비계획용적률</td><td colspan="3">•250%</td></tr>
<tr><td colspan="2">예정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3">•299.78%</td></tr>
<tr><td colspan="2">용적률 차이의 50%</td><td colspan="3">•(299.78% - 250%) × 50% = 24.89%</td></tr>
<tr><td>소형주택
공급기준</td><td colspan="5">•소형주택 건설 면적 : 대지면적 × 24.89%
= 18,499.4㎡ × 24.89% = 4,604.5㎡ 이상</td></tr>
<tr><td>소형주택
건설계획</td><td colspan="5">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건립위치</td><td rowspan="2">세대수</td><td colspan="2">주택규모</td><td rowspan="2">연면적</td></tr>
<tr><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r>
<tr><td rowspan="2">기정</td><td rowspan="2">획지</td><td>38세대</td><td>39.42㎡</td><td>53.42㎡</td><td rowspan="2">•계획 = 53.42㎡ × 38세대
+ 66.27㎡ × 39세대
= 4,614.49㎡ > 4,604.5㎡</td></tr>
<tr><td>39세대</td><td>49.32㎡</td><td>66.27㎡</td></tr>
<tr><td rowspan="2">변경</td><td rowspan="2">획지</td><td>46세대</td><td>44.99㎡</td><td>63.19㎡</td><td rowspan="2">•계획 = 63.19㎡ × 46세대
+ 85.80㎡ × 20세대
= 4,622.74㎡ > 4,604.5㎡</td></tr>
<tr><td>20세대</td><td>59.90㎡</td><td>85.80㎡</td></tr>
</table>
</td></tr>
</table>

Ⅲ.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 첨부(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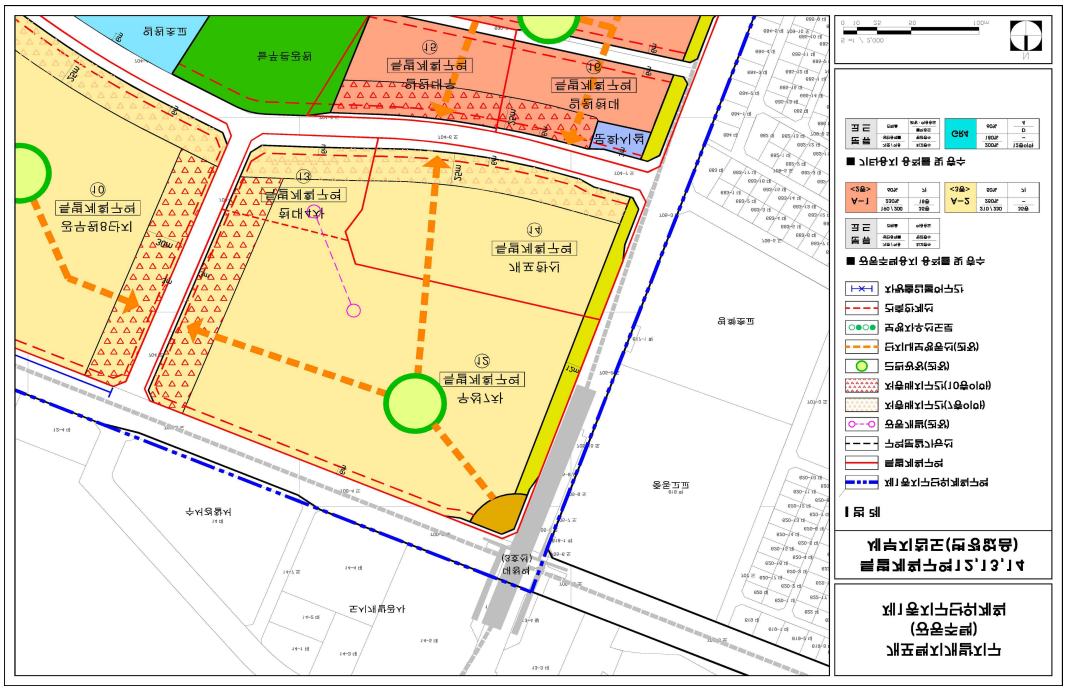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3423-60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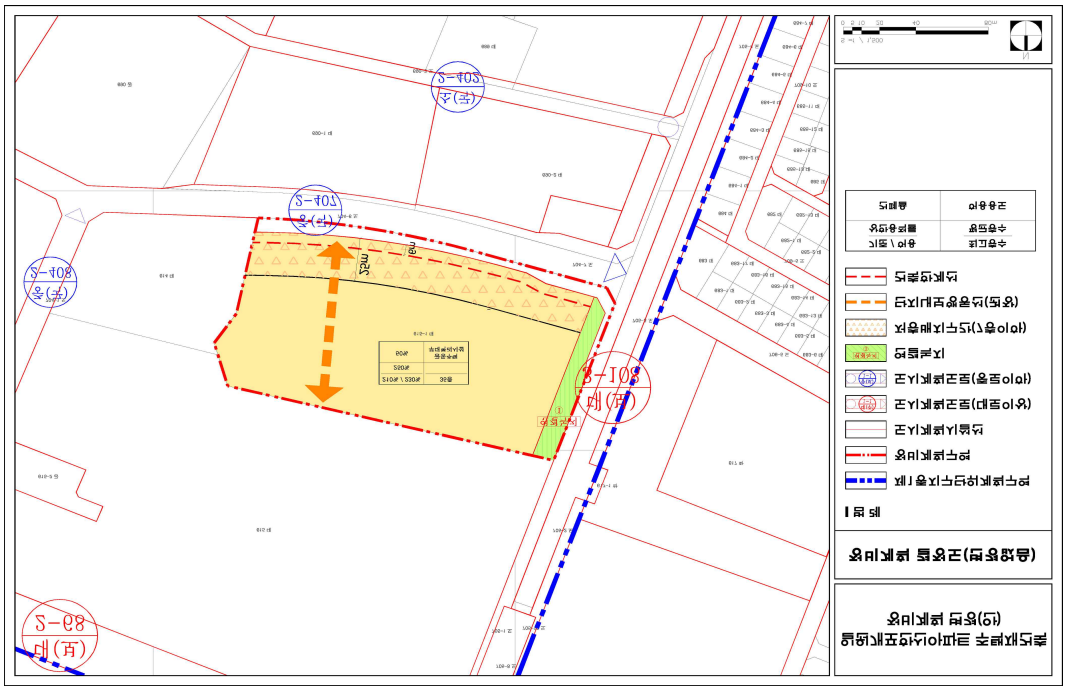
첨부도면

▣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 정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9-4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7.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광진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25-2 ~ 410-2 외 1개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광장동 425-1 ~ 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1) 광진구 광장동 425-2~410-2: 도로개설(폭 10m, 연장 190m)

2) 화양동 111-94~111-89: 도로개설(폭 6m, 연장 58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아. 열람장소: 광진구청 도로과(☎450-7855)

토 지 조 서

1. 사 업 명: 광장동 452-2~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4.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지 분 (대지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광장동 413-9	대	565	46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49-9				
2	광장동 411-2	대	82	10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563				
3	광장동 413-10	대	36	8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49-9				
4	광장동 412-2	대	10	10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563				
5	광장동 414-3	대	46	46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563				
6	광장동 413-20	대	817	73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9길 32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 11-6	근저당	교회
7	광장동 413-29	대	333	60	1/2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1403동 306호				
					1/2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1403동 306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	
8	광장동 413-11	대	337	61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주식회사 한국씨티 은행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근저당	
9	광장동 413-12	대	317	59	1/2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7, 6동 801호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13-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	
10	광장동 413-13	대	301	56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93 한양아파트 26-306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	
11	광장동 413-14	대	278	36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33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지 분 (대지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2	광장동 413-15	대	261	20	261분의32.7577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9길14, 101호				101
					261분의21.8183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3나길 13-4				102
					261분의32.7577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3길 36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시 종로구 종로47	근저당	201
					261분의21.8183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30-1, 401호				202
					261분의29.2791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205동 701호				301
					261분의21.8183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9길 1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	302
					261분의25.8073	-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13-15				401
					261분의20.3678	-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413-15				402
					261분의32.7577	-	서울시 광진구 구의로 47-15				지하01
					261분의21.8183	-					지하02
13	광장동 413-18	대	241	16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1, 에이동 1706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	
14	광장동 413-19	대	437	13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30길 21, 에이동 1706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근저당	
15	화양동 111-233	대	28	28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21동606호				
16	화양동 111-229	대	45	45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21동606호				

물 건 조 서

1. 사 업 명 : 광장동 452-2~410-2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3. 시행자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4.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량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명 세			비고
					지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 류	
1	광장동 413-9	펜스 (철재)	-	1.5m	-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49-9				
2	광장동 413-11	담장		1식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근저당	
		주차장 셔터문		1식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근저당	
		대문		1식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근저당	
		담장		1식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근저당	
		(내부) 화단		1식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타운 1106-201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근저당	
3	광장동 413-12	가건물 화장실		4㎡	1/2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7, 6동 801호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13-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	
		담장		1식	1/2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7, 6동 801호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13-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	
		화단		4㎡	1/2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07, 6동 801호				
					1/2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13-12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	
4	광장동 413-13	목재 데크		13㎡	-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93 한양아파트 26-306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근저당	
		가스 배관		1식	-						
5	광장동 413-14	베란다		2㎡	-	-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산33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	
		화단		1㎡	-						
		담장		1식	-						

◈ 노원구공고 제2019-4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동네뒷산공원화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9호(2018.7.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제2019-214호(2019.2.28.)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된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대 초안산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5번지(당초 산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1,428㎡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6)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최초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2019. 2. 28.

기 정										변 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1	임야	임야	4,345	1,428 (1,089.4 /5,056)	이구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36				1	월계동 산1	임야	임야	2,917	-	이구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36			
																-	전정남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82-5			
					1,428 (495.8 /5,056)	전정남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82-5	정덕연	영주시 청심로 224	근저당권자						-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			
								김옥금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82-5	근저당권자	2	월계동 산1-5	임야	임야	1,428	1,428 (1,089.4 /5,056)	이구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36			
					1,428 (3,470.8 /5,056)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									1,428 (495.8 /5,056)	전정남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82-5	정덕연	영주시 청심로 224	근저당권자
																			김옥금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82-5	근저당권자
																1,428 (3,470.8 /5,056)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			

◈ 노원구공고 제2019-4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86호(2016.7.7)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2019-18호(2019.1.10.)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된 노원구 월계동 산127-1번지 일원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27-5번지 일원
(당초 산12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2) 명 칭 :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540㎡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 2019. 5. 16.(목)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영축산근린공원조성

최초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 2019. 1. 10.

기 정											변 경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127-1	임야	임야	8,784	265 (1/2)	전진원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동천동로16, 두산위브 104동 1803호				1	월계동 산127-1	임야	임야	7,435						
											2	월계동 산127-5	임야	임야	265	265 (1/2)	전진원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동천동로16, 두산위브 104동 1803호			
					265 (1/2)	전미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현대 104동 1104호									265 (1/2)	전미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현대 104동 1104호				
											3	월계동 산127-6	임야	임야	1,084						
2	월계동 산128-1	임야	임야	11,207	275	대한예수장로회 서울중앙교회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17길 34				1	월계동 산128-1			10,932						
											2	월계동 산128-4			275	275	대한예수장로회 서울중앙교회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17길 34			

◈ 강서구공고 제2019-7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변경(해제)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121-5 일대, 도시계획시설(공원: 꿩고개근린공원)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다.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해제)	꿩고개 근린공원	근린 공원	강서구 방화동 산97-1 일대 (방화동 121-5일대)	180,089	감) 23,713	156,376	1977.7.14 (건고제138호)	

라. 결정사유
- 토지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 신청에 있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시설을 해제하고자 결정하는 사항임

마. 관련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 - 6845) 및 공원녹지과(☎2600 - 418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19-760호

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138호('77.7.14)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3호(2001.6.11)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07호(2013.4.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산87-5번지 등 17필지

다. 사업의규모 : 64,673㎡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바.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12.31.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도첨부

자. 열람장소 : 강서구청 가양동별관 3층 공원녹지과(☎02-2600-4182 주무관 하대권)

차.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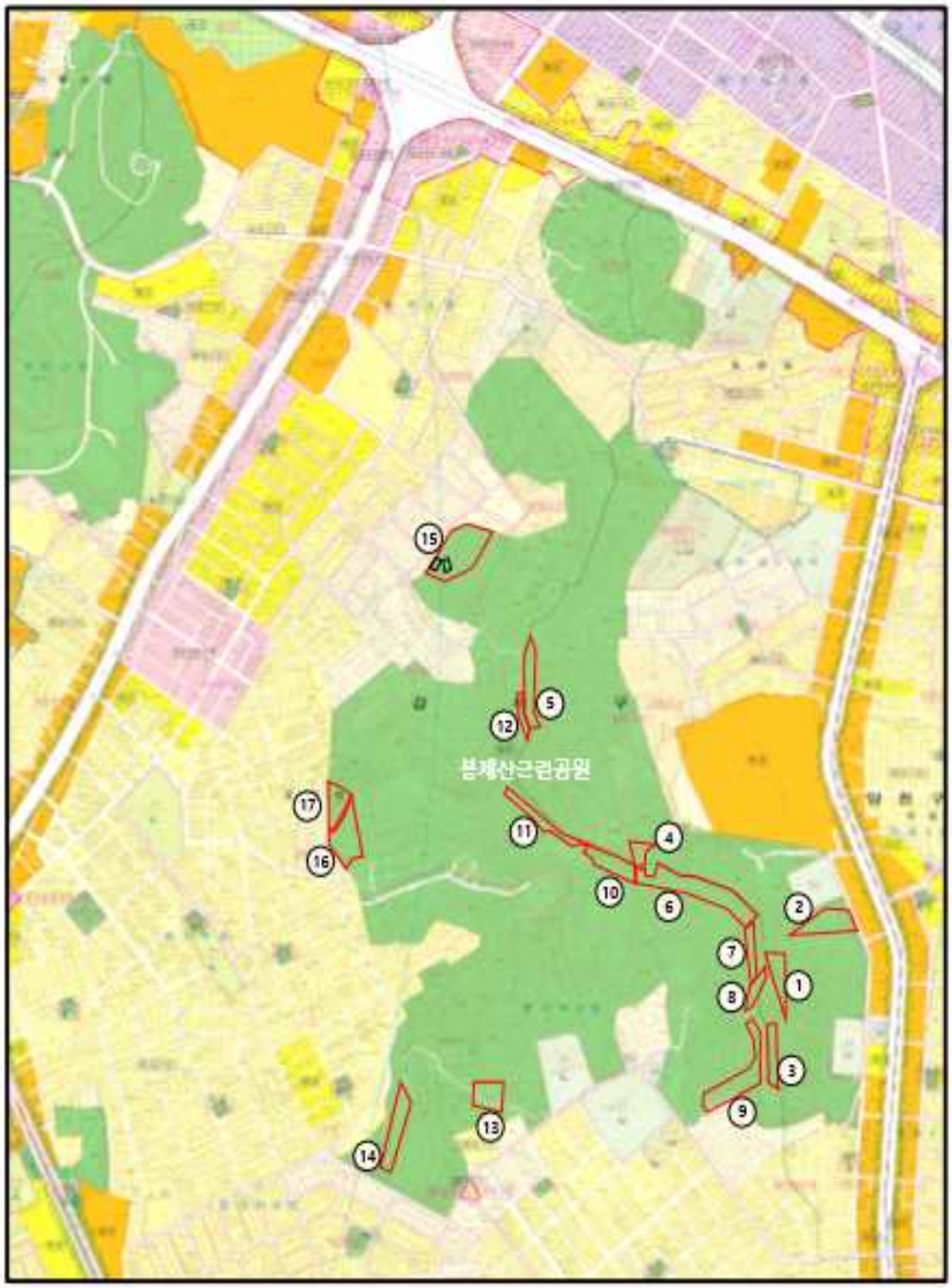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7필지		64,673	64,673							
1	강서구 등촌동 산87-5	임야	5,582	5,582	2/10	이순열	서울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12동 1101호				
					6/10	박병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3길 84-8, 201호				
					2/10	오길자	서울 서초구 방배로 14, 3동 1005호				
2	강서구 등촌동 산87-6	임야	1,921	1,921	2/10	이순열	서울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12동 1101호				
					6/10	박병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3길 84-8, 201호				
					2/10	오길자	서울 서초구 방배로 14, 3동 1005호				
3	강서구 등촌동 산89-6	임야	2,867	2,867	-	학교법인 대일학원	서울 성북구 서경로 116				
4	강서구 등촌동 산17-13	임야	1,580	1,580	-	조영봉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51, 804동 1306호				

5	강서구 등촌동 산24-33	임야	3,417	3,417	1/4	김항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15, 104동 705호				
					500/2000	이재철	서울 성북구 인촌로27길 4				
					500/2000	신장섭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9, 104동 1603호				
					1/4	최병윤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57길 53				
6	강서구 화곡동 산1-2	임야	10,345	10,345	1/2	박문효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09동 401호				
					1/2	박문덕	서울 서초구 방배로34길 105				
7	강서구 화곡동 산5-13	임야	974	974	-	학교법인 인권학원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				
8	강서구 화곡동 산5-14	임야	992	992	-	학교법인 인권학원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				
9	강서구 화곡동 산5-15	임야	6,013	6,013	-	학교법인 인권학원	서울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				
10	강서구 화곡동 산22-102	임야	2,874	2,874	-	현철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 G동 202호				
11	강서구 화곡동 산42-15	임야	1,602	1,602	-	현철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5, G동 202호				
12	강서구 화곡동 산48-7	임야	900	900	1/10	이행자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102, 101동 101호				
					2/10	이종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12동 1004호				
					2/10	이종민	서울 강남구 개포로 411, 803동 101호				
					2/10	이경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7, 203동 606호				
					102/1000	이신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22-1, E호				
					99/1000	이석우	충남 예산군 대흥면 예당로 769-9				
					99/1000	이선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22-1, E호				

13	강서구 화곡동 산22-103	임야	3,313	3,313	-	신동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92, 401동 1203호				
14	강서구 화곡동 산28-26	임야	3,987	3,987	476.25/3810	노정기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라길 3, 나동 206호				
					952.5/ 3810	이동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100, 207동 501호				
					476.25/3810	노명신	서울 강서구 양천로63길 38, 104동 502호				
					1885.95/41910	오은영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 109동 2002호				
					1885.95/41910	박상숙	서울 중구 다산로 32, 13동 1703호				
					1885.95/41910	송영주	서울 동작구 현충로 52, 118동 402호				
					1428.75/41910	염문섭	서울 동작구 현충로 52, 118동 402호				
					10058.4/41910	조은숙	서울 강남구 학동로68길 29, 112동 1101호				
					1905/ 41910	김명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106동 1204호				
					1905/ 41910	김은희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180, 102동 1205호				
15	강서구 화곡동 산53-4	임야	8,965	8,965	1/4	강상훈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13동 805호				
					1/4	강상호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212동 301호				
					1/4	강상봉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1길 17, 1동 507호				
					1/4	강정아	서울 용산구 이촌로 310, 101동 4304				
16	강서구 화곡동 산43-22	임야	5,058	5,058	7/27	정영록	서울 종로구 이화장1길 11				
					2/27	장목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103-22, 505동 1001호				
					18/243	이점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89, 205동 1401호				

					12/243	정혜욱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89, 205동 1401호				
					9/243	정지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171				
					9/108	조규정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806호				
					9/108	조규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83동 806호				
					9/108	조은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128동 502호				
					9/108	조규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10, 1동 1307호				
					24/243	박은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7, 209동 505호				
					2/81	김혜민	서울 노원구 덕릉로60길 222, 101동 704호				
					2/81	김세헌	서울 도봉구 덕릉로60길 164-13, 101동 1004호				
					2/81	김세익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6길 36, 102동 1602호				
17	강서구 화곡동 산45-3	임야	4,283	4,283	3/17	이기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2, 504동 1002호				
					2/17	원용환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146동 903호				
					2/17	원용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79, 501동 703호				
					2/17	원용일	서울 강서구 우현로 67, 105동 804호				
					2/17	원용욱	서울 강남구 일원로 120, 102동 502호				
					2/17	원용진	서울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119동 1204호				
					2/17	원용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6동 4401호				
					2/17	원미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104동 1504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위치



◈ 동작구공고 제2019-5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87호(1962.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1-66호(2011.3.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현충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그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현충근린공원)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88-68 등 16필지

○ 면　　적 : 93,233㎡

○ 내　　용 : 토지보상 93,233㎡, 지장물 보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동작구 장승배기길 161(노량진동 47-2)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토지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따로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동작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820-984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192,932	93,233							
1	흑석동 산88-68	임야	13,212	4,717	서울 동작구 흑석동 34-35	박완용	561 /124508	흑석2동새마을금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 50-2	근저당권 분할로 인하여 등기 동소 산88-14에서 전사 공동담보 : 분할후의 토지 등기 동소 산88-14, 산88-67,-69,-70,-71	
2	흑석동 산79-2	임야	5,779	5,77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5, 205호	김영민	165.3 /4812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6, 109동 104호	김영채	165.3 /48123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9-3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7.5 /5029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스트리트910 그라머시피엘 202지구 90019	김인수	165.3 /481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압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압류	
3	사당동 산31-1	임야	73,481	18,89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6, 101동 2401호 (한강로3가,한강대우트럼프월드3차)	한자영	1/1				
4	사당동 산22-1	임야	5,957	5,957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8길 49	이태구	1/2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8길 49 (서초동)	이동준	1/2				
5	사당동 산21-1	임야	34,720	13,178	서울 관악구 사당동 57-7	김상길	1/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이만숙	1/10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김유자	2/104				
					서울 구로구 시흥동 868-34	이우창	2/10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92-4 롯데빌리지 다-102	설준희	1/16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26길 19-5 (노량진동)	이덕상	10/104				
					서울 양천구 목동 90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27-305	김수자	1/40				
					서울 서초구 반포동 827 반포아파트 78-103	김숙자	1/40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23길 14 (휘경동)	이욱상	10/104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동작구 흑석3동 59-10	김미경	1/8				
					서울 강남구 선릉로190길 64, 401호 (청담동, 연세리버테라스)	설상희	1/16				
					경기 화성시 송산동 97-15 화산주택 사-101	최상근	3/520				
					경기 화성시 송산동 97-15 화산주택 사-101	최서연	2/520				
					인천 남구 미추로35번길 14 (숭의동)	성계제	1/40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64번길 7, 117동 2101호	조영실	2/40	국	처분청: 서인천세무서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11 (염리동168-9) (인천서부지사)	압류	
								동해시		압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압류	
					서울 동작구 상도로53길 8, 301동603호 (상도동,래미안상도3차아파트)	김주희	5/16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31, 6동306호 (성포동,선경아파트)	김승주	5/160				
					서울 서초구 효령로36길 36, 202호 (방배동,해피빌)	김현주	5/160				
					서울 영등포구 63로7, 에이동206호 (여의도동,은하아파트)	성정은	3/160				
					서울 영등포구 63로7, 에이동206호 (여의도동,은하아파트)	김민성	2/160				
6	사당동 175-49	도로	2,202	27	서울 동작구 사당로2차길 15-11 (사당동)	박병일	1/1	양천구		압류	
								윤영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209동 1202호 (평촌동, 초원아파트)	근저당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주식회사두나개발	경기 김포시 봉화로 44, 도화길 28, 113동 302호 (도화동,마포삼성아파트)	근저당권	
7	사당동 산22-21	임야	16,500	16,012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8길 49	이태구	6500 /16500				
					서울서초구사임당로18길49(서초동)	이동준	10000 /16500				
8	사당동 산31-2	임야	3,273	3,273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7-1003	정준식	945.014 /3273				
					경기 의왕시 삼동 178 우성아파트 2-423	이진일	165 /3273				
					경기 의왕시 삼동 146 우성아파트 4-313	김주선	231 /3273				
					경기 의왕시 삼동 176-5 효성빌라 2-301	민정혜	165 /3273				
					서울 서초구 방배동 914-1 지층	권현경	198 /3273				
					서울 구로구 개봉로11길 10-38, 나동402호 (개봉동,영진빌라)	김연주	99 /3273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11-35	강귀분	132 /3273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7 신도림태영타운 107-804	이중현	149 /3273				
					울산 동구 방어동 1134-9 청운스카이빌 에이동201호	윤수정	99 /3273				
					서울 동작구 상도동 431 래미안상도3차아파트 318-701	김주희	165 /3273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3 벽산아파트 520-1201	유종우	99 /3273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8 보라매갑을아파트 101-608	배경	99 /3273				
					서울 동작구 흑석동 50-68	김선자	165 /327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745-1 현대에코르아파트 107동1001호	박효경	231.406 /327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390, 114동2104호 (평촌동,인덕원대우아파트)	김금일	330.58 /3273				
9	동작동 산12	임야	2,628	56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57-7	강연식	38/88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7 은하마을 502-501	강근임	10/88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3-2 현대홈타운2단지 202-2502	강연순	10/88				
					경기 의왕시 내손로70-14, 1501동2001호 (내손동,의왕내손이편한세상아파트)	강승철	15/88				
					경기 의왕시 포도원로46, 205동702호 (오전동,대명구름채아파트)	강승혜	15/88				
10	동작동 산14	임야	1,944	233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63길 23(사당동)	박수웅	1/3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44 조양맨션-301	박정숙	1/3				
					서울 동작구 현충로14가길 14-1	박승구	1/3				
11	동작동 산20	임야	4,051	12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347, 22동303호 (압구정동,한양아파트)	최계향	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72동309호	김성두	1/5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102동1002호	김경두	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3 한양아파트 22동303호	김형두	1/5				
					대전 유성구 어은동 99 한빛아파트 132동106호	김미혜	1/5				
12	동작동 산13-1	임야	4,496	785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6-36	강형수	224 /1456				
					서울 동작구 사당동 44-60	강병수	224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강현식	84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김정애	28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강옥희	28 /1456				
					서울 동작구 본동 234	강신호	56 /1456				
					서울동작구흑석동238-1	강옥식	14 /1456				
					서울 강남구 방배동 954-15	강옥분	14 /145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동작구 사당동 91-99	강철식	96 /1456				
					서울 동작구 사당동 91-99	김유선	32 /1456				
					서울 구로구 개봉동 147-21	강신애	32 /145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27-1	강택준	64 /1456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1-17	강신용	168 /1456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7길 5 (사당동)	강태원	56 /145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 호계이-편한세상아파트 116-703	김용예	264 /27456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4-15	김희경	11 /27456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332 한효아파트 1-801	김상현	11 /27456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7-6	김희숙	11 /27456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7-6	김희정	11 /27456				
					경기 화성시 안녕동 210 남산마을청광플러스원아파트 104-1006	김동현	11 /2745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934-1 삼성래미안아파트 108-303	최관용	33 /27456				
					인천 연수구 옥련동 641-1 태평아파트1 01-2203	최은미	33 /27456				
					과테말라국 꼴마르시칼조나11 24 깔레 8-80	김용옥	66 /27456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5-1 상아하이츠빌라 비02	김용희	66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시 데본셔스트리트 18013 143호	김영옥	66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시 런들리애비뉴 10535 33호	김영자	66 /27456				
					서울 금천구 시흥동 919-37	김미라	528 /27456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203-4 1층	신금여	72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웨스트아담스 블러바드 3300 307비호	박혜성	48 /2745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167-20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106-1003	박상태	48 /27456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89 동원마을동원로얄듀크아파트 107-802	박상용	48 /27456				
					경기 김포시 사우동 857 풍년마을 116-802	박상일	48 /2745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챗스위스 데본셔스트리트 20718-에이	박미자	264 /27456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22길 27-5, 1층동 102동 (방학동)	김수연	66 /27456				
					인천 계양구 양지말3길 3, 401호 (동양동,그린파크빌)	연옥희	11 /27456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69-19	강신영	224 /1456				
					인천 부평구 마장로220번길 13, 101동2103호 (산곡동,한신휴아파트)	김옥선	132 /27456				
					인천 부평구 부흥로123번길 36, 202동1315호 (산곡동,뉴서울아파트)	김옥길	132 /27456				
					서울 강서구 양천로3길 17, 104동202호 (방화동,개화산동부센트레빌)	김성현	33 /27456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8길 37 (목동)	김태현	33 /27456				
13	동작동 102-73	임야	397	147	경기 성남시 성남동 915	김애자	1/3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 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강진명	6/15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 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안동건	4/15				
14	동작동 102-14	임야	2,175	1,459	경기 성남시 성남동 915	김애자	262 /2175				
					서울 성동구 응봉동 100 대림아파트 5-504	정회권	331 /217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9-6	정성욱	331 /2175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9-31	김예준	234 /2175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6-8 주공삼산타운아파트 406-502	조명식	154 /6525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8-6 1층	조혜선	22 /6525				
					영국 캠브리지 체리힌톤 티셀웨이 19번지	조형무	22 /6525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극동아파트 109-506	이은선	192 /2175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 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강진명	315 /2175				
					서울 강남구 삼성로212,31동910호 (대치동,은마아파트)	안동건	210 /2175				
					서울 관악구 봉천로377, 3층(봉천동)	박경애	234 /2175				
15	동작동 산18-1	임야	13,839	13,839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12, 비동3604호 (잠실동,갤러리아팰리스)	민정자	38470.72 /244552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6 약수맨션 씨동604호	민승구	14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져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희숙	2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져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명숙	2000 /244552				
					1744 이스트4가비 온타리오 캘리포니아 91764	민승준	8000 /244552				
					541 웨스트로쿠스트리트 온타리오 켈리포니아 91761	민승만	8000 /244552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강호선	24000 /19564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민요한	24000 /19564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민미숙	16000 /1956416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347동 303호	황승현	15.731 /11116				
					서울 도봉구 창동 341 동진빌리지 102-301	홍종수	4.767 /11116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4-104	홍성모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의도	14.778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남근	16.684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안산시 월피동 447 한양아파트 10-1210	허정	14.301 /111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205 수유벽산아파트 10-1406	한상봉	16.684 /111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7-1502	한기수	19.545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1108	한규언	19.545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6-10	최춘호	15.731 /11116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90-4.5 골드-401	최영추	14.301 /11116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안길 15	최관호	14.301 /1111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3길 9, 나동 202호	진성원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799 반포아파트 68-202	조화영	14.301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101동 1701호	조문연	14.778 /11116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2 한성아파트 205-1501	조규봉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206	조권상	15.254 /11116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7-105	정형재	19.545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55, 102동 901호	정태홍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 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7-207	정일웅	19.545 /11116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9동 2504호	정철	15.254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4 삼익아파트 3-810	전철원	14.301 /11116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8-6	임호환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41-149	임재식	14.301 /11116				
					대구 달서구 월성동 84 주공아파트 102동209호	이한방	9.534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61-25	이청규	14.301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 10, 3동 603호	이정태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7	이재석	14.301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11-1003	이을범	19.545 /11116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111-302	이은석	14.301 /11116				
					경기 안양시 호계동 1055 무궁화아파트 109-1705	이용재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59	이선호	14.301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상용	17.161 /111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0-1	이상섭	19.545 /11116				
					경기 과천시 별양동 7 주공아파트 410-804	이상선	11.917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61-13	이덕호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길동 152-7	이기남	19.545 /11116				
					춘천시 후평동 481 주공아파트 507-209	이광우	14.301 /11116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8, 117동 403호	윤태종	16.684 /1111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 동남아파트 4-414	윤병연	13.109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5-19 은성빌라 나-202	유재화	14.301 /11116	국	처분청: 동안양세무서	압류	
					강릉시 저동 246-1	유재원	7.1505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도시개발아파트 305-402	유강근	16.684 /11116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가길 10, 301동 902호	안재규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 현대아파트 14동1310	심재순	14.301 /11116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주공아파트 103-302	신대호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1-605	송철재	13.109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1동 308호	손경종	16.684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0-18	손백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34-23 영광빌라 나-102	변종억	16.684 /11116				
					안산시 성포동 584 주공아파트 1003-1201	배윤태	14.301 /1111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8번길 29	방동한	10.01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 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3-501	박해성	14.301 /11116				
					안산시 월피동 448 현대아파트 203-1003	박종훈	19.545 /11116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8-7	박일수	19.545 /11116				
					안산시 본오동 872-20 우성아파트 2-109	박영목	16.684 /11116				
					원주시 단계동 793 단계아파트 11-501	박승균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601-601	박세훈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740-6 현대아파트 101-1203	민윤식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 초원아파트 609-1002	문영목	7.627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 백운아파트 505	나상열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아파트 201-803	노화래	15.25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7-27, 105동 701호	노석환	14.301 /11116				
					서울 강서구 가양동 지개발지구 6블럭 도시개발아파트 606-505	김효철	14.301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9-6 101호	김효분	15.969 /1111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9안길 21, 401호	김형수	19.545 /11116				
					의왕시 내손동 691-19 효성빌라 나동202호	김현태	14.301 /11116				
					광주 광산구 월곡동 538-1 일신아파트 105-808	김하경	14.301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1-603	김판중	14.301 /11116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501동 1206호	김태선	19.545 /11116				
					과천시 별양동 24-6	김진혁	15.254 /11116				
					안산시 고잔동 672 주공아파트 910-503	김진식	14.301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390, 103동 1304호	김주인	14.301 /11116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42	김주원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5-22	김종만	15.731 /11116				
					전북 이리시 동산동 158-15 삼호아파트 3-1105	김정수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2-309	김인홍	19.545 /11116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5-1	김원식	17.62807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284-51	김영철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859-1 현대아파트 101-807	김영선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중계동 3블럭 주공아파트 515-707	김수웅	19.545 /11116				
					광주 서구 진월동 344 협진휘밀리 101-1304	김성열	19.545 /11116				
					안산시 성포동 585-4 신우연립 8-106	김상필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04-1301	김상택	19.545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3 목련아파트 903동1203호	김봉석	14.301 /11116				
					대전 동구 용전동 1 신동아아파트 12동202호	김병희	16.684 /11116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149 해성아파트 나-508	김광식	14.301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4번길 6, 106동 302호	권훈일	16.684 /11116				
					청주시 가경동 847	권영덕	16.684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6 제일아파트 1-106	구익서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64-33	곽창호	14.301 /11116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6, 502동 1102호	고용규	14.301 /11116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45, 103동 105호	고선봉	14.301 /11116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4-14 원형빌라 101호	강환실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0-30	이공진	12.793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 반포아파트 6동503호	이영완	15.209 /111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119동 104호	문정일	12.935 /11116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27	김창수	12.793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87, 508동 1604호	문정수	15.636 /11116				
					서울 은평구 불광동 382-15	이형주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24동47호	조남욱	15.209 /11116	파산자주식회사해동신용금고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33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강남보상서비스지원단)	가압류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2-122	성수현	16.7761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78	윤공보	17.484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29동506호	정인심	13.077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1 신동아아파트 3동102호	남현숙	12.793 /11116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6-17	최영호	12.793 /11116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463 강남아파트 2동1108호	이상갑	12.793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58, 102동 1601호	정기화	12.793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5-46	박송문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상도동 331-27	오세경	12.793 /11116				
					경기 고양시 마두동 739 백마마을 205동1204호	박상용	12.793 /11116				
					대구 남구 대명동 1253-12	정효련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751-4 성보연립 에이동201호	이종선	12.793/11 11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21 문래현대아파트 102동201호	이대권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3동1407호	박인규	14.214 /11116				
					서울 양천구 신목로6길 6	박병선	17.484 /11116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2, 102동 2203호	최은	15.209 /11116	주식회사 플러스상호 저축은행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3-1	가압류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서울지점)	가압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류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부)	가압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2 현대도곡아파트 2동1505호	양윤식	15.209 /11116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28 현대파크 지층2호	김순기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1 개포6차우성아파트 3동503호	이춘재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1동107호	이경희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300-8	장비심	13.077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7-24	이홍순	13.077 /11116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파주지사)	압류	
					서울 마포구 도화동83 도화3지구우성아파트 6동1103호	김선옥	16.062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774-29	신지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5동303호	김종명	17.48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19, 102동 703호	이종숙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34, 206 2001호	최규섭	15.209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4-18 한양연립 가동103호	홍종선	7.6045 /111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05 (31) 우림퓨전빌아파트 102동 906호	홍수경	16.204 /11116				
					서울 서초구 명달로6길 24, 101동 901호	홍성주	15.49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7동402호	허성용	15.209 /11116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15-4	유상복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아파트 103동107호	최병찬	14.499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8 목동건영아파트 101동407호	전진국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한강아파트 5동1003호	신현길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63-34 잠원한신로얄아파트 1동1112호	이정규	13.077 /11116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4-12	전병모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9-2 현대아파트 23동205호	이원표	15.209 /11116	권용희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155 삼성아파트 101-405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인천지점)	가압류	
					인천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8동1201호	김광수	17.48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강주	16.489 /11116	주식회사 국민은행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0번길 23, (여신관리센터)	가압류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16-1블록 사랑마을 1611동201호	윤공섭	12.793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양천구 목동 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21동902호	유찬욱	15.636 /111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3-8	안성우	13.077 /11116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70 안곡빌라 202호	박석규	15.209 /11116				
					서울 종로구 필운동 176-2	박정옥	15.209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97-4 서울가든빌라 3동206호	박용하	15.636 /11116				
					서울 강서구 강서로36길 13	이현경	15.209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 한양아파트 701동106호	김주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10동401호	김용달	15.636 /11116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1-1블럭 동신아파트 101동506호	신석균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405 목동대림아파트 1011동1207호	김시연	13.362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42-33 현대의보아파트 804호	김성환	15.636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 주공아파트 509동1402호	유병일	15.209 /11116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2 한전빌라 에이동202호	김명욱	17.484 /11116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712 청구강변아파트 101동1706호	김동우	14.214 /11116				
					서울양천구목동928목동건영아파트104동504호	권신	17.484/11116				
					경기 고양시 주엽동 12 문촌마을 1708동601호	강현구	13.362 /1111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4003호	안병춘	17.484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동803호	임일호	15.209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8-49	차명석	12.793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무1과	압류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효령로53길 18, 311호	박제길	12.793 /111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1부)	가압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9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서초남부지사)	압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무2과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서초남부지사)	압류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아파트 12동906호	윤석원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방배삼호아파트 가동409호	이철재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76	나상엽	15.920 /11116				
					충남 천안시 업성동 465-4	장국현	7.96 /11116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11-3	김선익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6동1407호	김창준	15.920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 11블럭 목련타운아파트 109동1208호	정대봉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8, 102동 701호	안광진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14 302호	정경영	15.920 /11116	국	이천세무서 재산세과	압류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7동1304호	김홍기	14.783 /111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0-13	김철영	15.920 /11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2과	압류	
								조영숙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7 삼익아파트7동 303호	가압류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41-13	장광술	18.194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7동1506호	백광제	18.194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9동610호	유재헌	16.062 /11116				
					충북 청주시 사창동357-54	이문상	12.793 /11116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135 금화시민아파트 15동지층1호	손미화	17.747830 /1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1과	압류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9-14	강경선	9.097 /11116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420-5 강북화성파크드림 102-1306	구소원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30동302호	김상정	12.793 /11116	국	양천세무서 징세과	압류	
								국	안양세무서	압류	
								과천시	세무과	압류	
								국	역삼세무서	압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5가길 21	곽창순	12.793 /11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198, 204-608 (창신동,쌍용아파트)	김하영	18.194 /11116	국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압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2과	압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무1과세외	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동대문지점)	근저당권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6-2	심기백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광명동 중앙하이츠아파트 104동1306호	김금라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3동1506호	엄용수	14.35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4 개포4차현대아파트 1310호	김태환	18.194 /11116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62	이계군	16.346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8 춘원빌라 2층203호	김한준	14.356 /11116				
					경기 안산시 본오동 1126-5	윤하병	17.199 /11116	주식회사동인엔지니어링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22-1	근저당권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30동702호	송호범	17.199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4동1403호	조희선	18.194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1동102호	원용운	12.793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2동1305호	박종운	16.63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108동1302호	조영대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5동1002호	한석희	16.204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5동803호	김영희	16.346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7 꿈마을아파트 307동1502호	정해인	18.194 /111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7동602호	이성우	13.645 /11116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5 현대아파트 111동703호	양채섭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1303호	한욱동	18.194 /11116				
					경기 의왕시 내손동 700-1	신대식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7-6	신정구	17.199 /11116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5동 203호	이오주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7-4	박의언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59 삼성아파트 1동113호	권식	18.194 /1111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47	이효찬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83 남서울아파트 2동108호	김진홍	12.793 /11116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압류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양지사		압류	
								한마음금융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서울 노원구 중계동 6-1블럭 신안아파트 102동304호	이미향	18.194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인천 북구 십정동 302-36	전찬석	15.920 /11116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8-5	서주열	15.493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6-42	조국형	12.793 /11116	신용보증 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강남지점	가압류	
					서울 양천구 목동9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31동602호	이우진	18.194 /11116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55 우성아파트 102동507호	홍성용	18.194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93-12	서공열	15.493 /11116				
					서울 종로구 창신동 703 쌍용아파트 204동508호	최성우	13.930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3-48	김철민	16.346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무1과	압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16동1302호	정희옥	16.062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2 현대맨션빌리지 305	이수환	19.545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100	유해무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5-14	유옥분	14.356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4 (본동)	이용수	5870.697 /1000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0 신반포16차아파트 120동614호	송재빈	12.793 /11116	국	강남세무서	압류	
								국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	압류	
					서울 마포구 성산동 81-123 성완그린빌라 비동302호	문남주	15.920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무1과	압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672 궁골주택 에이동101호	박봉규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동1202호	박윤석	12.793 /11116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 사랑마을 1621-701호	김인숙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5-25	유철호	15.209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43 안성공도우림루미아트 104-403	김보섭	18.194 /11116	민병학	평택시 동삭동 650 평택이안아파트 103-204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01-404	최필자	12.793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4 가락우창아파트 3-701	최재형	12.793 /11116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1-3 극동아파트 3-802	이미자	14.301 /11116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 239-3	안신호	12.793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2-13 현대빌라 202호	김정현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숀 203-706	송선희	15.920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1 한양아파트 703-302	형진철	12.793 /11116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0-21	이의용	14.301 /11116	국	처분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압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5-601	백종훈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1202	박선홍	95.3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1-10 방배동광빌라트 102호	강태환	12.793 /11116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5-14 을지아파트 625-1601	민원	12.793 /11116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6-1 삼풍아파트 501	심혜욱	17.199 /11116				
					경남 창원시 반림동3-1 현대아파트 102-1005	박송희	16.062 /11116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강남지점내강남지역관리센터)	가처분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 주공아파트 509-101	이호	14.301 /11116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65-2	최원식	15.731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목화아파트 1-912	이태옥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주공아파트 307-1707	이혜선	14.301 /11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55, 906동 603호	안혜영	10.011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6 동부해오름아파트 101-503	김진영	12.793 /11116				
					대전 서구 둔산동 1203 은하수아파트 101-1202	김준희	7.8462 /11116				
					대전 서구 둔산동 1203 은하수아파트 101-1202	노희선	5.2308 /1111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1207동 202호	조용석	1544.438 /66696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28 타워아파트 601호	배용옥	1467.68 /6669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5-28	이진아	13.109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25-1603	윤길례	14.301 /1111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80 디자인시티불루밍 105-801	박경자	18.194 /1111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9-4 대청아파트-505	이중섭	14.301 /111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40, 405-1804 (신갈동,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박은주	16.346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93-1 비02	전상훈	12.793 /11116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46, 104동201호 (신음동,현대아파트)	김정희	15.209 /11116				
					캐나다국 밴쿠버 주써리시 15657-108에비뉴	최봉현	7.96 /111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76, 906동606호 (풍덕천동,용인수지신정마을 9단지)	김나영	18.194 /111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180번길 11 (복대동)	조경배	14.301 /11116				
					강원도 춘천시 새롬공원길4번길 35 (석사동)	홍성호	7.1505 /1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7길 105, 402호(반포동)	강은향	7.6045 /1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65, 401호 (홍은동,서강주상복합아파트)	정한결	15.209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21동1102호 (오금동,현대아파트)	송연수	318.08 /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21동1102호 (오금동,현대아파트)	박윤수	212.06 /111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66, 207동401호 (동빙고동,용산푸르지오파크타운)	이은미	5755.56 /100044				
					미합중국 96822 하와이주 호놀룰루 마키키스트리트 1517번지401호	이은경	5755.56 /100044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11, 205동801호 (토평동,한일아파트)	김용화	19.545 /111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0동1902호 (신봉동, 신봉마을엘지빌리지5차아파트)	백용옥	785.47 /3334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37, 2동1209호 (반포동,경남아파트)	김현미	18.336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15길 24, 605동1404호 (봉천동,봉천벽산블루밍3차아파트)	김두수	16.684 /1111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693번길 32	이건상	13.077 /111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47, 102동1302호 (화곡동,그랜드아이파크)	백종현	19.545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305동210호 (사당동,사당우성아파트)	홍정우	16.630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3길 64 (신림동)	신백련	17.199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2동1308호 (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최용석	6.8225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5동1502호 (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최단비	6.8225 /11116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72, 205동204호 (호원동,호원가든2차아파트)	유승희	14.301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5동801호 (신림동,신림현대아파트)	황규찬	19.545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라길 48, 401호 (정릉동)	강원철	12.793 /111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63, 107동502호 (성수동1가,쌍용아파트)	남윤경	15.209 /111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8길 36-8 (구로동)	조하연	12.935 /11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16길 21,401호 (논현동,성지하우스)	송주호	14.925 /11116				
16	동작동 산18-5	임야	8,278	8,24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비동 3604호 (잠실동,갤러리아팰리스)	민정자	40109.72 /244552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1-16 약수맨션 씨동 604호	민승구	14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져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희숙	2000 /244552				
					3670 이스트이져트인 라스베가스 네바다 89121	민명숙	2000 /244552				
					1744 이스트4가 비온타리오 캘리포니아 91764	민승준	8000 /244552				
					541 웨스트로쿠스트리트 온타리오 켈리포니아 91761	민승만	8000 /244552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강호선	24000 /19564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519-21	민요한	24000 /1956416				
					서울 강북구 수유동 519-21	민미숙	16000 /1956416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43, 347동 303호	황승현	15.731 /11116				
					서울 도봉구 창동 341 동진빌리지 102-301	홍종수	4.767 /11116				
					경기 과천시 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4-104	홍성모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의도	14.778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4 은하수아파트 105-1401	허남근	16.684 /11116				
					경기 안산시 월피동 447 한양아파트 10-1210	허정	14.301 /11116				
					서울 도봉구 수유동 205 수유벽산아파트 10-1406	한상봉	16.684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이매촌 1007-1502	한기수	19.545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1108	한규언	19.545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376-10	최춘호	15.731 /11116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90-4.5 골드-401	최영추	14.301 /11116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 인화안길 15	최관호	14.301 /1111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3길 9, 나동 202호	진성원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799 반포아파트 68-202	조화영	14.301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39, 101동 1701호	조문연	14.778 /11116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2 한성아파트 205-1501	조규봉	19.545 /11116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206	조권상	15.254 /11116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17-105	정형재	19.545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55, 102동 901호	정태홍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7-207	정일웅	19.545 /11116				
					경기도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09동 2504호	정철	15.254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74 삼익아파트 3-810	전철원	14.301 /11116				
					전남 화수군 화순읍 광덕리 8-6	임호환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41-149	임재식	14.301 /11116				
					대구 달서구 월성동 84 주공아파트 102동 209호	이한방	9.534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61-25	이청규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 10, 3동 603호	이정태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9-7	이재석	14.301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11-1003	이을범	19.545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111-302	이은석	14.301 /11116				
					경기 안양시 호계동 1055 무궁화아파트 109-1705	이용재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5-59	이선호	14.301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상용	17.161 /11116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0-1	이상섭	19.545 /11116				
					경기 과천시 별양동 7 주공아파트 410-804	이상선	11.917 /11116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61-13	이덕호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길동 152-7	이기남	19.545 /11116				
					춘천시 후평동 481 주공아파트 507-209	이광우	14.301 /11116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8, 117동 403호	윤태종	16.684 /11116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 동남아파트 4-414	윤병연	13.109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5-19 은성빌라 나-202	유재화	14.301 /11116				
					강릉시 저동 246-1	유재원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도시개발아파트 305-402	유강근	16.684 /11116				
					서울 광진구 뚝섬로56가길 10, 301동 902호	안재규	14.301 /11116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4 현대아파트 14동 1310	심재순	14.301 /11116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 주공아파트 103-302	신대호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1-605	송철재	13.109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58번길 8, 101동 308호	손경종	16.684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20-18	손백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34-23 영광빌라 나-102	변종억	16.684 /11116				
					안산시 성포동 584 주공아파트 1003-1201	배윤태	14.301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8번길 29	방동한	10.011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택지개발지구15블럭 한솔마을아파트 303-501	박해성	14.301 /11116				
					안산시 월피동 448 현대아파트 203-1003	박종훈	19.545 /11116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2가 8-7	박일수	19.545 /11116				
					안산시 본오동 872-20 우성아파트 2-109	박영목	16.684 /11116				
					원주시 단계동 793 단계아파트 11-501	박승균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601-601	박세훈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740-6 현대아파트 101-1203	민윤식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7-5 초원아파트 609-1002	문영목	7.627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4 백운아파트 505	나상열	14.301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아파트 201-803	노화래	15.25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7-27, 105동 701호	노석환	14.301 /11116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6블럭 도시개발아파트 606-505	김효철	14.301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9-6101호	김효분	15.969 /1111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9안길 21, 401호	김형수	19.545 /11116				
					의왕시 내손동 691-19 효성빌라 나동 202호	김현태	14.301 /11116				
					광주 광산구 월곡동 538-1 일신아파트 105-808	김하경	14.301 /11116				
					광주 북구 운암동 363 삼호아파트 1-603	김판중	14.301 /11116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501동 1206호	김태선	19.545 /11116				
					과천시 별양동 24-6	김진혁	15.254 /11116				
					안산시 고잔동 672 주공아파트 910-503	김진식	14.301 /111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390, 103동 1304호	김주인	14.301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1-442	김주원	14.301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5-22	김종만	15.731 /11116				
					전북 이리시 동산동 158-15 삼호아파트 3-1105	김정수	14.301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2-309	김인홍	19.545 /11116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5-1	김원식	17.62807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284-51	김영철	19.545 /11116				
					광주 서구 화정동 859-1 현대아파트 101-807	김영선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중계동 3블럭 주공아파트 515-707	김수웅	19.545 /11116				
					광주 서구 진월동 344 협진훼밀리 101-1304	김성열	19.545 /11116				
					안산시 성포동 585-4 신우연립 8-106	김상필	14.301 /11116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0 주공아파트 604-1301	김상택	19.545 /1111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3 목련아파트 903동 1203호	김봉석	14.301 /11116				
					대전 동구 용전동 1 신동아아파트 12동202호	김병희	16.684 /11116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149 해성아파트 나-508	김광식	14.301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4번길 6, 106동 302호	권훈일	16.684 /11116				
					청주시 가경동 847	권영덕	16.684 /1111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6 제일아파트 1-106	구익서	14.301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64-33	곽창호	14.301 /11116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96, 502동 1102호	고용규	14.301 /11116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45, 103동 105호	고선봉	14.301 /111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4-14 원형빌라 101호	강환실	14.301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460-30	이공진	12.793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09 반포아파트 6동503호	이영완	15.209 /111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95, 119동 104호	문정일	12.935 /11116				
					경북 안동시 태화동 666-27	김창수	12.793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87, 508동 1604호	문정수	15.636 /11116				
					서울 은평구 불광동 382-15	이형주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24동 47호	조남욱	15.209 /11116	파산자주식회사해동신용금고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강남보상서비스지원단)	가압류	
					서울 은평구 불광동 312-122	성수현	16.7761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78	윤공보	17.484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1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29동 506호	정인심	13.077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4-21	홍순봉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1 신동아아파트 3동 102호	남현숙	12.793 /11116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66-17	최영호	12.793 /11116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63 강남아파트 2동 1108호	이상갑	12.793 /11116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로 58, 102동 1601호	정기화	12.793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5-46	박송문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상도동 331-27	오세경	12.793 /11116				
					경기 고양시 마두동 739 백마마을 205동 1204호	박상용	12.793 /11116				
					대구 남구 대명동 1253-12	정효련	12.793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양천구 목동 751-4 성보연립 에이동 201호	이종선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21 문래현대아파트 102동 201호	이대권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3동 1407호	박인규	14.214 /11116				
					서울 양천구 신목로6길 6	박병선	17.484 /11116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72, 102동 2203호	최은	15.209 /11116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 은행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3-1	가압류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 (서울지점)	가압류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부)	가압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2 현대도곡아파트 2동 1505호	양윤식	15.209 /11116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28 현대파크 지층 2호	김순기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1 개포6차우성아파트 3동 503호	이춘재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5 한양아파트 1동 107호	이경희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300-8	장비심	13.077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587-24	이홍순	13.077 /11116				
					서울 마포구 도화동 83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6동1103호	김선옥	16.062 /111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774-29	신지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5 우성7차아파트 115동303호	김종명	17.48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19, 102동 703호	이종숙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34, 206 2001호	최규섭	15.209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04-18 한양연립 가동103호	홍종선	7.6045 /111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205 (31) 우림퓨전빌아파트 102동 906호	홍수경	16.204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서초구 명달로6길 24, 101동 901호	홍성주	15.494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7동402호	허성용	15.209 /11116				
					서울 양천구 신월동 1015-4	유상복	15.209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189 현대아파트 103동107호	최병찬	14.499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8 목동 건영아파트 101동407호	전진국	15.636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한강아파트 5동1003호	신현길	15.209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63-34 잠원한신로얄아파트 1동1112호	이정규	13.077 /11116				
					서울 강동구 천호동 144-12	전병모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89-2 현대아파트 23동205호	이원표	15.209 /11116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인천지점)	가압류	
					인천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8동1201호	김광수	17.484 /111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101동 3704호	이강주	16.489 /11116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기업여신관리센터)	가압류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16-1 블록사랑마을 1611동 201호	윤공섭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21동 902호	유찬욱	15.636 /111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3-8	안성우	13.077 /11116				
					서울 강서구 화곡동 56-70 안곡빌라 202호	박석규	15.209 /11116				
					서울 종로구 필운동 176-2	박정옥	15.209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97-4 서울가든빌라 3동 206호	박용하	15.636 /11116				
					서울 강서구 강서로36길 13	이현경	15.209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 한양아파트 701동 106호	김주문	15.636 /11116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 10동 401호	김용달	15.636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지구 1-1블럭 동신아파트 101동 506호	신석균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405 목동대림아파트 1011동 1207호	김시연	13.362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42-33 현대의보아파트 804호	김성환	15.636 /11116				
					서울 송파구 잠실5동 27 주공아파트 509동 1402호	유병일	15.209 /11116				
					서울 노원구 월계동 447-2 한전빌라 에이동 202호	김명욱	17.484 /11116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712 청구강변아파트 101동 1706호	김동우	14.214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28 목동건영아파트 104동 504호	권신	17.484 /11116				
					경기 고양시 주엽동 12 문촌마을 1708동 601호	강현구	13.362 /11116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3동 4003호	안병춘	17.484 /111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1 우성아파트 105동 803호	임일호	15.209 /11116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8-49	차명석	12.793 /11116	희망모아유동화 전문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서울 서초구 효령로53길 18, 311호	박제길	12.793 /111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지원1부)	가압류	
								주식회사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9	가압류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아파트 12동 906호	윤석원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방배삼호아파트 가동 409호	이철재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76	나상엽	15.920 /11116				
					충남 천안시 업성동 465-4	장국현	15.920 /11116				
					경남 울산시 남구 무거동 1211-3	김선익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6동 1407호	김창준	15.920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강남구 일원동 수서지구 11블럭 목련타운아파트 109동 1208호	정대봉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9나길 8, 102동 701호	안광진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3-14302호	정경영	15.920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7동 1304호	김홍기	14.783 /111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0-13	김철영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41-13	장광술	18.194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7동 1506호	백광제	18.194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 경남아파트 9동 610호	유재헌	16.062 /11116				
					충북 청주시 사창동 357-54	이문상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5 개포4차 우성아파트 2동 405호	전옥실	18.194 /11116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135 금화시민아파트 15동 지층1호	손미화	17.747830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9-14	강경선	9.097 /11116				
					서울 서초구 반포동 82-19 양지연립 에이동 201호	백승진	12.793 /11116				
					대구 광역시 북구 태전동 420-5 강북 화성파크드림 102-1306	구소원	12.793 /11116				
					서울 양천구 목동 902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30동302호	김상정	12.793 /11116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5가길 21	곽창순	12.793 /11116				
					경기 여주군 산북면 후리 239-3	손상태	12.793 /1111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198, 204-608 (창신동,쌍용아파트)	김하영	18.194 /11116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동대문지점)	근저당권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6-2	심기백	15.920 /11116				
					경기 광명시 광명동 중앙하이츠아파트 104동 1306호	김금라	15.920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518 우성아파트 203동 1506호	엄용수	14.356 /11116				
					서울 강남구 일원동 614 개포4차현대아파트 1310호	김태환	18.194 /11116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1 극동아파트 3동 1405호	조명선	18.336 /11116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5 (송파지점)	가압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가압류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1-62	이계군	16.346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3-8 춘원빌라 2층 203호	김한준	14.356 /11116				
					경기 안산시 본오동 1126-5	윤하병	17.199 /11116	주식회사 동인 엔지니어링	경기도광명시하안동322-1	근저당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 우성아파트 230동 702호	송호범	17.199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4동 1403호	조희선	18.194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1동 102호	원용운	12.793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2동 1305호	박종운	16.630 /11116				
					경기 광명시 철산동 58 우성아파트 108동 1302호	조영대	12.793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0-7 우성아파트 405동 1002호	한석희	16.204 /11116				
					경기 과천시 부림동 41 주공아파트 805동 803호	김영희	16.346 /111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7 꿈마을아파트 307동 1502호	정해인	18.194 /11116				
					서울 송파구 가락동 192 극동아파트 7동 602호	이성우	13.645 /11116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5 현대아파트 111동 703호	양채섭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0 관악현대아파트 112동1303호	한욱동	18.194 /11116				
					경기 의왕시 내손동 700-1	신대식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457-6	신정구	17.199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5동 203호	이오주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석촌동 7-4	박의언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59 삼성아파트 1동113호	권식	18.194 /11116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6-247	이효찬	15.920 /1111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83 남서울아파트 2동108호	김진홍	12.793 /11116	국민연금 관리공단 고양지사		압류	
					서울 노원구 중계동 6-1 블록신안아파트 102동304호	이미향	18.194 /11116				
					인천 북구 십정동 302-36	전찬석	15.920 /11116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8-5	서주열	15.493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6-42	조국형	12.793 /11116	신용보증 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강남지점	가압류	
					서울 양천구 목동 927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31동602호	이우진	18.194 /11116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55 우성아파트 102동507호	홍성용	18.194 /11116				
					서울 동작구 사당동 193-12	서공열	15.493 /11116				
					서울 종로구 창신동 703 쌍용아파트 204동508호	최성우	13.930 /111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73-48	김철민	16.346 /11116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아파트 16동1302호	정희옥	16.062 /111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61 (19/4) 동남아파트 2동 308호	노준래	13.077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2 현대맨션빌리지 305	이수환	19.545 /11116				
					서울 구로구 오류동 31-100	유해무	15.920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865-14	유옥분	14.356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4(본동)	이용수	5825.097 /100044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0 신반포16차아파트 120동614호	송재빈	12.793 /11116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마포구 성산동 81-123 성완그린빌라 비동 302호	문남주	15.920 /11116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672 궁골주택 에이동101호	박봉규	12.793 /11116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77, 1207동 202호	조용석	1514.738 /6669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동1202호	박윤석	12.793 /11116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7 사랑마을 1621-701호	김인숙	12.793 /111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5-25	유철호	15.209 /1111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43 안성공도우림루미아트 104-403	김보섭	18.194 /11116	민병학	평택시 동삭동 650 평택이안아파트 103-204	근저당권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산 37-4 현대아파트 301-404	최필자	12.793 /111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164 가락우창아파트 3-701	최재형	12.793 /11116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1-3 극동아파트 3-802	이미자	14.301 /11116				
					서울 구로구 구로동 252-13 현대빌라 202호	김정현	15.920 /11116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숀 203-706	송선희	15.920 /11116				
					서울 도봉구 쌍문동 158-1 한양아파트 703-302	형진철	12.793 /11116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0-21	이의용	14.301 /11116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대현대아파트 106-1202	박선홍	132.9 /111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1-10 방배 동광빌라트 102호	강태환	12.793 /11116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5-14 을지아파트 625-1601	민원	12.793 /11116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46-1 삼풍아파트 501	심혜욱	17.199 /11116				
					경남 창원시 반림동 3-1 현대아파트 102-1005	박송희	16.062 /11116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17-7 (강남지점내강남지역관리센터)	가처분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 주공아파트 509-101	이호	14.301 /11116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1065-2	최원식	15.731 /111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 목화아파트 1-912	이태옥	15.920 /111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삼성산 주공아파트 307-1707	이혜선	14.301 /11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55, 906동 603호	안혜영	10.011 /1111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6 동부해오름아파트 101-503	김진영	12.793 /11116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28 타워아파트 601호	배용옥	1437.98 /6669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5-28	이진아	13.109 /111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4 파크타운 125-1603	윤길례	14.301 /1111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880 디자인시티불루밍 105-801	박경자	18.194 /1111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59-4 대청아파트-505	이중섭	14.301 /1111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 40, 405-1804 (신갈동,녹원마을새천년그린빌)	박은주	16.346 /11116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46, 104동201호 (신음동,현대아파트)	김정희	15.209 /1111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80번길 11(복대동)	조경배	14.301 /111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7길 105, 402호(반포동)	강은향	7.6045 /111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65, 401호 (홍은동,서강주상복합아파트)	정한결	15.209 /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17, 21동1102호 (오금동,현대아파트)	송연수	265.88 /11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21동1102호 (오금동,현대아파트)	박윤수	177.26 /111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66, 207동401호 (동빙고동,용산푸르지오파크타운)	이은미	5709.96 /100044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미합중국 96822 하와이주 호놀룰루 마키키스트리트 1517번지 401호	이은경	5709.96 /100044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111번길 11, 205동801호 (토평동,한일아파트)	김용화	19.545 /111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12-2, 510동1902호 (신봉동,신봉마을엘지빌리지 5차아파트)	백용옥	785.47 /33348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15길 24, 605동 1404호 (봉천동,봉천벽산블루밍 3차아파트)	강현자	16.684 /11116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93번길 32	이건상	13.077 /111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347, 102동1302호 (화곡동,그랜드아이파크)	백종현	19.545 /11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5, 305동210호 (사당동,사당우성아파트)	홍정우	16.630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3길 64 (신림동)	신백련	17.199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2동1308호 (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최용석	6.8225 /1111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 5동1502호 (신당동,남산타운아파트)	최단비	6.8225 /11116				
					경기도 의정부시 호동로 72, 205동204호 (호원동,호원가든2차아파트)	유승희	14.301 /11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9길 8, 105동801호 (신림동,신림현대아파트)	황규찬	19.545 /111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라길 48, 401호 (정릉동)	강원철	12.793 /11116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63, 107동502호 (성수동1가,쌍용아파트)	남윤경	15.209 /111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8길 36-8(구로동)	조하연	12.935 /11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6길 21, 401호 (논현동,성지하우스)	송주호	14.925 /11116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사당동 산31-1	분묘	-	1			미상				
2	사당동 산31-2	분묘	-	1			미상				
		감나무	R20	1							
		반송	H1.0~1.5	3							
		병아리 꽃나무	H1.5	2							
		복사나무	H2.0~2.5	3							
		뽕나무	H2.0~3.0	2							
		주목	H1.0~2.0	7							
3	사당동 산22-1	천막 구조물	5*8*8m	1		서울 동작구 양녕로25마길 35, 403호	윤지영				
4	동작동 산18-1	분묘	-	4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72 LIG아파트 103동 1502호	이정재				
		분묘	-	10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5-6 명훈빌딩 401호	김소동				
		분묘	-	2							
5	동작동 산18-5	분묘	-	3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270-64 개미연립 B동 101호	박정재				
		분묘	-	1			미상				
		컨테이너	3*3*4m	1		경기도 여주시 소지개길 33-56	양병천				
		컨테이너	3*4*8m	1							
		판넬휀스	2.5*27m	1							
		판넬휀스	5.0*30m	1							
		대문	2.5*5.0m	1							

◈ 관악구공고 제2019-67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8-56호(2018.3.2.)」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3)」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의견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남현동 512-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3)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4) 면 적 : 24,491㎡

다.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라.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사.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6)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3)

구 분	소재지	지 목	면 적(㎡)		현 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 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2필지		57,399	24,491								
1	남현동 512-6	전	85	85	전	송O식	1/5	서울 관악구 관악로 ***				
						송O식	1/5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길				
						송O식	1/5	서울 은평구 수색로 ***				
						유O숙	1/5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				
2	남현동 512-7	전	761	761		남O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길				
3	남현동 산57-50	임	1,155	1,155	임	최O창	단독지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				
4	남현동 산66-10	임	32,813	1,250	임	이O철	65295.42/98439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서잠실지점)	가압류	
						최O현	165.29/3281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이O연	32647.71/98439	서울 성동구 매봉길 **				
5	남현동 산57-43	임	1,652	1,652	임	최O현	단독지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구 분	소재지	지 목	면 적(㎡)		현 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 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	남현동 산57-42	임	1,652	1,652	임	최O현	단독지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7	남현동 512-2	잡	2,197	2,197	잡	송O식	1/5	서울 관악구 관악로 ***				
						송O식	1/5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길				
						송O식	1/5	서울 은평구 수색로 ***				
						유O숙	1/5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				
						남O	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길				
					무허가 1동	전O석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길				
					무허가 1동	김O		서울 관악구 남현동 ***				
					무허가 1동	구O우		서울 관악구 남현동 ***				
					무허가 1동	최O자		서울 관악구 남현동 ***				
					무허가 1동							
8	남현동 산57-12	임	3,306	3,306	임	최O창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최O웅	1/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최O영	1/3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무허가 5동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 2019. 5. 16.(목)

구 분	소재지	지 목	면 적(㎡)		현 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지 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남현동 산57-41	임	3,307	3,307	임	최O현	단독지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10	남현동 산57-34	임	3,980	3,980	임	김O건	단독지분	서울 강남구 광평로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2	근저당권, 지상권	
11	남현동 산57-13	임	5,937	4,592	임	장O란	2731.02/5937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20 (과천지점)	근저당권	
						편O근	2731.02/5937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				
						김O준	94.992/5937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				
						김O준	94.992/5937	서울 중구 다산로 ***				
						김O탁	94.992/5937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				
						김기O	94.992/5937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우드 ***				
						김지O	94.992/5937	대구 수성구 고산로 ***				
12	남현동 602-95	대	554	554	대	최O현	단독지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서울시보 제3520호
서울특별시
2019. 5. 16.(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3)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기존무허가 관리대장)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현동 512-2	건물	세멘조	56.19	전O석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				11620-등재-1312
		기타 지장물 일체								
2	남현동 512-2	건물	세멘조	39.66	김O	서울 관악구 남현동 ***				11620-등재-1311
		기타 지장물 일체								
3	남현동 512-2	건물	세멘조	56.19	구O우	서울 관악구 남현동 ***				11620-등재-1301
		기타 지장물 일체								
4	남현동 512-2	건물	세멘조	33.05	최O자	서울 관악구 남현동 ***				11620-등재-1299
		기타 지장물 일체								

◈ 서초구공고 제2019-7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말죽거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5-216호(2005.7.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5-2번지 일대의 말죽거리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19-419호(2019.3.14.)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변경)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5-2 등 1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다. 사업의 면적
  1) 변경전 : 21,466.2㎡
  2) 변경후 : 21,795.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2155-6870)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말죽거리근린공원조성)사업

- 변경전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46,325	21,466.2						
1	양재동 45-2	대지	637	58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양재동 45-3	대지	127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3	양재동 45-4	대지	278	2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4	양재동 45-5	대지	651	6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5	양재동 45-6	대지	631	6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6	양재동 산20-2	임야	9,706	9,36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27,7동 ***호 (이태원동, 청화아파트)	김미*	131/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481, 현대아파트94-***	류자*	496/21431	오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22, 에이동 ***호	채무자
								류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33 101동 ***호	채무자
								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22, 에이동 ***호	채무자
								류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156 1동 ****호	채무자
								국	강남세무서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8 건영아파트 102-***	황정*	661/2143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0-12 동도센트리움아파트***호	성말*	496/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5-5 ***호	박수*	111/21431			
					경기도 시흥시 죽율고36, 208동****호 (시흥6차푸르지오2단지)	김연*	661/2143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 주공아파트1005-***	이진*	661/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8 문촌마을602-****	박정*	331/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0 우인아크리움빌 ****호	김학*	199/214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1 홍제현대아파트107-****	류종*	231/214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1 홍제현대아파트107-****	김미*	231/214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10 주공아파트110동***호	이자*	275.5/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5-*	이지*	275.5/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26 삼성리버스위트 104동 ***호	이희*	331/214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426 삼성리버스위트104-***	신봉*	1065/214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30 엘지한강자이아파트104-***	김용*	489/214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	장근*	430/21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7-11 *층	김창*	331/21431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55 서산읍내현대아파트 106-***	김영*	331/21431			
					캐나다 비씨주 밴쿠버시 호머스트리트 1204-**** (캐나다국인)	한승*	331/214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2*	서영*	99/214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3-10 봉황연립***호	김대*	99/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53*	이수*	132/2143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49-4*	오선*	132/2143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68-*	김환*	66/21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91 당산푸르지오아파트 108-****	한은*	33/214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 로얄맨션3차 7-***	이영*	66/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 논현아파트 106-***	조연*	198/21431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08-1 삼부아파트 51-***	이생*	66/214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5-**	고병*	69/2143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37-**	서영*	661.5/214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1**	정충*	66/2143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702-****	김규*	33/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22-***	최미*	99/2143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7-**	이종*	66/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210 2층 ***호	홍현*	66/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82 *층	이인*	99/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77-7 다성리치빌 ***호	이승*	331/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0-3 백설마을진로아파트 524-****	신일*	132/21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2-8 우성아파트 402-***	김남*	281/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1-23 세종빌라트***	이지*	330/21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81 푸르지오1차아파트 116-****	우선*	165/21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 푸르지오1차아파트 102-***	서정*	231/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0-***	배춘*	264/214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6-**	이지*	116/21431	이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434-**	채무자
								양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18-6 크로크캐슬아파트 ***호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남대문지점)	채권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94 두산동국아파트105-***	김미*	215/214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63 동촌생활관2-***	김재*	116/214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30-*	전유*	199/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816 창신이수아파트 101-****	이연*	231/214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04 서울숲아이파크 105-***	이경*	199/21431	이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04 서울숲아이파크105-***	채무자
								이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254-1 정우빌라 나-***	근저당권자
								성동세무서		권리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37-**	장재*	330.5/21431			
					경북포항시 북구 덕수동 47-**	이경*	99/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39 효성하이타운101-***	이승*	132/2143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90 케이씨씨아파트 101-****	이서*	132/21431			
					대구 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1길**	강무*	198/2143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5-7 우성아파트 102-***	안종*	100/2143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40-1 신동아아파트 107-***	이순*	132/2143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 1블럭 2롯트 당차2차 풍림아이원아파트 102-***	김근*	100/214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1-*	이정*	33/21431			
					인천광역시 계약구 효성동 101-5 백영아파트102-****	추혜*	33/2143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182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층 현대해상	황선*	33/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80 주공아파트404-****	이선*	33/214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09-2 목동2차성원아파트102-****	박경*	33/214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9 진흥아파트101-***	이재*	33/214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54 진로아파트714-***	최보*	116/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23-***	김기*	50/21431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862 대암아파트 이-***	이영*	66/21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 영등포푸르지오 205-***	윤옥*	33/21431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90번길 90-**	이희*	33/214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2-***	이여*	99/2143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102-***	이숙*	66/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8-11 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5, ***호(두산위브)	김희*	265/2143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50-*	진수*	165/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6-1 가락우성아파트1-***	채정*	33/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3-83 정우빌라 ***호	이개*	33/21431			
					경기도 군포시 당동 846-3 대흥빌라 비-***	박선*	33/2143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7-32 4층 ***호	이귀*	33/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5-**	이순*	33/21431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25-1 청천마을대웅파트104-***	김형*	33/21431			
					경기도 군포시 당동 855-8 ***호	정미*	33/21431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101 현대아파트105-***	김의*	66/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90 가좌마을 104-***	강태*	100/2143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78 ***호	임복*	33/214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79-3 동양월드타워아파트 ****호	이금*	33/214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월드타운대림아파트106-***	강신*	66/214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	고민*	33/2143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2-16 미주아파트***호	박노*	50/2143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2-16 미주아파트***호	천미*	50/2143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89-11 3층 ***호	유인*	36/21431			
					충청북도 음성군 밍동면 두성리4**	곽유*	33/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0-**	원유*	33/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9-*	고완*	166/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3-2 진흥아파트2-***	정연*	33/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0-3 백설마을진로아파트 524-****	이선*	33/21431			
					충청남도 천안시 구성동 259 신성천안미소지움아파트111-***	문경*	33/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2-*	오상*	33/2143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독지리 산***	김형*	115.5/2143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	김대*	115.5/2143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899 푸르지오아파트110-****	이순*	199/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67 301동**** (휴먼시아 솜마을)	위혜*	1653/21431	주식회사 차병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65, ***호(천사의도시 오피스텔 1차)	채무자
								주식회사 **기술금융대부	서울서초구 사평대로34*	근저당권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74 114동 ****호 (양지마을)	윤수*	364/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22, 119-***	최영*	331/21431			
					캐나다 온타리오주 쏜힐시 베이뷰에비뉴7071번지 피에이치*호	이재*	991/214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64 에이동***호(구의아크로리버)	이해*	661/214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7 7동 ***호(청화아파트)	안혜*	100/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5 317동 ****(파크리오)	김도*	496/214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39,316동 ***호	안춘*	100/21431			
8	양재동 산46-1	임	1,716	1,2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3-15 강변@1동****호	정태*	393.68/17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49 다세대 1-***	장국*	330.58/1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 신동아@1-***	정영*	330.58/1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 신동아@1-***	정문*	330.58/1716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21-1 희영@101-***	정윤*	330.58/1716			
9	양재동 75-5	전	1,226	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960 도곡대림@ 101-****	김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16 101-****	진칠*	채권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2-5, ***호	진칠*	채권자			
10	양재동 산49-6	임	6,947	3,460.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960 도곡대림@ 101-****	김판*				
11	양재동 산47-1	임	2,727	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최영*	1/2			
					9**이스트 도브스 네스트 야베뉴 라하브라 가주90631 미합중국	정세*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61,503-****(광장동 현대아파트)	정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호(도곡동타워팰리스)	정혜*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36동 ****호(오금동, 현대아파트)	정내*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36동 ****호(오금동, 현대아파트)	정소*	1/16			
12	양재동 산47-2	임	248	2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5. 임광@3-***	공희*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33-*	공현*	1/2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 변경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46,325	21,795.5						
1	양재동 45-2	대지	637	58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2	양재동 45-3	대지	127	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3	양재동 45-4	대지	278	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4	양재동 45-5	대지	651	6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5	양재동 45-6	대지	631	6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6	양재동 산20-2	임야	9,706	9,689.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 (역삼동)	케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27,7동 ***호 (이태원동, 청화아파트)	김미*	131/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481, 현대아파트94-***	류자*	496/21431	오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22, 에이동 ***호	채무자
								류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33 101동 ***호	채무자
								류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0길 22, 에이동 ***호	채무자
								류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156 1동 ****호	채무자
								국	강남세무서	근저당권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8 건영아파트 102-***	황정*	661/2143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0-12 동도센트리움아파트***호	성말*	496/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5-5 ***호	박수*	111/21431			
					경기도 시흥시 죽율고36, 208동****호 (시흥6차푸르지오2단지)	김연*	661/2143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7 주공아파트1005-***	이진*	661/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8 문촌마을602-****	박정*	331/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30 우인아크리움빌 ****호	김학*	199/214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1 홍제현대아파트107-****	류종*	231/214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1 홍제현대아파트107-****	김미*	231/214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10 주공아파트110동***호	이자*	275.5/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5-*	이지*	275.5/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26 삼성리버스위트 104동 ***호	이희*	331/214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426 삼성리버스위트104-***	신봉*	1065/214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30 엘지한강자이아파트104-***	김용*	489/214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	장근*	430/2143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7-11 *층	김창*	331/21431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55 서산읍내현대아파트 106-***	김영*	331/21431			
					캐나다 비씨주 밴쿠버시 호머스트리트 1204-**** (캐나다국인)	한승*	331/214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2*	서영*	99/214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313-10 봉황연립***호	김대*	99/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53*	이수*	132/2143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49-4*	오선*	132/2143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68-*	김환*	66/21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91 당산푸르지오아파트 108-****	한은*	33/214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630 로얄맨션3차 7-***	이영*	66/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 논현아파트 106-***	조연*	198/21431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408-1 삼부아파트 51-***	이생*	66/214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5-**	고병*	69/2143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37-**	서영*	661.5/2143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1**	정충*	66/21431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702-****	김규*	33/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가락시영아파트 22-***	최미*	99/21431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67-**	이종*	66/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210 2층 ***호	홍현*	66/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82 *층	이인*	99/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77-7 다성리치빌 ***호	이승*	331/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0-3 백설마을진로아파트 524-****	신일*	132/21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2-8 우성아파트 402-***	김남*	281/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91-23 세종빌라트***	이지*	330/21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81 푸르지오1차아파트 116-****	우선*	165/21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 푸르지오1차아파트 102-***	서정*	231/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소유자 지분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0-***	배춘*	264/2143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6-**	이지*	116/21431	이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434-**	채무자
								양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18-6 크로크캐슬아파트 ***호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4-*(남대문지점)	채권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94 두산동국아파트105-***	김미*	215/214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701-63 동촌생활관2-***	김재*	116/214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30-*	전유*	199/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816 창신이수아파트 101-****	이연*	231/214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04 서울숲아이파크 105-***	이경*	199/21431	이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04 서울숲아이파크105-***	채무자
								이힘*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254-1 정우빌라 나-***	근저당권자
								성동세무서		권리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137-**	장재*	330.5/21431			
					경북포항시 북구 덕수동 47-**	이경*	99/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39 효성하이타운101-***	이승*	132/2143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690 케이씨씨아파트 101-****	이서*	132/21431			
					대구 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1길**	강무*	198/2143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15-7 우성아파트 102-***	안종*	100/21431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40-1 신동아아파트 107-***	이순*	132/2143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당하지구 1블럭 2롯트 당차2차 풍림아이원아파트 102-***	김근*	100/214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1-*	이정*	33/21431			
					인천광역시 계약구 효성동 101-5 백영아파트102-****	추혜*	33/2143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182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층 현대해상	황선*	33/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80 주공아파트404-****	이선*	33/214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09-2 목동2차성원아파트102-****	박경*	33/214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9 진흥아파트101-***	이재*	33/2143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54 진로아파트714-***	최보*	116/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23-***	김기*	50/21431			
					강원도 양구군 동면 임당리862 대암아파트 이-***	이영*	66/214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 영등포푸르지오 205-***	윤옥*	33/21431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90번길 90-**	이희*	33/2143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81 신동아아파트2-***	이여*	99/21431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196-2 옥천향수마을아파트102-***	이숙*	66/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38-11 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5, ***호(두산위브)	김희*	265/2143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50-*	진수*	165/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6-1 가락우성아파트1-***	채정*	33/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3-83 정우빌라 ***호	이개*	33/21431			
					경기도 군포시 당동 846-3 대흥빌라 비-***	박선*	33/21431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7-32 4층 ***호	이귀*	33/2143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5-**	이순*	33/21431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25-1 청천마을대웅파트104-***	김형*	33/21431			
					경기도 군포시 당동 855-8 ***호	정미*	33/21431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101 현대아파트105-***	김의*	66/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090 가좌마을 104-***	강태*	100/2143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91-78 ***호	임복*	33/2143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79-3 동양월드타워아파트 ****호	이금*	33/214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월드타운대림아파트106-***	강신*	66/2143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	고민*	33/2143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2-16 미주아파트***호	박노*	50/21431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2-16 미주아파트***호	천미*	50/2143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89-11 3층 ***호	유인*	36/21431			
					충청북도 음성군 밍동면 두성리4**	곽유*	33/214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0-**	원유*	33/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9-*	고완*	166/214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3-2 진흥아파트2-***	정연*	33/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80-3 백설마을진로아파트 524-****	이선*	33/21431			
					충청남도 천안시 구성동 259 신성천안미소지움아파트111-***	문경*	33/2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62-*	오상*	33/2143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독지리 산***	김형*	115.5/21431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	김대*	115.5/21431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899 푸르지오아파트110-****	이순*	199/21431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7	양재동 산46-2	임	21,431	3,567.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67 301동**** (휴먼시아 섬마을)	위혜*	1653/21431	주식회사 차병원***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65, ***호(천사의도시 오피스텔 1차)	채무자
								주식회사 **기술금융 대부	서울서초구 사평대로34*	근저당권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74 114동 ****호 (양지마을)	윤수*	364/214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길22, 119-***	최영*	331/21431			
					캐나다 온타리오주 쏜힐시 베이뷰에비뉴7071번지 피에이치*호	이재*	991/214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64 에이동***호(구의아크로리버)	이해*	661/2143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7 7동 ***호(청화아파트)	안혜*	100/21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5 317동 ****(파크리오)	김도*	496/214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39,316동 ***호	안춘*	100/21431			
8	양재동 산46-1	임	1,716	1,2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3-15 강변@1동****호	정태*	393.68/17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49 다세대 1-***	장국*	330.58/1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 신동아@1-***	정영*	330.58/17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3 신동아@1-***	정문*	330.58/1716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21-1 희영@101-***	정윤*	330.58/1716			
9	양재동 75-5	전	1,226	1,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960 도곡대림@ 101-****	김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5길 16 101-****	진칠*	채권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42-5, ***호	진칠*	채권자			
10	양재동 산49-6	임	6,947	3,460.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960 도곡대림@ 101-****	김판*				
11	양재동 산47-1	임	2,727	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최영*	1/2			
					9**이스트 도브스 네스트 아베뉴 라하브라 가주90631 미합중국	정세*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61,503-****(광장동 현대아파트)	정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56, 에이동 ****호(도곡동타워팰리스)	정혜*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36동 ****호(오금동, 현대아파트)	정내*	1/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7, 36동 ****호(오금동, 현대아파트)	정소*	1/16			
12	양재동 산47-2	임	248	2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5. 임광@3-***	공희*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33-*	공현*	1/2			

※ 위 토지조서는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기준이며 향후 보상 시 권리관계 및 물건(건물 등) 등을 확인하여 시행할 예정임

◈ 서초구공고 제2019-7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리풀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변경)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05-91호(2005.11.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40-9번지 일대의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19-408호(2019.3.14.)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변경)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40-9번지 등 20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
다. 사업의 면적
  1) 변경 전 : 85,715.4㎡
  2) 변경 후 : 85,973.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서초구청(공원녹지과 ☎2155-6882)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2019년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조성)사업

(변경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20필지		197,574.5	85,715.4						
1	반포동 산40-9	임	33,089	10,090.7	신장*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117번길 **-**(아천동)	110/110	주식회사남양저축은행	경기도 구리시 검베로 10(수택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	근저당권
2	서초동 산183-1	임	17,500	7,628.9	정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	1/4			
					정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01길38, ***호 (청담동, 상지카일룸)	1/4			
					정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동 ****호(정자동, 파크뷰)	4/200			
					정희*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8길 **, ***호 (서초동, 끄레메빌)	18/200			
					정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18, ***동 ***호 (방배동, 방배삼성홈타운)	14/200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역삼세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압류
								고필*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동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근저당권
								정*****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튼 베이우드 드라이브 ****	근저당권
					정혜*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293, ***동 ***호 (길동, 삼익파크맨션)	8/200			
					정위*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120, ***동 ****호 (일원동, 샘터마을(아))	12/200			
					정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66, ****동 ***호 (중앙동, 주공아파트)	7/200			
					정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43, ****동 ***호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7/200			
					안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동 ***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20/200			
					안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73번길 -** (마두동)	10/200			
3	서초동 산185-11	임	14,387	4,744.1	**정씨 대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4	서초동 산185-1	임	4,337	4,337	**정씨 대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5	반포동 산85-2	임	20,015	20,015	김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길 123-18, *동 ***호(화성아파트)	7968/22845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346(용답동)	지상권
					이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압구정동)	3306/22845			
					박윤*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0, **동***호 (서초동, 삼풍아파트)	1653/22845			
					이성*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25, ***동 ****호 (풍납동, 현대아파트)	1653/22845			
					이제*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50, ***동 ****호 (일원동, 래미안 개포루체하임)	1653/22845			
					이호*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270,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653/22845			
					이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9길58,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53/22845			
					백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53/22845			
					백성*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53/2284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6	방배동 산17-15	임	68,214	19,654.4	**남씨양정공파대종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	1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346(용답동)	지상권
7	방배동 산17-3	임	1,931	200.7	주식회사***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8	방배동 산17-4	임	3,273	1,292.7	주식회사***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9	방배동 산18-4	임	552	443.5	주식회사***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 동 ****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근저당권
10	방배동 산17-25	임	502	317.8	주식회사***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 동 ****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근저당권
11	방배동 산17-2	임	6,737	2,592	주식회사***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이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	근저당권
								이재*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35-1 신창무궁화 아파트 *-***	근저당권
12	방배동 산17-5	임	8,479	1,964.7	주식회사***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신월새마을금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0-1	근저당권
								신월새마을금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0-1	지상권
								이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1, ***동 ***호 (시흥동, 코오롱러든그로브)	근저당권
								박현*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8길35, ***동 ****호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근저당권
13	서초동 산165-4	임	2,830	2,599	남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동 ****호(정자동, 로얄팰리스)	659 /2830			
					이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 11길 **-*	2171 /8490			
					이응*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아파트 ***동 ****호	2171 /8490			
					이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 11길 **-*	2171 /8490			
14	서초동 1497-4	공원	410.5	410.4	차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2, ***동 ***호 (쌍촌동, 상무힐스테이트)	1			
15	서초동 산161-2	임	264	264	문홍*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07번길 **, *층	1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16	서초동 산160-52	임	89	89	김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8-1 레베빌 ***호	1/9			
					임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번길29, ***동 ***호(죽전동, 한솔노블빌리지)	1/9			
					조명*	서울시 서초중앙로15, *동 ****호 (서초동, 현대슈퍼빌)	1/9			
					서병*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47길17, *** 동 ****호(수서동, 신동아아파트)	1/9	파산자대구동부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5 킹덤오피스텔 1101호	가압류
								삼성세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압류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김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서초동, 청구빌라)	1/9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6	서초동 산160-52	임	89	89	오석*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 (서초동, 청구빌라)	1/9			
					장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67-12, ***동 ***호(상현동, 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 4단지)	1/9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가압류
								성남세무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압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특수관리부)	가압류
								파산자신한종합금융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2층	가압류
								파산자대구종합금융주식회사파산관재인권혁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16 만촌우방타운 107-601	가압류
								파산자대구종합금융주식회사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8(여신관리팀)	가압류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압류
								파산자경일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압류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 남구 이천로 51	압류
					이태*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 (서초동, 청구빌라)	0.5/9			
					이정*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 (서초동, 청구빌라)	0.5/9			
					강복*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	1/9			
17	서초동 산160-15	임	172	172	이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	1			
18	방배동 167-30	대	155	140	윤기*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	1			
19	방배동 167-31	대	142	129.6	김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길22, ***호 (역삼동)	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미래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9-16	근저당권
20	서초동 산156-24	임	14,496	8,629.9	황병*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 하이츠빌라	1			

(변경후)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계	20필지		197,574.5	85,973.9						
1	반포동 산40-9	임	33,089	10,090.7	신장*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117번길 **-** (아천동)	110/110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0(수택동)	근저당권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서울시 중구 퇴계로 234	근저당권
2	서초동 산183-1	임	17,500	7,628.9	정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로 ***	1/4			
					정수*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01길38, ***호 (청담동, 상지카일룸)	1/4			
					정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48, ***동 ****호(정자동, 파크뷰)	4/200			
					정희*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8길 **, ***호 (서초동, 꼬레메빌)	18/200			
					정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18, ***동 ***호 (방배동, 방배삼성홈타운)	14/200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압류
								역삼세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압류
								고필*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동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근저당권
								정*****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튼 베이우드 드라이브 ****	근저당권
					정혜*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293, ***동 ***호 (길동, 삼익파크맨션)	8/200			
					정위*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120, ***동 ****호 (일원동, 샘터마을(아))	12/200			
					정혜*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66, ****동 ***호 (중앙동, 주공아파트)	7/200			
					정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43, ****동 ***호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7/200			
					안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동 ***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20/200			
					안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73번길 *-**(마두동)	10/200			
3	서초동 산185-11	임	14,387	4,744.1	**정씨 대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4	서초동 산185-1	임	4,337	4,337	**정씨 대종친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			
5	반포동 산85-2	임	20,015	20,015	김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길 123-18, *동 ***호(화성아파트)	7968 /22845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346 (용답동)	지상권
					이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압구정동)	3306 /22845			
					박윤*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0, **동***호 (서초동, 삼풍아파트)	1653 /22845			
					이성*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25, ***동 ****호 (풍납동, 현대아파트)	1653 /22845			
					이제*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50, ***동 ****호 (일원동, 래미안 개포루체하임)	1653 /22845			
					이호*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270,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1653 /22845			
					이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9길58,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53 /22845			
					백경*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53 /22845			
					백성*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 **동 ***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53 /22845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6	방배동 산17-15	임	68,214	19,654.4	**남씨양정공파대종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	1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346(용답동)	지상권
7	방배동 산17-3	임	1,931	200.7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8	방배동 산17-4	임	3,273	1,292.7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9	방배동 산18-4	임	552	443.5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동 ****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근저당권
10	방배동 산17-25	임	502	317.8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동 ****호 (여의도동, 롯데캐슬엠파이어)	근저당권
11	방배동 산17-2	임	6,737	2,592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이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	근저당권
								이재*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운당리 35-1 신창무궁화아파트 *-***	근저당권
12	방배동 산17-5	임	8,479	1,964.7	주식회사***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1	신월새마을금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0-1	근저당권
								신월새마을금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0-1	지상권
								이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1, ***동 ***호 (시흥동, 코오롱러든그로브)	근저당권
								박현*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8길35, ***동 ****호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근저당권
13	서초동 산165-4	임	2,830	2,830	남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49, *동 ****호(정자동, 로얄팰리스)	659/2830			
					이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1길 **-*	2171/8490			
					이응*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525-1 대우아파트 ***동 ****호	2171/8490			
					이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1길 **-*	2171/8490			
14	서초동 1497-4	공원	410.5	410.5	차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42, ***동 ***호(쌍촌동, 상무힐스테이트)	1			
15	서초동 산161-2	임	264	264	문홍*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07번길 **, *층	1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16	서초동 산160-52	임	89	89	김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8-1 레베빌 ***호	1/9			
					임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71번길29, ***동 ***호(죽전동, 한솔노블빌리지)	1/9			
					조명*	서울시 서초중앙로15, *동 ****호 (서초동, 현대슈퍼빌)	1/9			
					서병*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47길17, ***동 ****호(수서동, 신동아아파트)	1/9	파산자대구동부신용협동조합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5 킹덤오피스텔 1101호	가압류
								삼성세무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압류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압류
					김소*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 (서초동, 청구빌라)	1/9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6	서초동 산160-52	임	89	89	오석*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 (서초동, 청구빌라)	1/9			
					장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67-12, ***동 ***호(상현동, 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 4단지)	1/9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가압류
								성남세무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압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특수관리부)	가압류
								파산자신한종합금융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2층	가압류
								파산자대구종합금융주식회사파산관재인 권혁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816 만촌우방타운 107-601	가압류
								파산자대구종합금융주식회사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주식회사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8(여신관리팀)	가압류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	압류
								파산자경일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33	가압류
								성남시 중원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압류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 남구 이천로 51	압류
					이태*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 (서초동, 청구빌라)	0.5/9			
					이정*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11-8, *동 ***호 (서초동, 청구빌라)	0.5/9			
					강복*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	1/9			
17	서초동 산160-15	임	172	172	이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	1			
18	방배동 167-30	대	155	155	윤기*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산*-**	1			
19	방배동 167-31	대	142	142	김태*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65길22, ***호(역삼동)	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미래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9-16	근저당권
20	서초동 산156-24	임	14,496	8,629.9	황병*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 하이츠빌라	1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아리랑하우스 (대표:홍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강변북로 96(한강)	유선장 1,321㎡ 임시승선대 150㎡	유선사업	2019. 1. 1 ~ 2019.6.30.	2019. 5.2.
			유선사업 선박 51척 (동력3, 무동력48)			
			상·하수도 관로 34.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리버시티수상스키장 (대표:김백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79-1	동력선 7척,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6대	수상레저사업	2019. 5. 4. ~ 2019. 6. 30.	2019. 5.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레저스포츠 (대표:김진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동력선 5척,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7대	수상레저사업	2019. 5. 4. ~ 2019. 6. 30.	2019. 5.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레저스포츠 (대표:김진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2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47	동력선 4척, 무동력 21대,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4대	수상레저사업	2019. 5. 4. ~ 2019. 6. 30.	2019. 5.3.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 내 한강 (반포대교)	선박 2척	정밀점검	'19.05.09. ~ '19.05.10.	'19. 05.0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회체육진흥회 수상스키중앙 연합회 (대표 김찬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상암동)	-	수상시설물 452㎡	수상스키 훈련장	2019.1.1. ~ 2019.6.30. (6개월)	2019. 5.1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파라다이스 (대표 계희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	한강대교 상류 200m ~ 마포대교 하류 200m	동력선 2척 - 모터보트 1척 - 구조선 1척 무동력 3대 - 수상스키 1대 - 웨이크보드 1대 - 땅콩보트 1대	수상레저사업	2019.5.11. ~ 2019.10.27	2019. 5.1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환경수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원효대교 북단 상류, 서래2교 하류)	1,000㎡ 72㎡	수생식물 식재장 운영	'19.05.14. ~ '20.05.13.	'19. 05.13.

사업소공고

◈ 동대문소방서공고 제2019-10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2차(영업정지3개월) 통지 공고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소재지불명, 연락두절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동 대 문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19. 5. 16.(목) ~ 2019. 5. 30.(목)

2. ㈜성정건설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2차(영업정지3개월)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 하며, 행정처분일(2019.05.03.)로부터 등록기준 미달 상태로 시정명령 조치기한 만료 시 행정처분3차(등록취소) 처분 예정입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사업자등록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성정건설 (소재지불명)	김부영	전문소방시설공사업 2015-02-00130 (2015.08.21.) 사업자등록증번호 (610.81.36487)	등록사항 (주인력)미달 : 30일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영업정지3개월 행정처분2차 (2019.05.03.)
시정명령 조치기한 : 2019.05.03.~2019.07.31					

3.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동대문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2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6-1번지
   - 면 적 : 일시점용 1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상수도관(D600, D200) 정비 및 상수도 맨홀 보수
   - 내 역 : 상수도관 정비를 위한 굴착공사(H=2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9.05.08.~2019.06.17.(점용기간, 공사기간 동일)

정 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66호 정정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정정

서울시보 제3519호(2019. 5. 9.자 제105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266호)"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기존	정정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9, 팩스: 02)768-8846, 이메일: matesoul83@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9, 팩스: 02)768-8846, 이메일: matesoul83@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